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

2020년 기준



조함·판로
글로벌·통상
금융·세제



디지털·혁신
그린·환경
상생협력



소상공인
고용·노동
정책일반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

2020년 기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자를 위하여

- 본 정책건의백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현안애로를 발굴해 정부부처, 국회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

- 본 정책건의백서는 ‘분야별 정책과제’, ‘지역별 정책과제’로 구성
 - ‘분야별 정책과제’는 중앙회 본부에서 취합한 8개 분야별 관련 정책과제를 나누어 수록
 - ‘지역별 정책과제’는 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취합한 13개 지역별 관련 정책과제를 나누어 수록

- 편제순서는 먼저 ‘분야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조치결과에 따라 ‘반영 → 일부반영 → 미반영 → 검토중’ 순으로 정리
 - 조치결과는 해당부처의 답변을 기준으로 작성
 - ‘검토중’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서 검토 중이거나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건의를 의미
 - 정책과제 반영률 산정 시, ‘반영’ 과제의 반영률을 1이라 할 때 ‘일부반영’ 과제는 0.5로 계산
 - * 반영률 계산식: (반영 과제 비율) + (일부반영 과제 비율/2)

- 분야별/지역별 정책과제 중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발간사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은 60.3%가 매출이 줄어들었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새로운 촉매제가 되어 혁신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비대면 경제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 일자리의 83%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804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323건을 정책에 반영시켰습니다.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확보하여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반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주신 중소기업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애로가 정부·학계·연구계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고 이를 통해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Contents

I. 2020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황

1	정책과제	40
2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추이(2009~2020)	40
3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41
4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42
5	중소기업 정책과제 반영현황	43
6	중소기업 정책과제 반영률 5년간 추이	44
7	분야별 정책과제 반영 현황	48
8	지역별 정책과제 반영 현황	49

II. 2020년 중소기업 주요 정책과제 13선

1	중소기업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52
2	고용유지 지원수준 확대 및 요건·절차 완화	53
3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한시적 연장 조치	54
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55
5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56
6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약권 부여	57
7	초과유보소득과세 폐지	58
8	MAS 2단계경쟁 회피금지 적용대상 개선(협동조합별 → 조합원사별)	59
9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확대	60
10	협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	61
11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제정	62
12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	63
13	출입국 제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	64

Ⅲ.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01 조합·판로

1	입찰 시 이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개선	70
2	MAS 2단계경쟁 회피금지 적용대상 개선	72
3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조치 즉시 반영	73
4	물품 내용연수 관련 개선	75
5	합성목재제품의 동일한 품질기준적용 건의	76
6	행사기획운영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적용 활성화	77
7	협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	78
8	MAS 2단계경쟁 최종 납품기한 변경건의	79
9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적극활용	80
10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개선	81
11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도 개선	83
12	공공선박 발주 시 특정메이커 장비지정 지양	84
13	퍼걸러 목록화 승인 및 분류이동 관련 건의	85
1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관련 개선	86
15	목재제품 전문기관 검사 조속시행 등	87
16	레미콘MAS 추가운반비 지급기준 변경 요청	88
17	상품정보 품명변경 및 참가자격 오류개선	91
18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약금 기준 완화	95
1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	96
20	소형 경비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실시 건의	98
21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기한 변경 개선	99
22	적정단가 반영 및 2단계경쟁 제한율 상향	101
23	공정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단가 중심 조달정책 전환	103
24	재난 극복 위한 행정제재조치 완화	104
25	전시물제작설치업 인력평가 시 전시연출전문가 반영	105
26	가스공급자 입찰 관련 분리발주 등 개선	107
27	다수공급자계약의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109
28	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항목 PIN-UP賞 부활	111

Contents

29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임의적 제재사유 구분	112
30	입찰제한 적용대상 변경('기업체' 단위 → '해당제품' 단위)	113
31	행정제재 수단의 다양화	114
32	과징금 제도 개선(적극 이용)	115
33	한시적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기준(신용등급) 완화	116
34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평가기준 개선	117
35	마케팅 및 판로지원을 통한 개성공단기업 자생력 강화	118
36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 마련	119

02 글로벌·통상

1	중소기업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122
2	수출입신고 오류 점수(별점)제 및 관련 매뉴얼 개선	123
3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행위 조사	124
4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기준 완화	125
5	면세점 판매 국산품 시중유통 근절	126
6	불법수입 중국산 생알땅콩 단속강화	127
7	국제분쟁 발생 시 대응비용 지원	128
8	기업인 격리면제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129
9	한-베트남 상품직거래에 따른 보세제도 지원	130
10	동스크랩 불법 수출 단절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131
11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132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기간 연장	133
13	신속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134
14	수입식품 성분 정밀검사 제도 개선	135
15	국가별 협상을 통한 온라인 디렉토리 구축 및 홍보	136
16	AR/VR기술을 활용한 제품 매뉴얼 제작 및 쌍방향 소통 지원	137
17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138

18	병행수입제품 원산지증명 완화	139
19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 피해기업 지원	140
20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수입	141
21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및 홍보 지원	142
22	중국산 수입 점토벽돌 품질 검사 강화	143
23	제지 품목분류 보완 및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144
24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145
25	입국장 인도장 인도 범위를 '출국 전 구매 분'으로 제한	146
26	입·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허용	147
27	입국장 인도장 설치 시 주류, 담배 인도 제한	148
28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현실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149
29	중소 면세점 협력사 공항 면세점 휴점 건의	150
30	한중FTA 황동봉 관련 비대칭 양허 재조정	151

03 금융·세제

1	초과유보소득과세 폐지	154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	155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156
4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157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158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159
7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160
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161
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162
10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163
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164
1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확대 및 일몰연장	165
1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166

Contents

1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167
15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168
16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169
17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지원 확대	170
18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기준 마련	172
19	금융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173
20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공동보증 건의	174
2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연장	175
22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176
2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177
24	세금포인트제도 활용대상 확대	178
25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및 적용제외 대상 확대	179
26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업종 확대	180
27	재기중소기업인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허용	181
28	R&D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인력의 인건비 포함	182
29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183
30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184
31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185
32	동스크랩 소득세 선납제도 신설	186
33	운전면허교육 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187
34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188
35	중소제조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189
36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항목 변경 및 공제율 상향	190
37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191
38	중간예납·예정신고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배제	192
3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193
4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확대 및 영구화	194
41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195
4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196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197
44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198

4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199
46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200
47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지원제도 교육 확대	201
48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세무컨설팅 확대	202
49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	203
5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 및 안내 확대	204
51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05
52	국세상담센터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강화	206
53	주류용도표시운영 관련 의견	207
54	인지세법 개선	208
55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급과세 부과 추진중단	209
56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K-PPP 도입	210
57	전자어음 발행, 유통 수수료 개선	212
58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214
59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 유동성 지원	215
60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216
6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세제지원(손비인정) 제도 도입	217
62	노란우산 단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소득세 과세한도 신설	218
63	노란우산 장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소득세 과세방식 변경	219

Contents

04 그린·환경

1	염색폐수 슬러지 에너지시설 사용[연료화] 조속 추진	222
2	방치폐기물 처리주체 확대 및 명확화 근거 마련	223
3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224
4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	225
5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226
6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227
7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228
8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229
9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230
10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231
11	엔진오일 및 배터리 등 출장정비에 관한 단속 강화	232
12	국산폐지 사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233
13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및 비표준용기에 대한 유통업계 지원책 마련	234
14	상수원 보호구역 화학비료 사용 대체 등	235
15	절수형 양변기 환경표지인증 개선	236
16	녹조 모니터링 방법 개선	237
17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구역 단가 현실화	238
18	폐지 수입신고제 도입 관련 건의	239
19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240
20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유예	241
21	재활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242
22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운영 개선	243
23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	244
24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245
25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순환골재 삭제 요망	246
26	폐기물처리업 과징금 산정 근거 명확화	247
27	수입폐지 통관 전 전수조사 관련 건의	248
28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249
29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제도 개선	250
30	재사용 빈용기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251
31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구체적 근거 요청	252

3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253
33	환경표지 대상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외	254
34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 지원	255
35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완화	256
36	자가측정의무 유예관련 중복측정 개선	257
37	유리병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기준 변경	258
38	갱도 굴진 광산의 배출수 폐수에서 제외	259
39	단서조항을 약용한 폐기물의 편법 처리 방지	260
40	신규 유독물질 지정 관련 정책 개선	261
41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262
42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263
43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264
44	환경책임보험료 요율 개선	265
45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한 조정 요청	266
46	배합사료에 곤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267
47	화학물질의 등록 유예기간 연장	268
48	두부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정 개선	269
49	폐목재 REC 가중치 배제 재검토	270
50	항균스프레이의 조속한 검사 시행 요청	271
51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272
52	축산분뇨 배출원단위 현실화	273
53	「물환경보전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274
54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275
55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276
56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확보기준 개선	277
57	친환경 언더코팅 작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278
58	순환자원인정업체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강화	279
59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 출입차량 관리	280
60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변경	281
61	하수, 폐수 재이용 용도 확대	282
6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 신고 대상 완화	283
63	바이오디젤 원료로 '폐식용유' 최우선 사용	284

Contents

64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검토	285
65	자동차정비업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보급사업 대상에 포함	286
66	배추포장재의 골판지포장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287
67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원 사업 신설 및 친환경 교육 실시	288
68	점토벽돌과 결합한 친환경 단열재 R&D 개발자금 지원	289
6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 측정 완화[연2회 → 연1회]	290
70	축산, 양식어류 등 배합사료에 곤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291

05 상생협력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보완	294
2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위한 「상생협력법」 조속 개정	295
3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 혜택 확대	296
4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 명예부여	297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298
6	기업집단 공시제도 확대 개편	299
7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300
8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301
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강화	302
10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제도 개편	303
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304
12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305
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	306
14	비상장주식 물납자 우선매수제도 운영 관련 건의	307
15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요건 완화	308

06 소상공인

1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312
2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효성 강화	313
3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재검토	314
4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315
5	초기 투자부담 완화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사전인증제 도입	316
6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요청	317
7	소상공인 동네수퍼 스마트화 추진	318
8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직접지원 강화	319
9	식품위생법 규제대상 명확화	320
10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321
11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322
12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323
13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324
14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325
15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개선	326
16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327
17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활성화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328
18	가맹점주 보호 법제 정비 및 교섭권 강화	329
19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330
20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기업 참여 확대 독려	331
21	중소유통물류센터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 마련	332

Contents

07 고용·노동

1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인가	336
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337
3	물류터미널운영업의 외국인력(H-2) 고용 허용	338
4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한시적 연장 조치	339
5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340
6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보건증 발급 절차 개선	341
7	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342
8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 확대	343
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중 상향 조정	345
10	고용유지지원금 예외적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346
11	고용유지지원금 내년도 신청요건 현실화	347
12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유연화 및 부정수급 처벌 완화	348
1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349
14	퇴직연금 의무화 및 퇴직급여 대상자 확대 등 관련 건의	350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점진적 적용	351
16	최저임금의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352
17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353
18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중지	354
19	노사관계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	355
20	레미콘업계 파업 등 노조관련 애로 해소	357
21	승강기 2인1조 자체점검 규제완화 및 계도기간 부여 요청	358
22	부리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359
23	부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360
24	「숙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개선 협조요청	361
2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개선 건의	362
26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개선 건의	363
27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364
28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합리화	365
29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전공제절차 개선	366
30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367

08 정책일반

1	해외 전시 부스공사 상황 보고 간소화	370
2	스마트시티 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371
3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추경) 확보	372
4	공공·민간 협업의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373
5	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선	374
6	노후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375
7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한 부당금품 금지 환경 조성	376
8	공장건축물에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생략	377
9	수입대두 직배가격 인상 방침 철회 요청	378
10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연기방안 검토 요청	379
11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380
12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 확대	381
13	화장품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건의	382
14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383
15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강화	384
16	중소기업 데이터산업 지원정책 강화 요청	385
17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완화	386
18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력지원체계 개선	387
19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388
20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389
21	특장차 인증 기술검토 간소화	390
22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처리 개선	391
23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392
24	위생안전기준 인증성적서 공개	393
25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395
26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396
2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건의	397
28	수도용 밸브 적합인증 개정 건의	398
29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간 확대	399
30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취득기간 단축	400

Contents

31	승강기 심사 보완기간 연장	401
32	K마크 인증 유지관리 애로	402
33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403
34	단체표준 사후관리 제품심사 개선	404
35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405
36	중소기업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 수수료 인하	406
37	성능인증 취득 부담 완화	407
38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408
39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409
40	조달 전문기관 검사 기간 단축	410
41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411
42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412
43	조달 우수제품 등록, 유지	413
44	KS와 목재품질규격 검사 단일화	414
45	전자파 파생기준 명확화	415
46	전자파 적합성 평가 중복 면제	416
47	환경표지 인증 모델추가 시 서류간소화	417
48	환경표지인증 일시중단에 따른 조달자격 취소 애로	418
49	신기술·신제품 인증 시 표준 품질관리 규정 적용 완화	419
50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합리화	420
51	LED인증 관련 성적서 상호 인정	421
52	조명기구의 디자인 변경 시 파생등록 불가	422
53	성능인증 심사원 전문성 강화	423
54	성능인증 기간 연장심사 절차 간소화 필요	424
55	기계식주차장 부분변경 인증 허용	425
56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시 구조계산서 제출	426
57	벤처기업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427
58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기관 확대	428
59	승강기 인증심사 보완 및 처리기한 연장	429
60	KS정기심사 성적서 구비요건 완화	430
61	해외인증 획득 지원 필요	431
62	조달 우수제품 신청횟수 확대	432

63	조달우수제품 심사시 고객을 위원으로 구성	433
64	조달 우수제품 심사 관련 애로	434
6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436
66	물류산업의 분류표기 및 통계 개선	437
67	폐차질서 확립을 위한 폐차실명제 등 시행 건의	438
68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의무화	439
69	교통안전공단-민간검사정비업체간 상생 여건 조성	440
70	자동차검사 범용진단기 보급	441
71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의무화	442
72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남해EEZ 제도개선	443
73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현실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444
74	전시디자인설치 사업자 건설업 경영상태 실태조사 유예	445
75	도시락류 제조업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 제외	446
76	수입 대두분의 두부제조 용도로 사용 금지	447
77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448
78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 단축	449
79	KS인증심사 시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 업체 관리	450
80	전자파 중복시험 면제	451
8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비용부담 완화	452
82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비용 지원	453
83	GS(Good software) 인증 민간 인증기관 확대	454
8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판매가격 개입 중단	455
8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456
86	여성기업 수의계약 확대	457
87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개선	458
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송표준약관 마련	459
89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물류자회사 물량 제한	460
90	대규모 렌터카사업자 관리감독 개선	461
91	렌터카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462
92	렌터카 차종 제한규정 개선	463
93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완화	464
94	폐차사업자를 위한 자동차 통합 압류조화·해지 서비스 요청	465

Contents

95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수행기관 확대	466
96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민간 검사소 확대	467
97	자동차검사장비 통신방식 표준화	468
98	자동차전문정비업 직업범위에 친환경 언더코팅 포함	469
99	자동차종합검사 검사원 자격기준 개선	470
100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일터 접근성 확보 지원	471
10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472
102	훼손지 정비사업 물류센터 높이 기준 현실화	473
103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용도변경 허용	474
104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시 대체부지 확보 지원	475
105	건본주택 마감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	476
106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시 수수료 예납제도 도입	477
107	토지·물건조서 작성업무의 외부 용역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478
108	골프연습장 등의 부설주차장 확보기준 개선	479
109	중소기업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480
110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배제 관련 건의	481
111	농업용 드론에 대한 중복되는 안전인증 일원화	482
112	농업용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 의무화 예외 적용	483
113	중소기업 단체표준 제품의 모델인증 면제 제도 신설	484
114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건의	485
115	승강기 분야의 중복된 규제의 완화	486
116	뿌리산업 전기요금 제도 개선 요청	487
117	승강기 설치검사 보완기간 연장	488
118	인증심사 보완 및 처리기간 개선	489
119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REC 가격현실화	490
120	생동시험 비동등에 따른 회수조치 대상에서 기허가 의약품 제외	491
121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부담 완화	492
122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493
123	인증시험기관 출장시험 시 시험수수료에서 장비사용료 제외	494
124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파생모델 시험 간소화	495
125	LED 인증 받은 컨버터 사용시 전자파 시험 면제	496
126	폴리에틸렌관 중복인증 해소	497

127	GPS 무선전파방해장치 KC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제정 필요	498
128	공구부품 수요기업 다수인증 요구 및 사후심사 기간 개선	499
129	색상별 도로 중복 인증시험 비용 부담 완화 요청	500
130	소포장 수입 문구류 원산지 표기 방법 개선	501
131	승강기 조합 단체인증으로 제조사 안전인증 중복시험 면제	502
132	어린이특별법에 의한 KC인증 유효기간 폐지	503
133	해외인증 취득한 방폭분야 제품 국내인증 부담 완화	504
134	레미콘 환경성적 표지인증기준 변경으로 심사수수료 부담 완화	505
135	LM80 성적서 보유 고효율조명기구 광속유지율시험 면제	506
13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S-색온도별 광효율기준 차등적용	507
137	성능인증 검사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축소 및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	508
138	KS인증 갱신주기 변경, 사후관리심사 축소 및 자금지원	509
139	콘크리트 순환골재 녹색제품 인증 개선	510
140	목재산지 목재인증 동일 시 원공급자 변경심사 면제	511
141	레미콘원자재 품질시험성적서 단순용도변경 재발급 허용	512
142	국내 생산조달품목에 과다적용된 정부인증 단일화 요청	513
143	LED 시험검사 간소화(대표품목 1개만 검사, 나머지는 면제)	514
144	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서식통합 및 발급비용 할인지원	515
145	밸브류 위생안전인증/적합성인증 중복부담 완화	516
146	조달 우수제품 대행검사 비용 조달청이 부담 요청	517
147	조달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청 판매기간 연장 요청	518
148	공인된 기관에서 샘플링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만 상호 인정	519
149	인증 면제 범위 확대	520
150	전자파시험 대체 및 시험성적서 제출 항목 축소	521
151	완구 유효기간 폐지(혹은 연장) 및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변경	522
152	성능검사 인정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	524
153	전문검사기관 지정기준 변경	525
154	시험성적서 대체 허용 확대 반대	526
155	코로나19로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용역업체의 용역비 보전	527
156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정책 건의	528
157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협조 건의	529
158	개성공단기업 대상 지방투자기업의 업종 및 고용 유지의무 개선	530

Contents

159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기계정비 교육훈련원 설립 지원	531
160	차선도색공사 발주 관련 자재 가격 현실화	532
161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 공동사용 건의	533
162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 작업규정 마련	534
163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불합리한 작업범위 개선	535
164	하도급 제한 규정 개선	536
165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교육 독점 개선	537
16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개선	538
167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외 기준 개선	539
168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확대 건의	540
169	보상전문기관 확대(중소기업) 건의	541
170	소형선박 신조 및 수리·개조산업 육성 지원	542
171	조선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정책) 현실적 지원	543
172	조선기자재산업 중심 육성정책 필요	544
173	조선기자재 스마트공동납품운송시스템 구축지원	545
174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해제 건의	546
175	부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소기업 DMC타워 내 설치	547
176	부리산업 전용 저리 정책자금 및 긴급유동성자금 지원	548
177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49
178	탄력근무제 및 부리산업 지원체계 개선	550
179	부리산업의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 마련	551
180	풍력발전부품사업단지에 물류 업종 입주허용 제도개선	552
181	비대면 전시산업 확산을 위한 K전시 구축 지원	553
182	1인 출장스팀세차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554
183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증대	555
184	연말마다 반복되는 수입대우 물량 부족 문제 해소	556
185	중소 간장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한 식약처 규제 개선	557
186	김치류 식품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558
187	의료기기 생산·수출 실적 보고기관 변경	559
188	승강기 감리기술자 기술교육 시간 개선	560
189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한 검사·형식승인 등 면제	561
190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보고의무 신설	562

IV.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01 서울지역본부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선금 지급비율 확대 건의	568
2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569
3	서울시 PL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570
4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요청	571
5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물품 범위 확대	572
6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활력회복 대책 건의	573
7	「Global 마케팅 수출 지원센터」 설치 지원	574
8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지원	575
9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활성화	576
10	상암DMC지역 지정용도 의무사용비율 및 기간규제 완화	577
11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578
12	「협동조합 추천제도」 등 활용, 소기업 제품 구매확대	579
13	영세 자영업자 노후 LPG가스시설 개선 지원	580
14	지역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581
15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582
16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개선	583
1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584
18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수의계약 제한	585
19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586
20	단체표준인증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587
21	공공구매 가산점 제도 개선	588
22	MAS 품목별 조달단가 현실화	589
23	레미콘, 아스콘 MAS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	590
24	수의계약 시 사전규격 공개 제한적 운용	591
25	학교졸업앨범 공공조달단가 인상 요청	592
26	대기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593
27	자동차정비업 인력자격기준 개선	594
28	스마트앵커 설치시 인쇄업계 참여확대 및 박물관 건립	595

Contents

29	조합 등기이사 인쇄소공인센터 사업 배제 해제	596
30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공동상표 홍보 및 이용	597
31	조달물품 의무구매 비율 충족 시 인쇄물품 편중 해소	598
32	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기금 조성	599
3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600

02 인천지역본부

1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604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요청	605
3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시 업무절차 간소화	606
4	소액수의계약 구매대행 확대 시행	607
5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 위임	608
6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구매대행 재시행 요청	609
7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품목 선정기준 완화	610
8	공정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단가 중심 조달정책 전환	611
9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612
10	인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613
11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확대	614
12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건전화 생태계 조성	615
13	에너지, 드론 등 신산업 육성 지원	616
14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인프라 확충	617
15	인천 수산물유통특화단지 조성	618
16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육센터 및 자금 지원	619
17	민간주도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 지원 강화	620
18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621
19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PL) 지원 요청	622
20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시행 요청	623
21	부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24
22	자원순환특화단지 인천 뉴그린 거점 육성	625

03 경기지역본부

1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628
2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629
3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630
4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631
5	경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632
6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633
7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임가공(사) 애로사항 건의	634
8	가구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635
9	노후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636
10	안산섬유판션 클러스터센터 설립	637
11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선	638
12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활성화	639
13	전통시장 안전·편의시설 확충	640
14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제도 개선	641
15	권역별 폐수슬러지 공동처리시설 설치	642
16	생활폐기물 재활용 공동집하장 건립	643
17	코로나19 관련 전기요금 일부 감면 및 납부유예	644
18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 확대	645
19	유통상가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인정 건의	646
20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647
21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계획안 건의	648
22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성화	649
23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650
24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예산 및 판로지원	651

Contents

04 경기북부지역본부

1	고양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654
2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완화	655
3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656
4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657
5	마홀앤 가구전시판매장 고객 접근 편의성 확보	658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적극 활용	659
7	포천양문공단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 지원	660
8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 직접발주 요청	661
9	경기북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662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663
11	외국인력 자가격리시설 확보 지원	664
12	두부용 수입 콩 공급체계 일원화	665
13	경기북부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일터 접근성 확보 지원	666
14	경기북부 섬유패션 트레이드센터 건립	667
15	경기북부 중소기업 공동물류단지 조성	668
16	경기북부 지역특화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	669
17	경기북부 청년 창업허브(디지털팩토리) 운영	670
18	경기북부 특화산업의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671
19	산업단지 내 체험·교육시설 입주 허용	672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673
2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674
22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 수립	675
23	공공폐수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 지원	676
24	공업용수 취수장 설치 요청	677
25	수입 가구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과체계 개선	678

05 강원지역본부

1	이-모빌리티 실용화 및 산업기반 구축	682
2	강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683
3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684
4	강원도 세부시장범위(공급권역) 단일화	685
5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활성화	686
6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선	687
7	강원도 콘크리트 제품 공동전시장 건립 지원	688
8	대기업 조달물품 납품가격의 조달 우대가격 보장 요청	689
9	공인인증 시험기관 출장시험 비용절감 요청	690
10	우수제품 전문검사 개선	691
11	가스공급자 입찰관련 분리발주	692
12	MAS 2단계 경쟁 예외 한시적 시행	693
13	광고물(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부여	694
14	강원도내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탄력 적용	695
15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상향	696
16	남북접경지역 발전저해 중복규제 해제	697
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698
18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제재조치 완화	699
19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완화	700
20	관급자재 선급금제도 개선	701
21	차기계약 배제 규정 완화	702
22	학교 졸업앨범 공공조달단가 인상	703
23	설계변경에 따른 할인율 적용	704
24	원가계산 자료 공개	705
25	다량납품 및 2단계 경쟁 예외적용에 따른 할인율 적용	706
26	광고물 우수조달물품 등록 요건 완화	707

Contents

06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710
2	조합추천 수의계약 대행 협조	711
3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분리발주 협조	712
4	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713
5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구매지원	714
6	공사용자재 발주시 분리 발주 요청	715
7	「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716
8	충남지역 전문제조 중소기업의 레미콘제품 사용 요청	717
9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구매지원	718
10	인쇄물 발주시 공공기관 폰트 라이선스 구입 지원	719
11	대덕특구 중소기업기술이전센터 설립	720
12	자동차정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확대	721
13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적용	722
14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723
15	대전지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724
16	대전지역 소상공인 조직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725
17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726
18	대전 소상공인포럼 운영 및 우수 소상공인 인증 지원	727
19	세종 ICT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운영	728
20	대전 인쇄·출판산업 복합진흥지구 조성	729
21	공예문화·예술·관광 복합공간으로서의 공예마을 조성	730
22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도입	731
23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비용 지원	732
24	2021년도 세종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신규 예산 지원	733
25	충남지역 콘크리트 산업 발전을 위한 협동화시설 건립 지원	734
26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요청	735
27	충남지역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시설 지원	736
28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형 중소기업 특화단지」 조성	737
29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 확대	738
30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	739
31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 구매 확대	740

32	중소기업 PL보험 가입 지원	741
33	탄산가스(CO2) 부족에 따른 대책	742

07 충북지역본부

1	충북 「노란우산 복지지원센터」 설치 추진	746
2	정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유통단지 방역 지원	747
3	긴급운영자금 대출 지원 및 기존대출 만기 연장 등	748
4	마스크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사업장 방역 지원 등	749
5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사업장 방역지원 요청	750
6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신속한 보증심사 요청	751
7	소상공인 긴급 운영자금 신속 지원	752
8	라면, 세정제 등 공급확대 및 운영자금 신속 지원	753
9	마스크 등 생필품 안정적 공급 및 정책자금 확대 요청	754
10	관급물량 상반기 조기발주 및 계약 완료 요청	755
11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756
12	충북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구매지도 강화	757
13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758
14	조합추천 소액수익계약 활용도 제고	759
15	부정당제재 완화	760
16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761
17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762
18	충북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	763
19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764
20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765
2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766
22	중소기업 PL보험 가입 지원	767
23	조달청, 조합추천 수익계약 구매대행 물품 확대 요청	768
24	학교졸업앨범 공공조달단가 인상 요청	769

Contents

25	수익계약 시 사전규격 공개 제한적 운용	770
26	202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참가 지원	771
27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772

08 부산울산지역본부

1	R&D 인력 지원대상 확대	776
2	부산·울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777
3	부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신청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778
4	조달청 납품 방안 강구	779
5	조달청 조합추천 수익계약 구매대행 활성화	780
6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부산지역 예선대회 주관기관 선정	781
7	부산 공예품 전시판로 개척 지원사업 예산 승인 요청	782
8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예산 확대	783
9	「조합 추천 수익계약」 활용 요청	784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지원	785
11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786
12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787
13	서부산유통지구 소방관서 신설	788
14	동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신속 건립	789
15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역생산제품 구매 의무화	790
16	『조선산업 생태계 상생 특례보증 지원제도』 기금 출연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속한 보증 시행 건의	791
17	부산 공예품 구매확대 지원	792
18	부산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793
19	제22회 영·호남 8개 시·도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 참가 지원	794
20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795
21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업용수 사용료 감면 요청	796
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개성공단기업) 환수기준 면제	797

23	미음산업단지 입주허용업종 확대	798
24	최첨단 표면처리집적화단지 조성	799
25	부산가구디자인센터 및 시험인증센터 건립	800
2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801
27	친환경 자동차 모듈부품 제조혁신 플랫폼 허브센터 건립	802
28	재해구호기금 지원대상 확대	803
29	코로나19 방역 및 공동식당 칸막이 설치 지원	804
30	재난 극복 위한 행정제재조치 완화 등 건의	805
31	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항목 PIN-UP상 부활	806
32	학생운동화 무상지원 시범사업 실시	807
33	최저임금의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808
34	서부산유통지구 규제행위 완화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관 일원화	809
35	‘스마트공동납품운송시스템(공동운송플랫폼)’ 구축 지원	810
36	조선·기자재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비상 금융평가 기준 및 지침 마련	811
37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812
38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시설 지원	813
39	수출컨소시엄사업(중소기업중앙회 수행) 주관단체 모집에 지방조합 참여 기회 확대 및 전시회 등 참가기업 추가 지원	814

09 대구경북지역본부

1	「공동구매 전용보증」 이차보전 지원	818
2	지역학교 급식에 지역 연식품업체 참여 지원	819
3	대구지역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820
4	대구 「中企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821
5	중소기업 PL보험 가입 지원	822
6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소유권 이전 요청	823
7	대구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가스제조업 입주허용 요청	824
8	「대구광역시 LP가스 유통구조개선 민관협력체계 구축」 정책건의	825
9	대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826

Contents

10	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827
11	기존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특례보증 실시	828
12	소진공 대리대출(보증서대출) 자금, 은행에 신속공급	829
13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한시 전액 지원	830
1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요건, 절차 간소화	831
15	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강화	832
16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833
17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834
18	‘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835
19	구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836
20	구미 중소기업 PL보험 지원	837
21	구미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요청	838
22	구미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839
23	구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840

10 경남지역본부

1	도내 공예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확대 지원	844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845
3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846
4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적극 활용	847
5	지역업체 제조물품 공동계약 적극 활용	848
6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확대	849
7	조합추천수의계약 구매대행 적극 시행 협조요청	850
8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안내	851
9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요청	852
10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853
1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854
12	작물보호제 조달입찰 기초단가 상향 조정	855

1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운반 관련 규정준수 요청	856
14	부정당제재 완화	857
15	모래 사용제한 해제 건의	858
1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영업신고 관련 시·군 행정지도	859
17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활용한 조달청 납품	860
18	분할변경요청서 상 납기변경 시 조합 동의절차 없이 통보 요청	861
19	제조공동도급 근거 마련 필요	862
20	실크 원단 제직 준비공정 공동화사업 지원	863
21	LPG 판매업계 생존 및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864
22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선정업체 자금 지원	865
23	(구)수협부지 내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866
24	레미콘업계 노조 부당행위에 엄격한 법집행 요청	867
25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를 위한 지자체 시설 지원	868
26	차기계약 배제 규정 완화	869
27	관수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가격산정 및 생산원가 상승분 반영	870
28	총액계약 비중이 큰 KS제품을 단가계약품목에 포함 요청	871
29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세부기준 완화	872
30	‘벤처나라’ 사용방법 간편화 필요	873
31	나라장터 내 MAS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	874
32	경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75
33	경남 조선산업 실·퇴직자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876
34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레벨별 관리 지원체계 구축	877
35	경남 중소기업 수출관련 R&D 지원체계 구축	878
36	경남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사업 지원	879
37	경남지역 고부가가치 기업 도약기반 마련	880
38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석산 공영개발 사업 추진 요청	881

Contents

11 광주전남지역본부

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884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885
3	매월 종합유통단지 도로 개설사업 조속추진 요청	886
4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지원 대상확대 필요	887
5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 개선	888
6	「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889
7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구매 확대	890
8	김활성처리제 구매활성화 및 예산지원 확대	891
9	공동물류센터 근저당권 해제 지원 요청	892
10	광주전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지원	893
11	광주전남 쇠퇴상권 특성화골목 육성 및 지원	895
12	광주 중소 식자재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896
13	지역제한 입찰제도 적극 활용	897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898
15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제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	899

12 전북지역본부

1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902
2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903
3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904
4	「전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신설요청	905
5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확대	906
6	농약구매 보조금 사업 관련 농협과의 형평성 제고	907
7	지역내 유희공간 활용한 공예 클러스터 공간 조성	908
8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요건 완화	909
9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금 확대	910
10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분리 시상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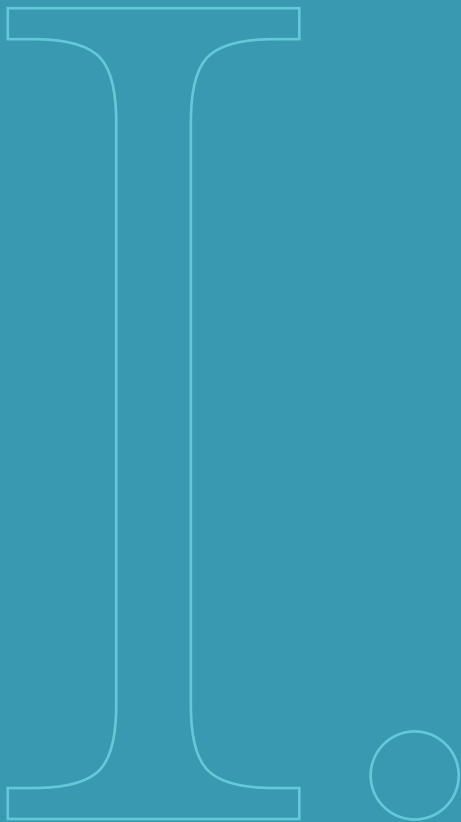
11	전북권 거점형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912
12	전북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913
13	조선기자재기업 협동화공장 신성장 기반자금 지원 요청	914
14	물류센터 전기요금 분류체계 조정 요청	915
15	전라북도 공예명품 판매관 조성 요청	916
1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구매 명문화 요청	917
17	MAS제품(졸업앨범)에 대한 경쟁입찰 구매 금지	918
18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단체보험료 지원 확대 요청	919
19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조달단가 현실화 요청	920
20	전북지역 입국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 확보 요청	921
21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도내 시군별 홈페이지 홍보 요청	922
22	전북 리턴기업 지원	923
23	전북 청년 창업놀이터 조성	924
24	농축산식품산업의 판로·마케팅 종합 지원대책 마련	925
25	에너지바우처제도 지원대상에 영세소상공인 포함	926
26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위한 홍보 요청	927
27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요청	928
28	도내 농·수·축산 관련 기업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요청	929
29	지역 중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930

Contents

13 제주지역본부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 건의	934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근거당 해지	935
3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구매지원	936
4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확대	937
5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938
6	제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조속추진 및 도내 업체 참여 확대	939
7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940
8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시 물품으로 입찰공고 건의	941
9	관급레미콘 가격 사정률 인상 및 MAS 공급처 '조합' 활용 요청	942
10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지원	943
11	LNG보급에 따른 중소기업 상생발전방안 마련	944
1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건의	945
13	제주 지역 협업 활성화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946
14	제주 지역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947
15	제주도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948

2020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황





정책과제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추이(2009~2020)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중소기업 정책과제 반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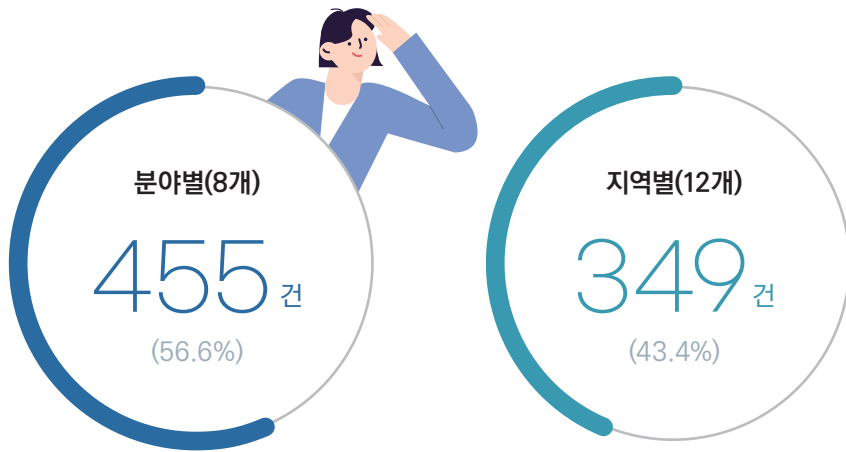
중소기업 정책과제 반영률 5년간 추이

분야별 정책과제 반영 현황

지역별 정책과제 반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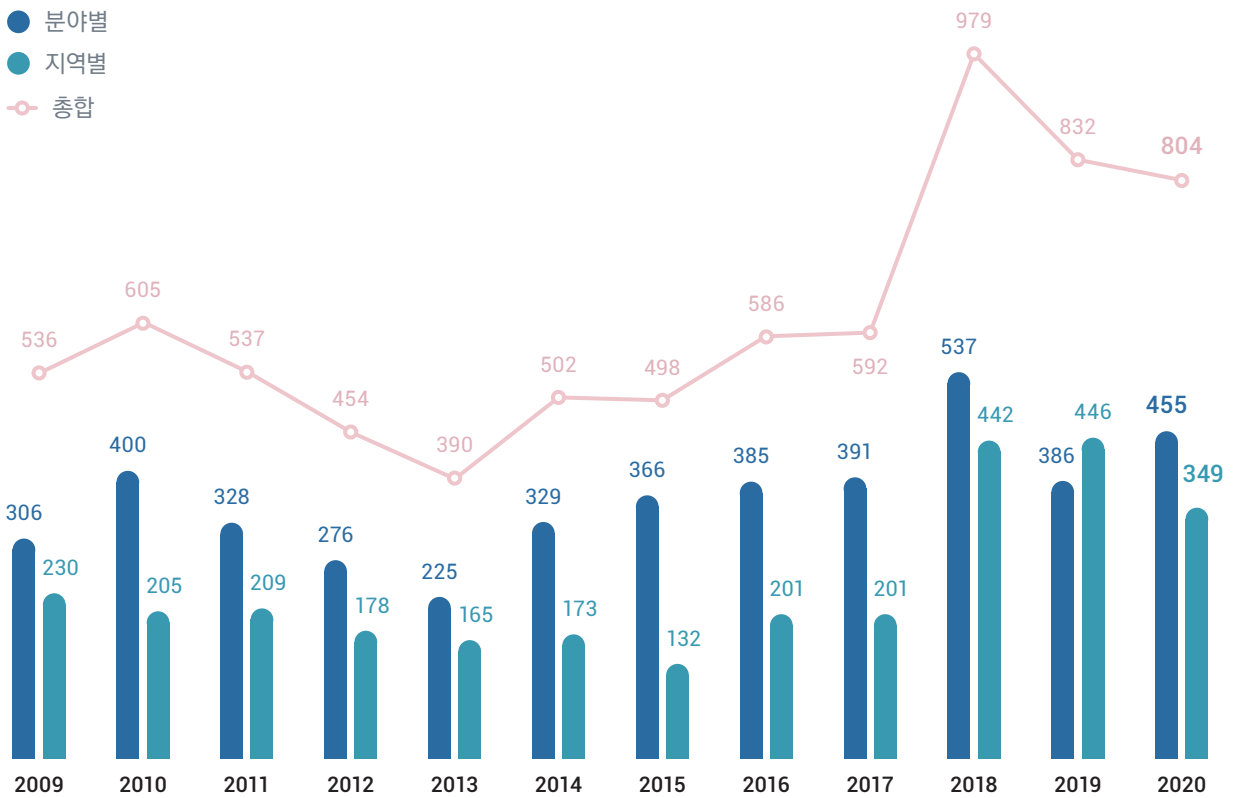
2020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황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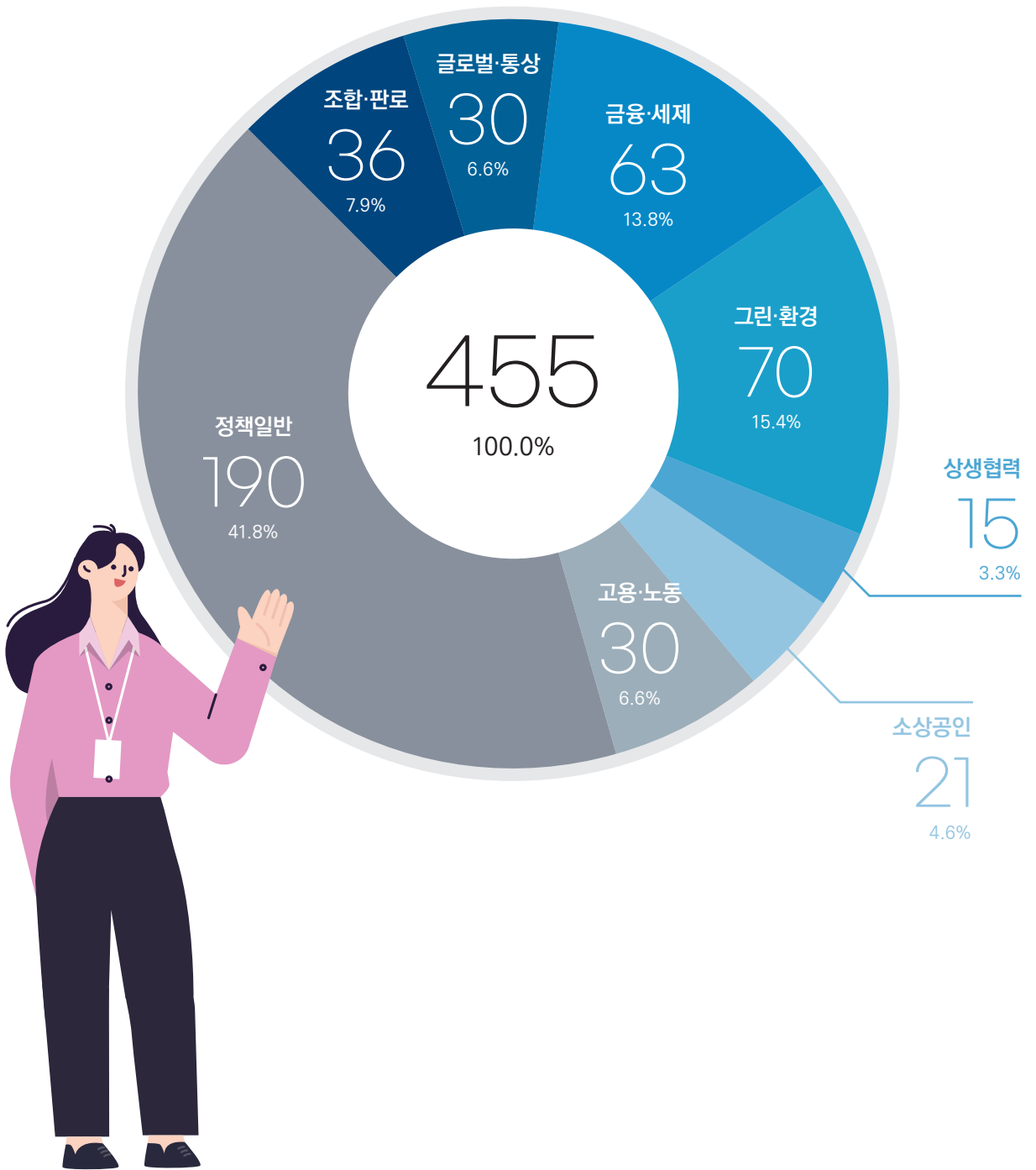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추이(2009~2020)

단위: 건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단위: 건



2020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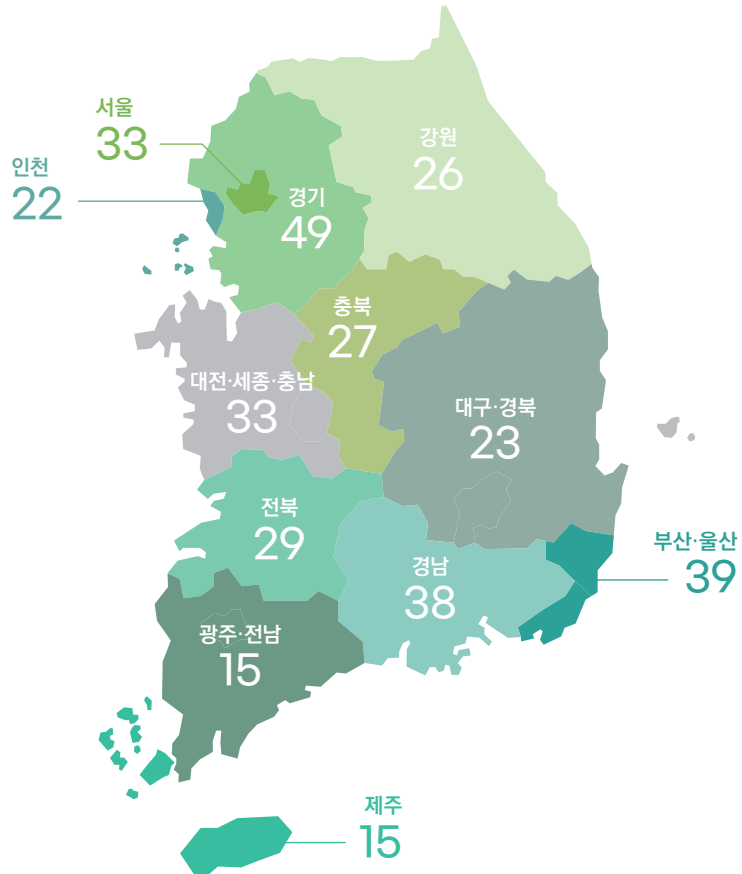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단위: 건

[총 건수]

349

100.0%



구분	분야								
	합계	조합·판로	금융·세제	디지털·혁신	그린·환경	상생협력	소상공인	고용·노동	정책일반
건수	349	188	26	9	6	1	33	12	74
비중(분야별)	100.0%	53.9%	7.4%	2.6%	1.7%	0.3%	9.5%	3.4%	21.2%
서울	33	20	1		1		7		4
부산·울산	39	13	2	2	1		2	4	15
대구·경북	23	8	6					1	8
인천	22	7							15
광주·전남	15	12				1	1		1
대전·세종·충남	33	13		3	1		3	3	10
경기	49	24	2	2	2		6	3	10
강원	26	21	1	2	1				1
충북	27	15	10				1		1
전북	29	13	2				6	1	7
경남	38	35	1				2		
제주	15	7	1				5		2

중소기업 정책과제 반영현황

단위: 건, %

[전체 반영률]

전체

323

35.0%

분야별

203

36.5%

지역별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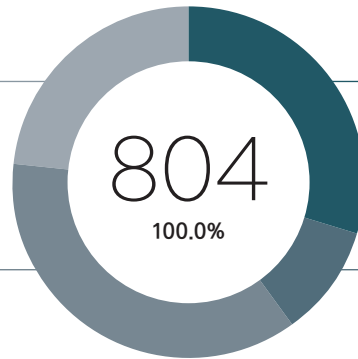
33.0%

전체반영률 계산식
(반영 과제 비율) +
(일부반영 과제 비율/2)

전체 비율

미반영
186
23.1%

검토중
295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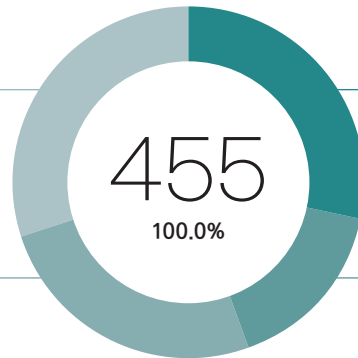
반영
239
29.7%

일부반영
84
10.4%

분야별 비율

미반영
136
29.9%

검토중
116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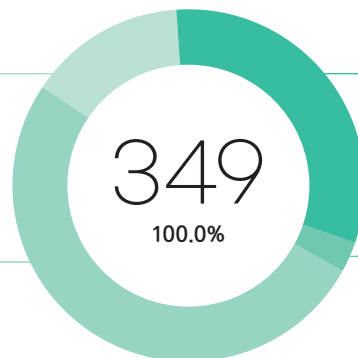
반영
129
28.4%

일부반영
74
16.3%

지역별 비율

미반영
50
14.3%

검토중
179
51.3%



반영
110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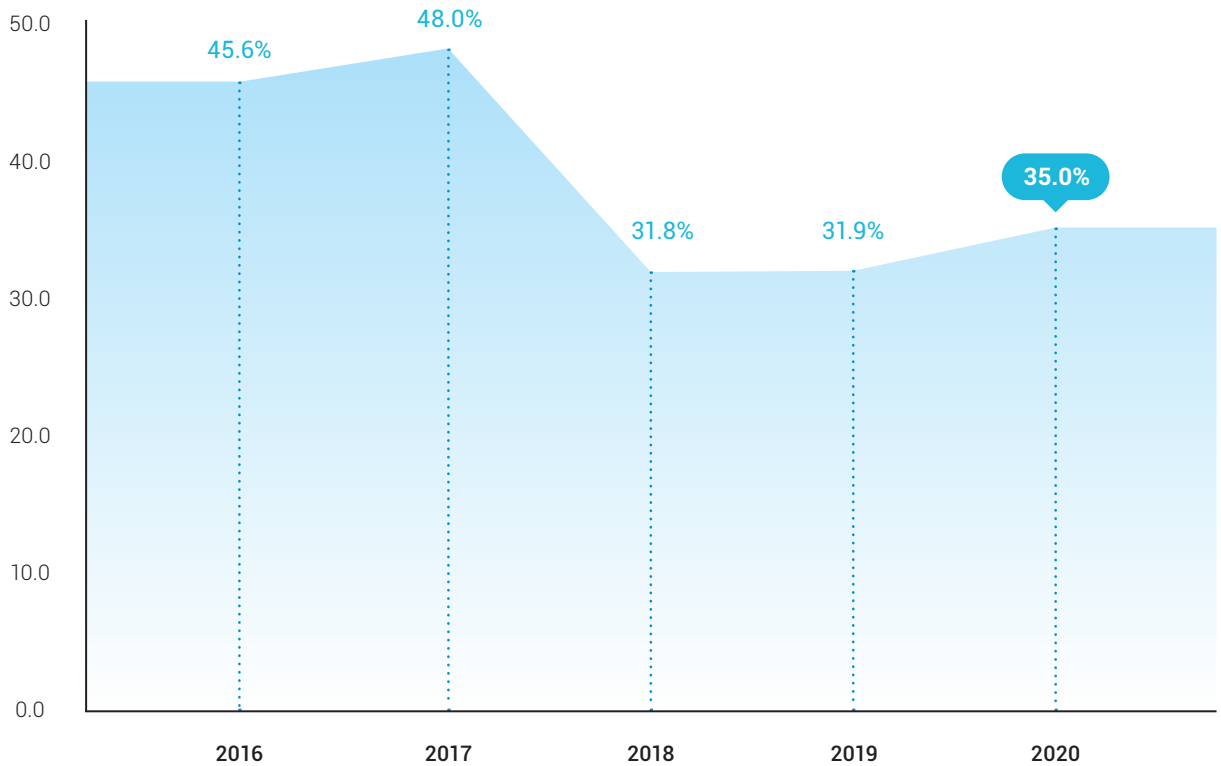
일부반영
10
2.9%

2020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황

중소기업 정책과제 반영률 5년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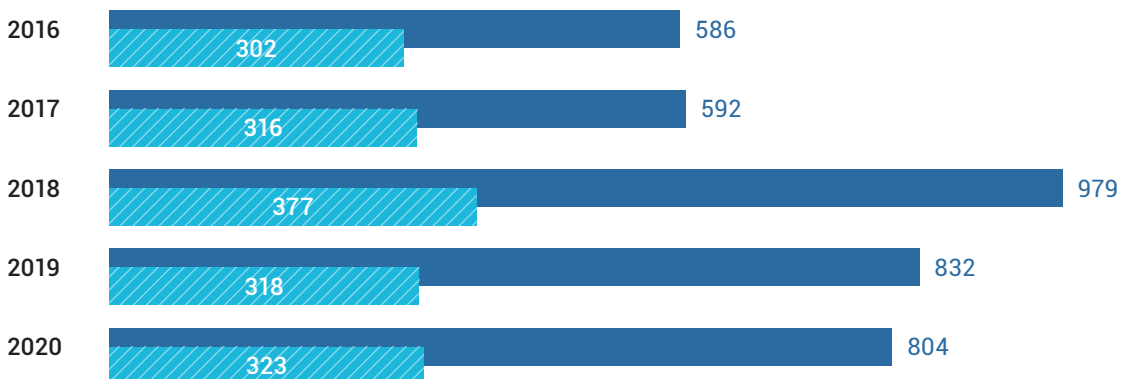
단위: %, 건

[전체 반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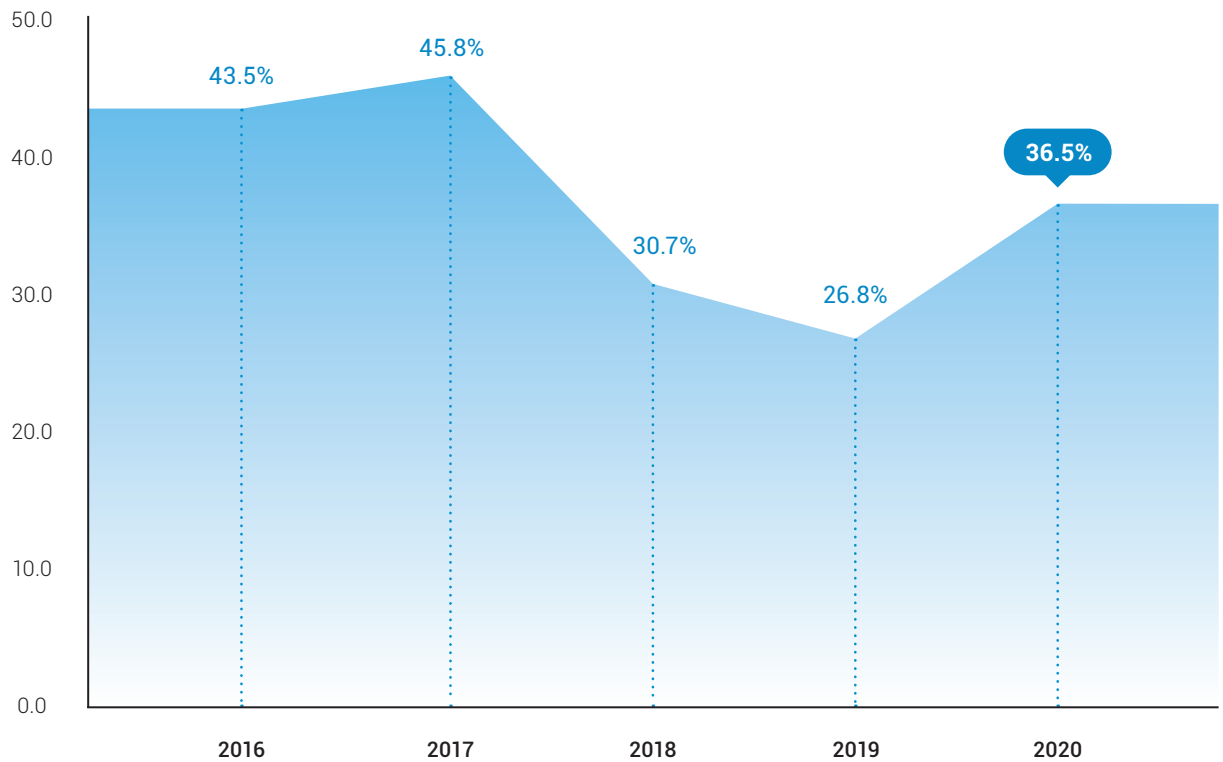
[전체 건의건수·반영건수]

■ 건의건 ■ 반영건



단위: %, 건

[분야별 반영률]



[분야별 건의건수·반영건수]

■ 건의건 ■ 반영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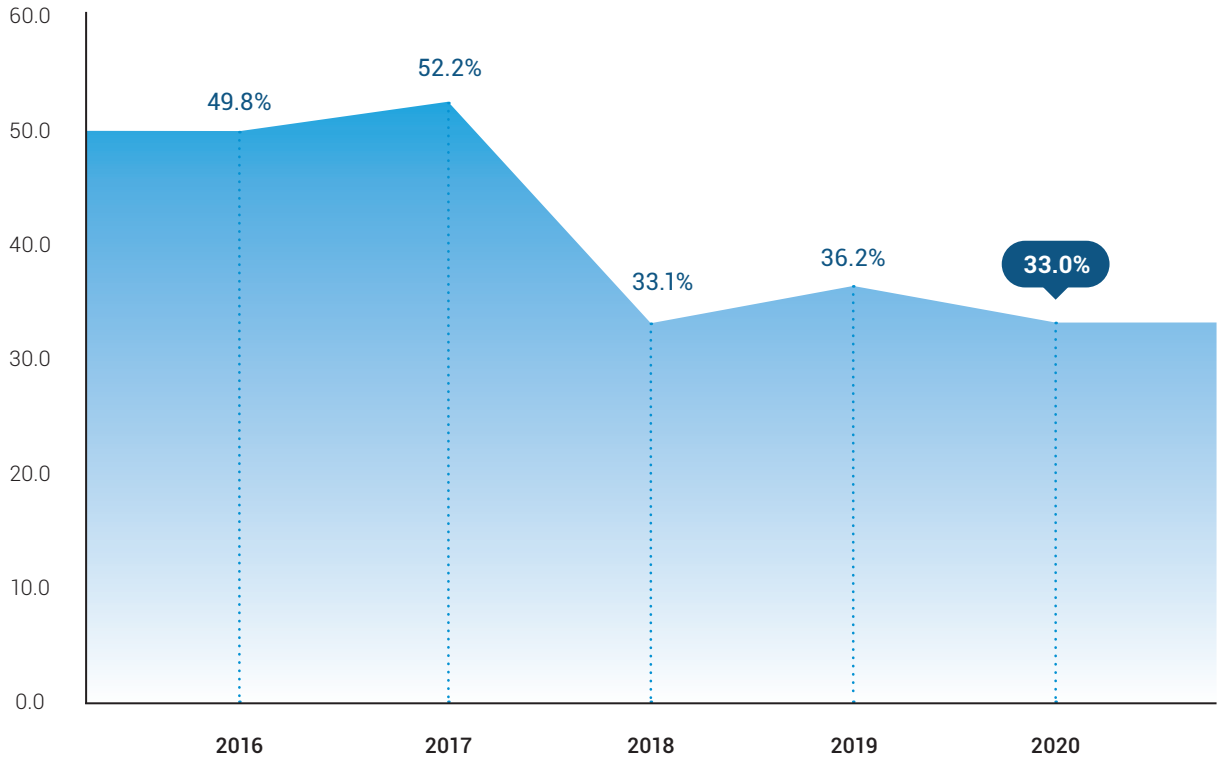


2020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황

중소기업 정책과제 반영률 5년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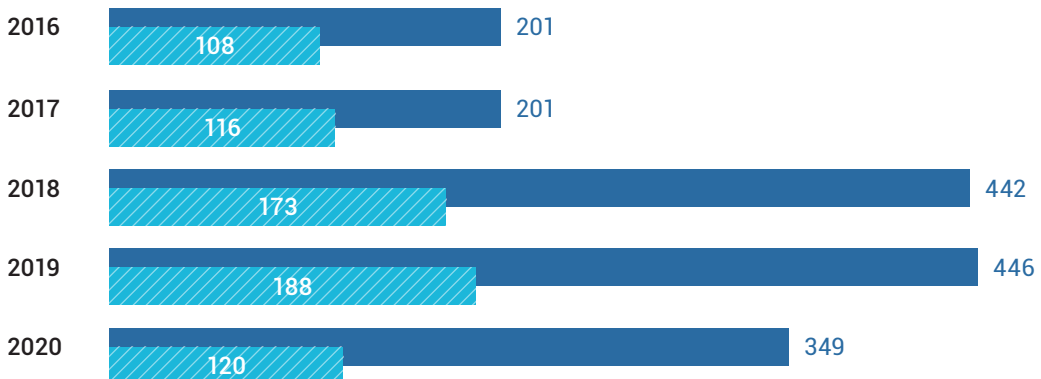
단위: %, 건

[지역별 반영률]



[지역별 건의건수·반영건수]

■ 건의건 ■ 반영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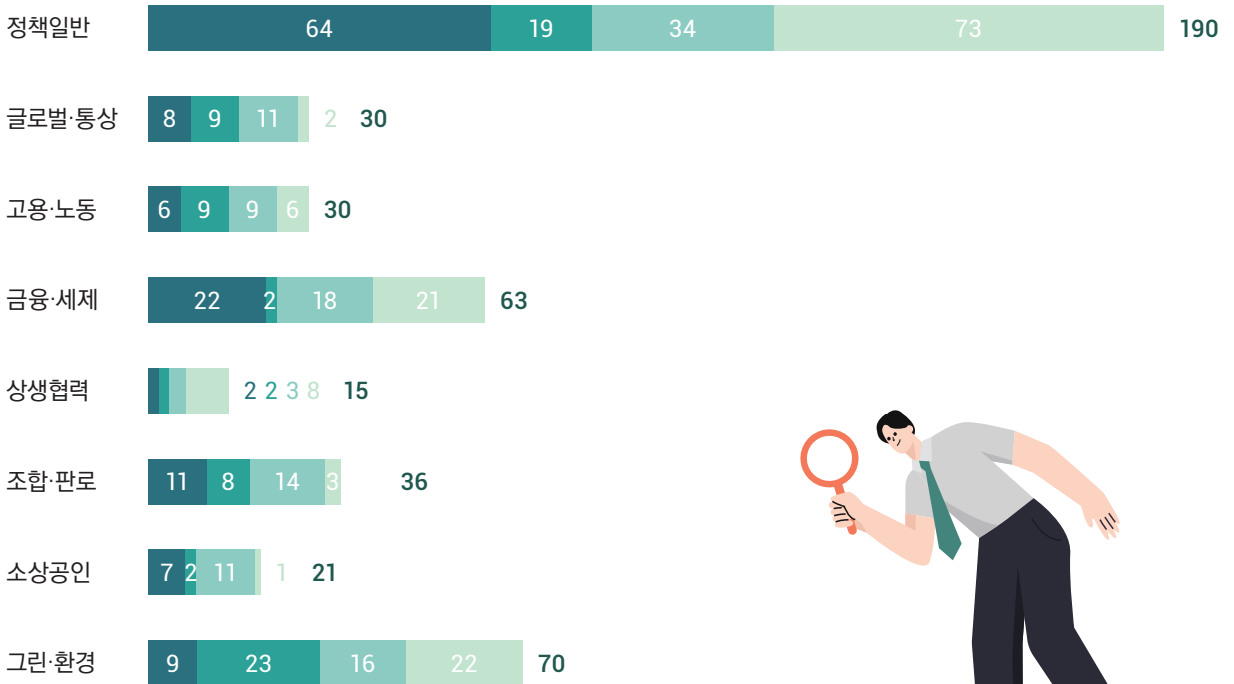
2020년 중소기업 정책과제 현황

분야별 정책과제 반영 현황

단위: 건

[건의결과]

■ 반영 ■ 일부반영 ■ 검토중 ■ 미반영



분야	합계	건의결과				반영건	반영률*
		반영	일부반영	검토중	미반영		
정책일반	190	64	19	34	73	83	38.7%
글로벌·통상	30	8	9	11	2	17	41.7%
고용·노동	30	6	9	9	6	15	35.0%
금융·세제	63	22	2	18	21	24	36.5%
상생협력	15	2	2	3	8	4	20.0%
조합·판로	36	11	8	14	3	19	41.7%
소상공인	21	7	2	11	1	9	38.1%
그린·환경	70	9	23	16	22	32	29.3%
합계	455	129	74	116	136	203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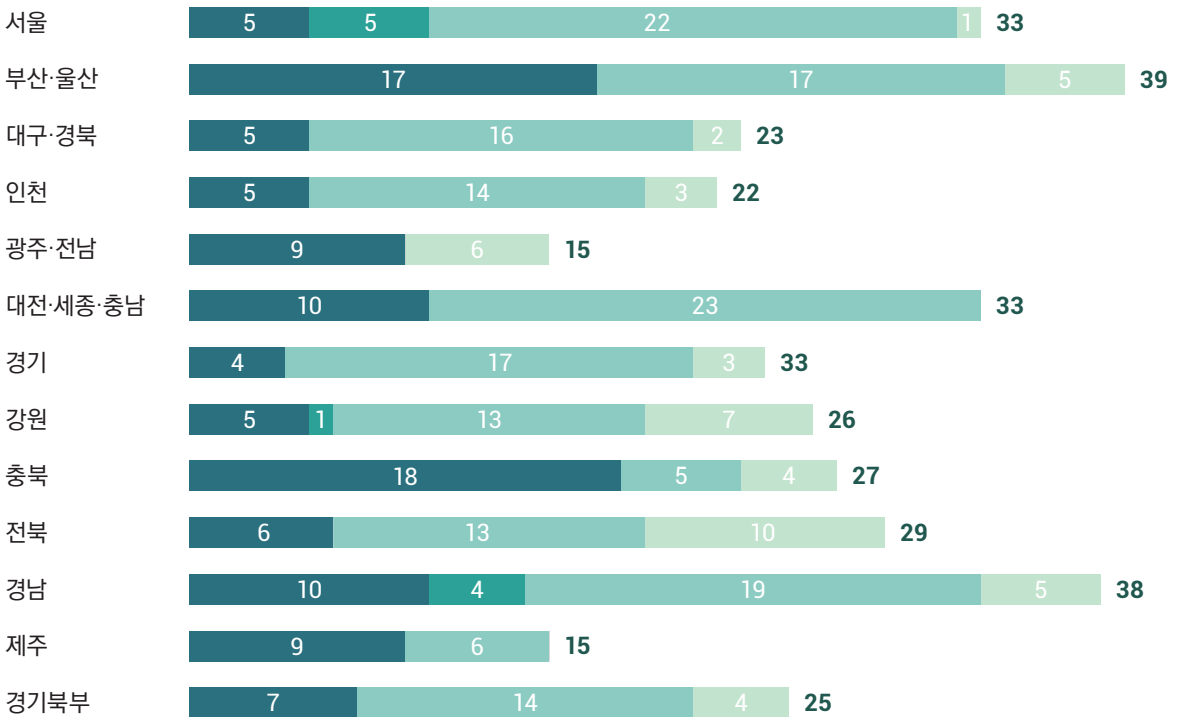
반영률 계산식 (반영 과제 비율) + (일부반영 과제 비율/2)

지역별 정책과제 반영 현황

단위: 건

[건의결과]

■ 반영 ■ 일부반영 ■ 검토중 ■ 미반영



분야	합계	건의결과				반영건	반영률*
		반영	일부반영	검토중	미반영		
서울	33	5	5	22	1	10	22.7%
부산·울산	39	17	0	17	5	17	43.6%
대구·경북	23	5	0	16	2	5	21.7%
인천	22	5	0	14	3	5	22.7%
광주·전남	15	9	0	0	6	9	60.0%
대전·세종·충남	33	10	0	23	0	10	30.3%
경기	24	4	0	17	3	4	16.7%
강원	26	5	1	13	7	6	21.2%
충북	27	18	0	5	4	18	66.7%
전북	29	6	0	13	10	6	20.7%
경남	38	10	4	19	5	14	31.6%
제주	15	9	0	6	0	9	60.0%
경기북부	25	7	0	14	4	7	28.0%
합계	349	110	10	179	50	120	33.0%

반영률 계산식 (반영 과제 비율) + (일부반영 과제 비율/2)

2020년 중소기업 주요 정책과제 13선





중소기업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고용유지 지원수준 확대 및 요건·절차 완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한시적 연장 조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초과유보소득과세 폐지
MAS 2단계경쟁 회피금지 적용대상 개선
(협동조합별 → 조합원사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확대
협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제정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
출입국 제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

1. 중소기업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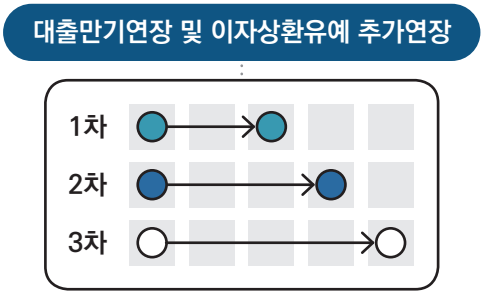
추진경과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p>'20.3.24 1차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중기 금융애로 지속건의 * VIP경제인 간담회(2.13), 경제주체 원탁회의(3.18), 국무총리 경제5단체장 간담회(3.26)
<p>'20.8.27 2차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유동성 위기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실시 및 금융위 간담회 통한 애로건의(7.20) * 대출만기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20.7, 중기중앙회) * 2차 대출만기연장 조치 발표시 금융위 자료에 중앙회 설문조사를 근거로 인용하여 발표(중기 78.1%가 대출만기연장 조치 필요하다고 응답)
<p>'21.3.3 추가연장 발표 (금융위원회) '21.9월말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만기연장)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통해 대출만기연장 건의*('21.1.19) * '대출만기연장 중소기업 의견조사(2차)' 실시(77.9%가 추가연장 필요) * 금융위원회 및 국회 등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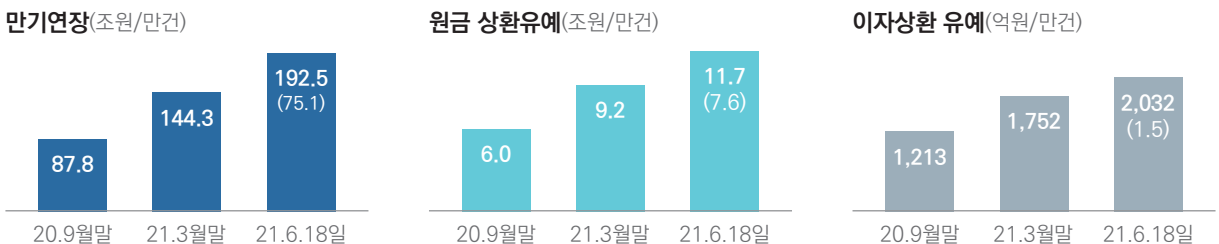
성과

- 1차~3차까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지원



[대출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실적(누적)]

- '21.6.25일까지 204.4조원의 대출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지원



2. 고용유지 지원수준 확대 및 요건·절차 완화

추진경과

2.27	3.18	3.26	5.14	6.9~11	11.3
대정부 정책제언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	기자간담회 개최 및 정책제언	고용유지 지원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고용유지 지원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대전/광주/부산	본회·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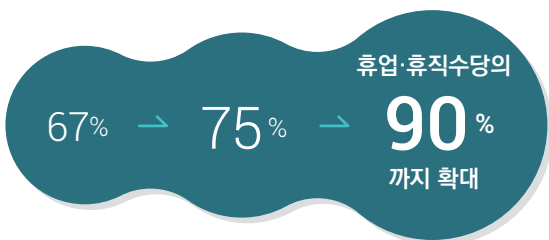
[간담회]

- 서울시장 간담회(3.2)
-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3.5, 4.17)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정책간담회(3.25, 6.8)
- 국무총리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3.26, 8.26)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4.27)
- 고용노동부차관 간담회(11.4)



성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용유지 지원제도 신설·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활용도 제고 위한 제도



8개 업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4.2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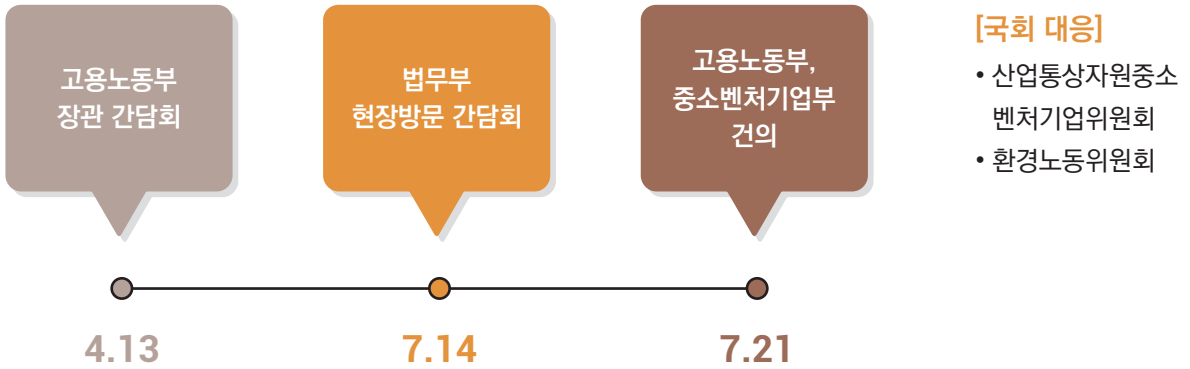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신설(4.2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신설(8.25)

3.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한시적 연장 조치

추진경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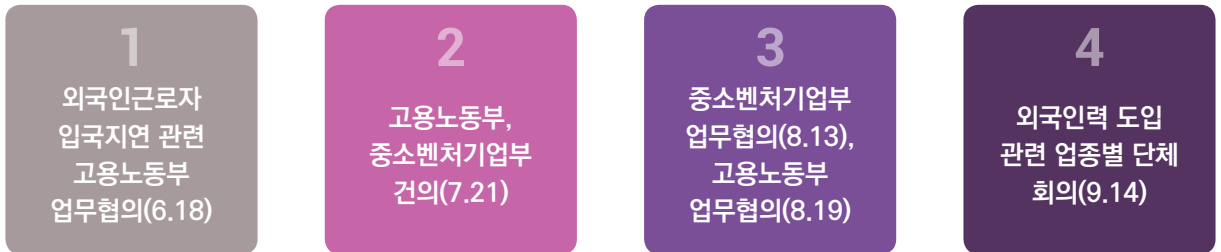
The infographic features a central arrow pointing from a meeting icon to a gavel icon. Text in the center reads: 2021.3.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Below this, a horizontal bar shows the extension of stay periods. A person icon is on the left. A dashed line indicates a 50-day extension from '21.4 만기 to '21.6 만기. A solid orange bar indicates a 1-year extension from '21.4 만기 to '22.4 만기.

[체류기간] 2021.4.13일부로 체류기간 1년 연장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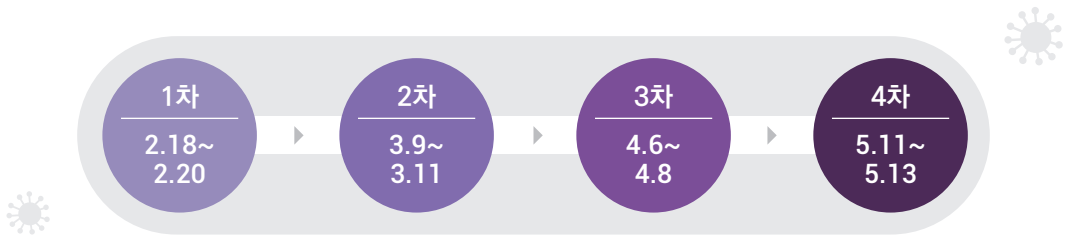
※ 대상자: 2021.4.13일~2021.12.31일 중 체류기간 만료자

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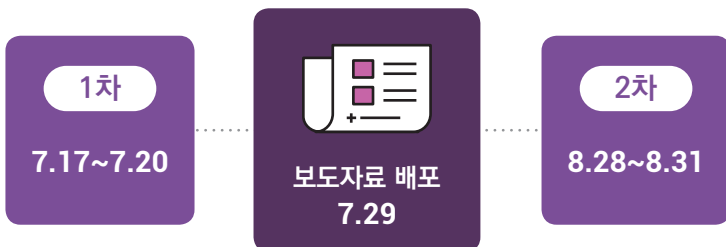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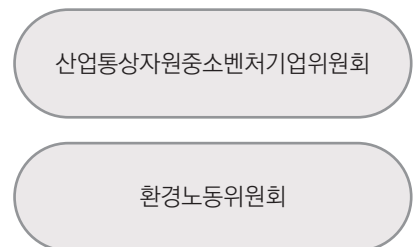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애로조사]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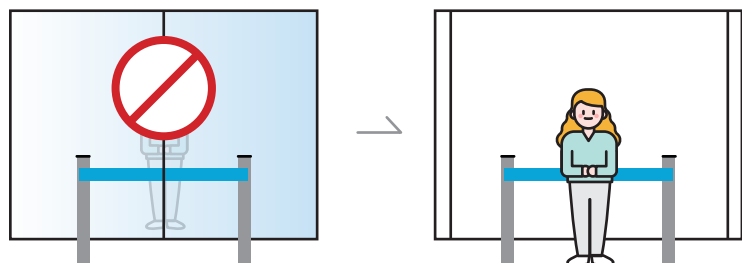


[국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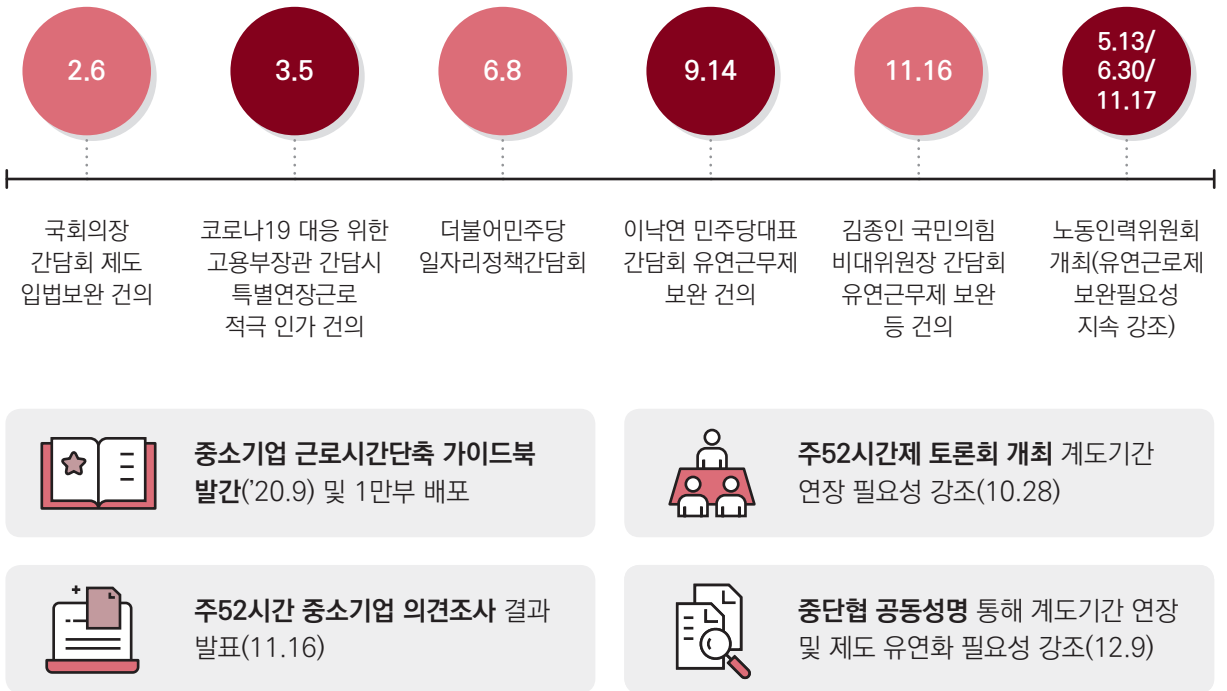
성과

2020.11월부터 코로나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에 대한 **입국허용**



5.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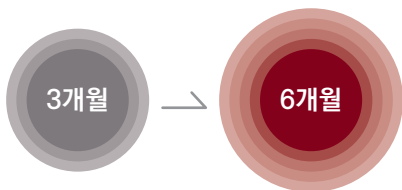
추진경과



성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단위기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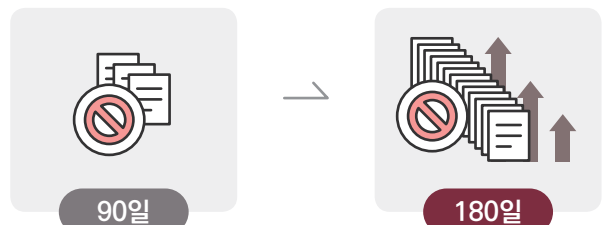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 연구개발분야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및 기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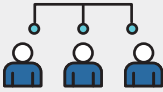
- 인가사유 확대
재난·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 돌발상황 및 업무량
폭증의 경우까지 확대
- 고용부,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사용기간 제외 조치
(7.15)로 인가기간 확대
돌발상황 및 업무량 급증 사유시 연 90일 → 180일



6.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추진경과

'19.7~11



하도급대책마련 TF

'19.11.21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20.5.11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20.6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20.5.16 / '20.6.8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건의/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간담회

'20.6.8 / '20.7.2



김경만 의원 입법발의/
토론회 개최

'20.9.24 / '2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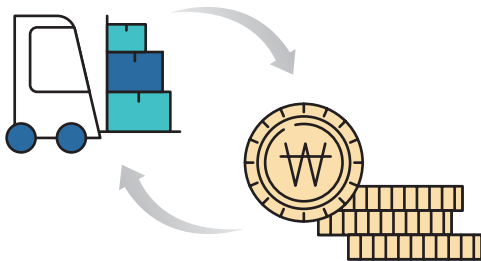


국회 본회의 의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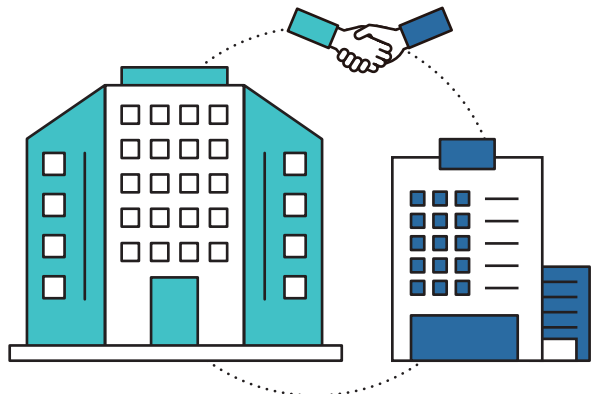
성과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대·중소기업 자발적 상생협력문화 조성

납품대금 제값받기



대·중소기업 자발적 상생협력문화 조성



7. 초과유보소득과세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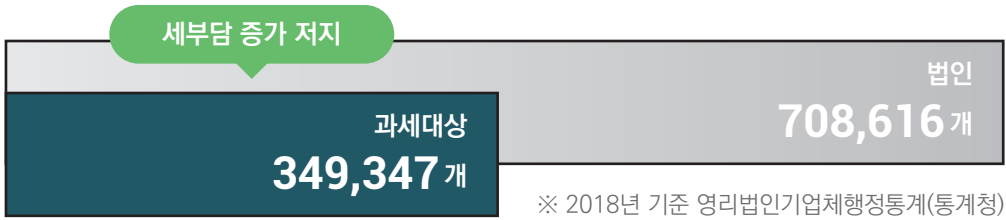
추진경과

[중소기업 의견조사 실시]



국회 대응: 추경호, 윤후덕, 이광재, 김남국, 김경만, 홍석준, 고용진

성과



※ 2018년 기준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통계청)

8. MAS 2단계경쟁 회피금지 적용대상 개선 (협동조합별 → 조합원사별)

추진경과



성과

- 조합계약에서는 2단계 경쟁 회피기준 적용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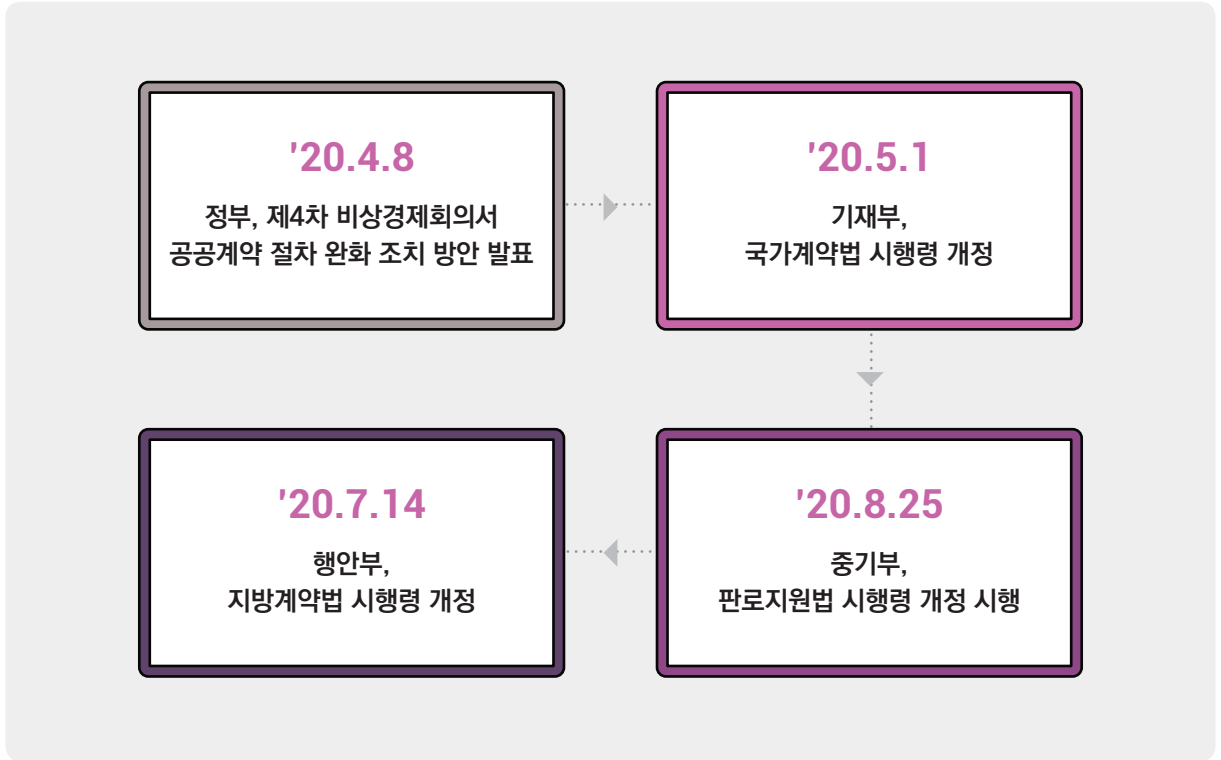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p>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 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후 략)</p>	<p>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② (중 략) ----- ----- ----- ----- 동일업체(조합계약의 경우 각 조합원사)의 동일 세부품명에대해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구한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후 략)</p>

9.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확대

추진경과



성과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 수주기회 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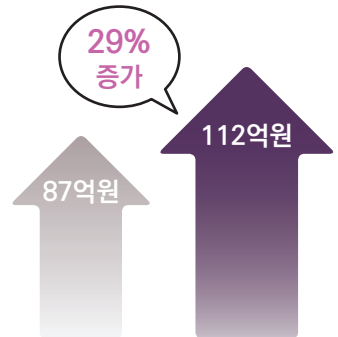
-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 공공조달을 통해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 제공



- 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해 추천함에 따라 기술력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조달시장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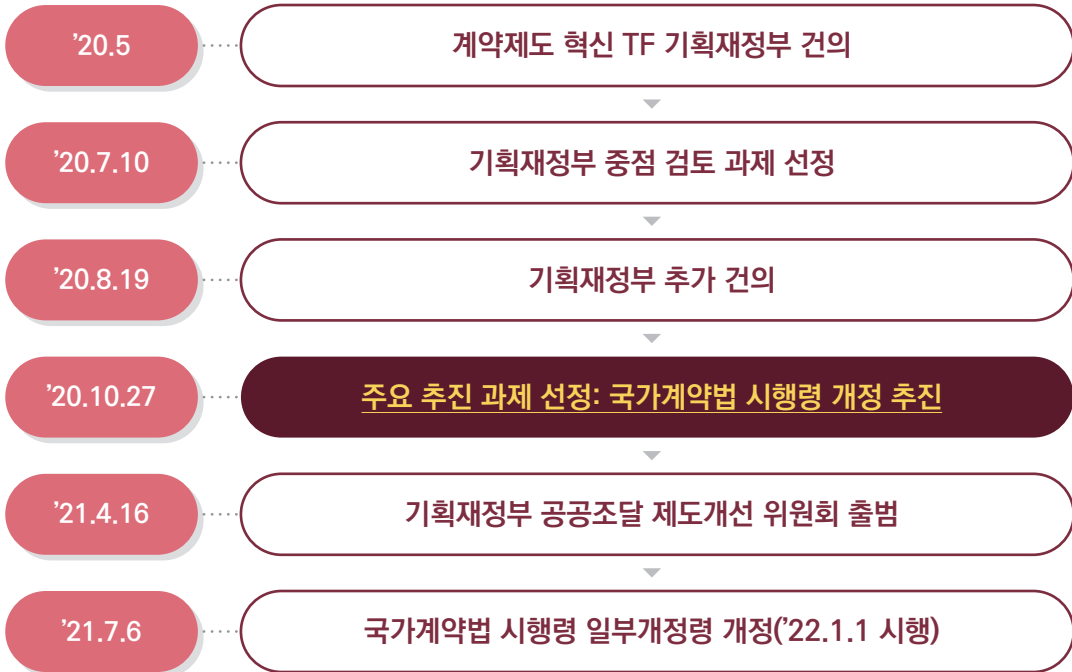


- 조합추천수의계약 **전년대비 29% 실적 증가**(20년 말 기준, 87억원 → 112억원)



10. 협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

추진경과



성과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기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확장 범위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p>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신 설〉</p>	<p>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 ----- -----제6항제1호----- -----제7항 및 제8항-----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p>

11.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제정

추진경과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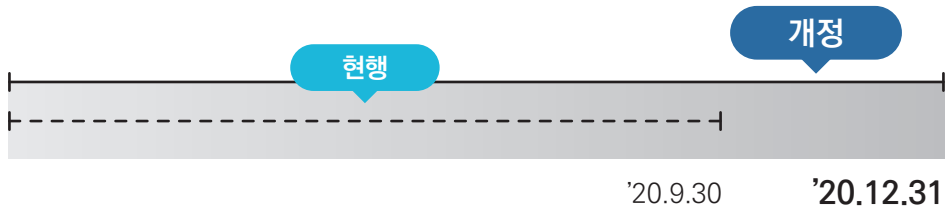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시 건의(1.8)
-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차담회 개최 시 건의(4.16)
- 산업부 '화학규제 산업계 간담회' 개최 시 건의(5.21)
- BH 사회수석과의 간담회 개최 시 건의(7.14)
- 추경호 의원실 건의(9.11)
-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시 건의(9.25)
- BH 정책실장 간담회 개최 시 건의(10.28)
-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간담 시 건의(11.12)



4.16/7.17	5~12월	9.7~9.15	9.17	12.1/12.9
환경규제 실무T/F 회의	「표면처리·염색업종에 대한 취급시설 기준 마련」 연구용역 발주(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실태조사」 실시 및 언론보도	화관법 정기검사 추가 유예 방안 발표 -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현행)9.30까지 → (개정)12.31까지]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및 기준 개정 방안 마련 회의

성과

-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 (현행) '20.9.30까지 → (개정) '20.12.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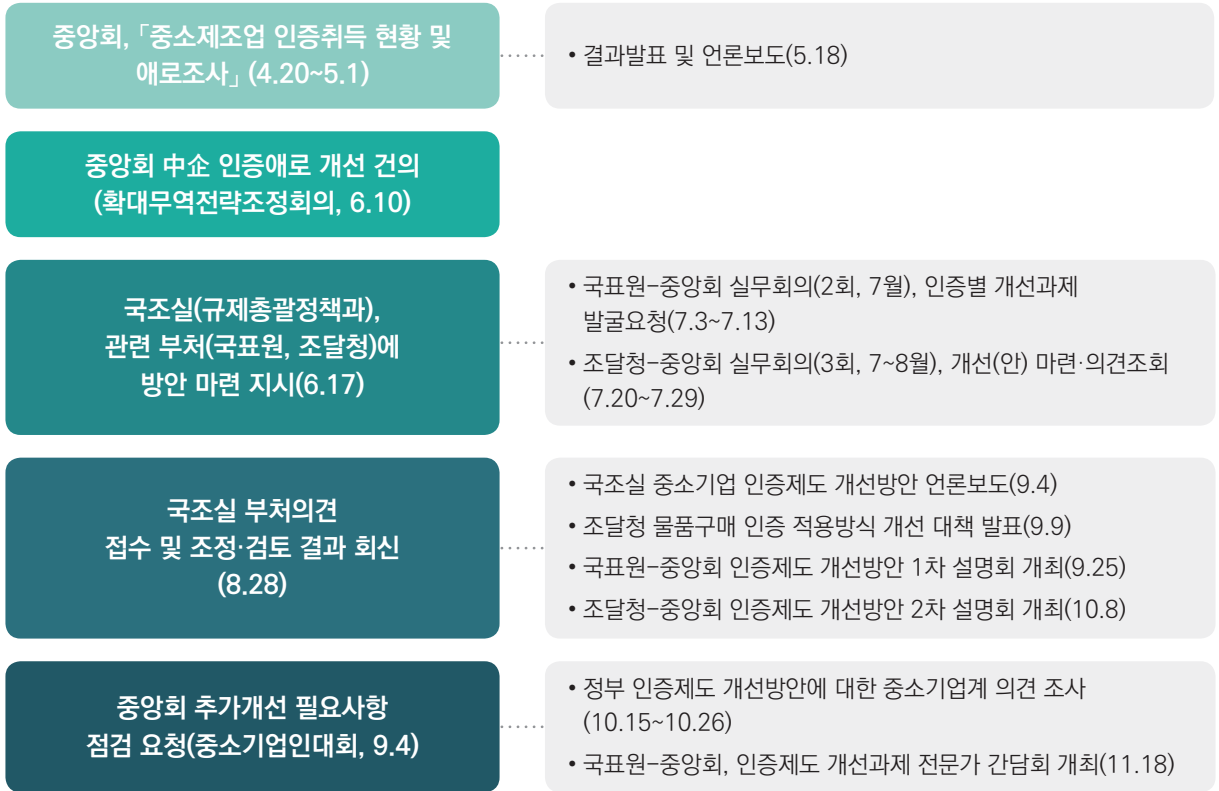


- 업종별(표면처리, 염색업종) 취급시설 **고시 제정 완료**(’2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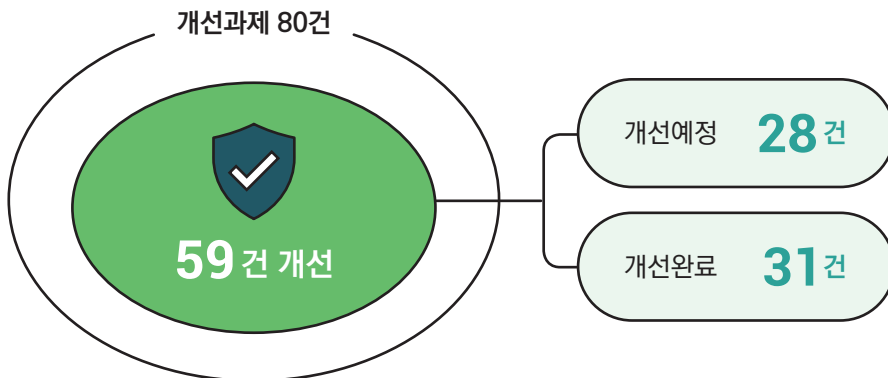
12.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

추진경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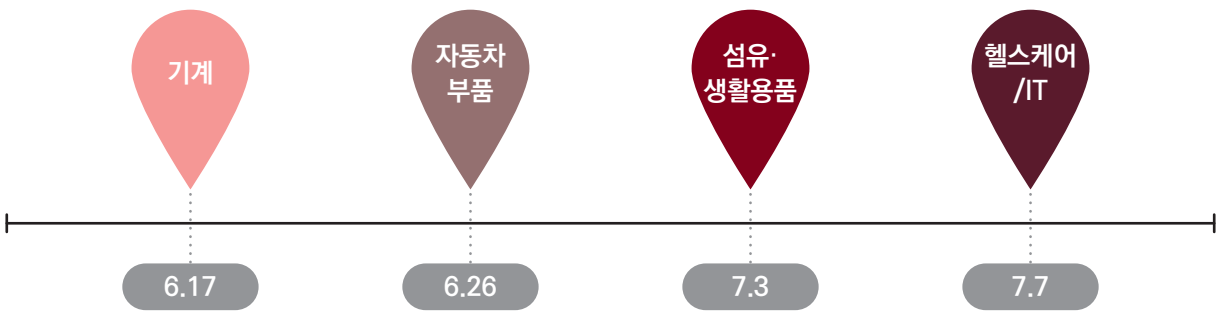
[중소기업 인증애로 80건 중 59건 개선]



13. 출입국 제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경과

[업종별 수출 중소기업 릴레이 간담]



주요 수출국 주한대사 간담 및
패스트트랙·전세기 확대 등 건의
 주한중국대사 간담(8.27),
 주한베트남대사 간담(9.8)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중앙회 직원 파견(9.1)

중소벤처기업부(9.1),
 산업통상자원부(10.12)
간담 및 건의

출입국 제한에 따른 애로 조사
실시(9.21~29) 및 언론보도

언론사 기고(수출 기업인
 신속입국제를 허하라,
 매일경제 10.12)

성과

[주요 수출국의 패스트트랙 확대]

-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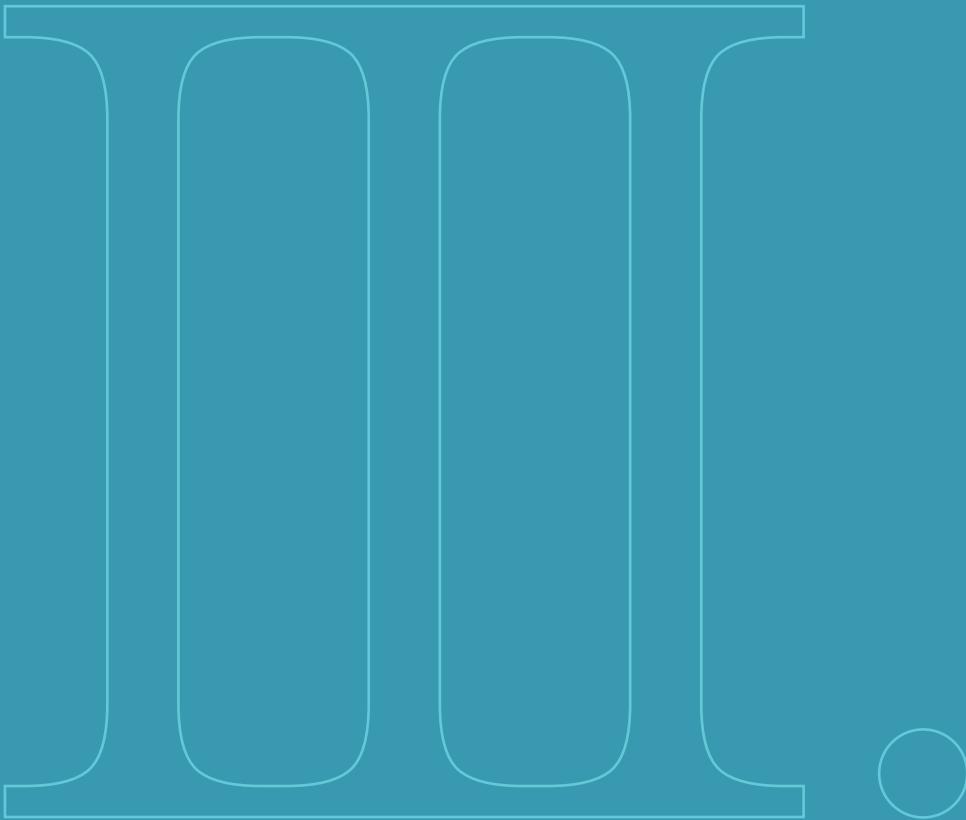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산업통상자원부)’ 內 중앙회 직원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출입국 심층 지원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조합·판로

글로벌·통상

금융·세제

그린·환경

상생협력

소상공인

고용·노동

정책일반

01 조합·판로



입찰 시 이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개선

건의요지

- 해외전시회 공동관 구축 및 운영 용역의 경우 공동관 구축 및 운영과 무관한 다양한 업종을 통합 발주

과업 내용		업종	비고
공동관 구축·시공 독립부스 구축·시공 등		전시장치(인테리어디자인업) 및 행사대행업(75992 또는 73201)	참가자격
참가기업 국내외 사전, 사후 지원 등	항공권발권 등 여행 숙박시설 예약 등	여행사업(75210)	참가자격과 관련 없는 업종
	운송(국내, 해외 등) 국제물류추진 등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	
	교육(전시참가사대상) 홍보물 제작 등	기타 및 시각디자인업(73203)	
	통역(인력알선)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73902)	
	비즈니스상담매칭· 간담회 개최	경영컨설팅업(71531)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00)	

- 입찰 참가자격은 전시장치용역(전문건설업 및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으로 참가자격 부여
 - * 중기간 경쟁제품인 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409902)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관
 - * 해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신고한 기관
- 과업내용상 업종이 상이할 경우 별도 발주하여야 하나, 동일 업종 간 출자 비율에 의한 참여가 가능한 공동이행방식 적용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29)

〈관련 사례〉

업무	조달청 공고번호	공고명	공고기관
용역	20200433606	2020년 해외전시회(독일 뮌헨 전자 전시회) 특구 공동관 구축 및 운영 용역	(재)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20200433597	2020년 해외전시회(COSMOPROF ASIA 2020) 연구개발특구 공동관 구축 및 운영 용역	(재)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20200433582	2020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연구개발특구 공동관 구축 및 운영 용역	(재)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20200502378	2020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및 글로벌 포맷마켓(BCWW FORMATS) 개최 위탁용역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0501996	2020 필리핀 농업 박람회 한국관 운영 용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위 공공기관의 다수의 공공기관이 조달규정 미이행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29)

- 전시장치용역(전문건설업 및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으로 참가자격을 부여한다는 요건을 정해 놓고 전시장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과업을 이행할 수 없는 항공(여행사업((75210), 비즈니스매칭경영 컨설팅업(71531)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00))과업을 포함하여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중견 또는 대형 기획사가 낙찰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음(꼼수 입찰)

건의사항

- 중견 및 대형 기획사 독점낙찰 방지를 위하여 과업 내용에 따라 업종별 별도 입찰시행
 - 업종이 유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

건의요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2019.12.18.)」에 의하면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
- 그러나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1914호, 2020.04.23)』 [별표 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른 감점사항이 남아 있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가 여전히 진행중
- 실제 △0.3~△2.0의 감점 적용으로, 조달 평가시 0.1~0.2점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낙찰이 불가능한 상황
- 또한 부정당업자제재 만료일이 공고일 이전 2년간으로 되어 있어 최장 4년간 공공조달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규제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45호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29)

〈별표 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④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입찰제한 종료 후 감점〉 삭제 관련 법령

계약예규(2019.12.18 시행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5. 신 인 도	+3 -10	가. (생략)		5. 신 인 도	+3 -7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2			1) (현행과 같음)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2) <삭 제>	<삭 제>
		3) (생략)	-5			3) (현행과 같음)	-5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u>환산재해율</u> 의 가중평균이 <u>평균환산재해율</u> 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u>사고사망만인율</u> 의 가중평균이 <u>평균사고사망만인율</u> 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5) <u>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u>	-0.5
						·2회 받은 자	-1
						·3회 이상 받은 자	
		5) (생략)				6) (현행과 같음)	
		라.~마. (생략)				라.~마. (현행과 같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45호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29)

건의사항

- 공공조달분야 규제합리화 조치를 계약예규에 반영,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정당업자 제재 후 감점항목은 즉시 폐지

건의요지

- 조달청, 물품관리법에 따라 내용연수 고시(조달청고시 제2018-14호)
 - 내용연수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 가능
 -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관련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장비)는 주된 장비 교체 시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내용연수 경과 이전 부속 장비 처분(교체) 가능
- 냉난방공조장비 내용연수는 냉동기와 보일러 11년, 공기조화기 9년, 송풍기 10년으로 상이함에도 내용연수가 긴 장비를 기준으로 교체함에 따라 시스템 장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이 저하된 장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계속 사용하여 관련 장비까지 효율저하 확산

건의사항

- 시스템장비의 내용연수는 가장 짧은 물품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는 반드시 교체토록 개선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 또한, 국민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무대장치와 수처리 및 용수처리 공급장비 등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책정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29)

건의요지

- 합성목재 제품인 난간 및 기둥 품질기준인 『우수 재활용제품 제품표준(GR F 2016-2017)』과 나라장터 디자인형울타리 품질기준이 상이

- **GR F 2016-2017기준** 기둥, 난간 품질기준
 -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mg/L) 0.5이하 총 20개항목 기준 있음
- 나라장터 디자인형울타리 [쭈미로] 기준, 디자인형 울타리 합성목재
 -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mg/L) 1.5이하 총 11개항목 기준 있음

- 동일 재질인 합성목재의 품질기준 차이가 현저하여 유해 물질 노출 우려
 - 1급유해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5와 0.5로 많은 차이가 있음
 - 비중, 충격저항성, 나사못유지력, 길이선열팽창계수, VOCs방출량, Cu, 난연성, 내후성후충격강도변화율 등은 나라장터 품질기준에는 없음
- 합성목재의 품질기준 GR F 2016-2017과 “조달청공고 제2019-255호(81쪽 31번 합성목재)” 및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718610-03호” 2의 4항과 제출 서류 8항 하단에 명시된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음

〈품질기준 관련 법령 또는 공고문〉

- 우수재활용제품(GR)제품표준(국가기술표준원)
재활용복합체 GR F 2016-2017
-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718610-03호
- 조달청 공고 제 2019-255호
- 나라장터 디자인형울타리 규격서 (24쪽) 정규격서 (2019.12.5. 00177011102)

건의사항

- 동일한 합성목재 제품인 나라장터의 “디자인형 울타리” 품질 기준을 “합성목재 (난간 및 기둥)” 품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조달청공고에 부합되지 못한 모든 제품은 나라장터 제품지정 제외 등 조치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29)

행사기획운영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적용 활성화

건의요지

- 지방계약의 경우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은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을 통해 실적보다는 창의성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 '12년 3월 디자인 관련 사업에 한해 최초 도입된 이후, 기술능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 적용
 - '16년 행사기획·운영이 추가 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적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예규) 제5장제3절 4. 나 및 별표 2
- 실적 등 정량평가 부문은 통과방식(합격·불합격)을 통해 비중을 축소하고, 창의성 위주의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비중 확대*

* 1) 일반적인 평가방식(100점):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가격평가(20점)
 2) 2단계 평가방식:
 · 1차 평가(pass or fail의 통과방식): 수행경험(실적) 등 정량평가
 · 2차 평가(100점): 기술능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행사기획·운영의 경우 참신한 기획력·창의성이 중시됨으로 창의성·기술능력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실적 등 정량 평가는 개정된 2단계 평가방식과 같이 통과방식으로 변경 필요
 - 최근 행사기획·운영 영역의 경우 서울시·국가 및 지자체행사에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적용으로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예규) 제5장제3절 4. 다

건의사항

- 2단계 평가방식 적용대상에 포함된 행사기획·운영이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 요청
- 행사기획·운영 영역의 경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적용토록 지자체에 권고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29)

건의요지

- (현황) 부정당행위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단체까지 제재 확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8항

*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조합사가 뇌물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이 제재 받음(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두6027 판결)

-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동사업을 위해 설립한 중기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협동조합과 개별회원의 대표자로서 이중적 지위
- (문제점) 조합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개별회원이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경우, 중기협동조합까지도 입찰 배제 →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

건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기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확장 범위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p>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신 설></p>	<p>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 ----- 제6항제1호-----제7항 및 제8항-----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p>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8항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8.19)

건의결과

반영(20.8.19)

건의요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9-254호)과 관련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이하 암거블록)의 MAS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암거블록을 설계(1~2년), 구매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기까지 상당기간(2~3년) 소요
 - 암거블록의 정비구간이 긴 사업인 경우 수십억원 규모의 암거블록을 한 번에 구매한 후 수요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물량을 받아 암거블록 하수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수요기관의 회계기간 종료 후에도 잔량이 상당함
 - 또한, 수요기관은 봄에 암거블록을 구매하여 한창 공사를 진행 중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 공사를 중지, 중단된 공사 재개 후에도 설계변경 등 여러 사유로 공사를 지체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 중단 등 발생으로 공기 연장 빈번
- 암거블록은 MAS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 규모가 크고(1회 3억~25억원 수준), 토목공사 및 수요기관 예산상황 등 문제로 인하여 납품완료가 최초구매일로부터 2~3년이 경과(상황에 따라 1~3년 추가경과)되는 것이 일반적
 - * 현재 최종 계약만료일에 계약을 연장할 경우 납품요구일(암거의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50일)까지만 최종 납품연장 가능하며, 이 기간 경과 시 재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건의사항

- 암거블록 MAS 2단계경쟁 납품요구 건의 최종 계약만료(3년) 시, 납품기한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예외 적용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반영(20.12.22)

건의요지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많은 공공기관이 정보부족으로 동 제도 활용 미흡
 - 수요기관이 조달청 위탁구매 시 조달청 담당자들이 우수제품으로 유도하고 반려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조달청,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우수 단체표준에 대한 구매대행의 한도는 5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그 외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실적 검토 후 확대여부를 판단키로 함('19.7)

건의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적극 활용 구매실시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은 양질의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반영(20.12.22)

건의요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대상으로, 단가계약·쇼핑몰 등록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면서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신청대상 제품

-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3)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4)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5)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R&D 사업 성공 제품
- 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된 혁신제품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9.12.18)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에 의하면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

-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으로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반응역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 규정 정비 (기술서비스총괄과 - 1929호, 2020.7.9.)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기업의 경우 기업평가(신용)시 감점, 과징금납부 등 제재와 일정기간 사업 참여제한 등 상응한 대가를 부담하였으나,

- “감점항목” 요건에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6월 이내인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재기의 기회조차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 조달청 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의 17서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18조의 3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건의처

조달청

건의결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반영(20.12.22)

건의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감점항목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 평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 평점
⑦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 년 6월 이내에 관련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은 경우로, 각각의 제재기간(부정당업자 제 재 종료일이 우수제품지 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 준 1년 6월 이내인 경우 도 포함)합이 다음과 같 은 경우 - 1월 - 1월 초과 6월 미만 - 6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1점) (-3점) (-5점) (-7점)		⑦ <삭제>	<삭제>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18조의 3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반영(20.12.22)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통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20.8.25)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지방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조달 요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추천 수의계약 외면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은 소액의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제90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조달청은 지방조달청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17년부터 소액구매에 대해 수요처로 반려하는 범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조합추천수의계약(5천만원이하) 구매대행 중단
 - * 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제22조) 개정('17.1월 시행)
 - 올해 2월부터 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인쇄물 및 광고물에 한하여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하였으나, 실적* 미미
 - * 3건 99백만원

〈연도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실적〉

구분	추천건수	활용실적	활용조합
'20년(11월)	324	98억*	47
'19년	327	87억	37
'18년	424	107억원	69
'17년	638	167억원	88
'16년	1,381	447억원	103

* '20년말까지 한시적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1억)으로 일시 상승

건의사항

- (조합추천 수의계약 우선활용) 1억원 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의 조달 요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의사에 우선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
-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품목확대) 조합추천 수의계약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 현행 2개 → 전품목 확대
 - 구매대행 확대로 증가하는 업무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지원책부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반영

공공선박 발주 시 특정메이커 장비지정 지양

건의요지

-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을 금하고 있음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2019.12.18.) 제5조
- 일부 수요기관의 공공선박 입찰 시 건조사양서에 주기관 등 각종 주요장비에 특정 메이커 제품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 조선업체는 특정장비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로 경제적인 불이익 감수
 - 공공선박 입찰시 과당 경쟁 심화,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 및 폐업업체 속출

<2005년 이후 중소 조선업체 부도 및 폐업 현황>

No	업체명	소재지	비고
1	(주)한성조선	전남 목포시	2006.04. 부도로 인한 폐업
2	(유)신대양조선	전북 군산시	2006.07. 폐업
3	동양조선공업(주)	충남 홍성군	2007.12. 폐업
4	대형조선(주)	충남 보령시	2008.09. 부도로 인한 폐업
5	서해조선(주)	충남 보령시	2008.09. 부도로 인한 폐업
6	용성조선(주)	경남 거제시	2008.09. 부도로 인한 폐업
7	(주)일흥조선	전남 목포시	2009.10. 부도로 인한 폐업
8	고려해양조선(주)	인천광역시	2011.09. 부도로 인한 폐업
9	고려조선(주)	전남 목포시	2011.09. 부도
10	(주)동해조선	부산광역시	2013.09. 폐업
11	한남조선	경남 사천시	2013.12. 폐업
12	에스에이치조선(주)	충남 보령시	2016.01. 부도로 인한 폐업
13	(주)세광조선	전남 목포시	2016.10. 폐업

건의사항

- 수요기관에서 공공선박 건조계획 시 가능한 특정 메이커 제품 지정 지양
 - 메이커 지정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사용이 가능토록 명시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제5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5.29)

퍼걸러 목록화 승인 및 분류이동 관련 건의

건의요지

- 퍼걸러 현황
 - 납품업체 및 실적(2019년): 115개 업체, 989억원
 - 조달청 물품관리과에서는 '19년 12월 이전까지는 조달업체가 퍼걸러 목록화 신청시 대부분 승인하였으나,
 - '19년 12월부터는 단체표준(일반형 2개 모델, 전통형 1개모델)에 의거 조달업체의 목록화 요청을 승인(제한)하고 있으며,
 - MAS 계약된 물품의 일부를 다른 품명으로 분류이동을 계획(퍼걸러 → 기타 조경시설물 등 다른 품명으로)
- 문제점
 - 조달청에서 당초 단체표준에 따라서 목록화 신청을 승인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조달청이 조달업체의 목록화 신청을 '19년 12월부터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
 - 퍼걸러 조달 MAS계약업체는 그동안 조달청의 물품목록화 신청에 대한 승인 관례를 믿고 디자인연구소 설립 및 개발, 직원채용 등 투자
 - 물품관리과의 주장(분류이동)대로 추진될 경우, 다수공급자(MAS)계약에서 업체별로 약66%의 품목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MAS계약 업체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5.29)

건의사항

- 퍼걸러 디자인방향은 기능성·편리성을 고려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목록요청 승인을 건의
- 지금까지의 관례('19년 12월 이전에 목록화 요청에 대하여 승인)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
- MAS계약된 퍼걸러에 대한 분류이동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건의요지

- 조달청고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MAS)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물자 구매 시 추가로 2단계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당초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결정 시 조달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에서 1차로 가격조정을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감액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는 다량납품 요구할인율에 의해 추가로 할인하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2단계경쟁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유발, 적정단가 이하의 저가납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가중

건의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기준 금액 상향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2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5.29)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달물품의 원활한 납품으로 납품업체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사태 안정 시까지 긴급 조정방안(전문기관 검사 → 수요기관 검사) 시행
 - * 조달품질원 공문('20. 2. 25) 시행
 - 조달업체로부터 기접수한 전문기관 검사 요청 건을 수요기관에서의 검사로 변경하도록 해당 검사기관에서 안내 처리하고 있으나,
 - 수요기관 역시 감염병 확산 우려로 검사를 기피, 목재산업계 납품지연으로 문제발생

건의사항

- 2020.5.6.일부터 방역당국에서 전국 생활방역 전환으로 전문기관 검사원 납품업체 검사 조속히 시행 건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5.29)

건의요지

- 레미콘믹서트력은 11년째 건설기계수급 조절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어 있어 영업용차량의 증차가 불가한 상황에서, 8·5제 및 주5일근무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임도를 이용한 산간·오지 납품의 경우 안전문제 및 운반시간 지체 등에 따라 운송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운반이 성사되어도 회전수 감소에 따른 보상대책마련 및 운반비 2배이상 요구
 - * 현행 추가특수조건은 운반거리, 납품일 유류단가, 차량 연비만을 고려하여 계산
- 관급계약은 민수거래가격 산술평균 이하로 계약되고 있으며 민수거래는 대부분 도심지의 포장된 도로를 통해 납품되는 현장이며, 산간·오지의 경우 ‘군부대·사방댐·전력송신탑 공사 등’ 임도를 이용하여 납품해야 하는 현장의 경우 추가운반비 지급조건과 관련한 분쟁심화
 - 운반사업자들은 과도한 추가운반비를 요구하고, 수요기관은 MAS 계약 및 규정상 추가운반비에 지급기준이 거리로만 되어 있어, 납품시간 등 현실적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 마련 시급

* 강원도 등 산악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도심지 인근 산간지역에 납품할 경우, 포장도로가 아닌 임도를 이용하여 중량차량을 운행해야 함에 따라 안전확보 및 적기공급을 위해 거리는 5km밖에 되지 않지만 4m³이하 적재를 통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간도 일반도로의 경우 편도 10분거리를 1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회전단 운반대가 계약을 맺은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이 회전수가 감소하고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추가보상책 마련 및 최소 2배이상의 운반비 요구함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참고: 건설공사표준품셈 상 믹서트럭 운반시간 산출 산식〉

$Q = 60 * W * E / cm$
 $Q =$ 시간당 운반량(m^3/hr)
 $W =$ 적재용량
 $cm = t1 + t2 + t3 + t4$ (min)
 $t1 =$ 적입시간
 $t2 =$ 주행시간
 $t3 =$ 배출시간
 - 슬럼프 40mm 이하는 3~4min, 슬럼프 50mm이상은 2~3min
 - 콘크리트펌프와 조합작업시에는 10min 가산
 $t4 =$ 대기시간(5~10min)
 $E =$ 작업효율(0.95)

〈참고: 건설공사표준품셈 상 믹서트럭 운반비 산출 산식〉

운반비 = {재료비(주연료비+잡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운반시간
 재료비 = 주연료비($13 \text{ } \varnothing \times \text{유류가}$) + 잡재료비(주연료비 \times 44%)
 노무비 = (건설기계운전사 1일 표준노임/8h) \times 노무계수
 경비 = 믹서트럭 기계손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건의요지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전시회와 전혀 관련 없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경우 품명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전시사업자간의 상호 업역을 침해하고 있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부 품명
[90]여행, 음식, 숙박 및 오락 관련 서비스	[9015] 오락서비스	(901518) 사육제 및 박람회	(90151802)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90151802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90151890)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9015189001)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
[80]경영관련 서비스	[8014] 마케팅 및 유통	(801419) 무역전시회	(80141990)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8014199001)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ex) “사육제”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사순제 직전에 행해지는 종교적 축제로서 전시회, 박람회, 축제와는 관련이 없어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조달청 상품정보 품명 변경 필요

- 전시회 등과 관련한 행사대행 입찰참가 자격 부여 시 기타자유업으로 적용(오류)
 -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행사대행 용역은 『전시산업발전법』및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행사대행업에 해당되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임의업종인 기타자유업 중 행사대행업으로 전시회 등과 관련된 것으로 혼돈, 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하여 제한하는 사례가 대부분
 - 각 수요기관별로 참가자격을 달리 적용하고 과업과 관련 없는 업종 또는 직생 세부품목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부여
 - 한 가지 직생만 해당되는데도 여러 종류의 직생품목으로 제한하거나, 그 중 한 가지만 보유해도 참여가 가능토록 제한
- * 무자격자도 참여 가능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항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품목별 자격부여 법적 근거〉

구분	세부품명	산업분류	입찰참가 자격 근거
중기간 경쟁제품	전시부스설치 서비스	7599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와 산업분류체계의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적용
	전시홍보관설치 서비스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미분류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9901)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임의업종
	광고대행업	(9902)	
	품명 없음	(9999)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항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 조달청 행사대행 입찰 및 계약지침에 의거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제안서 작성 시간을 고려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이행 사례 과다발생
 - 오류내용에 대하여 조달청과 수요기관에 안내를 하여도 수요기관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조달규정과 직생기준을 무시하고 안내사항을 거부하는 행위 지속
 - * 수요기관은 사전에 조달청 담당자와 검토하여 공고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며 조달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조달청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라고 답변

건의사항

- 행사대행 용역분야의 입찰규정과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시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
 - * 상세 개정사항 별표 참조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의 품목별 정의 개정〉

세부제품명	품목별 정의	
	현행	개정안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전시회, 박람회를 대행(기획 및 운영)해 주는 서비스	전시회, 박람회, 무역상담회, 상품박람회, 이와 관련한 부대행사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를 대행(기획 및 운영)해 주는 서비스	축제를 대행(기획 및 운영)해 주는 서비스 (공연, 회의 등 제외)
전시부스 설치 서비스	전시 등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기본부스 및 부품을 사용하여 전시공간을 일률적 또는 조립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조립식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일률적 형태의 전시 부스 및 부대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용역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	전시 등을 위해 원재료 및 친환경 전시자재를 이용하여 독립형태의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해 조립식 기본 부스용 자재를 제외한 여러 가지 규격의 전시자재를 사용하여 독립형태의 전시 홍보관 및 부대 시설 등을 설치 하기 위한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용역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 행사를 기획 및 대행해 주는 서비스 (예: 기념식, 개막식 및 추모식 등)	기념식, 개·폐막식, 추모식 등 일반적인 단순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전시회, 박람회, 무역상담회, 상품박람회, 이와 관련한 부대행사, 축제 등 제외)

-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산업분류코드 75992)과 기타자유업(행사대행, 광고대행, 기타)과 업역 구분 재정립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명확히 구분
- 조달청 행사대행 입찰 및 계약지침에 의거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부여하도록 시정조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항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의 품목별 안내지도 개정(명칭변경 및 분류통합)〉

현행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부 품명
[72] 건물및시설 물건설 유지보수 서비스	[7215] 전문건설업및 유지보수용역	(721540) 특수건물및 전문시공 용역	(72154099) 전시 장치설치 서비스	(7215409901) 전시부스설치 서비스
				(7215409902) 전시홍보관설치 서비스
[80] 경영관련 서비스	[8014] 마케팅및 유통	(801419) 무역 전시회	(80141990) 기타 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90] 여행, 음식, 숙박및 오락관련 서비스	[9015] 오락서비스	(901518) 사육제 및 박람회	(90151802) 전시회기획및 대행서비스	(9015180201) 전시회기획및 대행서비스
			(90151890) 축제기획및 대행서비스	(9015189001) 축제기획및 대행서비스

개정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부 품명
[80] 경영관련 서비스	[8014] 마케팅및 유통	(801419) 무역전시회	(80141903) 전시 디자인설치 설치서비스	(80141903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
				(8014190302)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
			(80141904) 전시회기획 및 대행 서비스	(8014190401) 전시회기획및 대행서비스
[90] 여행, 음식, 숙박및 오락관련 서비스	[9015] 오락서비스	(901518) 축제	(80141930) 기타행사기획 및대행서비스	(8014191001)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90151890) 축제기획및 대행서비스	(9015189001) 축제기획및 대행서비스

* 대분류 72를 80으로 통합, 90의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를 80으로 통합, 무역전시회를 전시회로, 사육제 및 박람회를 축제로 품명개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항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건의요지

- 조달청은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산정에 많은 어려움 발생
 - * 부당이득 환수 현황('17.2월 ~ '20.6월) 108개 사건 280개 업체 247억원
- 최근 소송패소 등 문제해결 위해 납품금액의 30% 수준으로 위약금 및 위약벌 도입* 추진 중
 -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업무처리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
 - (위약금) 부당이득금 환수 범위: (현행) 조달청 조사·산정
→ (변경) 약정한 “위약금”으로 대체, 기업 소명시 감액

(현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이 부당이득금 산정 및 청구 ▶ 업체 불복시, 민사소송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약금(최대 납품금액 30%) 산정 후, 기업이 소명하면 조달청이 감액 ▶ 조달청이 환수금 초과 손해를 입증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약벌) 부정행위 조사 및 위약금 산정 위한 자료제출 거부·지체시, 일정금액의 위약벌(최대 물품대금 30%) 부과
- 불공정행위 예방은 필요하나, 中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선의기업에 피해 전가 우려
 -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경과실로 위약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기업도 존재
 - 증빙자료 제출은 영세 中企에 상당한 부담, 최대한 인정·감액 필요
- 한편, 조달청이 위약금 초과 손해입증시 추가청구 가능하므로, 위약금(위약벌) 산정기준 최소수준으로 조정 필요
 - 전체 환수 사례* 95건 중 45.2%(43건)가 10% 미만에 해당
 - * 조달청 자료, 위반 유형별 부당이득 환수 산정 사례

건의사항

- 위약금·위약벌 기준 하향 조정: 최대 물품대금의 30% → 10%
- 위약벌과 위약금 동시 부과시, 감액 및 최대한도 설정 등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건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저가 투찰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중심의 평가 기반 마련 위해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 차등점수제 의무화 명시
 - 조달발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아 평가 시 차등점수제 규정 적용에서 제외 →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실물모형)의 경우 85%이상이 지자체 발주분으로, 저가투찰 관행개선의 효과 미비 예상
 - 저가투찰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평가제도 적용 필요
- 제안서 평가 시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점수 격차로 인한 평가 왜곡 현상 발생
 - 다수의 평가위원(5인)에게 1위를 받고도 소수 평가위원(3인)의 과도한 점수격차로 인해 순위가 바뀌는 평가불균형 사례 발생
 - 제안서평가 기준의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균형적인 평가제도 마련 필요

건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규정에 수요기관의 차등점수제 요청 시 균등적용 규정 마련 요청
- 평가왜곡 반복 평가위원 제재조치 강화
 - 제안서 평가기준(별표16) 중 '평가위원 벌점부여 및 처리기준의 공정성' 항의 심각한 위반 항목의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입찰자에게 해당자안서 평가 관련 평균점수 대비 현저하게 과다·과소점수 부여 등(벌점 30점)"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평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점수를 왜곡하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경고 및 평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강화
-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5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 요청
 - 별표15, 1의 나항 평가위원 점수조정 의무조항 마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

현행	개정(안)
<p>나. 위 가목에 따라 -- 중략 -- 해당 평가 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략-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나. 위 가목에 따라 -- 중략 -- 해당 평가 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5%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p>

- 평가위원의 다수가 1순위로 선정한 기술능력 우수업체가 소수 평가위원의 악의적인 평가(과도한 점수 차)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별표15에 (가중된) 다수결 제도 도입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2)

소형 경비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실시 건의

건의요지

- 해양경찰청 발주 경비정(100톤급)은 중기간 경쟁제품 해당하나, 입찰 시 방산업체를 참가조건으로 제한, 중소기업은 입찰참가 사실상 불가
 - * 방산업체(함정분야) 지정 현황(20.01.14. 현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삼강엠앤티, 강남 등이며, 지정받은 중소기업 없는 상황
 - 경비정 건조능력 및 건조실적 보유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 박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형 “경비정” 입찰 대기업 독점, 중소기업 판로확보 장애

〈해양경찰청 경비함정류 입찰 현황〉

- 2017년 해양경찰청 발주 형사기동정(100톤급): 방위산업체지정 업체 또는 보안측정 업체 → 중소기업 입찰 참가 가능
- 2019년 해양경찰청 발주 경비정(100톤급): 방위산업체지정 업체 제한 → 중소기업 입찰 참가 불가

건의사항

- 향후 소형 경비함정 입찰 시 입찰참가 제한조건 완화(보안측정업체까지 확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시행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기한은 규정상(구매공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다만, 특수조건 제24조(납품요구)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수요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2회(회당 납품기한 연장기간은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구매공고)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미반영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발체분)

제24조(납품요구)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제26조(납품기한의 변경)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2회(회당 납품기한 연장기간은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에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2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일부 콘크리트 제품은 공사용자재로서 공사현장 여건 등으로 잦은 납품기한 연기, 규정상의 납품기한을 초과할 수밖에 없으나 수요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희망 납품기한을 설정한 최초 납품요구, 불가피하게 납품 연장이 필요하여 납품기한 2회 연기조치, 납품기한 연기(2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의 규정을 활용할 수가 없어 애로가 발생되고 있음.

건의사항

- 콘크리트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 등을 첨부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초과하여 최초 납품요구 시 희망 납품기한 설정과 납품기한 연기 2회(회당 납품기한 연장기간은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를 적용토록 예외조항 신설 요망.
-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기간(10년)을 계약기간 종료일(3년)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납품기한, 물품목록번호변경, 규격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조치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미반영

현행	개정(안)
<p>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납품요구)</p> <p>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 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p> <p>제26조(납품기한의 변경)</p> <p>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p>	<p>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납품요구)</p> <p>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 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구매공고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p> <p>제26조(납품기한의 변경)</p> <p>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u>협의하여 계약기간 종료일을 초과한 납품기한 설정</u>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건의요지

- MAS 계약단가는 최소 3년간* 지속되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제도를 통하여 계약단가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 * 업무처리규정 제7조(구매입찰공고) 및 제23조(계약기간)에 의거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 **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과당경쟁으로 2단계경쟁 제안 요청 시 제안 하한율인 90%로 제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이윤이 남지 않으나, MAS 계약 유지 및 차기계약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또는 기업운영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안 참여
 - * 납품실적 전무한 품목은 차기계약에서 배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 또한, 2단계 경쟁 시 각 수요기관에서도 90%로 제안요구하고 있고 불응 시 추후 대상제외 등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도 최저 제안율이 아닌 경우 업체 간 담합으로 간주하는 분위기
- 콘크리트제품은 건설자재로 국가 정책에 따라 물량이 수주되므로 매년 큰 변화가 없고 물류비용이 커서 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 시 기업이윤 증가보다는 업체 간 과당경쟁만을 조장
 - 또한, 2단계경쟁 제안 요청시 물품별 특성이나 계약단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대상금액(1억원 이상)을 일괄 적용함에 따른 개선 반드시 필요

※ 물품의 특성을 반영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사례

- 레미콘 아스콘제품의 경우 맞춤형 MAS 규정 시행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공고기간 1년, 계약기간 1년
 - 2단계경쟁 대상금액: 레미콘 10억이상, 아스콘 5억이상
 - 2단계경쟁 최저 제한율: 95%
 - 가격인하: 100분의 4까지 허용
 - 우대가격유지의무 배제
 - 조합 공통품목 조합 배정 등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3조, 제41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기간(10년)을 계약기간 종료일(3년)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제품의 적정단가 반영, 목록번호변경, 규격변경 등 계약변경이 용이토록 개선
 - 레미콘, 아스콘 제품과 같이 물품 특성을 반영 및 차별화를 통해 2단계경쟁 대상금액 상향 또는 차등*적용, 최저 제안율 95%이상으로 상향하여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 * 대상금액별 차등적용 예시): 1~3억의 경우 97%, 3~5억의 경우 95%, 5억이상의 경우 90%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3조, 제41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분야 납품단가 현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공공조달: 공정조달 실현을 위해 소액물품 최저가낙찰제 폐지('18.11월)
 - 민간거래: 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추진(하도급법·상생법)
- 한편, 현재 국가계약법상 조달가격 결정은 ①거래실례가를 우선하고,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②원가계산가격, ③견적가격의 순으로 적용
 - 이는 치열한 경쟁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낮게 결정된 기존 가격*이 거래 실례가로 인정되어 중소기업의 정상적 이익 감소 등 경영손실로 연결

〈저가계약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조달청 연구보고서, '17.8월)〉

- 기업의 정상적인 이익을 줄여 직접적인 경영 손실 발생
 - 손실을 경험한 업체는 다음 해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지만, 동일한 성능의 제품일 경우, 이것이 거래실례가로 인정되어 다음해 저가계약으로 이어짐
 - 3년('13~'15년) 평균 저가계약에 의한 기업 추정 손실: 약 9조5,241억원
- 공공조달시장의 납품단가 현실화는 민간부문 大·中企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만큼,
 - '거래실례가 중심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와 정상이윤을 고려한 적정단가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

건의사항

- ① 물품계약 예정가격 결정 시 공사와 마찬가지로 표준시장단가* 도입 추진
 - *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 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② 저가입찰 유도하는 거래실례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격검증 전문기관* 지정(설립)
 - 가격검증 시 중소기업계(관련 조합) 참여(또는, 중앙회 표준원가센터 지정)
 - * 조달청, 『조달가격 사전검증체계 확립 방안 연구('17.8월)』 통해 필요성 검토한 바 있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경기부진 지속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화로 비상경제 상황
 - 특히, 위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타격 심각*, 심리도 크게 위축**
 - * 중소기업 2월 평균가동률 69.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 중소기업 4월 경기전망지수 60.6, '14.2월 소산업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 매출 급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한계상황에 직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70.1%)은 '향후 6개월 못 버틴다'고 응답
- 한편, 정부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이행 등에 불성실한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시장 참여가 막혀 심각한 사업 차질 발생
 -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공공입찰까지 제한되어 이중고(二重苦), 일반기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 현장에서는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참가한 기업의 경우, 1회 참가기업과 20회 참가 기업이 동일하게 6개월 제재를 받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의견
- 코로나19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사기 진작 필요

건의사항

- 국가차원의 포용조치 일환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비상경제상황 극복 및 사회공헌 기회 부여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전시물제작설치업 인력평가 시 전시연출전문가 반영

건의요지

-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은 전시물의 기획, 설계, 제작, 설치의 일관된 프로세스로 전시공간에 실물, 모형, 영상, 그래픽, 특수시스템 등을 복합적으로 연출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지식기반 사업임
- 현재 제안서 평가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서 제시하는 일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전문가만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함
 - * 현재 인력평가 기준인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준용, 과업내용 중 영상, 조명, 그래픽 등 전문인력에 의한 평가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이를 보완하고자 3년 전부터 전시연출전문가 자격제도(민간)를 준비하여 시행하고 현재 1,2급 500여명에게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 2020년 1, 2차 시험을 통해 200여명 추가 발급 예정
- 또한 전시물제작설치 사업의 제안요청서 요구수준이 기본설계 수준*의 제안을 요구하고 있어 과도한 제안서 제작 비용부담으로 입찰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기획설계: 전시에 대한 기본 골격과 방향을 정하는 설계로, 전시 목적으로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후 매체를 활용하여 전시방향과 특성, 주요일정과 장비 및 인력배치 등에 관한 최적의 연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기본설계: 기획설계에 따른 단계별 프로세스 구체화 과정으로, 각종 전시물 설치, 상세도면 및 시방도면, 실내재료 마감표, 사인물 형태, 규격, 마감, 영상장비, 전시조명 설계, 위치 및 설치방법 등이 포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전시물제작설치업 인력평가 시 전시연출전문가 반영

건의사항

- 인력평가에 전시연출전문가 자격소지자의 평가반영
- 기술제안서 양적 수준 경감(제안서 20p 이내) 및 질적 요구수준 조정(→ 기획설계 수준으로 하향조정)

<별첨 1. 기술인력 평가기준 예시(국립대구과학관 어린이과학관 전시물 설계·제작 및 설치)>

항목평가	배점	평가방법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전문인력	3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각 0.3점	각 0.2점	각 0.1점	각 0.1점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2.1점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3점)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 ※ 대상기술인력 전문분야: 실내건축, 산업디자인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첨 2. 현행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기술제안서	1부	• 관련서류 일체: 파일 제출 - 규격은 A3(420mm×297mm), 황으로 작성 - 단면작성, 칼라허용 - 30매 이내로 작성(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일부 수요기관의 경우 가스공급자 선정 시 LPG용기판매와 벌크판매를 통합발주 (참가자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LPG용기판매(벌크판매 허가없음)만 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 입찰에 참여해도 공급불가
 - LPG연료 소매업(50kg이하 LPG용기판매)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예시: 대성산업(주) LPG충전소)은 통합발주 낙찰에도 불구하고 LPG용기판매가 불가능
 - LPG용기판매는 벌크판매와 달리 판매지역 제한이 있어 분리발주 타당
 - 3톤 이상의 저장탱크와 함께 LPG용기가 통합발주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입찰에 전혀 참여할 수 없어 불합리('20.3. 이전)

<LPG용기+벌크판매 통합발주 입찰공고 사례>

제한경쟁 제 18 - 11 호

(긴 급)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액화석유가스(LPG) 벌크/용기 구매
-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 ' 18. 3.26(월) 11: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 18. 3.27(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 18. 3.27(화) 11: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마. 예 산 액 : 59,981,060원(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
- 바. 예 정 물 량 : 6,400KG(LPG 용기형/00운용대), 4,950KG(LPG 용기형/도서지역),
5,435m³(벌크/조정기 1.2093/00지연대대 등 3개부대),
3,060m³(벌크/조정기 1.0000/00전대 등 2개부대)
- * 납품 예정물량은 부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월별 정산 시 단가산정방법(KG/m³) / 물품명세서 참조
- 사.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19. 3.31까지
- 아. 납 품 지 역 : 부대지정장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가스공급자 선정 시 LPG용기판매와 벌크판매를 분리 발주토록 지도·감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 법제화(’20.3월)로 10톤 이하 저장탱크 가스공급자 입찰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입찰제한 지도·감독
 - 최근 법령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도 10톤 이하 저장탱크에는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할 수 있음
 - 10톤 이하 저장탱크에 가스공급자 선정 입찰공고는 입찰참가자격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으로 적용했는지 여부 확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상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해당 품목은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 품목은 세부품목의 하위개념으로 각 규격을 의미
 - 동 규정은 '20.4.1이후 시행된 것으로 종전에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부품명 내 일부 품목의 납품실적이 없어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
- 업체 입장에서는 품목이 언제 발주될지 모르는 것이고 2단계경쟁 등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영세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될 기회가 적어 납품실적이 없을 수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 재계약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영세 소기업의 판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 영세소기업들은 중기업에 비해 영업력, 광고, 선전, 홍보 등이 취약하고 품목에 대한 영업, 판매 등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단가계약 체결이 영업의 전부로 단순히 실적이 없더라도 수요기관에 신제품, 제품홍보 제공 등의 순 효과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콘크리트 제품 품목은 수요기관의 구매패턴 및 주기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요시기가 달라 기간내 실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여러 공사에 소요되는 품목을 묶어서 구매(2단계경쟁 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이 재계약에서 제외될 경우 다른 품목 구매 및 판매에도 애로가 발생될 수 있어 세부품명별로 적용함이 타당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2020.04.01. 시행]

제4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해당 품목**. 다만,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계약 배제 규정 품목 기준을 종전과 같이 세부품명 기준으로 재 개정
 - 단순히 행정력 소요에 따른 편의주의식 규정 개정보다는 영세 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영업망 구축 효과 등 순기능 효과를 참고
- 각 수요기관에서 신제품, 제품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한 구매확대, 구매주기에 따른 품목별 구매와 각 품목을 묶어서 구매 시 효율성 제고 등을 꾀하고 특히, 중소기업들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정 요망

해당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1683호, 2015.2.17.)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 제1항제4호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으나 폐지된 조항이며, 업체의 민원 등으로 폐지한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항목 PIN-UP賞 부활

건의요지

- 『PIN-UP상』은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2점)
- 활용 실적 미흡과 기술·품질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조달청 자체 판단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9호)개정시 PIN-UP상을 신인도 가점 항목에서 삭제함(19.7.1)
- 조달우수제품 선정을 위해 특허와 기술개발을 준비해온 영세기업들에게는 신인도 가점(2점)은 조달우수제품 선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우수제품 선정여부는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가구는 디자인이 제품개발의 기초 근거가 되며, 기술의 원천이기도 하므로 ‘디자인’은 가구의 산소 역할을 하며 품질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산업경쟁력임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조달청장 간담회 시 건의하여 조달청 우수제품과에서 『삭제된 신인도 항목에 대해 다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나, 신인도 가점 체계 개편 검토 시, Zero Base에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건의사항

- 우수제품 신인도가점 항목에 PIN-UP상 재차 포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5.12)

건의결과

검토중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임의적 제재사유 구분

건의요지

- (현황) 국가계약법(제27조)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11개, 일부를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위임 11개, 총 22개의 사유를 규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나라장터”(정보시스템) 등재를 통해 전체기관에 통보되며, 다른기관은 해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
 - (문제점)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에서 제재사유를 단순 나열하고, 그 성격이나 효력상 차별을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
 - 제재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재량권 행사를 통한 면책 결정 불가능
 -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획일적·일률적 적용을 강제하여 기업에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제한조치가 취해지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에서 입찰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 한편, 제재사유의 대부분(30%)을 차지하는 단순 “계약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입찰)보증금 등을 몰수함으로써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행정제재(입찰제한·과징금)를 하는 것은 과잉제재로서, 제재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 업체가 저가 낙찰에 참여한 경우 납품시 손해가 계속됨에도, 입찰제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사례 발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8.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사유를 필요적 제재사유와 임의적 제재사유로 구분
 - 필요적 제재사유: 모든 발주기관에 확대·적용
 - 임의적 제재사유: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금지
 - ex) 금품수수, 담합 주도의 경우 기속행위로, 기타·경미한 경우 재량부여
-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재 사유에서 삭제
 - *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입찰제한 적용대상 변경 (‘기업체’ 단위 → ‘해당제품’ 단위)

건의요지

- (현황)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해당 업체에 미치므로 해당 업체의 사업 전부(전체 제품)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ex) A업체가 B제품과 관련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B제품과 무관한 A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한 입찰까지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판로가 차단
- (문제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실상 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비례원칙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업체 소속 직원의 단순 착오·실수에 의한 경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관련 제품으로 입찰제한 범위 조정 필요

건의사항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필요적 제재사유에 해당하면 ‘업체’를 대상으로, 임의적 제재사유이면 관련 ‘제품’에 한해 입찰 제한하도록 범위 축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8.19)

건의결과

검토중

현행	개정(안)
<p>(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사유 관련 제품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건의요지

- (현황) 국가·지방계약의 경우 제재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예외적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
- (문제점) 기관별 재량권 행사를 통한 면책이 불가능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이외 제재수단이 없어, 처분기관에서는 감사부담 등으로 행위의 동기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획일적으로 제재
 - 외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경고, 자율시정, 면제, 조건부 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운영하여 공공계약 윤리성 제고

- 자율시정제도: 손해보상 완수, 조달기관에 적극적 협력, 손해 등의 사실관계 인정 및 예방조치 이행시 입찰제한 면제
- 행정협약: 일정기간 정부계약에서 특정인의 배제, 행정기관 개입, 준법 및 윤리 프로그램 실시, 정기적인 행정기관 보고 등
- 경고제도: 1차 경고, 2차 제재
- 제재조건부 불제재: 준법경영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면제
- 조건부과: 경미한 경우 제재 대신 특정기간 계약보증금을 증액 납부하도록 조건 부과

건의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경고, 자율시정, 면제, 조건부 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 마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8.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현황) 국가계약법(제27조의2)이 개정('12.12.18.)되면서 경미한 경우에는 기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 (심의절차) 기재부 및 행안부에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처분
- 정부·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제재사유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만 가능
 - * (사유) 공공기관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 불가
- (문제점) 정부·지자체의 경우, 입찰제한 대비 과징금 제도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며, 처분기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기재부·행안부)에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기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제약 초래
 - * 현재 지방계약법은 물품·용역 5천만원(공사1억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행안부) 심의를 생략하고, 지자체장(또는 조달청)에 위임
 - 발주기관 입장에서 군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찰참가제한 조치 선택
 - 한편, “공공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려 해도, 근거가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

건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과징금 부과 先검토
- 일정액 미만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발주기관에 위임
 - 임의절차인 계약심의회*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과징금 심의기능까지 포함
 - * 중앙관서에는 계약심의회가 이미 설치(시행령 제94조)
- 과징금 적용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도 과징금 부과 등 입찰제한외 다른 대체수단 마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2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8.19)

건의결과

검토중

한시적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등급) 완화

건의요지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중소기업 60.3%는 올해 매출이 감소되어, 내년도 대출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내년도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평가를 '20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금리 인상(31.3%), 대출한도 축소(30.4%), 만기연장 곤란(15.5%) 등이 우려
 - *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관련 의견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2)
- 코로나 사태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시적인 것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기업귀책사유도 없음 → 매출부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할 필요
 - * 한국은행도 '금융안정보고서('20.6)'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신용등급* 하락 시 공공기관 입찰 참여 곤란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공공조달시 적격심사항목에 반영(신용평가등급에 따라 30점~25점 차등 부여)
 - 조달기업의 67.5%가 최저등급(CCC) 바로 위 B등급에 분포*, 등급 하락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되어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기회 상실 우려
 - * 나이스 평가정보-기업 신용등급 관련 통계자료(2019년말)

건의사항

- 공공기관 납품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별도의 입찰기준으로 평가
 -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술력 있는 업체에게 수주기회 보장
 - * 한시적으로 전년도 신용등급 적용 또는 최저등급 배점(25점) 상향으로 차등배점 완화 등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시 아래와 같이 해당 물품(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 세부품명)에 대해 조치하고 있음

1. 1회 불합격

- 경결함: 경고
- 중결함: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불합격(세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우수제품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하였을 경우 결함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를 함은 물론 MAS계약 품목에 대하여도 결함 경중에 따라 2단계 경쟁 시 2년간 감점조치하고 있으나,

- MAS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하였을 경우 받은 감점조치가 우수제품 계약품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두 제도 간 형평성 문제 대두

품질점검 결과 최소조치는 거래정지 1개월이나, MAS 2단계 경쟁 시 2년간 감점(0.6) 규정이 있어 해당 업체는 2년간 2단계 경쟁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건의사항

- 우수제품과 MAS의 품질점검 결과 분리 조치 및 거래정지기간과 연계하여 감점 적용기간 단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판로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건의(20.12.18)

건의결과

검토중

마케팅 및 판로지원을 통한 개성공단기업 자생력 강화

건의요지

- 개성공단 기업은 '16년 정부결정에 따른 폐쇄 이후 中 사드 보복, 日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복합적이고 지속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단 폐쇄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낮은 신용등급, 매출실적 저조로 정부 지원사업과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매우 어려워 보다 실질적 지원 대책이 절실
- 경기도 등 일부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판로·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중단
 - 지방(광역)자치단체 지원은 지역 관내로 한정되어 관외 소재 기업의 정책 소외라는 한계가 있음
- 폐쇄 직후 한시적(1년)으로 조달시장 및 우수제품 선정에 가점이 부여(2점) 되었으나, 단기간 내 종료되어 기업지원에 역부족
 - 대체생산시설 확보와 생산 안정화를 단기간 내 추진하기 매우 어려워 피해가 큰 기업일수록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개성공단 기업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절실

건의사항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정부 지원사업에 개성공단 기업 간 별도 경쟁 및 평가 추진
- 공공조달시장 참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건의
제출(20.7.13)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최근 민간에서의 서비스 표준 제정 및 인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비스 인증에 대한 단체표준 제도가 미비하여 인증 업무에 지장·혼선 초래
 - 서비스 인증심사 절차(방법)·서비스 인증 표시방법·사후관리(기록 보존, 소비자 보호·불만처리) 등의 기준이 부재하거나 불명확
- 또한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KS 인증 제품·서비스 및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인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단체표준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수한 단체표준으로 지정조차 불가능한 상황

건의사항

- 서비스 분야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달 우선구매 대상 확대(우수단체표준 제품 → 우수단체표준 제품·서비스)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단체표준부

관련조항

산업표준화법 제25조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산업부장관 간담회

(20.1.30)

김경만의원 입법발의

(20.12)

건의결과

검토중

현행	개정안
<p>▶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u>공공단체</u>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u>제품</u>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우수한 단체표준제품</u>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p>	<p>▶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u>공공단체</u>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u>제품·서비스</u>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우수한 단체표준제품·서비스</u>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p>

02

글로벌·통상



건의요지

- 관세청은 8개국*에 13명의 관세관을 파견,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 해소, 해외통관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
 - * 미국(워싱턴, LA),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일본, 홍콩, EU, 태국, 베트남, 인니, 인도
- 상기 제도 불구, 수출 中企 해외 통관관련 정보 부족 및 실무 처리 어려움에 따른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중소기업이 바라는 재외공관의 역할 조사」 결과 (수출中企 100개사, '19. 3월)

- 해외진출 애로사항: 바이어 발굴(64%), **현지 통관 관련 실무능력 부재(39%)**, 시장 정보 부족(18%) 등
- 애로 직면 시 조치: 코트라 활용(55%), 자체 해결(53%), **현지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활용(7%)** 등
- 기타 의견: **재외 공관 내 수출담당관(상무관, 관세관) 부족하여 중소기업 애로 처리 어려움**

- 주요 교역국 수출 중소기업 수 감안 시, 턱없이 부족한 관세관 수

건의사항

-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 발맞춰, 해당 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반영(20.2.26)

수출입신고 오류 점수(벌점)제 및 관련 매뉴얼 개선

건의요지

- 관세청에서는 수입(수출)신고서 정정 시 업체에게 오류 점수(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 벌점이 누적되면 일정기간 세관에게 수출입신고서에 대한 근거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 검사비용이 상향되어 세관공무원 물품 검사 후에 통관이 진행되는 등 통관 리드 타임이 길어짐
 - * 업무별 오류점수 300점~2,000점 이상(오류점수 비율 30%~200%) 시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간 P/L(paper less) 신고 정지
 - * 업무별 오류점수 400점~2,000점 이상(오류점수 비율 40%~200%) 시 오류점수 확정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용에 그 비율의 최소 80%~180%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아,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음
 - 관세사의 착오에 따른 수출입신고 오류에도, 해당 업체가 벌점을 부과 받는 비합리적 상황 발생

건의사항

- 관세사에 의한 수출입신고서 오류 시 벌점 경감
-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기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 실무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 통관 시 벌점 경감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반영(20.2.26)

건의요지

- 중국은 자국 농산물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신선채소 및 생김치 수출 시 수출가의 3% 장려금 지급
 - ** 가열 및 볶음 조리 과정을 거친 농산물 수출가의 18% 장려금 지급
- 중국의 김치 수출자는 중국정부의 수출보조금 수령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수출 신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자는 중국의 수출자와 결탁하여 중국시장 내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 관세부담을 회피하고, 국내 김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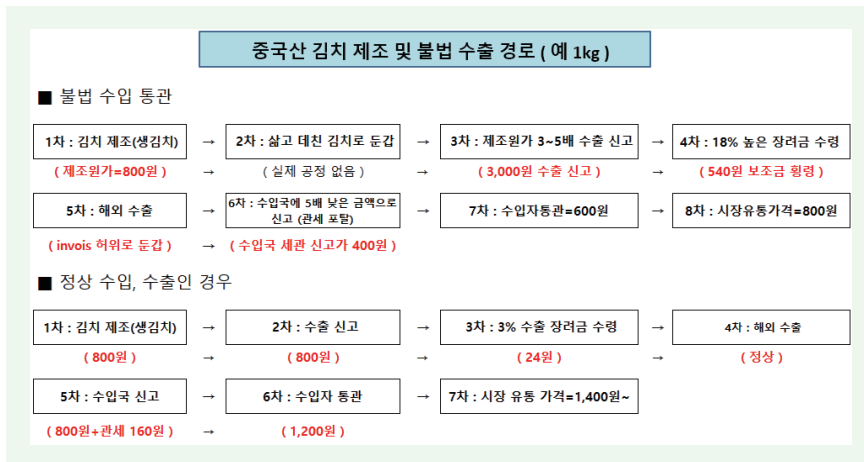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반영(20.2.26)



건의사항

-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법 김치 수출업체 단속 강화
- 중국 김치 수입 시 중국의 수출신고서를 추가 징구 및 확인하여 수입통관 요청
 - * 관세법 제245조(신고서의 제출서류)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입신고서 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부분 등으로 구성

건의요지

- 중소기업이 물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 추후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시행
 - *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재 환급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등을 해소
- 그러나, 납부유예 제도 활용가능 기업의 요건은 수출액 비중 30% 이상, 혹은 수출액 100억 이상인 기업으로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초보기업이나 수출규모가 적은 기업들은 혜택 받기 어려운 실정
 - 특히,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94,285개사, 총 수출액은 1,087억 달러(2018.12기준)*로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약 13.4억 정도에 불과
 -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중소기업 수출통계 확정치(2019.3)
 - 중소기업 수출을 주도하는 이노비즈기업의 경우도 평균 수출액이 77.7억*(직접 64.9억 + 간접 12.8억 추정, 2018.12월)
 - * 2019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2020.1)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세 납부 부담 해소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출액 100억 이상을 50억으로 낮추는 등의 적용대상 기준 완화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반영(20.2.26)

건의요지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관세 및 내국소비세가 모두 면세된 것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를 구매한 자가 출국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함
 - * 관세법 제196조 제1항
 - 따라서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구매자가 출국할 때 출국심사가 종료된 다음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원칙
 - 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국산품 구매가 용이하도록 외국인들이 국산품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인도받기 원하면 면세점에서 직접 인도하고 있음
 -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 시내면세점에서 대규모로 국산화장품 등을 구매한 외국인(주로 중국인) 중 일부가 해당 면세품을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재판매함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 발생

건의사항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시중유출 및 시장 교란 차단을 위해 위반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 등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 요망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반영(20.2.26)

건의요지

- 국내 땅콩 연간 소비량 45,000톤 중 약 75.6%(34,000톤)가 중국산 땅콩임(국내 땅콩자급율 약 27%)
 - * 2018년도 기준
 - 이 중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조제(볶음·입힘) 땅콩이 87%이며,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생알땅콩이 식용(기호식품)으로 소비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타이궁)이나 여행객들로부터 불법수입 유통되는 농산물(약 15,840톤 추정) 중 생알땅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약 4,000톤) 정도로 추정
- 보따리상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저가판매(국내산 가격의 약 30%)로 국내산 땅콩가격의 하락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함
 - 땅콩생산 농가소득 하락, 안정적 판매기반 상실 등 농가의 땅콩 생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원산지를 국내산 땅콩으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국내산 땅콩 소비촉진 및 인식에 악영향

건의사항

- 국내 땅콩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내 땅콩생산 농가 보호·육성을 위해 원산지위반 및 불법수입 타이궁의 강력한 단속 등 관계기관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도 요청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반영(20.2.26)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수급 불안정, 선적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취소 및 위약금 요구 등의 분쟁 발생
 - 해외 정부의 통행제한, 통관지연 및 출·입국 제한 등으로 선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 중국 등 거래상대방이 국내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
 - 이에 따라, 위약금 배상 및 계약 취소로 인한 매출하락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소기업 대상 분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수준*
 - 특히, 분쟁금액 2억 원 초과 시 국제중재 이용비용 폭증
 - * 분쟁금액 당 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이용 비용(중재인 1인일 경우)
 - 2억 원 이하: 1천만 원(45만 원), 1억 원(155만 원), 2억 원(260만 원),
 - 2억 원 초과시: 2억 1원(767만 원) 3억 원(1,005만 원), 4억 원(1,242만 원) 등
 - ※ 중재인 ‘3인 심리’ 이용시 비용 3배로 증가(신청자 희망시)

건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 등 수출입분쟁 발생 시 소송(중재)비용 지원
 - 중소기업의 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이용비용의 50% 지원(2천만원 한도)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간담회 제출(20.3.16)

건의결과

반영(20.8.21)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기업인 출장이 제한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특히 출장 후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뜰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
 -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인도적 목적에 한해 격리 면제를 하고 있으나, 활용에 어려움
- * (중요한 사업상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9)

- 해외 출장 시 가장 큰 애로: '국내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71%
 - 국내 입국 시 격리 제도 인지 여부: 22.7%
 - 올해 해외출장 가지 못하는 기업: 84%
- 생활용품 등 소비재는 비대면채널(온라인전시, 화상상담) 등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나,
 -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산업재는 해외바이어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등 출장이 필수적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는 수출 확대에도 큰 도움

※ **현장 목소리**

- (금형제작 및 수출 A사) 바이어로부터 제품 수주를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데 국내 입국 시 14일간의 자가 격리의무를 면제해 주면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건의사항

- 국내 코로나 안정화(1단계 등)시 기업인 출장 후 입국 시 격리면제 국가 확대 등을 통한 수출 지원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건의
제출(20.9.1)

건의결과

반영(20.9.2)

건의요지

-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일)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한-베트남 상품직거래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 내 보세구역인 상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통해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의 제품 수출입 대행 및 현지 유통사업자와 계약 체결하는 등 상품직거래에 의한 무역 및 유통 구조
 - 보세구역 지정 시 사전심사, 통관, 유통, 판매, 반송 등 전반적인 무역업무 간소화 및 신속화 가능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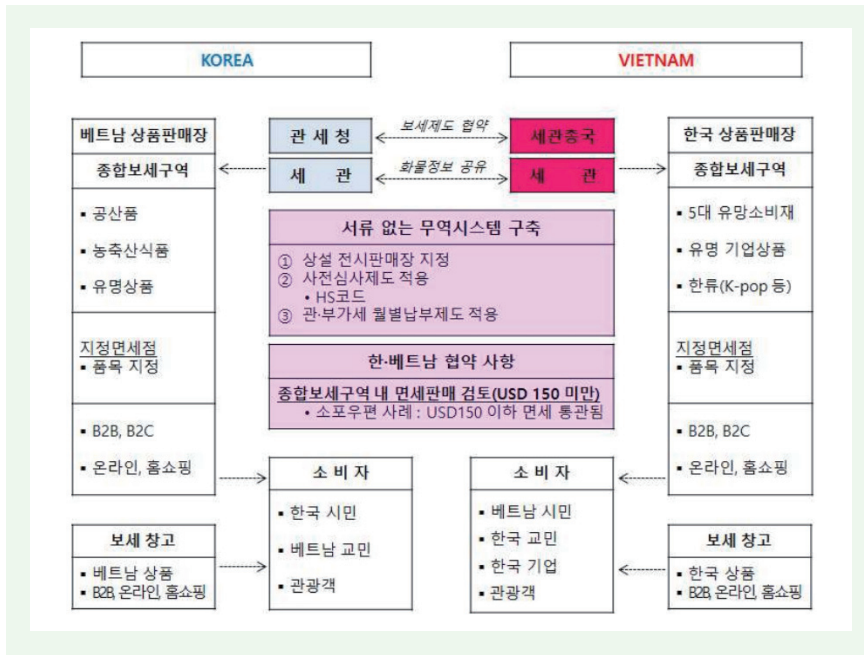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2.26)



건의사항

- 한-베트남 상품직거래로 중소기업의 신남방국가(베트남) 진출 활성화를 위해
 - ▲상품직거래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사전심사제도 적용 및 월별납부제도 적용, ▲EMS 우편 면세제도 적용 요청
- 베트남 내 상품직거래센터 운영을 위한 베트남 관세총국과 협조
 - 중소기업 실무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 통관 시 벌점 경감

동스크랩 불법 수출 단절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건의요지

- 우리나라 동스크랩 수출액 중 對中 수출액 비중은 60%로 타국 대비 압도적이거나,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국인 동스크랩 유통업자들의 불법 수출 성행으로 세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동스크랩은 동(Cu) 함량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고, 非전문가의 경우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중국 수출업자들은 수출 통관 신고 시 고가의 동스크랩을 저가로 둔갑하여 신고

〈국내 중국인 유통업자가 동스크랩을 저가 신고하는 이유〉

- ① 중국 측 수입자는 수입품 가격의 17%에 해당하는 증치세(韓: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 현지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유통 수익 확보를 위해 부정 신고
- ② 고가 동스크랩의 경우, 현금거래만을 추구하여, 수출 신고를 위한 매입자료 (세금계산서) 없음

- 양질(고가) 동스크랩의 국내 공급 부족 및 중국인 유통업자들의 현금거래 (무자료거래)로 인하여 탈세 피해 심각

건의사항

- 국내 유통 동스크랩에 대한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하여, 동스크랩 수출 시 관세청에 '품질등급확인서' 제출 의무화
 - 런던금속거래소(LME) 제공 동 시세를 기준으로 수출가 엄정 검토
- 전국단위 동스크랩협동조합에 동스크랩 품질인증제도 업무 위탁 추진
 - * [참고] 日(JCIP)과 中(CCIP), 자국 내 유통 동스크랩에 대한 품질검사 판정 기관 보유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2.26)

건의요지

- 타일, 위생도기(양변기·세면기) 및 도자기 식기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자체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제1항에 따르지 않고 있음
- 조합은 원산지표시위반 제품을 재래시장 등에서 조사 및 현품을 구매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미미함
 - 관세청은 원산지위반업체에게 사전에 단속일정을 통보하여 위반현품을 제3의 장소로 반출하여 현장 단속 효과가 없음
 - 원산지표시위반 현장 단속 시, 관세청 단독으로 조사할 경우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소홀히 넘어갈 수 있음

건의사항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시 관련 업종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사전 단속 통보 없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하도록 건의

현행	개정안
① 세관장은 검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하기 전까지 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세관장은 사전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을 ①으로 수정 세관장은 검사계획에 대해 검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한다.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2.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기간 연장

건의요지

-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조사 유예(기간: ’19. 06 ~ ’20. 05)’ 시행
 - ’19년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1억불 이하 수입 업체에 한함)에 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란 중동사태 등)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약화
 -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면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건의사항

-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기간 연장 요청
 -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 ’19. 6월~’20. 5월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 - ’19. 6월~’21. 5월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대상 - 혁신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대상 - 좌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2.26)

건의요지

- 조합에서는 활어 또는 활패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냉장시설을 갖추고 산소공급이 되는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하고 있음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행정절차〉

① 적재된 선박의 입항(매일 09:00~11:00, 선박업체) → ②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신청 및 담보설정 신청(관세사) → ③ 담보설정(세관) → ④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세관) → ⑤ 보세운송신청(보세운송업체) → ⑥ 보세운송신청수리(세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에서는 매일 일정시간 내에 보세구역 외 장치된 물품만 검사함
 - 컨테이너로 반입된 물품의 수조창고 반입 소요시간은 20피트 컨테이너 2시간,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4시간 소요되어 오전 중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해당 검사 시간대를 맞추기 어려움
 - 당일 통관되지 아니할 경우 폐사되는 양이 증가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가치가 저하됨

건의사항

- 법령상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당일 오전 중으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2.26)

건의요지

- 해외에서 소스와 같은 식품류를 수입하는 경우, 성분 정밀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식품류 수입의 경우, 식약처의 성분 정밀검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별도로 성분 정밀 검사를 요구하며 출고를 막는 경우 발생
 - 이중검사로 인해 소량으로 수입한 식품 10박스 중 검사용으로 4박스를 소진하여, 6박스만 남아 결국 재수입을 진행한 바 있음
- 특히, 수산물의 경우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빈도수가 높아 생물 폐사로 인한 재수입 물량이 매우 많은 실정
 - 수산물 중 보존기간이 3-5일 정도인 머드크랩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정식 수입이 불가

건의사항

- 검사 기관 통일 또는 검사 결과 공유 시스템 도입 통하여 행정 업무 개선 필요
 - 이중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규정화하여 업체 사전 대비 지원
- 정부 지정 성분 정밀검사 민간기관을 확대하여 경쟁에 의한 조사가격 조정 및 서비스 품질(검사기간 단축 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일부반영(20.2.26)

국가별 협상을 통한 온라인 디렉토리 구축 및 홍보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출장 등이 제한되면서 현지 바이어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특히, 현지에 사무소가 없는 중소기업은 바이어 신규발굴이 어려워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

건의사항

-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 및 수입업체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국간(한-미, 한-중 등) 온라인 수출입업체 디렉토리(AI) 플랫폼을 구축
 - AI를 활용한 업종·품목별 수출입기업 매칭 및 해당기업 정보제공 시스템
 - 다만, 시스템 구축 이후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통관 등)의 정보를 활용한 한국 수출기업 데이터 구축과 각국별 HS코드 등의 정보일치를 통한 실효성 강화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건의
제출(20.9.1)

건의결과

일부반영(20.9.14)

AR/VR기술을 활용한 제품 매뉴얼 제작 및 쌍방향 소통 지원

건의요지

- 기계, 부품 등 일부 업종에서는 바이어의 직접 검수, 조작메뉴얼 설명 등 대면 활동이 필요한 업무가 있으나,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선적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 상담을 활용하는 경우 화면상의 정보만으로는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어려워 제품설명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 AR, VR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사용 매뉴얼, 기계설비 A/S 동영상 제작 등 지원
- 온라인 전시회에 AR/VR 기술을 도입하여 원활한 쌍방향 소통 지원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건의
제출(20.9.1)

건의결과

일부반영(20.8.13)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건의요지

- 국내 의료기기 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성장가능성이 큰 업종임
 - 특히, 정부에서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4.23)시 의료, 헬스케어 산업 등을 포함하여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은 생명·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이 많아 온라인 전시관 등에서는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애로도 존재

건의사항

- 생명과 연관되어 특수성이 존재하는 의료기기 산업에 특화된 수출 지원 정책 마련*과 국내 승인기간 등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 * ① 해외 인증에 대한 지원
 - ** ② 국내 공공의료시설 구매활성화로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바이어 발굴 지원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건의
제출(20.9.1)

건의결과

일부반영(20.8.13)

건의요지

- 정부는 시계, 핸드백 등 유명상표의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과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14.4.9 경제관계장관 회의)을 확정하고 추진하였음
 - * 병행수입: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 유통된 진정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형태
- 시계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업체의 브랜딩 관리 등의 이유로 원산지 증명을 받기 어렵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출자의 협조가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관이 병행수입업체에게 수입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검증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면제했던 관세를 부과함
 - 이는 중소병행수입업체에 적잖은 재정 부담을 주고, 불경기에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등 병행수입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 '18년 국내 시계수입액 74.8%(총수입 9.9억불 중 스위스 수입 7.4억불) 스위스이며, 그 중 85%는 한국지사 또는 공식수입업체 독과점 시장 형성

건의사항

-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위법행위(관세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이력이 있는 업체가 병행 수입한 제품 또는 원산지규정 미준수 혐의가 명백하다고 간주될 때에 한해 검증
- 유관단체의 확인서 등으로 대체 방안 검토. 또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수입 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업체에 요구하도록 개선보유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미반영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 피해기업 지원

건의요지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정부에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 이에 따라 판매업자(수출업자)는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를 공적판매처에 출고하고,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생산업자에 한해 수출 가능('20.2.26. 시행)
 - * 당일 생산량의 80%를 공적판매처에 출고, 수출 불가('20.3.9. 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해외 거래처와 수출 계약을 한 업체의 경우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납품기한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수출업자는 위약금을 배상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신용이 하락되어 거래처도 잃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수출입업체, 서울〉

지난해 11월 해외 바이어와 약 50억 규모의 마스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마스크 수출이 차단 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음

건의사항

-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 진행분에 대한 마스크 수출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국내 수급 안정화 후 수출 절차 탄력적 운영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간담회 제출(20.3.16)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전선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원자재인 동, 알루미늄, 합성수지는 우리나라 자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정제되지 않은 원자재는 주로 무관세로 수입되어, 주로 정제기술이 있는 대기업에 의해 소비되고 있으나, 정제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은 평균 2~5%의 수입관세를 지불하여 정제된 원자재 수입하는 상황
- 국내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하여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고 있으나, 환급액 또한 크게 줄어든 상황
 - *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中企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토록 한 제도. 주로 수출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책정

〈전선(HS 8544) 간이정액환급 적용금액〉

HS Code	품목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0,000원당)				
		2015	2016	2017	2018	2019
8544.49.2012	플라스틱 절연전선/전기 통신용/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기타	80원	60원	50원	40원	10원
8544.60.101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전압이 10킬로볼트 이하인 것/프라스틱절연전선	30원	20원	10원	10원	10원
8544.60.2010	전압이 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인 것/프라스틱절연전선	40원	30원	20원	10원	10원

자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및 관세청

건의사항

-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인 동에 대한 무관세 수입허용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이정액환급액 인상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관세청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해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관세청에서는 보세공장 전환비용부담, 세관관리감독, 복잡한 제도나 절차 등으로 보세공장제도 이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보세공장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음
* 중소기업들이 보세공장 이용 시 특허요건완화, 절차완화 및 세관 확인 최소화 다양한 특례 적용 등 보세공장 물품 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제도
- 현재 이 제도는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이해도 및 인식이 낮은 상황

건의사항

- 더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기준 요건 완화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활용 혜택에 대한 체계적 홍보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한중 FTA 타결(2015. 11월) 이후 중국산 점토벽돌 수입 급증
 - 특히,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폐점토벽돌의 수입 급증

〈중국산 벽돌(HS690410)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톤, 천불,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액	682	2,059	9,424	12,442	10,863	6,656
(증가율)	(-5.5)	(201.8)	(357.8)	(32.0)	(-12.7)	(-38.7)
수입량	8,695	22,959	94,109	115,455	101,638	64,975
(증가율)	(0.8)	(164.0)	(309.9)	(22.7)	(-12.0)	(-36.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산 점토벽돌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하회하여 건축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 폐 점토벽돌의 경우, 적절한 유해성 검사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협

〈중국산 및 국산 벽돌의 안전성 및 유해성 분석〉

구분	안전성		유해성	
	압축 강도(N/mm ²)	흡수율(%)	납 검출	비소 검출
KS기준	24.5 이상 적합	10.0 이하 적합	기준 없음	
국산 평균	40.1	7.48	6.61	69.23
중국산 평균	21.1	13.78	3.35	102.08

자료: 한국세라믹기술원(2018. 06월)

건의사항

- 중국산 수입 벽돌 품질 검사 강화
- 품질 기준 미달 및 유해성 중국산 벽돌 수입 금지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종이 및 판지는 대부분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지 품목 내 다양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분류가 나뉘지 않고 업체별 품목분류도 상이하여 지종별 수출입 현황파악에 한계
 -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범 업계 수출전략 수립 및 통상문제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중인 품목에 대해 HS코드를 혼용하여 무관세 수입할 수 있음
- 아울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선적서류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별로 각각 스캔해야 하는 등 업무량 증가하고 있으며,
 - 원산지증명 시 한-아세안FTA 국가는 중량, 수량만 입력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포장단위까지 요구하고 있음
 - 유니패스 전산 상 관련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잘못된 원산지증명을 하는 상황 발생

건의사항

- 수출입시 품목분류 심사 강화 및 동일품목 동일 HS코드 원칙 준수
- 유니패스 상 선적서류 제출 제외 및 의심되는 건에 한해 징구
- FTA 협정 등 변경 즉시 유니패스 업데이트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관세법 일부 개정('20.7.1 시행)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 설치 시* 입국장 면세점 중소·중견사업자는 시내면세점(인터넷업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사업자와 경쟁이 어려움
 -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위임법령: 법 제196조제1항제1호)
 - 특히, 중소면세점의 경우 입·출국장에만 면세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도장에서 인도를 위한 인터넷판매는 불가*한 상황임
 - * 관세청, 입·출국장 면세점 특허권 공고 시 전자상거래(인터넷면세점) 특허 제한
- 이는 중소·중견 면세점사업자 활성화* 취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임
 - 입국장 면세점의 1일 평균 매출액(1억5,700만원)은 예상치(2억1,800만원)에 비해 저조하여 정책적 목적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황('19.11월말)
 -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9.27),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경쟁 입찰 추진」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제출
(20.2.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중소·중견 면세점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면세점이 운영되는 공항 및 항만에는 입국장 인도장 미설치
- 설치시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범위를 '출국 전 구매 분'으로 제한하고 ▲입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인터넷판매) 허용

입국장 인도장 인도 범위를 ‘출국 전 구매 분’으로 제한

건의요지

- 입국장인도장 설치 시 구매물품을 인도 가능한 구매 시기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의 6항에 따르면 관련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위임법령: 법 제196조제1항제1호)
- 입국장인도장 상품의 구매시기가 ‘입국 전’이 되는 경우 여행객들의 입국장면세점 구매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 입국장인도장 설치 시에는 물품의 인도시기를 출국 전 구매 분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출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의 현저한 매출감소를 막아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 필요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 건의 제출
(20.2.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보세판매상 운영에 관한 고시(11조)에 따르면 입·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 전자상거래가 가능토록 허용할 수 있으나,
 - 현재, 관세청은 입·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시 전자상거래(인터넷면세점) 운영을 제한*
 - * 관세청 공고 제2019-16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AF1), 제2여객터미널 (AF2) 입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등 참고
 - 그러나, 다수의 중소면세점의 경우 입·출국장에만 면세점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의 인도는 불가능하며, 대기업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임

※ 항만·공항 면세점 사업자 현황(총23개 사업자, 한국면세점협회 참조)
 - 출국장만 운영: 6개 사업자(시티플러스, 탑시티, (주)국민산업, GADF, 디엠, 포춘)
 - 시내&입출국장 운영: 7개 사업자(롯데, 신라, 신세계, 에스엠, 엔타스, 그랜드, 부산)

〈출국장 인도장 이용 현황(2018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계
인도건수	비율	인도건수	비율	
41,495,542	98.4%	672,692	1.6%	42,168,234

건의사항

- 공항·항만의 입·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입·출국장면세점에서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중견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소·중견면세사업자의 활성화를 도모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관세청

건의경과

관세청 건의 제출
(20.2.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주류/담배’의 경우 입·출국장면세점의 주요 매출 품목이며,
 -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예정인 ‘담배’의 경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매출 품목임

※ 면세점 담배판매 비중(2018년 매출기준, 추경호 의원실)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인천공항): 엔타스(77.3%), 시티플러스(38%), 에스엠(33.2%)
- 대기업 면세점(인천공항): 롯데(19.3%), 신라(12.2%), 신세계(9.1%)
- 시내면세점: 롯데 명동(0.9%), 신라 장충(0.5%)

※ 입국장 면세점 상위10개 품목 매출 비중(2019년 6~8월 기준, 이후삼 의원실)

- 주류(57.5%), 식품(20.9%), 화장품(16.1%), 전자제품 등 기타(5.5%)
- * 담배는 3월 중 판매 예정(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 중, 12.26, 기획재정부)

- 시내면세점 등을 통해 구매한 주류 등을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할 경우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운영하는 입국장면세점의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예상됨

건의사항

- 주류·담배의 경우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를 제한하여 해당품목 매출비중이 큰 중소·중견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적근거 마련 필요
-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 등) 5항에 따르면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기획재정부 건의 제출
(20.2.10)

건의결과
검토중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현실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건의요지

- 입·출국장면세점 임대료는 예상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됨
- 이는 입국장인도장 설치, 국제적인 질병의 통제 상황 등 외부요인에 따라 매출액 변동 폭이 발생할 수 있는 면세점 사업자에 부담
 - 그러나, 관리주체인 공항공사 등에서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임대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 면세점 사업자가 외부적인 요인에 대응하고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공항-면세점 사업자 간의 조정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필요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국토교통부 건의 제출
(20.2.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국제공항 이용 입·출국자가 크게 줄어 면세점(각 터미널 입·출국장) 이용객도 급감
- 인천공항공사는 '20년 3월 비상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여객인원 감소세에 따라 단계별로 공항운영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여객 급감에도 가장 낮은 대응단계인 1단계를 유지
- 인천공항공사에서 상생을 위한 임대료 인하조치(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를 시행하였으나, 매출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액된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절실

건의사항

- 공항 이용객 정상화 시점까지 공항 면세점 휴점 협조
 - 휴점 면세점 운영사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면제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의경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의
제출(20.6.1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동관련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IT 및 모바일, 4차 산업 등 전 산업분야에 기초로 사용되는 전략자원으로 생태계가 무너지면 타 업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큼
- 그러나 한중 FTA 체결과정에서 황동봉의 경우 양국 간 양허가 비대칭적으로 협정되어, 국내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 시 협정 발효일(2015년)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기준세율을 균등 철폐함. 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는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있음

〈황동봉 관련 한중FTA 현황〉

구분	HS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협정내용
중국 → 한국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8	10단계 균등 철폐
한국 → 중국	74072111	기타(황동봉)	7	기준관세율 유지
	74072119			
	74072190			

건의사항

- 황동봉 부문에서 양국 간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한·중 FTA 개정협상 시 황동봉의 비대칭 양허에 대한 재조정 필요

분야

글로벌·통상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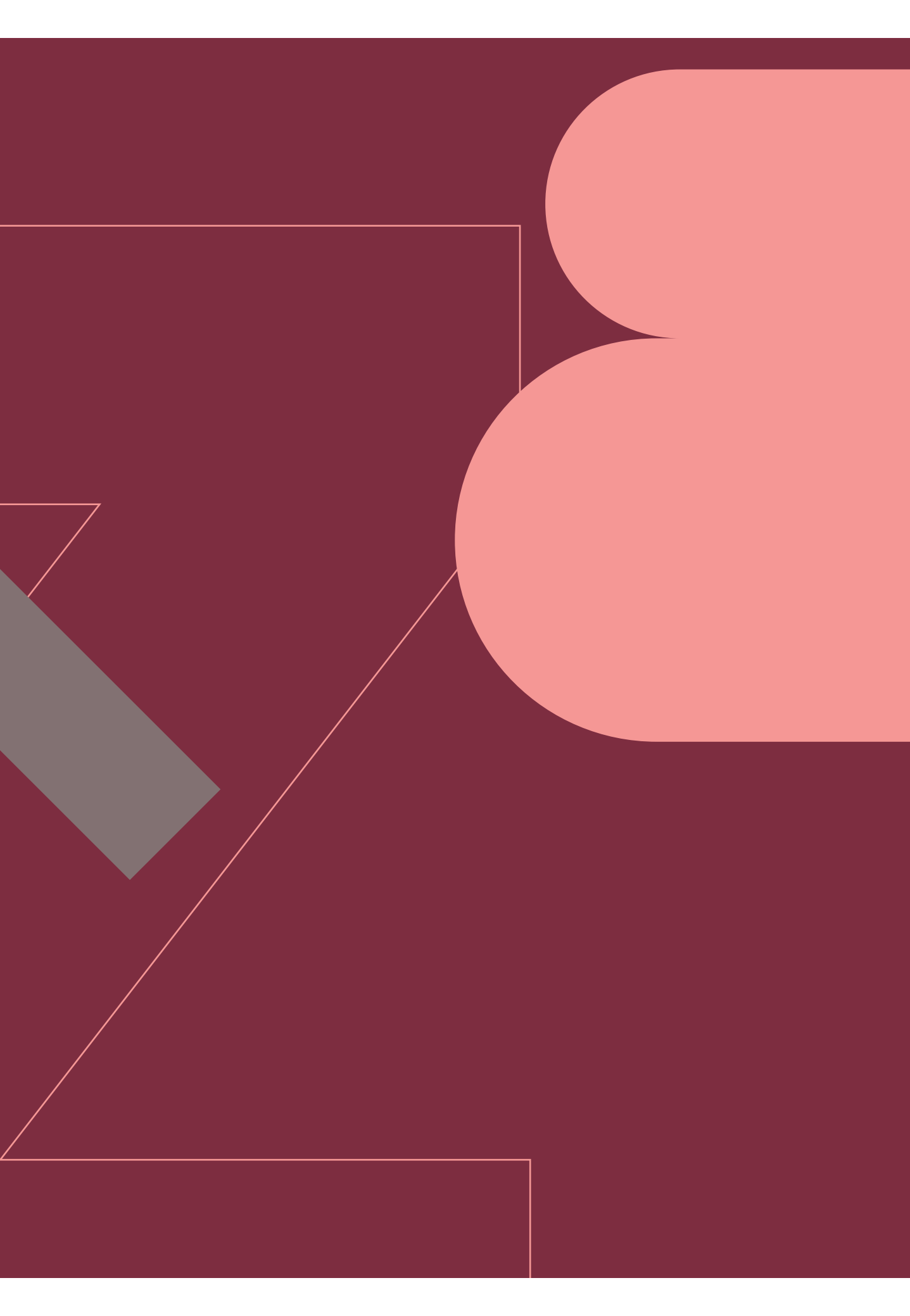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건의 제출(20.9.8)

건의결과

검토중

03

금융·세제



건의요지

- 초과유보소득과세는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을 수밖에 없는 법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과세대상의 적용범위가 넓음
- 개별 중소기업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사내유보금 보유 수준을 조정하며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률적인 적정 유보소득을 규정하고 과세하겠다는 건 과도한 경영간섭
- 법인 중소기업은 유보소득을 활용해 투자자금을 모으고 기업성장 기회를 마련 하는데, 배당에 관계없이 유보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기존보다 자금 압박이 커짐
-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으로 인해 주주의 세금이 증가하며, 투자보다는 배당의 유인이 높아져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킴

건의사항

- 초과유보소득 과세 폐지
- 폐지 불가 시, 배당 및 이자 등 수동적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세법개정안
의견제출(20.8.12)
초과유보소득 과세
간담회(20.10.27)

건의결과

반영(20.11.3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

건의요지

-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99년 적용대상 기준이 연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음
 -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영위 비용이 꾸준히 증가
-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현실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함

건의사항

-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4,800만원 → 8,000만원)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직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김경만의원 등 입법발의

(20.4)

건의결과

반영(20.11.30)

건의요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9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되어 운영중에 있음
 -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감면에서도 신청 기업수(115만개)·금액규모(2조원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2019년 기준
- 동 제도는 별도의 요건 없이 공제·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가장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몰이 도래함
 -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20년 → 24년)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20.11.30)

건의요지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적용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임
- 동 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조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함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인 세제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설비투자 경기 변동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세율 상향 필요

건의사항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3% → 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대상자산: 사업용 설비투자자산 - 세액공제율: 3%(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세액공제율: 5%(중소기업)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20.11.30)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건의요지

- 국내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은 정부 정책자금비중이 65.8%로 높은 반면, 은행용자가 25.4%, 캐피탈 및 엔젤투자 비중은 2.4%로 민간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국내에서 취약한 VC, PEF 등 민간주도의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강화해 투자자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시장에서의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소득공제 일몰연장이 필요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3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투자비용의 10%를 투자일 속한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적용대상: 벤처기업, 투자조합, PEF 등에 투자한 거주자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투자비용의 10%를 투자일 속한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적용대상: 벤처기업, 투자조합, PEF 등에 투자한 거주자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20.11.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건의요지

- 국내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은 정부 정책자금비중이 65.8%로 높은 반면, 은행용자가 25.4%, 캐피탈 및 엔젤투자 비중은 2.4%로 민간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창업벤처기업의 리스크가 높은 것을 감안해, 주식·지분 거래시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3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출자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감면 - 적용대상: 벤처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 법인 등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창투자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적용대상: 창투자 등에 투자한 개인 등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4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20.11.30)

건의요지

- 수도권역의 인구·경제력 밀집은 전세계의 전반적인 현상이나, 대한민국의 경우 그 정도가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극심함
 - 국내 수도권 인구집중률은 50%에 육박해, 10~30%대에 불과한 일본(도쿄권), 영국(런던권), 프랑스(파리권) 등 주요국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지역격차가 크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지방 실정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현행 세제지원은 최소한의 유인책이므로, 과세특례 일몰연장을 통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건의사항

- 일몰연장(2020년 → 2023년)
 - 지역격차가 크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지방 실정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현행 세제지원은 최소한의 유인책이므로, 과세특례 일몰연장을 통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61조, 85조의8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20.11.3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건의요지

- 상생결제제도도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어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
 - 19년 12월 기준 상생결제의 총 운용액은 누적 407조 8,687억원이며, 394개사의 대기업·공공기관이 동 제도를 도입하여 200,355개사가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이 우량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2020년 종료되는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일몰연장(2020년 → 2023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율: 상생결제 지급금액 X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 지급기한 16일~60일: 0.1%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율: 상생결제 지급금액 X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 지급기한 16일~60일: 0.1%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20.11.30)

건의요지

- 정부에서는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07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하였으나, 기업들의 인지부족 등으로 인해 적은 수의 기업들이 동 제도를 실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제도가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접대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하는 기폭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활용 실적은 저조하더라도 연장이 필요함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3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문화비 지출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접대비 한도액 20%내에서 문화비로 지원한 접대비비용의 손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문화비 지출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접대비 한도액 20%내에서 문화비로 지원한 접대비비용의 손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정부 세법개정안 반영 (20.7.22)

건의결과

반영(20.11.30)

건의요지

-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정보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도심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입지지원제도로 전국 97곳이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자료: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중소벤처기업부, 2016)
- 동 제도는 현재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초기 입주공간 및 시설조성 등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함
 - * 자료: 2023년 성남시 정자동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 예정(경기일보 2020.2)
-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업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어 집적화 및 창업감소 등 벤처기업 및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악영향 초래할 우려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4년)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20.11.30)

건의요지

- 창업 중소기업은 초기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 사업이 정책될 때까지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창업기업의 생존률은 창업 1년차 62.7%, 2년차 49.5%, 3년차 39.1%, 4년차 32.8%, 5년차 27.5%로 나타나며, OECD 주요국(핀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평균 창업 생존률 40.9% 보다 낮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 자료: 2018년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초기 기업은 부동산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발생하는 이익은 적어 자금난을 겪으며,
 - 이들 기업의 운용자금 또한 사업운영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더불어 세액감면을 통한 지원이 절실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4년)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세액감면율 · 취득세 75% · 재산세 50% ·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좌 등)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확대 및 일몰연장

건의요지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어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
 - 19년 12월 기준 상생결제의 총 운용액은 누적 407조 8,687억원이며, 394개사의 대기업·공공기관이 동 제도를 도입하여 200,355개사가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이 우량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2020년 종료되는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50% → 100%), 일몰연장(20년 → 24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 내용: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전통시장 상인: 75%)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 내용: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개별 업체별로 경제적 지위 및 기반이 취약함
 -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 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복돋우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공익성격의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법인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자조조직인 영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이 필요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4년)

현행	개정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 특례율: 당기순이익 과세율 0.9%(20억 이하), 1.2%(20억 초과)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 수급 차질, 내방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액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본회 조사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은 76.2%로 나타났으며,
 - * 자료: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20.5)
 -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납세 유예 등 경영활동 지원(50.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20)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등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외 요인들로 인해 경영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는 63.1을 기록함
- 중소기업의 경영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세정활동지원이 필요

건의사항

- 대내외적 위기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반영(20.6.9)

건의요지

-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됨
 -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유예,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할인 등 각종 우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됨
- 그러나 모범납세자의 우대기간은 표창일로부터 2~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등에서는 사실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세무조사유예 등 우대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음

건의사항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 성실납세,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반영(20.6.9)

건의요지

-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은 현지의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세제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이 현지 세무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지에서 우리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위로 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당한 세무애로 발생 시 해결방법이 제한적임
 - 부당한 세무애로 발생 시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경우 공식절차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현지 국세청에 직접 건의하기도 어렵고, 이를 호소할 다른 소통창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건의사항

- 국세청 차원의 현지 세무정보 제공
- 국세청의 외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을 위한 소통 및 가교역할 확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반영(20.6.9)

건의요지

-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급격한 매출감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음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규모 특례보증(약 5.5조원)* 실시
 - * 신용보증기금(1조), 기술보증기금(0.9조), 지역신용보증재단(3.6조원)
- 하지만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존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특례보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증기관에서는 기존한도를 초과하는 신규보증을 꺼리고 있어 현장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호소
 - 국내는 물론 전세계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종업원 인건비 지급,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를 위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신규대출이 불가피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불가능

〈자동차금형 제조업체 A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자금지원 해준다는 홍보를 믿고 은행에 신규 운영자금 (5억)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기존 담보대출 한도가 찻다며 거절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요청하였으나, 기존보증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추가보증은 기존한도 때문에 어렵다고 함

- 더욱이, 특례보증 지원은 거의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증재원 증액에 대한 논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경제규모는 IMF 외환위기 당시 대비 3.5배 성장하였으나,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는 2.2배 확대에 불과한 실정임
 - * 국내총생산(GDP): ('98년) 537조원 → ('19년) 1,913조원: 3.5배 상승
 - * 신·기보 보증공급 합산액 추이: ('98년) 32.8조원 → ('19년) 74.3조원: 2.2배 상승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금융위, 중기부 등

건의경과

건의내용 언론홍보 (20.5)

건의결과

반영(추경통한 보증확대)

- 또한 IMF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환율상승으로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던 반면,
-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인 위기로 내수기업은 물론 수출기업까지 전방위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필요

건의사항

- 특례보증의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해 기존 보증 이용기업인 경우에도 기존한도 외에 추가보증이 가능하도록 보증평가시스템 개선
-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많고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경편성을 통해 특례보증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금융위, 중기부 등

건의경과

건의내용 언론홍보
(20.5)

건의결과

반영(추경통한
보증확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기준 마련

건의요지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중소기업 60.3%는 올해 매출이 감소되어, 내년도 대출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내년도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평가를 '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금리 인상(31.3%), 대출한도 축소 (30.4%), 만기연장 곤란(15.5%) 등이 우려
 - *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관련 의견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2)
- 코로나 사태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시적인 것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기업귀책사유도 없음 → 매출부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할 필요
 - * 한국은행도 '금융안정보고서('20.6)'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신용등급* 하락시 공공기관 입찰 참여 곤란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공공조달시 적격심사항목에 반영(신용평가등급에 따라 30점~25점 차등 부여)
 - 조달기업의 67.5%가 최저등급(CCC) 바로 위 B등급에 분포*, 등급 하락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되어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기회 상실 우려
 - * 나이스 평가정보-기업 신용등급 관련 통계자료(2019년말)

건의사항

- 내년도 금융기관 대출 또는 보증 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 마련
 - 중소기업 51.7%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신용평가 기준 마련, 24.1%는 재무제표 위주 평가 개선을 희망
 -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하거나 비정량적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대안 필요
 - * 비정량지표: 업력, 경영관리 능력, 거래 신뢰도 등
- 공공기관 납품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별도의 입찰기준으로 평가(신용 등급항목 배점 축소 또는 제외 등)
 - 신용등급 관계없이 기술력 있는 업체는 조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 '20년 한시적으로 최저등급으로 하락한 업체에는 전년도 신용등급 적용 등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금융위

건의경과

국회/금융위
간담회 등 건의(20.12)

건의결과

반영(대출시 기업피해
없도록 완화 적용)

금융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건의요지

- 전년대비 올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76.7%
* 자료: 중기중앙회·경총, 중소기업 고용애로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2020.5월
- 코로나19 발생초기에는 소상공인과 내수기업에 피해가 집중되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4월 이후부터 그 피해가 수출제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
 - 중소기업중앙회가 매월 3,150개 中企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 2월 81.2에서 5월 60.0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6월 63.1, 7월 69.1로 다소 회복
-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유예)조치의 추가연장 필요여부: 추가연장필요(78.1%), 필요없음(21.9%)
 - 추가연장 필요내용: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71.5%), 대출만기연장(22.9%), 이자상환 유예(5.6%)
 -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유예) 조치 연장 필요 기간: 내년말까지 (51.5%), 내년상반기까지(28.1%), 금년말까지(13.5%), 내년3월까지(6.9%)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금융위

건의경과

금융위 간담회(20.7)

건의결과

반영(2차 대출만기금 추가연장)

건의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필요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공동보증 건의

건의요지

- 선박발주처(이하 '선주')는 조선업체(이하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 체결 시, 파산 등의 이유로 조선사가 선박의 건조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권이 선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 즉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요구
 -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이 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RG를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조선사를 대상으로 보증을 통한 RG 발급 지원
- 무보의 RG 부보율은 업체별 재무제표 건전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선수금(계약금의 80%)의 약 70%로, 전체 계약금의 56% 수준
 - 중소기업 조선사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지 않는 부분(이 경우 24%)에 대한 자체 신용 보증이 어려워, 수출 수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
- 또한, 업체별 보증 한도(최대 80억 원)가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선박 건조 계약 불가

건의사항

- 중소기업 조선사에 한하여,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무보)의 공동보증을 통해 선수금(RG금액) 전액에 대한 보증으로 수출 선박 수주 지원
 - RG 보증 확대에 대한 시중은행 위험부담 완화 위해, 선수금 계좌에 대해 에스크로* 제도를 통한 선박 건조 진행 상황 확인 및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시중은행 관리 체계 지원
- * 조선사의 선수금 활용을 은행이 통제하여, 선박 건조와 관련 없는 지출 방지 (선박 건조 관련 전문성 부족을 조선조합이 보완)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산업통상자원부 건의
제출(20.7.23)

건의결과

반영(20.8.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연장

건의요지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8만 7천명 증가했으며, 총 748만 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36.4%를 차지하며,
 -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률이 절반 이하로, 실직 시 소득이 아예 없어지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대부분이 계약 해지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기간제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13.7%에 불과하며, 대부분 계약해지 또는 비정규직으로 재연장되고 있음

건의사항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연장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20.3.2)

건의결과

반영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건의요지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혼여성의 20%는 결혼, 임신·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경험하고 있음
 - 실제로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3개 국가 중 최하위권(31위, '17년)으로 여성 고용창출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실업난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19년 하반기 기준 부족인원은 21만명이 넘고, 미충원율은 12.8%에 달함

건의사항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20.3.2)

건의결과

반영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건의요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설비투자는 2016년 설비투자의 4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감면이 허용되지 않아 설비투자에 따른 지출 시점과 조세지원시점(이월공제 시)이 불일치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 특례는 설비투자에 따른 지출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더욱 유용함
 - 또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경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감가상각 특례는 투자경기가 부진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투자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2년)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일부반영(20.11.30)

건의요지

- 세금포인트제는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됨
 - * 납세담보: 납세의무자가 징수수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담보
- 그러나 소상공인의 세금포인트 활용도는 극히 저조
 -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18년 포인트 활용률은 0.075%(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으로 낮은 사용 실적을 보임*
 - * 자료: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민주당 김영진의원실, 2019)
- 자진신고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므로 세금포인트 활용 증대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

건의사항

- 세금포인트 활용대상 확대
 - 정부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및 세금체납액 등 납부
 - * 신용카드 포인트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세납부가능
 - 대중교통비, 영화 및 전시 관람비용 등 활용 지원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일부반영(20.6.9)
국세청 세금포인트
쇼핑몰 개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및 적용제외 대상 확대

건의요지

- 최저한세는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나,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규모를 한정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짐
 -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투자, 고용, 경영안정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크게 확대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제도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지원제도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 최저한세 완화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감면분이 곧 투자 및 고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법인 7% → 5%), 적용제외 조문 확대

현행	개정안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 배제(조특법 제1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7%, · 중소기업 유예기간 1~3년 간 8% · 이후 2년 간 9% 	▶ 감면을 인하 및 적용제외조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5%, · 중소기업 유예기간 1~3년 간 6% · 이후 2년 간 7%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9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되어 운영중에 있음
 -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감면에서도 신청 기업수(115만개)·금액규모(2조원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2019년 기준
- 동 제도는 별도의 요건 없이 공제·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가장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몰이 도래함
 -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적용대상 업종확대(열거식 → 포괄식)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 폐업 이후에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자는 대부분 부도 및 사업부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대손금이 다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과도한 세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재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 폐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허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세액 공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자 - 요건: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 - 내용: 매출세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자(폐업자 포함) - (좌 등) - (좌 등)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R&D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인력의 인건비 포함

건의요지

- 기술탈취는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M&A, 지식재산권 매각 등)를 어렵게 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저해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킴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안전담 인력부족'(56.6%), '예산 부족'(52.9%), '보안시설 부족'(50.7%) 등의 순
- * 출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17)
-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보안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는 '보안전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은 부족

건의사항

-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인력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추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중소기업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더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중소기업의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에 큰 차이가 없어 조세제도가 신기술 개발의 충분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함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원천개발비 지출비율 공제의 경우, 코스닥 중견기업의 한도는 15%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10%를 적용받고 있음
-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 고도의 기술 인력에 대한 차등적 인센티브가 전무함

건의사항

-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개정안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율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 30% · 코스닥상장 중견: 연구·인력개발비 × 25% · 중견 및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 20%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율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 35% · 코스닥상장 중견: 연구·인력개발비 × 30% · 중견 및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 25%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건의요지

- 대주주 요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급증
- 대주주가 경영 목적으로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상시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대부분 기업 경영 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보유됨
 -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을 단일 누진세율로 과세할 경우, 주식 처분시점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완화조치 필요
-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시, 장기보유주식 또는 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참고

건의사항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장기보유공제 신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상 장기보유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토지 및 건물 등 - 공제율: 세대당 주택 수, 보유기간에 따라 8~80%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토지 및 건물, 중소기업 주식 - 공제율: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로 설정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 법인은 자본규모나 주식수가 작아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자 및 특수 관계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임
 - 현행 규정은 100주 있는 기업에서 4주만 가져도 대주주가 된다는 것인데 과연 비상장 중소기업의 4%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금액 요건은 이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비상장기업 대주주 기준 완화(지분율 3% → 50%, 시가총액 3억원 → 15억원)
 - * 2021.4월 이후 기준
 -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나 지분율 기준이 아닌 최대주주나 과점 주주로 한정하는 등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현실에 맞는 대주주 범위 재설정이 필요함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재활용폐자원 업종은 매입 출처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다수의 업종이 유통질서 문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거래 업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시장의 유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등이 도입되었으나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제도개선책 필요
- 동스크랩 유통업계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와 더불어, 스크랩 매출자의 소득세를 매입자가 일부 선취하여 정부에 대납하는 제도를 제안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매입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자의 세무 상 원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건의사항

-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를 통해 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 (부가세 및 소득세가 납부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자의 세무 상 원가 인정)

현행	개정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스크랩 소득세 선납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개편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2018년 기준 운전면허취득자 수는 약 3,200만 명으로 운전면허자격증은 5,100만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2%가 취득한 가장 대중화된 필수 자격증임
-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보통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일반교육과 달리 운전면허교육은 2012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상 교육용역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강생은 운전면허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함
- *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면세용역으로 면허교육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 과세로 전환

건의사항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포함(면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역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도학원 2. 자동차운전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역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도학원 2. (삭 제)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건의요지

- 자동차정비업의 특성 상 차량을 맡긴 고객이 수리·정비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무상으로 고객에게 대여하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으로는 고객에게 무상대차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어 정비업체의 영업 상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운행기록부 작성을 위해 고객에게 수리·정비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한 기록(출발지·도착지 등)을 일일이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음

건의사항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기간동안 고객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배제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제조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건의요지

- 개인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및 내수부진 지속 등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뚜렷한 업황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아울러 개인 음식점업뿐만 아니라, 중소식품제조업체 또한 인건비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타격이 매우 큰 업종으로, 이에 대해서도 경영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필요

건의사항

- 식품 제조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4/104 → 6/10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부가법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업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사업자: 8/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억 이하는 2021.12.31.까지 9/109 적용 ② 기타: 6/106 ③ 유흥사업자: 2/102 - 제조업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4/104 ② 기타: 2/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부가법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업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③ (현행과 같음) - 제조업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6/106 ② (현행과 같음)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항목 변경 및 공제율 상향

건의요지

- 재활용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 매입 후 중고차 수출 또는 고철, 부품 등으로 해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입분에 대해 재활용폐자원과 같이 3/103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나, 현행 제도에서는 중고자동차 공제율이 아닌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매입대상인 자동차를 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매입 후 해체·분해를 거쳐 제조·가공된 생산품(고철, 부품 등)을 매입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아 시정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중고자동차(공제율 10/110)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포함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폐자원 수집 사업자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자동차: 10/110 - 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폐자원 수집 사업자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포함): 10/110 - 기한: 2021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행 국세기본법상 정기 세무조사 면제기준 조문에 따르면 개인은 간편장부 대상자, 법인은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11년 최초 시행)를 2019년 말까지 지속 실시 중에 있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큰 괴리가 존재함
- 또한, 개인의 세무조사 면제 기준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수입금액 7,500만원에서 최대 3억 원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1억 원 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역차별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건의사항

- 세무조사 면제 대상 법인 매출액 기준 상향(1억원 → 10억원)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대상: 개인 - 간편장부사업자 법인 - 수입금액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대상: 개인 - 간편장부사업자 법인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중간예납·예정신고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배제

건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는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사업자가 정부에 대한 납세협력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임
- 세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에도 납세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건의사항

- 중간예납·예정신고 등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제외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포함)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②~④ (생략)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 제1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예정신고 등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제외)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②~④ (생략) ⑤ (삭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건의요지

-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현금 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조세수입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가운데, 중소기업 경기 부진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해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직전 1년 → 3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대상: 중소기업 - 요건: 당기 결손금 발생 - 한도: 직전 년도 납부한 법인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공제기간 확대 - (좌 동) - (좌 동) - 한도: 직전 3년간 납부한 법인세액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법인세법 제72조

소득세법 제85조의2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9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되어 운영중에 있음
 -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감면에서도 신청 기업수(115만개)·금액규모(2조원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2019년 기준
- 동 제도는 별도의 요건 없이 공제·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가장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
 -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영구화, 업종 규정 방식(열거식 → 포괄식)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 지특법 101조에 열거된 중소기업 - 감면율: 5~30% 차등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 대상업종 선정방식 포괄주의화 - 감면율: (좌 동) - 적용기한: 영구화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건의요지

-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자의 지역 근무에 대한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구인난을 겪고 있는 다수의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지방에 근무하지 않으려 하는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주거 관련 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체 근로자복지비용 중 주거비용 지출 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의 종업원기숙사 등에 대해 별도로 취득·재산세 감면하는 제도신설 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증대 기대

건의사항

-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중소기업 취득세 100% 감면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건의요지

-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는 본래 2012년까지 일몰이었으나 일몰기한이 폐지되었음
 - 그러나, 통합법인이 자산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취득세에 대한 조세지원은 본래 일몰규정이 아니었으나 오히려 2013년에 일몰기한이 신설되었으며, 2018년도 지방세 개정 시 감면율을 75%로 하향하여 세제 지원이 축소됨
- 취득세 감면혜택 축소는 법인전환 비용을 높여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상 반드시 필요한 법인전환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건의사항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확대(75% → 10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납부세제 '19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1.12.31. ▶ 중소기업(개인)과 법인중소기업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납부세제 '19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상향 및 최소납부세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최소납부세제 배제</u> - (좌 등) ▶ 감면율 상향 및 최소납부세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최소납부세제 배제</u> - (좌 등)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77조의3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건의요지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어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
 - 19년 12월 기준 상생결제의 총 운용액은 누적 407조 8,687억원이며, 394개사의 대기업·공공기관이 동 제도를 도입하여 200,355개사가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이 우량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2020년 종료되는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일몰연장(20년 → 23년)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율: 상생결제 지급금액 X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 지급기한 16일~60일: 0.1%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율: 상생결제 지급금액 X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 지급기한 16일~60일: 0.1%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건의요지

- 현행 매매 및 수출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자동차세가 100% 면제되고 있으며,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의 감면율 적용
- 최소납부세제로 인해 중고차 취득가액 2,857만원 전후로 취득세가 증가하며,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1.05% 수준
 - 신차 및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7%의 취득세를 부담하나, 중고차 구입 시에는 조세 전가로 인해 최대 8.05%(소비자 부담분 7% + 매매업체 부담분 1.05%)까지 세부담 증가
-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영세한 서민임에도, 오히려 신차 및 수입차 구매자보다 더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결과 발생

건의사항

-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최소납부세제 배제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취득·재산세 감면 시 감면율 85% 적용 - (적용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하 ② 지특법 7~9조, 11조 1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특례 제한 예외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지특법 제68조의 1항 추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77조의2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하였으나, 그만큼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급격히 증가함
 - 전체 사회보험 비용 대부분을 노사가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빠른 사회보험요율 증가가 지속되어 왔으며,
 - 특히 최근에는 사회보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보험요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빠르게 가중되고 있음
- 향후에도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험료 총 지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심화될 전망

건의사항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20.3.2)

건의결과

미반영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건의요지

-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18)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으나,
 -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2018년의 세무조사 추정액이 1조 5,216억원으로 2017년 1조218억원과 비교하여 49% 증가했다고 지적
 - * 자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도 높음'(19년 국정감사)
- 코로나19와 장기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국세청은 2018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그러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사전통지 예외규정이 있어 납세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함

건의사항

- 중소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세무조사 지양
-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그간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한도액 증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음

건의사항

-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하거나 교육이 필요함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세무쟁점이 발생했을 때 세법규정이나 적절한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국세청 차원의 세무컨설팅 지원이 필요
- 국세청은 법인 중소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정기·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제도를 확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건의사항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요건완화
 - 중견기업에서 소기업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 폐지
- 성실납세협약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완화
 - 지원대상 확대(매출액 3백억원 이상 → 1백억원 이상)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미비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 * 세무처리 절차와 및 의사결정 등 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통제기준 존재여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 일부 사유에 한하여 국세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에 한하여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
- 공사현장에서 공사 대금 수령 시 어음으로 받는 사례는 과거에 비해 축소 되었으나, 여전히 어음 발행이후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보전 받지 못한 하도급 건설업체들의 자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음수령으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어음발행 업체의 부도로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가 인정되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더라도, 통상 세무서가 납세자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건의사항

-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발행주체의 부도·파산 시에도 국세 납부기한의 연장이 무담보로 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그 사유를 추가 명시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 거래규모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임
 - '10.1월 제도 도입이후 의무 발급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19.7월부터는 직전년도 과세와 면세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됨*
 - * 자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2)
 - 과거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아니었지만, 제도가 개정되면서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소상공인은 현재 홈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 온라인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잘못 발급하거나 수정발급을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 및 안내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이 쉽고 정확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발급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 자료 제공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수입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
-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장기 내수침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는 제도 확대에 따른 부담을 느낌
 - 중소기업의 79.3%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
 - * 자료: 중소기업 세정세제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2)
- 동 제도는 과세관청의 확인 및 검증업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성격이나, 성실신고 확인에 수반되는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패널티 부과보다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고민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120만원 한도)가 가능하지만 영세 사업자의 비용을 전부 상쇄하지는 못하며,
 - 성실신고확인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패널티가 인센티브보다 상대적으로 큼

건의사항

-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성실신고 세액공제율 상향 (60% → 70%) 및 한도 상향(120만원 → 150만원)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세무처리와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가 상담 수요가 많이 있음
 - 빈번한 세법개정에 대한 이해부족(34.9%), 회계·사무 전문인력 부족(25.9%),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 서류복잡(25.1%) 등으로 어렵다고 응답
 - * 자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2)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는 비용 부담이 없고 접근이 쉬워 중소기업이 선호하나, 응답 및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 불편을 호소함
 - '18년 세법상담 응답률은 63%(271만 9,000건 중 172만 5,000여건), 통화 대기시간은 3분 2초로 중소기업의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 자료: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12)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전문상담인력 증원을 통한 응답률 제고 및 상담서비스 품질 강화
- 국세상담센터 상담채널 확대
 - 전화, 인터넷 게시판 이외에 카카오톡 SNS 등을 활용

건의요지

- 주류의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는 판매채널별(유흥, 일반가정, 대형매장) 유통가격이 상이하하여 다른 소매점(대형매장 등)에서 구입 재판매함을 방지하고자 소주, 맥주 RFID적용 위스키 대상으로 가정용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운영중임
 - 제조수입사의 관리비용 감소 및 주류유통 투명화를 근거로 2020년 3분기 내 대형매장용 용도구분표기 삭제하고 가정용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예정
- 용도표시제 축소진행에 있어 부분적 진행으로 제조수입사의 관리비용 축소효과는 미흡함(가정용 및 면세용 표시제 잔존으로 구분관리비용 잔존)

건의사항

- 면세용 표시의 경우 주세부과가 되지 않음에 일반유통경로로 흘러들어갈 시 국세 문제점이 발생되나 그 외 일반용 주류는 동일한 주세 및 부가가치세 납입으로 국세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아 탈세의 위험성은 낮기에 대형매장용 뿐 아닌 가정용표시 축소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인지세 납부의 연대책임 규정은 성실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부작용이 있음
- 건설업에서 수급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지세를 하수급인인 중소기업체(이하, 하수급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
 - 도급 및 위임 계약은 원도급 또는 위탁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 하수급인은 생존을 위해 수급인과 계약해야 하므로 인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
 - * 소유권, 임대차 및 재산권 등에 관한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수평적 관계를 토대로 인지세 부담에 관한 협의가 가능하여 현 규정에서는 문제가 없음
- 하수급인이 인지세를 모두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인지세 부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인의 인지세를 하수급인이 부담 하였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
 - * 18%('13) → 20.9%('14) → 22.1%('15) → 22.3%('16) → 22.6%('17) → 24.5%('18) (출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의무를 연대책임에서 균등배분으로 변경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급과세 부과 추진중단

건의요지

- 정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2016년까지 소득세법 제12조 5항 라목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 2017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이유로 개정되어 현재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 5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그런데 국세청은 특허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해 4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불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악용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비과세를 받았다면 인정해야 함

건의사항

- 2016년까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급과세 부과 중단
 -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세청 차원에서 일선 세무서에 소급과세 부과 중단이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세청

건의경과

국세청장 간담회
(20.6.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년 3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 4백만여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8.1만명 감소
 -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악화, 전년 동월 대비 9.1만명 감소
 - 5~299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비롯, 제조업과 건설업도 크게 둔화,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감소
 - 그러나 이러한 고용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전망
 - * IMF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3.0%)이 대공황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측
- 정부는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용 및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고용유지 인센티브 필요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의 경우, 인건비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건비 이외 임대료,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필수적인 기업경영 비용은 제외되어 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CARES Act에 의거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실시 중이며
 - * 미 의회는 3.27일 CARES ACT를 제정, 3,490억 달러 규모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신설, 미국 중소기업청은 미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PPP 대출 실행 시 보증 제공
 - 급여비용 이외에도 임대료, 전기료, 사회보험 등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
 - 또한, 대출이후 8주간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여 기업부담 경감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중기부 등

건의경과

중기부 회의(20.9)

건의결과

검토중

〈PPP 대출 주요 내용〉

(대상) 직원수 500명 이하 소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용도) 급여비용(급여, 유급휴가비, 건강보험료, 퇴직연금 등),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비용(전기 등)
 (규모) 월 평균 급여비용의 2.5배,
 (한도) 최대 1천만 달러(급여비용은 직원 1명당 연간 10만달러까지 인정)
 (금리) 1%의 고정금리
 (기간) 대출기간 2년
 (담보 및 보증) 중소기업청 100% 보증부 대출로,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지 않음
 (채무 면제) 대출 실행일 이후 **최초 8주간 사용액만큼 대출금 상환 면제**
단, 면제는 대출금의 적격용도시에만 가능하며, 직원수 감소 또는 급여 삭감시 감액

- 코로나19로 경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위기 극복의 관건은 기업이 ‘고정비용’을 어느 정도 감내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 고정비용: 생산 활동 중단 시에도 소요되는 임대료, 차입이자, 보관료 등
 - 대기업의 경우, 내부의 현금성 자산, 기존 자산 매각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유재원이 부족

건의사항

- 인건비 외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 고정 비용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K-PPP)을 신설하여 임대료, 사회보험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지출에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 필요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중기부 등

건의경과

중기부 회의(20.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05.1.1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전자어음 발행이 개시되었으며, 2014.4월부터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대상자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종전 종이어음 거래시 발행 및 유통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자어음제도가 도입·확대되면서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 수수료를 중소기업에 전가

<종이어음, 전자어음 수수료 비교>

구분	수수료		
종이어음	발행자·수취자는 일체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발행자의 주소가 지방인 경우, 일정액의 추심료만 지불)		
전자어음	발행	배서·보증	지급제시
	1,000원/건	1,500원/건	2,500원/건

- 중소기업은 어음결제로 인한 신용비(통상 3개월) 이외에 추가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통상 3~4회 배서가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어음 건당 8천원 이상 비용발생 추정
 - 개별업체로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의무발행대상기업이 25만여 개에 달하며 전자어음 지급 결제 건수도 연 2백만 건 이상으로 총 비용규모는 상당함
 - * 2017년 기준 10억원 이상 영리법인 기업체수: 245,885개(자료: 통계청)
 - * 전자어음 지급결제 건수(천 건): (2016)2,104 → (2017)2,130 → (2018) 2,094 (자료: 통계청)
 - 업종별 편차가 있지만, 자산총액 10억원 기준에는 영세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필요 있음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전자어음법/금융결제원 업무규약

건의처

법무부, 중기부, 금융결제원 등

건의경과

(20.7) 법무부 건의
(20.9) 금융결제원 건의제출

건의결과

검토중

- 한편 최근 호실적을 기록하는 국내은행*은 과거 종이어음 사용시 결제 이후 5년간의 의무보고, 관리 및 보관 등에 수반되던 경비를 절감하고 있음에도 전자어음 수수료 수익 수혜

* 2018년 국내은행 이자수입: 40조 3천억원(2017년 대비 3조원(8.2%p) 증가)

- 금융결제원의 업무규약 및 동 규약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는 참가은행과 전자어음 기술지원 사업자가 75:25의 비율로 배분하여 수익
- 전자어음 시스템 구축비용과 공용망 사용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은행이 이용수수료 수익의 75%를 수취하는 현 수익 구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 중소기업에 금융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전자어음법/금융결제원
업무규약

건의처

법무부, 중기부,
금융결제원 등

건의경과

(20.7) 법무부 건의
(20.9) 금융결제원
건의제출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 사태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2.12일 총액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발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한국은행에서 中企 금융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또한 확대하여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
- '20.1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행잔액은 16.4조원으로, 총한도(25조원) 대비 8.6조원 여유가 있는 상황
 - * '19.4월(13.6조원·최저치) 이후 증가세지만, '17.10월(17.5조원·최고치) 대비 1.1조원 감소
 - 여유분에 대해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적 비상조치를 위한 일종의 예비자금'이라고 밝힌 만큼, 국가재난 상황인 현 시점이 동 자금을 활용할 적기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회

건의경과

간담회 등(20.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여유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中企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적극 가동해 여유분 소진
- 작년도 기업의 실적악화가 상당부분 경기부진에 따른 것임을 고려, 운용중인 4개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
 - * 매출액, 수출실적 등
- 「지방中企지원 프로그램」 中 특별지원부문으로 '코로나 피해기업' 규정
 - ※ 특별지원부문 사례: ('15.6월/메르스) 5,500억원 등
- 은행의 대출실적에 대한 자금지원 비율 상향: (예시) 대출실적의 50% → 60%
- 필요시 과거 경기악재 발생과 같이 대출 총한도 확대: (예시) 25조원 → 30조원
 - ※ 총한도 확대 사례: ▶('08~'09년/금융위기) 3.5조원 ▶('97년/IMF) 4조원

건의요지

-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유동성 절벽 상황을 맞고 있음
 - 매출감소 및 경기악화 등으로 이미 문을 닫거나 잠정 폐업 상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 3차 대유행이 연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소진공에서 실시한(1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대출*은 2만명이 몰려 반나절 만에 3천억원 소진 → 소상공인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
 - 금융위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금리가 높고 대출심사가 강화되어 6개월간(5.25~12.4) 대출실적(3조원)이 목표(10조원) 대비 30% 수준

건의사항

-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금리*를 1차와 같은 수준(1.5%)으로 인하할 필요
- * 시중은행 대출금리(2~4%) 수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금융위원회 등

건의경과

금융위 간담회(20.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개성공단 가동중단('16.2)에 따른 생산기반 폐쇄로 많은 입주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고통도 가중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자금난으로,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생존기반 강화 필요
 - 거래관계 단절, 생산중단 및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려워 재기를 위한 투자여력이 매우 부족하며,
 - 가동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다른 분야보다 자금난이 심화되는 추세
 - * 가장 큰 애로사항 중 '경영자금난' 응답 비중: ('18) 39.4% → ('19) 61.1%
 - 자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2019, 중소기업중앙회)
 -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시설 및 설비 보수, 정부지원금 반환에 따른 자금경색 등의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세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경험보험 약관에 '개성공단 사업재개 시 재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 반납' 명시

건의사항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2020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20.3.2)

건의결과

검토중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세제지원(손비인정) 제도 도입

건의요지

-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84년에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자간 상호부조정신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대출을 통해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공제사업기금은 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력이 취약해 금융 접근성이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공제기금 대출기업중 50인 미만 기업 88.5%, 10인 미만 40.6%
- 다만, 계약자가 매달 납입해야하는 공제 부금은 수익성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입 및 유지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손금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현행	개정안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1. (생략) <신 설> 22.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 ----- ----- ----- ----- 1.~21. (현행과 같음)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7. (생략) <신 설> 28. (생략)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 ----- ----- ----- ----- 1.~27. (현행과 같음) 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9. (현행 제28호와 같음)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공제기획실

관련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검토중

노란우산 단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소득세 과세한도 신설

건의요지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및 폐업·사망 등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최후자금의 성격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부금은 본인이 전액 자부담하여 적립
- 그러나 가입 후 1~2년 내에 불가피하게 폐업·사망 등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납입원금에 비해 실수령액이 적은 문제 발생

〈공제금 수령시기에 따른 공제금 실수령액 현황〉

(단위: 천원)

지급일	납입원금 (A)	이자 (B)	원리금 (C=A+B)	퇴직소득세(D)		실수령액 (E=C-D)	차이 (F=E-A)
				국세	지방세		
2020. 1. 1.	5,400	79	5,479	157	15	5,306	△94
2021. 1. 1.	10,800	305	11,105	322	32	10,751	△49
2022. 1. 1.	16,200	684	16,884	497	50	16,337	137
2023. 1. 1.	21,600	1,218	22,818	681	68	22,069	469

* 주: 2019.1.1. 가입, 월 45만원 납입, 지급이율 2.7%, 연 500만원 소득공제 가정

건의사항

- 노란우산 소득세 과세한도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④ (생략) <u>〈신 설〉</u>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은 이자액의 11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⑥~⑧ (생략) <u>〈신 설〉</u>	⑥~⑧ (현행과 같음) <u>부 칙</u>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적용례) 제8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공제기획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검토중

노란우산 장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소득세 과세방식 변경

건의요지

-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 만기 부존재
- 따라서 사업자가 경영·일신상의 어려움이 생겨 자금이 필요한 경우,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면 임의해지 선택이 불가피
- 그러나, 공제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임의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부과하여 기존의 세제지원을 환수
- 또한, 실제로 소득이 부족하여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의해지 시 이자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에 따라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15.4%)에 비해 불리

건의사항

- 노란우산 소득세 과세방식 변경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③ (생략)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와 120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⑧ (생략)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⑧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공제기획실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세법개정건의 제출
(20.3.2)

건의결과

검토중

04

그린·환경



염색폐수 슬러지 에너지시설 사용[연료화] 조속 추진

건의요지

- 섬유염색업종은 공정과정에서 다량의 슬러지 발생하여 현재 매립장으로 처리하나, 최근에는 매립장 수용에 한계로 인해 수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처리비 폭등
 - 매립 이외 슬러지의 육상처리 방법은 소각과 재활용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염색폐수 슬러지는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염색폐수 슬러지도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동일하게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보조 연료로 사용하여 처리토록 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염색폐수 슬러지는 중금속 등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어 발전소 보조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건의사항

- 염색폐수 슬러지의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화) 조속 추진
 - 현재 슬러지 처리비 폭등과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공장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염색업계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염색폐수 슬러지의 화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화) 법 개정 조속 추진
 - ※ 환경부 장관 간담회(1.8) 개최 시 동 건의에 대한 환경부 답변: 폐수처리원 발생원별 발전소 연료기준 마련 연구용역 수행(~'20년, 과학원)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추진(~'21년, 환경부)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3]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반영(20.10.12)

건의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상 방치폐기물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방치폐기물에 비해 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 대상이 극히 한정적
- 더욱이, '20.5.27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개정으로 권리·의무 승계자의 범위까지 축소되어 동법 제40조제3항의 권리·의무 승계자 규정 형해화 우려
 - 개정된 법조항은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권리·의무 승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자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해 방치폐기물 관련자의 편법적 책임 회피를 사전차단 필요
 -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 방치폐기물 처리)제3항, 제12항 개정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3항, 제12항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반영(20.10.12)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건의요지

-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은 '01년도 소각시설 검사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소각시설 검사 시행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실시하는 소각시설 검사건수는 70~80건, 수수료 수입금액은 7~8천만원 정도
 - 그러나 점차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수입금액도 점차 감소되어 3명(책임자 1명, 담당자 2명) 운용 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동 조합은 소각시설의 재를 실험실에 가져와서 분석하는 강열감량 실험 진행
 - * 실험장비 및 기구를 갖춰 원활한 실험수행이 가능하다면 각 시설별 면적제한이 불필요하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사료됨

건의사항

- 검사건수가 많지 않은 중소 검사기관의 경우 책임자 1명, 담당자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
- 각 시설에 대한 면적규제 삭제 요청
- 폐기물처리기사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추가 요청
 - 소각시설 굴뚝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연관이 있음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 2]제2항, 제3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2]제2항, 제3항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20.9.4)

건의결과

일부반영(20.9.10)

건의요지

- 화관법 시행('15.1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항목이 확대되고, 기업 영업허가 조건, 개별 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가 강화됨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의 경우 소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완화된 66개의 기준을 적용받으나, 극소량 취급시설인 소매점만 일부 해당되고, 중소제조공장은 거의 해당되지 않음
 - 취급량 산정 기준이 실제 물질의 농도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여 실제 유해물질 사용량보다 과다 산정되는 문제 발생
- 또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완화된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이행지침(환경부 고시, '19.9 시행)도 여전히 기업현장 상황과 차이 많음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대상 부처를 산업부, 노동부 및 행안부 공무원으로 한정
- 아울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연간 120톤 이하에서 연간 사용량 100kg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영업허가 면제 대상 기업들이 영업허가 대상이 되면서 각종 경제적·행정적 부담 발생

건의사항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관련 '일일취급량' 정의 개선 (제조·사용시설 → 하루에 제조 및 소비한 수량)
-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 시 '가동개시 신고' 절차 도입(先신고-공장가동-後허가)
- 취급시설 미 이행 업체 1년간 처벌 유예 및 컨설팅 방안 마련
- 교육과정 이수 시,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 및 한시적 인정기간(~'23년) 삭제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중기부 공무원 포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 완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물질관리법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건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제46조에 따라, 농업기계 중 트랙터, 콤바인은 Tier-4('15. 1. 1일 부터) 엔진인증을 받아 공급
 - 수입하는 경우에도 엔진인증을 받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년도 11월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농업기계 수입 시 Tier-3 이하 수준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대기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외국 브랜드가 아닌 국내 중고·유통대리점 등의 엔진을 30대 이하로 수입할 경우,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엔진시험인 '적합시험성적서'로 엔진인증을 대체하여 엔진 공장심사 등의 절차 생략 가능하나, 엔진 제작사가 소량발주 등의 사유로 신규 엔진인증에 비협조할 경우, 농업기계를 새로 설계해야 함
 - 수입과 국내 제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인증생략 절차 마련이 절실함

건의사항

- 불법 수입 농업기계의 유통근절을 위해 시·도지사 권한 위임
- 수입 중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의 엔진인증 여부 조사
- 국내 소규모 농업기계 제작사 보호를 위한 인증생략 적용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건의요지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고,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을 수도권 이외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추진
- 주유소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유소 당 3,000만 원 이상의 과도한 설치비용 발생
-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5년(1~10월) 유증기회수설비에 대한 검사 결과, 설치 검사 시 저장탱크의 부적합률은 13.8%, 주유노즐의 부적합률은 10.3%로 전체 부적합률은 11.1%로 높게 나타남
- 인건비와 수수료 등 판매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판매·관리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거나 경영 악화에 따른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 설치대상 주유소의 판매량에 따른 설치기한 구분
-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시 설치비용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고시를 통해 Stage II 설치의무 추가 대상지역 중 읍·면·동 단위 인구밀도가 1,000명/km² 미만 지역은 Stage II 의무 대상지역에서 제외
- 주유소협회 등 사업자 단체에서 회수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관리권역법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건의요지

- '17. 10. 18일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검사 대상은 '18.1.1.이후 제작된 수도권 경유자동차
 - 새로운 검사기준 신설로 인해 검사정비업체의 신규 측정기기(검사장비) 구입·구축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비용 부담 예상
- 현재 '20. 1.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종합검사업체는 NOx 검사 장비를 의무로 '20.11.30.까지 구축해야 함

건의사항

- 장비 형식승인 절차 및 구입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수정 요청
-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 구축으로 변경
- 장비 구축기간 2년 유예 필요((현행) '20. 11. 30일 → (개정) '22. 11. 30일)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특정 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부과대상 품목에 플라스틱 제품 포함
- '16년 3,510개 사업장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739억 원 부과, 이 중 제조업체 1,054개의 부과액은 455억 원으로 제조 업체당 평균 4,300만원을 납부(폐기물부담금 운영결과 보고서, 한국환경공단)
 -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194개 대상 설문조사('17년) 결과 기업의 84.9%가 폐기물부담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17.9%가 폐기물부담금이 제조원가의 5%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
- 동 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수입 업체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폐플라스틱 발생에 대해 정확한 오염 당사자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원료 공급업자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플라스틱의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으므로 폐플라스틱 처리비용을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외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을 합성수지로 변경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재사용 용기 중 가정용으로 출하되는 제품의 경우,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박스가 아닌 종이박스 위주로 포장되어 출하됨
 - 보증금 취급수수료 인상 등 보증금제도 개선으로 재사용 용기의 회수율은 증가하였으나, 종이박스 운반포장재로 제품 출하가 늘어나며 종이의 특성 상 보관 운반 등 유통 중에 용기 훼손이 일어나 재사용율의 증가는 부족한 상태
 -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운반포장재로 재사용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해야하며, 다양한 규격의 플라스틱박스로 운영되어야 함
- 소매점 회수 시, 종이박스 또는 마대자루를 통해 회수되어 파병 및 재사용 불가 용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 그로 인해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손실은 도매업계 및 제조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재사용율 저해 및 업계 손실을 야기시킴

건의사항

- 재사용 용기사용 제품 출하 시, 재사용 가능 플라스틱박스 이용 제품출하 의무화 추진(일정 비율)
- 제조사가 소형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여 출하가능토록, 시설 개선 및 교체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건의요지

-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퇴비를 배출할 때에는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 정해진 부숙도 기준에 맞춰 살포 가능
 - 만약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관리대장을 미작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50~500만원) 부과
- 그러나 수분 함량이 높으면 부숙(발효)과정이 일어날 수 없어서 함수율 70% 기준으로는 변경된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가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 살포 후에야 비로소 부숙이 시작되며 가스 및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문제 발생
-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3 부산물비료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퇴비의 함수율 기준은 55%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바,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요망

건의사항

- 가축분퇴비의 함수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70% → 5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개정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별표 3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엔진오일 및 배터리 등 출장정비에 관한 단속 강화

건의요지

-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식 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대형 렌터카업체는 소모품 교환 서비스의 일환으로 엔진오일, 배터리 등을 교체해주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주로 주차장이나 도로 등에서 렌터카 소속 직원들에 의해 실시됨
 - 반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에서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엔진오일이나 배터리를 교체하면 동법 제66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2조에 따라 오일의 교환, 배터리의 점검·정비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렌터카 업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출장 정비가 만연
 - 이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인 폐엔진오일, 폐배터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건의사항

- 자동차정비업 외의 업자의 엔진오일 및 배터리 수집·운반이 제한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개정을 위해 부처 차원의 협조 요청
- 불법적 폐엔진오일 및 폐배터리 수집·운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강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아파트 등 공공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폐기물과 분리한 후 입찰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자가 이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폐기물을 포함시켜 판매하여 제지업계 및 원료업계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증가하는 상황
- 또한, 배출자가 폐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수집원가가 높아져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게 거래
- 현재 재활용업체는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폐지 발생량이 많은 연말이나 설 명절 전에 수집불능 사태가 발생 할 우려가 큼

건의사항

- 국산폐지 우선 사용제 도입
- 저품질 폐지 수입규제 강화
- 재활용수집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지원
- 국산폐지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재활용업 사업 부지허용확대 및 창고설치를 위한 건폐율 상향 조정(환경부-국토부와 협의)
- 부득이한 경우(ex.사용량 급감) 이의신청 등을 통해 행정처분 유예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및 비표준용기에 대한 유통업계 지원책 마련

건의요지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20조에 따라, 재사용 포장재와 폐기 또는 재활용 포장재의 관리는 구분하여 운영
 - ‘재사용 용기’는 제품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회수가 이루어지고,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에서 관리·지급하며,
 - ‘폐기물 및 재활용 용기’ 사용자는 재활용 관련 조합 등에 분담금 납입으로 대체하고 지자체 및 재활용업체를 통해 회수·재활용 되는 상황
- 그러나 실제 재사용 용기가 아닌 재활용 용기들이 재사용 용기 취급 도매업체에 유입되고 있어 일반유통 업체는 관련제품의 분리 및 처리업무가 발생하고, 외곽지역의 경우 처리비용까지 발생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표준용기 지정 및 사용등록을 운영하나, 오히려 비표준용기가 증가되는 실정

건의사항

- 유통업체 피해 경감을 위한 폐기물·재활용 회수체계 개선 모색 또는 일반유통업계의 폐기물·재활용 처리 업무에 대한 지원정책마련
- 비표준용기에 대한 추가취급수수료 지급방안 마련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0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상수원 보호구역 화학비료 사용 대체) 화학비료를 살포하였을 때, 물에 녹았다고 해서 전량 식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며, 흙속의 유효 미생물의 작용으로 2~3단계 변화를 거쳐 비로소 작물에 흡수
 - 화학비료의 주성분 중 질소질은 평균적으로 70% 유실되며 안산, 가리 성분도 거의 90%가 불용해성으로 흡수되지 못함
- 유실된 70%이상의 화학비료 성분은 강, 댐, 바다로 흘러가 강이나 댐 바닥이 썩고 바다에 적조현상이 나타나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의 문제 야기
- (농업용비닐을 친환경소재비닐로 대체)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 약 32만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상황
-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비닐들이 제때 수거되지 않고 있어 땅속에서 반영구적으로 잔존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 상대적으로 화학비료 성분이 적게 함유된 유기질비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급하거나 쿠폰 발행 등을 통해 농민이 직접 구매하도록 실시
- 환경보호를 위해 농업용 비닐을 친환경소재비닐로 대체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수도법」 및 「환경표지 인증」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업계는 KS기준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유지하려 매년 막대한 인증 관련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동일 시험항목에 대해서라도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또한, 환경표지 인증과 더불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절수등급 표시도 병행하고 있는 바, 이중 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 환경인증 신청 시 KS기준과 동일한 시험 항목에 대한 면제
- 환경인증 표시와 「수도법 시행규칙」상 절수등급 표시를 일원화(절수등급 표시할 경우, 환경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표시에 따른 업계 부담 경감
 - ※ 「수도법」시행규칙 제3조의 3 관련 [별표2의2] 개정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수도법」시행규칙 제3조의 3 [별표2의 2]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환경과학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하천녹조 원격모니터링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하천(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대한 조류농도 현황 조사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 발생
 - 현재 항공기를 이용하여 녹조발생 현황을 영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은 기상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항공기를 띄워야 하므로 녹조발생 실시간 조사 업무에는 활용도가 떨어짐
 - 또한, 다양한 하천관련 정보 및 주제도를 만들기에 비효율적이며, 촬영일을 기준으로 2~3일 후 결과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녹조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항공/드론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하천관련 주제도 생산방법 강구
 - 조류농도 현황 이외에 하천 주변 식생지도, 오염원(점/비점) 현황주제도를 작성해야하며, 파장대역이 확장된 초분광영상을 활용하여 하천 주변의 정밀피복분류도 작성 건의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사업은 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동·식물상 주제도, 토지이용현황도, 현존식생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할 뿐 아니라 국립생태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매뉴얼(‘19.3)」 지침도 준수해야 함
- 토지이용현황도, 현존식생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와 도면 편집 및 제작,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 등급도 작성과 유형분류(안), 등급도(안) 작성 등에 대한 책정된 용역단가가 과업량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행정구역의 범위가 넓은 지자체의 경우는 현장조사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고품질 성실한 자료 획득을 위해서는 용역비용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

건의사항

- 행정구역 면적을 반영하는 현실적 용역비 산정단가 기준 마련
- 지자체 단독예산으로 수행이 어려워 정부 예산 지원 필요
- 도시생태현황지도 신규 작성 시 현장조사, 자료 구축을 위해 24개월(2년)의 기간 필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연계 방안 마련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중국의 폐지수입 금지 조치 및 불량폐지 증가로 국내 폐지 값 하락에 따라, 폐지수거업체의 아파트 폐지수거 애로 → ‘폐지대란’ 발생
 - 이후, 폐지를 ‘수출입 신고 면제 대상’(현재 폐지, 고철)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기간: '20. 2. 20 ~ '20. 3. 10)
- 폐지가 수입신고품목으로 추가될 경우, 현 국제 폐지 품질수준에 규정되어있는 이물질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 수입폐지를 필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많은 양의 국산폐지 사용 감소 → 공급과잉 심화와 국내 폐지 공급업체 부정적 영향 불가피

건의사항

- 현 수입신고 면제 유지
- 불가피하게 도입 시 적용 품목 최소화 및 혼입기준 완화
 - 과도하게 설정된 혼입기준 완화(0.5% → 5%) 요망
- 국내 수급상황 및 혼합폐지 수입 증감 동향 등 검토 후 선별 추진
 - 제지는 장치산업으로 원료 안정 공급 매우 중요함에 따라 면밀 검토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정부는 올해 1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마련
 - 전기트럭의 경우, 지원 절차가 간편하고 선착순으로 선정함에 따라, 일반인들도 다수 신청하고, 보조금 및 영업용면허 허가 혜택부여로 대다수 지역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더 이상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 LPG 트럭은 보조금 혜택이 낮아 신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트럭 폐차를 전제’로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임에도 기존 경유차 보유 및 폐차 지원 절차를 요구하여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보유 노후 경유차의 폐차 절차 간소화
 - LPG트럭 지원 시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기트럭과 동일하게 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LPG 트럭 지원 금액 상향(400만원 → 600만원)
- 전기트럭 선정 절차에 중소기업 사업장·소상공인 우선선정 요건 추가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일부반영(20.9.25)

건의요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교육이 취소되는 사례 발생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교육인원 70명 이상이 될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해주고 있으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 교육인원 기준을 맞출 수 없음

건의사항

- 사업장 방문 교육 최소인원(70명) 요건 완화
-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현행	개정안
집합교육 16hr 또는 온라인교육 8hr + 집합교육 8hr (1회/2년)	집합교육 15hr 또는 <u>온라인교육 16hr</u> (1회/2년)

- '20년에 한해 2년 1회 교육의무 유예

*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 관련 교육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결 후로 유예됨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일부반영(20.10.12)

건의요지

- 재활용업체의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어 업계에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
 - 대기·악취·소음진동 등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각각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1차 개선명령(권고) 처분에 해당됨
 - 영세사업장의 근무인력 잦은 교체 등으로 단순 행정업무처리 미비사항, 재활용제품 등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한 경미한 관리기준의 일시적 위반에도 업계의 현실과 달리 강화된 행정처분기준 적용

건의사항

- 폐기물재활용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개별법의 행정처분기준과 형평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일부반영(20.9.25)

건의요지

- 환경유역청 및 환경공단 소속 직원이 매번 불시에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킴
- 아울러, 폐자동차를 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는 것보다 재활용 제고에 유리하나,
 - 폐자동차의 잔여물질을 법률에 따라 적정 재활용 후에 파쇄재활용업자 외에 제강사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과도한 재활용보고체계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법정 대상·비대상 차량이 혼재되는 등 재활용실적, 재고 등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 폐차 사업장 검사 시 사전 통보
- 폐자동차 잔여물질(차피) 인계의무 폐지
- 일본식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도입
 - 4대 물질 등 비유가성물질 보고체계 간소화, 재활용 처리비용 지원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일부반영(20.10.12)

건의요지

-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화평법이 '13년도 제정되어 '15년도부터 시행되어
 -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신고·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강한 규제로 산업계 부담 증가
 - 기존물질의 경우, 유해성 여부 등 정부도 하기 힘든 입증 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업체를 비용을 들이게 됨
- 국내 공인시험기관(GLP)에서 시험 불가능한 항목도 많아 해외시험자료를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함

건의사항

-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매년 100개 → 매년 2,500개)
-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준비비용 지원
- 국외시험자료 현황정보 및 구업 소통채널 구축, 공인시험기관 육성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0.1톤 → 1톤 상향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20.4.2)

건의요지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은 폐지, 고철, 폐의류, 폐전선, 폐포장재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서(신고증명서) 보유업체가 공개입찰(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로 턴키계약 체결하고 있음
 - 공동주택 발생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전선, 폐포장재는 타 업체로 재위탁 가능하나, ‘폐의류’는 재위탁이 현행법상 불가능
- 그러나 폐의류의 발생량이 소량이고 재위탁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차량, 처리시설 등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폐고철 등 처럼 재위탁하고 있음
 - 또한 폐의류가 재위탁 불가능 품목임을 이용, 재활용사업자간 고발로 업계간 갈등 심화

건의사항

- 폐의류의 재사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③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 4. 폐전선 <신 설> ⑥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③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 4. 폐전선 5. 폐의류 ⑥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삭 제)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일부반영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순환골재 삭제 요망

건의요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에 따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토양·지하수·하천 등의 매체와 직접 접촉 시 환경에 무해하다는 명확한 증빙과 내용이 없어
 -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직접 접촉 시에는 사전 검토가 필요함

건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내용 삭제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5.15)

건의결과

일부반영(컨설팅 지원

확대 및 시설 개선자금

마련 추진 중)

건의요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폐기물처리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함
 -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규정

건의사항

- 과징금의 산정 근거 명확화
 -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을 겸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비 이외의 매출이 과징금 산출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취지 부합하는 행정처분 도모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5.15)

건의결과

일부반영(자기부담금
완화 및 무사고 할인을
도입과 보험요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건의요지

- 최근 중국의 폐지수입 금지 조치 및 불량폐지의 증가로 국내 폐지 값이 하락함에 따라, 폐수거업체가 아파트 폐지수거 애로 → 정부에서 혼합폐지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 발표(2. 17일)
- 수입 폐지 운반에 3개월 소요되며, 통관 지연으로 인해 기초소재 공급 문제 발생 시, 원자재수급계획 및 공장가동에 차질 발생 → 결국, 수요처 수입품 전환까지 영향 미침
 - 기 발주된 물량을 반출할 경우, 수입업체와의 분쟁 발생 우려

건의사항

- 전수조사 시행(2. 21일) 전 발주된 필수 물량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20년 상반기까지 적용 유예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을 감안하여 기 발주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유예 요망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18. 12.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기존살생물물질”로 정의*하였으며, 화평법 제3조 제14조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기존살생물물질은 '19. 6. 30일까지 사전신고를 통해 승인 유예를 받은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화평법 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도 해당하는 경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종료에 따라, 다수의 물질이 신규유독물질로 지정되어 화평법·화관법 등 이중규제를 받게 될 우려

건의사항

-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화평법」 대상에서 제외
- 「화학제품안전법」 승인 유예기간 내에는 유독물질 지정 보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의 사후조치(유해화학물질 표시, 수입신고 등) 유예기간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까지 보류되도록 조정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화평법」

제3조제14항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 위반 시 본래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 등에 해당하여 위반사항을 개선조치 후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으나,
 - 적합성 확인 요건에서 ‘제13조 및 제13조2 충족’이 포함됨에 따라, 부적합 사유가 되어 곧바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
-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합성 확인 과정 중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시정조치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시정조치 기회도 없이 ‘부적합’ 처리됨
 -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에도 적합성 확인의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건의사항

- 적합성 확인의 요건미비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시정조치 근거 마련
 - 개선 가능한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통해 수정·보완·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개선기간 부여
- 적합성확인 신청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 근거 마련
 - 적합성 확인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에 따라, 적합성 확인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 2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재사용 빈용기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건의요지

- '09년 주류제조사간 소주 및 맥주병의 원활한 재사용을 위해 표준용기(공용병) 사용 협약 체결 이후, '10년도에 자원재활용법에 표준용기를 명시·운영했으나, 제조사들이 비표준용기 사용이 지속 증가됨
 - 제조사는 비표준용기에 대한 선별비용을 제조사간에만 별도로 협의하고 지급하며, 선별업무만 전가
- 또한, 제조사가 종이박스로 판매함에 따라, 자연스레 종이박스로 회수되는 용기조차 플라스틱 박스로 반환하기를 강요하며 반환 거부(지역, 제조사별 상이)
 - 이처럼, 가정용 도매 유통사는 불합리한 재사용용기 회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매사의 '취급수수료 산정기준'과 '준수사항'이 상충

건의사항

- 표준용기 미사용 제조사(제품)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 표준용기 사용의무화 등 비표준용기 사용에 대한 패널티 제도 운영
- 유통업자의 제조사별 선별의무 삭제, 제조사의 재사용용기 반환거부 금지조항 신설
 -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 개선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재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시 유독물질로 지정되는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및 화학물질의 명칭만을 공고
 - 이런 경우 물질의 등록자가 아닌 하위 사용자들의 경우는 해당 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유독물질 지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황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등에 유독물질 화합물과 혼합물 함유 비율기준이 고시되나, 이러한 수치들이 어떤 근거를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인지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

건의사항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시 '시험항목 및 결과 값' 등 지정 근거 명확히 제시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상 화합물과 혼합물의 함량 기준 근거 제시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건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5. 2일)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50%까지 강화되었으며, 곧바로 '20.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시간 및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
- 특히, 소규모 섬유염색가공 업체(50개사)들이 협업화 단지를 구성하여 조업에 필요한 열원을 개별 보일러 없이, 조합에서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섬유염색 업종의 장기적 불황과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도산 및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50개 회원사 조업 중단 시 전체 약 3,500명의 종업원이 실직할 위기
- 방지시설 교체를 위해 막대한 투자비용(약 100억원) 발생이 예상되나 '18년도에 약취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업체별 약 4~5억 원을 투자하여 더 이상 조합의 방지시설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가 불가능한 상태

건의사항

- 공동 배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 배출시설 지원한도 폐지
 -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한도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에 대한 금액제한 폐지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하는 품목에 녹색제품 (콘크리트제품의 경우 환경표지, GR 인증 제품 해당)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천연골재와 달리 순환골재는 수급의 불안정과 공급업체별, 제품별 품질의 편차가 큼
- 녹색 인증을 받은 업체들도 천연골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음
- 순환골재의 사용여부와 비율로 결정되는 환경마크의 인증은 골재수급 문제와 콘크리트제품의 내구성을 위해 반드시 개선 필요

건의사항

- 환경표지대상제품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별표1] 개정

현행	개정안
1.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다. EL241.~EL244. (생략) EL245. 투수 콘크리트 제품 3. 복합용도 및 기타 EL745. 블록·타일·판재류	1.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다. EL241.~EL244. (생략) EL245. (삭제) 3. 복합용도 및 기타 EL745. 블록·타일·판재류(콘크리트제품 제외)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미반영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 지원

건의요지

-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19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 안전과 경제 대응에 적극 대처
 - 서울시에서도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 방지시설 지원 공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는 자부담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그러나 서울시 및 지자체는 방지시설 지원 신청사업장의 지원 사업 심의 과정에서 방지시설 설치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
 - 이에 따라, 사업장 마다 방지시설 자부담 비용 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로 인한 약 1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위와 같이 방지시설 자부담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는 비용부담으로 인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 기존방지시설 신청자(사업자)의 취소가 급증하는 실정

건의사항

-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지원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및 그에 따른 '시설 설비' 비용도 환경 지원책(90%)에 포함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미반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완화

건의요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2018. 4. 25일 시행)」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 이후,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수도권) 및 대기환경오염농도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5등급 차량운행제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 비상저감 조치 경보 시 적용지자체 구역 내 5등급 경유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일반 경유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영세중소업체의 경우, 경영여건 상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예산 소진 등으로 차량개선 불가 시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
 - 중소유통물류(배송)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공급업체 등에 납품기일 등을 맞추기 위해 경우에 따라 5등급 차량운행도 필요함

건의사항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중소유통물류업에 대한 처벌완화 요청
 -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엔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 지자체별 지원비중이 상이하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중소유통물류업체 차량에 한해 과태료 감면 또는 조건적 과태료 감면(50%~100%) 제도 운영 검토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환경부고시 제2018-58호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오염물질을 측정(자가 또는 대행)해야 함
 - 현재 자동차정비업은 4·5종 사업장임에 따라 반기마다 1회(연 2회) 측정해야하나, 측정비용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소요(지역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19년도 하반기, 다수의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측정이 어려워 환경부도 이를 인정하여 측정 의무를 '20년도 상반기로 유예
 - * 「대기배출시설의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환경부공고 제2019-900호, '19. 12. 2)」
-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20년 상반기에 측정을 2회(유예된 '19년도 하반기 1회, '20년 상반기 1회) 중복 실시*해야 하므로 이는 행정적 낭비

건의사항

- '20년도 1분기 내에 측정한 경우, 유예된 '19년도 하반기 측정의무와 '20년도 상반기 측정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현행	개정안
환경부공고제2019-900호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19년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기간: '20년 1월 1일~'20년 6월 30일	환경부공고제2019-900호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19년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기간: '20년 1월 1일~'20년 6월 30일(다만, '20년도 1분기 내에 측정한 경우에는 '20년도 상반기 측정의무로 같음한다.)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종이팩·유리병 등의 재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을 위반 시에는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 등이 중단될 수 있음
- 그간 국내에서 폐유리병은 색상여부를 불문하고 상당부분이 재활용되고 있었으나,
 - 최근 행정예고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원활히 재활용 처리되던 색상 폐유리병에 대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18년도 기준 유리병 생산량은 약 74억병(638,585톤)이며, 이 중 화장품병은 약 1억 5천만병(13,700톤)으로 유리병 전체 생산량의 경우 2.1%를 차지
 - '18년 기준으로 전체 유리병 중 무색 유리병 생산량은 약 20만 톤이며, 화장품병을 포함한 무색 폐유리병은 81%로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별표1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서 유리병 포장재의 몸체에 관한 기준 제외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
- 갱도 굴진 광산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굴진 진행에 따라 갱내로 유입된 지표수가 갱도를 거쳐 배출되게 되면, 폐수로 규정되어 동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하고,
 -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배출되는 양에 따라 1종~5종 사업장으로 나누어 허가를 득해야하고, 그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
- 갱도를 거친 지표수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나온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갱도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건의사항

- 부득이하게 갱도를 거치는 광산의 배출수와 같은 경우, 폐수 제외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제3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3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여야 하는 자는 장부 기록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
- 다만,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등 별동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함

건의사항

- 단서 조항을 악용한 폐기물의 편법 처리 방지
 - 폐수처리 업체 등이 농경지를 매입 또는 임대한 후 자가 처리 한다는 명분하에 해당 농경지에 편법으로 폐기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경지 오염 등 방지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5.1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의한 화학물질 공동 등록 및 유해성 심사 후 유독물질 지정이 급속하게 확대됨
 - 최근 3개년('18~'20년) 동안 총 188종의 신규 유독물질 지정
- LCD Glass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가 신규 유독물질로 빠르게 지정되고, 화평법 개정 이전부터 취급한 경우에도 화관법이 소급 적용되어 LCD Glass 제조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관련 기존 취급시설 소급적용 제외
-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별도로 취급시설 기준 완화 방안 마련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시기 최대한 유예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에 따라, 비용을 투자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취급시설 개선 등 화관법 준수에 적극 노력해왔음
 - 그러나 화관법 고시마다 상이한 세부 기준이 총 413개로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대비 평균 35.8% 감소, 공장가동률(63.4%)도 전년대비 평균 26.8% 감소함에 따라, 화관법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취급시설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화관법 관련 시설 개선 시 보조금 지원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물질관리법」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건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에 따르면, 배출 시설 혹은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 후 가동하려면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
- 대다수 영세업체인 유기질비료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올해 말까지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
 - 특히, 유기질 비료는 하반기 10월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비축한 후 주로 다음해인 1월~4월에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품생산과 시설개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 현행법령 적용 시 내년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건의사항

- 올해 말(20. 12. 31)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가동개시 신고 1년간 유예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건의요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신설, 영세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
 - 단,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 감면 가능
-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소기업에 국한, 중기업은 감면대상에서 배제

건의사항

-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현행	개정안
1.~3. (생략)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 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인 경우 (감면비율 100%) 나.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인 경우(감면비율 50%)	1.~3. (생략)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400억원 미만 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인 경우 (감면비율 100%) 나.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인 경우(감면비율 50%)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별표5]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계기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거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 그러나 염색업체 일부 공정에 소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종임에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매년 6월 30일까지 수백~수천만 원의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 또한, 공단 내 입주업체에 약 30%에 해당하는 환경책임보험료 부과와 공단 입주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방지사설에 또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되어 결국 공단 입주기업은 130%의 보험료 납부

건의사항

- 비산, 폭발 가능성이 낮은 유독물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경감
- 공단 내 입주하여 공동방지사설 이용하는 개별업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 대하여만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소유로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동 업체 대기관련 시설에도 보험료가 책정되나 형평성에 문제 발생
- 보험개발원의 조속한 환경책임보험료 요율 개선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은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후 승인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기존살생물물질 중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의 경우 승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22.12.31까지는 물질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물질승인 적정성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의 18개월 전인 '21.6.30까지 승인신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승인유예기간까지 승인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야 하나, 코로나19로 현재 물질공동등록협의체 구성 후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건의사항

- 살균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및 이와 연계된 살생물제품과 처리제품의 승인유예기간 2년 연장('22. 12. 31까지 → '24. 12. 31까지)
- 승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매우 촉박한 살균제 등 물질의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가 2022년까지 제출이 되었을 경우 '완결성 검토'에 기반하여 승인 통지를 선행하고, 추후 '정확성 검토 및 보완통지' 하는 방안 검토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배합사료에 곤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건의요지

- 현재 곤충사료로 활용되는 동애등에 곤충粉과 오일을 10톤/일 생산하는 공장 가동하고 있으며, 단백질(56%) 및 향균물질(라우르산, 헥사디올리산)이 함유되어 있어 사료로 적용성이 높음
- 정부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을 만들었으나, 양식장의 75%가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이 낮고 먹이효율이 좋다는 이유로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음
 - 하지만 생사료에 비해 동애등에粉 가격은 약 4.7배, 어분대비 약 1.8배 높게 형성되어 사용하지 않는 상황
- 농촌진흥청의 축산시험 결과, 곤충사료 첨가 시 이유자돈 사료 내 생산성(증체량 25%) 및 소화율(사료효율 13.5%) 증강효과 검증

건의사항

- 동애등에 곤충사료 粉과 오일을 배합사료사업에 첨가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사업 추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농가의 곤충사료첨가제 구매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환경부, 곤충을 활용한 음식물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확대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을 신고·등록하도록 확대
- 아울러, 정부는 사업장의 지속된 건의로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및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기업의 등록 부담은 여전히 막중

건의사항

-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2년 연장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필요
- (신규화학물질) 국제기준(EU, 일본 등)으로 등록대상 완화
 - (현행) 0.1톤 이상 등록 → (개정) 1톤 이상: 등록 / 1톤 미만: 신고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평법」 제10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일 최대 폐수를 0.1m³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폐수배출 시설로 분류(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되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법 제35조)해야 하며, 두부 제조시설도 포함
 - 두부 제조시설에서 배출하는 공정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아 배출량과 관계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음
- 동법 시행된 이후 국내하수처리시설이 크게 늘어 폐수처리 역량이 증대되었고, 배출량에 비해 크게 유해하지 않은 공정수를 배출하고 있는 두부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개정이 필요

건의사항

- (1안) 두부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공정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폐수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
- (2안) 폐수배출시설의 1일 최대 폐수량 기준 상향 조정 등
 - (현행): 20m³ 이하 → (개정): 50m³ 이하
 - 콩 세척수의 오염가능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세척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건의(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폐목재는 ▲사업장폐목재, ▲건설폐목재, ▲생활폐목재로 분류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장·건설폐목재는 재활용성, 경제성이 높아 ①에너지재활용시장과 ②물질재활용시장에서 3:2비중으로 소비됨
 - 한편, 폐목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에너지재활용시장에서의 수요가 급감
- 이에 따라, 물질재활용시장의 일부 파티클보드 생산 대기업에 의한 수요 독과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시장단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발생할 우려

건의사항

- 폐목재에 대한 REC 가중치 배제 재검토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산업부 고시 제2020-4호,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20-1호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17)

건의결과

미반영

현행	개정안
<p>[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교</p> <p>11.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건설현장 폐목재,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 적용 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교</p> <p>(삭제)</p>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 개정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 발생
 - 이에, 일부 업체는 마스크에 분사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항균 스프레이를 개발
- 스프레이 출시를 위해서는 인체 유해 여부 파악을 위해 안전성평가연구원 승인이 필요하나,
 - 안전성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동물시험 등 평균 4개월이 소요되고 기접수된 과제가 많아 검사 시행이 지연

건의사항

- 안전성평가연구원의 검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협조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서면건의(20.3.24)

건의결과

미반영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건의요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의하면,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등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투입 총 연료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나,
 - 염색공단 공동폐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에만 총 투입 연료의 0.5%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열병합발전소는 화력발전소와 동일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 중으로, 슬러지 열병합발전소에만 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화력발전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남

건의사항

-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염색폐수 슬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개정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현행	개정안
▶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건의요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 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 처리량’ 조사를 실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 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
- 한편,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할 경우 환경부에서 공지하는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에 따라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으나,
 - '99년에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고시(제1999-109호, '99.7.8)한 후, 1회 재산정 공지('08.12.24)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산정 및 공지 미이행
 - 따라서 현실과 달리 과다하게 산정되어 축산농가가 위탁 계약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 사육여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축별 배출원단위 재산정
 -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가 과하게 설정되어 있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위탁처리업체 모두 처리비용 부담이 되므로 배출원단위 현실화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물환경보전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건의요지

- 현재 자원순환 성과관리 실적보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법적보고의 제출기한은 3월 31일까지임
- 그러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조사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에 대한 법적 보고 제출기한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될 경우, 3월에만 법적 보고 건수가 4건이 되는 상황
 - 현재 대기업에 비해 조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보고 제출이 3월에 몰리게 되면 환경관리인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됨

건의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조사는 2월 28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5월 31일까지로 개정 요청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63조제3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63조제3항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20.9.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은 1985개로 이 중 약 40%인 803개가 화평법 시행 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 개정 화평법('19. 1. 1일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진행 시, 현재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될 경우,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을 평가·지정할 때 유해성으로 판단하여 일본, 유럽 대비 취급 규제를 받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 해외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취급 규제를 두고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및 모니터링 수준으로 관리(유럽의 CLP 규정, 일본 취급량 보고)
- 유해화학물질 평가 기준 中 물벼룩, 조류 독성의 경우, EU REACH에서는 불용해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면제 조항이 있으나, 국내 화평법은 최대한 용해 및 노출을 유도하여 불용해된 물질 영향까지 평가하도록 함

건의사항

- (1안) 유해화학물질 분류 항목에서 유해성을 기준한 유독물을 삭제하고, 및 4가지(제한, 금지, 허가, 사고대비물질)분류로 관리
- (2안) 1안이 불가할 경우, 모범인 일본법과 동일하게 '급성 경구 독성' 기준으로 특정 유해물질만 유독물 지정 요망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건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규정
 - 자동차 종합 및 소형정비업의 경우 오염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제4종~5종 배출구에 해당되어, 자가 측정은 반기마다 1회(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제4종~5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자가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제반시설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자가 측정하고 있는 상황이나, 측정대행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인해 경영 부담으로 작용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측정 및 시행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의 경우, 소규모사업장(20인 미만)에 한하여 측정·진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통해 사업장 경영부담 최소화

건의사항

- 제4종~5종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가 측정 지원 사업 신설
- 제4종~5종 배출사업장의 경우, 자가 측정 기준 완화(반기 1회 → 연 1회)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현행 자동차종합검사업무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만 가능하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및 경력보유자 종합검사업체 근무 불가(정기검사업체 근무는 가능)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3.가.
- 종합검사업무는 부하검사를 제외하고 정기검사 업무와 동일하며, 배출가스 부하검사는 장비검사로써 장비사용 숙련도가 중요함
- 현행 종합검사 책임자 자격조건에 정기검사원 경력(5년)은 인정
- 종합검사업체에서는 정기검사(종합검사 배출면제) 대상차량 검사(약 44%) 시행 중 → 약 56% 종합검사차량으로 인해 기능사자격보유자 근무 불가

건의사항

- 종합검사 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요청: 기능사 + 검사원 경력3년 추가
-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써 정기검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종합검사 기술 인력으로 근무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현행	개정안
자 격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증을 소지한 사람 〈신 설〉	자 격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증을 소지한 사람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취득 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정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친환경 언더코팅 작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건의요지

- 자동차의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것(이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공간인 부스 안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함
 - 도장 재료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배출 위험이 상이한 바, 예를 들어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의 경우에도 재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 유발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작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 언더코팅: 자동차 하부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방진 등을 위해 밀바탕을 칠하는 작업
- 최근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언더코팅을 도장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함에 따라 전문자동차정비업체에서는 해당 작업이 불가

건의사항

- 친환경 도장 재료를 사용하는 언더코팅 작업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
 - 기타 분진·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벌 강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현행	개정안
<p>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p> <p>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 오염배출시설</p> <p>가. 배출시설 적용기준</p> <p>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p> <p>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p>	<p>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p> <p>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 오염배출시설</p> <p>가.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차) 붓이나 롤러 또는 유기용제를 포함하지 않은 실리콘재질의 재료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p>

건의요지

- 환경부는 '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의무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환자원 인정 시 혜택은 없고, 기업의 의무사항만 늘어나 재활용 업체들이 순환자원인정에 소극적임
 - 본래 폐기물을 일반원료처럼 사용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현실은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되는 상황이며, 순환자원인정을 통해 질 좋은 재활용원료를 확보하려는 동 법의 제정 목적과 어긋남
 -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수출할 경우 제품 자체의 인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 업체의 순환자원인정이 취소됨
- 동법은 순환자원 사용촉진책으로 '순환이용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을 사용토록 고시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운영하여 실효성이 없음
 - 사용에 대한 의무는 없고, 생산자가 매년 생산 및 판매실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등 엄격한 규제만 증가하는 상황

건의사항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재활용업체에 대한 투자·세제 등 실질적 자금 지원 방안 마련
- 순환자원 이용사업자가 생산된 순환자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제품 수출 시, 인정취소 규정 변경
 - (현행) 업체 순환자원 인정취소 → (개정) 제품 순환자원 인정취소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들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 의무화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회사 명의일 경우 전용운행증, 지입 또는 용차 계약시 임시 운행증을 발급받아야 운행 가능
- 현재 일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 및 재활용된 제품(물품)을 용차계약을 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매립, 불법유통 등이 발생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폐기물처리업 관련시설을 방문하는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무단투기, 매립, 불법유통 등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업 관련시설 방문 차량 등록제 실시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 “축산차량 등록제*”와 같은 제도 시행 필요
- * 축산차량등록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근거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자원순환기본법」시행(’18. 1.18)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신설, 영세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
 - 단,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 감면 가능
-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소기업에 국한, 중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결과 초래
- 환경부 연구자료(’17년)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1.5%, 500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배출량은 전체의 약 11%에 불과
 - 소수 대기업의 폐기물 소각·매립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 제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설정한 바,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또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매출액 감면기준 상향 조정 필요

건의사항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5]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개정
 - (100% 감면) 매출액 10억원 → 50억원 미만
 - (50% 감면) 매출액 120억원 → 500억원 미만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5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환경부 장관 간담
(20.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르면,
 - 농업용수의 경우, 직·간접 식용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지하수 충전용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수질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용 가능토록 규정
- 식품첨가물 제조는 수돗물 외의 용수를 사용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사용토록 규정
 - 그러나 재처리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이용수의 사용이 미진한 실정

건의사항

- 재처리수의 용도에 ‘친환경대체용수(식품첨가물 제조공정 용수)’ 추가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재처리수의 대외적인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용수(식품첨가물 제조공정용수)로 사용가능토록 개정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의 경우,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 이상의 부숙시설,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등은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하나,
 -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 200kg미만인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없이 구입·설치 가능
- 아울러, '부숙'은 '썩혀서 익히는 것', '부숙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로 한정
 - 그러나 현재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법으로 제작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보급하고 있어, '부숙'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남

건의사항

- 설치 허가 조건 완화: 1일 재활용능력 (현행) 100kg → (개정) 200kg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확대
- '부숙'의 정의를 동법 [별표5]와 통일화
 - (현행) 썩혀서 익히는 것 → (개정) 발효 또는 발효건조방법 등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동법
시행규칙 [별표5]

건의처

환경부

건의경과

중소기업환경
정책협의회(20.9.25)
환경부 장관 간담
(21.3)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국내 친환경자원인 폐유지류(폐식용유, 우지·돈지 등)는 연중 거의 균일하게 발생되어 재활용처리 제품화(BD 주원료)되고 있으나,
 - 현재 BD 의무 혼합량이 연간 총량제로 되어 있어 BD 제조사는 정유사 요구에 따른 수밖에 없고 국내 폐유지류가 연간 균일하게 이용되지 않는 상황
- 폐식용유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약 20만 톤 내외로 BD 의무사용량(약 70만톤)에 비해 절대량이 부족함에도 BD사의 갑질 행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 동식물성 재활용유지인 우·돈지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에너지 산업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

건의사항

- 바이오 디젤(BD) 원료로 국내산 ‘폐식용유’ 최우선 사용(연간 균일사용)
- 동물성 재활용유지(우·돈지)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5% 이상 및 바이오중유 3% 이상 의무사용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상수도 시스템은 3단계(취수 및 도수계-송수계-배수계) 계통, 4개관(도수관-송수관-배수관-급수관)으로 각 단계마다 오염 없이 정수된 상태로 수돗물이 공급되어야 하나,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상수도관의 13% 차지하여 수질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금속관인 덕타일 주철관이 전국 상수도관의 큰 비중[도수관(26%), 송수관(52%), 배수관(48%)]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식 및 전식으로 인해 수돗물의 붉은(녹), 이물질 함유, 누수 등 많은 문제 야기
 - 비금속관인 플라스틱은 부식되지 않으며, 경제성 우수하여 상수도관에 일부 사용

건의사항

- 상수도관의 안전성, 위생성을 위해 플라스틱관(PE관) 사용 확대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자동차정비업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보급사업 대상에 포함

건의요지

- 정부 정책과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25년까지 신규 보급될 전기자동차는 누적 113만대이나,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또한,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 서류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가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자동차정비공업사에 입고될 경우,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소비자가 차량을 바로 인수받지 못하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 조치, 충전 후 인수를 받게 됨으로써 추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됨

건의사항

- 지자체 허가를 받아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존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 “자동차관련시설”과 관계없이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 대상에 포함
 - 시내 곳곳에 위치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배추포장재의 골판지포장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건의요지

- 지역거점 농산물시장 내 적재차량의 장시간 주차대기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 및 배추의 그물망 포장유통에 따른 지게차 하역 불가
- 배추, 무, 양파 등 포장소재로 플라스틱 망을 사용 중이나, 정부 플라스틱 사용 감축정책에 따라 친환경 골판지로의 전환 필요
 -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일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 실명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 먹거리 안전 시스템 미흡

건의사항

- 자원순환 가능토록 배추 포장을 플라스틱망 → 친환경 골판지로 전환
- 배추산지-유통-고객에 이르는 물류시스템의 합리화 필요
 - (배추산지) 배추선별-다듬기-포장작업-생산자표시제 실시
 - (유통) 상·하차 자동화 및 현대적 물류 자동화 구축, 도매시장 도착 즉시 지게차 하역으로 운송회전을 제고 및 교통체증 문제 해결
 - (고객) 쾌적한 환경에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배추 실명제를 통해 표시가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구매 가능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원 사업 신설 및 친환경 교육 실시

건의요지

-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 및 편의점 배달 어플의 활성화로 국민 1명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 증가
 - 그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40%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스마트그린도시의 다량 배출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6단계로,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 가능토록 2단계로 감축하여 탄소배출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예산절감과 처리공장의 넘비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필요

건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및 초중고급식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 신설 및 친환경 개선 교육 마련
 - 정부(30%)·지자체(30%)·자부담(40%) 매칭사업 신설 및 초중고급식시설 근로자에게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교육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점토벽돌과 결합한 친환경 단열재 R&D 개발자금 지원

건의요지

- 최근 여러 차례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 → 환경 유해성이 높은 화학 성분의 단열재가 아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고효율 단열재가 결합된 점토벽돌의 개발과 홍보 필요
- 점토벽돌은 흙을 주원료로 생산함에 따라 열전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은 단열재를 사용해도 열관류율을 통과할 수 있으나,
 - 기존의 단열재는 두껍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함은 물론,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성 가스에 노출되어 있음

건의사항

- ‘점토벽돌과 결합한 친환경 단열재’, ‘적벽돌을 이용한 전기 저장 스마트벽돌’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요청
 -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고, 산업폐기물 발생 감소 및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건축 선진화 기여토록 R&D 자금 지원 요청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 측정 완화 [연2회 → 연1회]

건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규정
 - 자가 측정은 연 2회 상·하반기마다 실시해야하나,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제반시설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자가 측정하고 있는 상황(검사비도 50만원~300만원으로 급등)
- 그러나 지난해 대기환경 측정업체가 무더기로 영업정지 됨에 따라, 대기환경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검사를 제때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 검사기간 6개월~1년 이상 일정기간 유예 및 합리적 자가 측정 가격 고시
 - (현행) 반기마다 1회 이상 → (개정) 연 1회 이상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시행규칙 제52조의 3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축산, 양식어류 등 배합사료에 곤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건의요지

- 정부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을 만들었으나, 양식장의 75%가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이 낮고 먹이효율이 좋다는 이유로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음
 - 국립수산물연구원 연구결과 납치의 경우, 곤충사료 첨가 시 폐사율이 0%~50%에 가깝고 증체율도 17%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입증됨
 - 하지만 생사료에 비해 동애등에粉 가격은 약 4.7배, 어분 대비 약 1.8배 높게 형성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 상황
- 농촌진흥청의 축산시험 결과, 곤충사료 첨가 시 이유자돈 사료 내 생산성(증체량 25%) 및 소화율(사료효율 13.5%) 증강효과 검증

건의사항

- 동애등에 곤충사료 粉과 오일을 배합사료사업에 첨가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사업 추진 필요
 - 해양수산부의 경우 어분대체제로 활용 가능하며 연구 결과(증체율과 폐사율 등)를 얻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농가의 곤충 사료첨가제 구매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필요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양식산업발전법」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05
상생협력



건의요지

-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대한 행위 미고발, 공소시효를 임박한 사건 고발 등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폐지 논란 지속
 - * 공정위 고발건수 : ('14)63건 → ('15)56건 → ('16)57건 → ('17)67건
 - 이에 공정위·법무부,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18.8.21) 및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
- 그러나 전속고발제가 일시에 폐지시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고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 결국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위축된 경제상황에 더욱 큰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
 - 특히 위반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인력과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공정위(검찰)의 수사를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고소고발 남발, 중복수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난 심화 예상

건의사항

-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현행 유지)
 - 혹은 대기업의 강요로 담합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하는 등 사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도 운영
-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가능기관에 민간 중소기업 관련기관 추가(중소기업중앙회)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제60조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건의
(20.7.21)

공정거래법 개정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위한 「상생협력법」 조속 개정

건의요지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상승시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하나, 제도 활용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

*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 경험: 0.4%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조사, 2019)

- 제도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협동조합이 영세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및 협상력 부족 등의 문제가 협동조합으로 그대로 전이되어 조정협의를 대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는 방안 건의(중기부, 공정위)
 - 당·정·청,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9.12.16),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건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조속 개정 추진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상생협력법 22조의2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원내대표 간담

(20.5.26)

건의결과

반영(20.9.24)

건의요지

- 현행 기획기사·사례집 배포·로고 사용·확인서 발급·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부여 중이나, 기업 유인역할 부족

건의사항

- 「중소기업진흥법」에 명문장수기업 혜택부여 근거조항 마련
 - 향후 개별법에서 명문장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각 2배로 확대
- 정부 및 기업관련 금융기관 우대금리 적용
 -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및 기타 민간은행 대출시 금리 우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활용시 한도·금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우선선정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 등 신청시 우선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고시 개정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정부 가용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성화
 - 광고시안, 웹툰, 유튜브용 영상 제작 통해 대국민 제도안내 채널 확대
 - TV다큐멘터리 제작·방영 통해 명문장수기업 및 제도 홍보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기업성장부

관련조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의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건의경과

건의(20.1.13)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확인기업 자긍심 고취와 일반 국민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예의 전당' 설치
-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명문장수기업 후보군 확보 및 추천 업체에 공고·사례집·확인기준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신청 독려, 지역 내 명문장수기업 관심도 제고

건의사항

- 명문장수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
 - (설치내용) 역대 명문장수기업, 확인사유, 대표자(1~4세) 동판, 주요제품 등 소개
- 지방자치단체 연계 명문장수기업 리크루팅 실시
 - 지역별 숨은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지자체 제도 홍보 효과, 지자체별 혜택 부여 등 기대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기업성장부

관련조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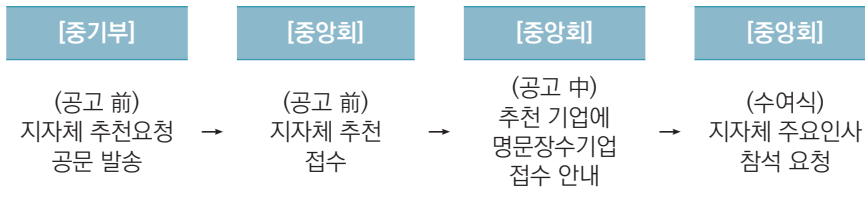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건의경과

건의(20.1.13)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매년 경제여건 변화 반영 및 기준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합의비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기존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변경
-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은 5조원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은 일정한 기준이 아닌 매년 변동되는 기준인 국내 총생산액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결여
 - 명확한 금액인 자산 10조원이라는 기준과 달리 국내 총생산액은 쉽사리 예측이 불가능하여 지정여부도 예측이 불가능
- 또한 국내 총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설립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지정기준 또한 매년 상향되는 결과 발생
 - 매년 증가하는 국내총생산액과 달리 기업의 자산규모가 매년 커지지는 않으며, 규제회피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대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정기준 현행 유지
 - 자산 5조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10조원 이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건의 (20.7.2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공정거래법」에 의거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기업집단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산 5조원 이상)
 -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인 경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 * '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수: 59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 * 기업집단 부과 의무(규제) 현황

구분	규제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일반, 지배구조, 출자, 채무보증 등 현황 (금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지)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과 더불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이 기술개발과 혁신이 필요한 업종보다 도·소매업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진출이 용이한 중소기업인의 사업영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우려
 - 현행 기업집단지정 관련 규정에는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공시의무만 있고 사업내용 공시에 대한 의무는 없어 골목상권에서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기능은 작동 불가

건의사항

-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방지 위한 공시내용 추가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위분야* 사업현황, 신규진출, 사업확장 등의 내용 포함
 - * 중소기업적합업종,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사업조정 빈번 신청업종 등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건의 (20.7.2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거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항이 모호(불공정거래행위는 적용)
 - 소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기준 부재, 소비자 상호부조의 개념 불명확 등
 - * 매출액 80억원 혹은 120억원은 소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제시 매출액 근거가 부족하며 조합원 중 한 곳이라도 소규모가 아니면 안되는지 등 논란 지속
- 더불어 적용배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미규정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사후보고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활용이 불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기술개발, 공동 구·판매 등)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한 잣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하는 사례가 다수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목적의 공동행위에 대해 인가를 받은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또한 기준이 모호하고 인가절차도 미규정 (개정안 제39조 제2항 제4호)
- 개정안에서도 동 조항에 대한 검토와 수정없이 그대로 조항이 이루어져 있어 향후에도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 지속 예상

건의사항

-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적용절차 규정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제60조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건의
(20.7.2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10%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일괄 2배로 상향하여 규정
- 대기업은 부과기준을 2배 상향하더라도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 초래
 -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강요로 부득이하게 담합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기업은 담합 적발시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여 제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중소기업만 과징금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결과 발생
 - 과징금 부과 처분시에도 대기업은 재심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실제 부과기준금액을 낮추는 사례도 다수 발생
- 또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불공정거래행위나 보복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는 무관
 - 과징금은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피해구제보다는 징벌적 성격 및 해당행위 사전억제 성격이 강하며 부과기준을 상향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제재에 한계 존재

건의사항

- 기업규모에 맞도록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
 -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과징금 기준율은 유지하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행위 및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율 2배 상향 (일본 사례 참조)
 - * (지위남용)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갑질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보복조치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제60조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건의
(20.7.2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활용 가능
 - 지난 2011년 하도급법 주요 위반행위에 처음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공정거래법에도 도입
 -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제 대상: 부당 공동행위, 보복조치,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 그러나 배상책임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여 손해액(1배)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실제 3배의 배상책임이 부여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실제 피해구제보다는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억제를 위한 역할로만 작동 중
 - * 하도급거래 관련 2015년 CJ 대한통운의 부당위탁취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제 소송건이 있으나, 1심에서 패소
-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제의 기준이 되는 실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결국 3배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
 - 실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배를 적용해도 결국 $0 \times 3 = 0$ 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겪는 애로사항인 실손해액 입증 근거 마련 필요

건의사항

- 징벌적 손해배제 강화 및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 손해배상책임액을 피해액의 3배로 규정
 - 실손해액 입증을 위한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 * 상표법, 특허법 참고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제56조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건의
(20.7.2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원장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 법조계, 학계·연구기관, 기업경영·소비자 보호활동 경력 15년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실적은 연간 4천건에 육박하고, 위반유형 또한 복잡해지면서 심결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실적 현황〉

(단위: 천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사건처리 실적(건)	4,431	3,438	4,079	4,367	3,885	3,031	3,51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 연보

- 그러나 비상임위원의 경우, 다른 직업을 겸직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거나, 전원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
 - 해외경쟁당국은 의사결정 위원들을 전부 상임위원으로 두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추세

건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전원(9인) 상임위원화 및 중소기업 전문가 위촉
 -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사건대상자 중 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1인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위촉(중소기업계 추천)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제37조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건의 (20.7.2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 계획적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 선호
 -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운영 중이나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지원범위 작음 → 제도 확대 필요
 - 가업승계 실질적 지원효과 미미 → '가업승계 지원취지' 명확화 필요
 -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가업상속재산 전액 공제하는 반면,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 세율 적용
 - 이후 상속 시, 일반증여(10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와 달리 증여시점과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

건의사항

-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500억원
- 증여세 납부유예제 도입 및 단일 세율화(최대 20% → 10% 단일화)
- 제도 합리화(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 적용)
 - 대상 확대(법인 → 법인+개인), 연부연납기간 확대(5년 → 10년 이상)
- 증여자 범위 확대: 부모 한정 → 직계존속 포함(부모+조부모)
- 2인이상 수증시 증여세 계산방식 변경
 - 수증자 1인으로 증여세 계산후 수증자별 안분(유산과세형)
→ 수증자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른 개별 적용(취득과세형)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기업성장부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1.13)

건의문 송부(20.2.13)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세수 및 세율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2번째로 높은 국가
* 최고세율: 한국(50%), 일본(55%), 영국(40%), 독일(30%), OECD평균(26.6%)
- 업력 10년 이상 中企, 가업승계 가장 큰 애로사항 '상속세 등 조세부담' (77.5%)
으로 조사
* 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대표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에 대한 정부대책 수립 필요
-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영 중이나 사후관리기간 7년 동안 이행해야하는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제도활용 업체 수 미미

건의사항

-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완화
- 비상장 50%·상장 30% 이상 → 비상장 30%·상장 15% 이상
- 사후관리 기간 완화: 7년 → 5년
-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
- 근로자수·급여총액 유지비율 완화(100% → 80%, 매년 유지비율 삭제)
- 업종변경 자율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내 변경 → 제한 폐지
- 자산유지의무 완화
- 7년간 80% 유지(5년간 90%) → 처분자산 가업관련 재투자시 면제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기업성장부

관련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1.13)

건의문 송부(20.2.13)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 부재
 -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초래
 -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부터 추천까지 9개월(6+3),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부터 지정까지 6개월(3+3)

건의사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개정
 - 심의기간(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만료~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동안 신청업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근거조항 신설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관련조항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

건의처

이수진 의원실

건의경과

의원실 건의(20.9.3)

건의결과

검토중(입법발의)

비상장주식 물납자 우선매수제도 운영 관련 건의

건의요지

- 2019.12.11.(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기업승계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 운영 관련 건의

건의사항

- 공매보류기간 5년 이상 필요
- 신청자 ‘최대주주지분’ 산정 시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필요
 - 기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요건 확인 시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확인(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참조)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경영’ 요건 완화 필요
- 제도 신청 후 경영정상화 법인 선별 시 기준 유연화 필요
- 물납주식 재매입 시 분할납부 기간 및 대상금액 추가완화 필요
 - 기업승계를 위한 공매보류 이후 재매입 시, 추가 기간연장 및 대상 금액 하향 필요
 - * 참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은 2천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기업상속재산 연부연납의 경우 최대 20년 연부연납 가능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기업성장부

관련조항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

건의처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건의경과

설문조사 실시(20.1.3)
건의문 송부(20.1.13)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업력·업종제한, 까다로운 평가지표로 역량 있는 장수기업 다수 탈락
 - 특히, 45년 이상 건설히 기업을 운영해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지표인 경제적기여 및 기업혁신 평가 시 업종별 평균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면평가에서 탈락하는 등 기준 충족이 까다로워 탈락업체 다수 발생

건의사항

- 업력요건 완화: 45년 → 30년
- 업종제한 폐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 등 제한 → 제한폐지
- 명문장수기업 평가지표 합리화
 - 기업혁신지표: 업종 평균 이상 → 업종별 평균 75% 이상인 경우 배점
 - 경제적 기여지표: 업종 평균 이상 → 업종별 평균 75% 이상인 경우 배점
- 승계기업 가점 부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승계기업에 가점 부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기업성장부

관련조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건의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건의경과

박수영의원등 입법발의 (20.7.1)

홍석준의원등 입법발의 (20.12.24)

건의결과

검토중

06

소상공인



건의요지

- 무증상 감염 등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한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점 방문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방역을 실시하나, 영세 소규모 점포의 경우 자체적인 방역이 어려운 상황
- 또한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임시 휴업 조치를 당함에도 휴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의 지원책이 없으며, 영업재개 후에는 소비자 신뢰 저하로 매출 급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

건의사항

- 영세 소상공인 방역 요청 시 무상 지원
 - 불특정 고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 방역이 어려운 점포 지원 필요(자동차정비업 등)
-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수에 비례한 휴업보상금 지급
 - “휴업일수 × 전년 동월 매출액 70%(개업 1년 미만인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과 같은 산정방식 도입 가능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중기부장관 간담 건의
(20.3)

건의결과

반영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효성 강화

건의요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자금이 지원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상담이 편성자금 규모 대비 10배 이상으로 초과수요 발생*
 - * 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200억원, 상담금액은 2,513억원
출처: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20.2.20.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안정자금 활용 시에도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지역 신용보증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등 애로가 존재
 - 지역 신용보증 신청 시와 달리 공단에 대한 “자금접수·확인서 발급”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며, 서울신용보증은 1.5% 고정금리 적용(공단 1.75%)

건의사항

- 현행 200억원 수준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 및 자금 소진 시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
- 경영안정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공단 대출금리 인하
 - 대출 실행기관에서 모든 절차가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 현행 공단 대출금리를 1.5% 이하로 인하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위기극복
기자간담(20.3)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대형마트 입점 임대·개별사업자 점포는 대형마트와의 계약을 통해 그 영업여건을 활용하고 있으며 매출액 일부는 대기업에 전달되는 만큼 이들을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무휴업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 영업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제도 폐지 요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유예 및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소상공인 피해 가중*과 대형마트 종사자의 사생활 보호 미흡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 “20.3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83%”
출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설문조사」(20.4월, 소상공인연합회)
-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와 중형급 마트*가 골목상권을 잠식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 * '13년 8,800여 곳에서 '17년 11,000여 곳으로 25% 증가

건의사항

-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방침 철회
- (준)대규모점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 마트와 중형급 마트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 장기적으로 온라인 중심 시대 변화에 발맞춰 중소유통·소상공인의 대응역량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산업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20.7)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물류산업이 속한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9.5조원(내부거래 비중 16.2%)으로 전(全)산업에서 5번째로 높음*
 -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르면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제조업(111.7조원), 건설업(21.2조원), 도·소매업(14.3조원), 정보통신업(14.2조원), 운수 및 창고업(9.5조원) 순
-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집단 내 대규모 운송물량(2자물류*)을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왔으며, 집단 내 물류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 (자가물류) 직접운송 → (2자물류) 자회사 운송 → (3자물류) 물류전문기업 위탁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대다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미만*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이들의 불공정행위(표준계약서 미사용,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요구 등)로 인해 물류중소기업들은 애로를 호소
 - * 현대글로벌비스(주)의 총수일가 보유지분율: 29.99%(‘19.5.15. 기준)

건의사항

-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 관련 화주 대기업 대표단체, 물류 중소기업 대표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상시 운영
 - 물류일감 개방 자발적 이행 여부 점검, 대·중소기업 물류 관련 상생방안 협의 등 역할 수행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경우 동일 기업집단 내 취급물량을 자회사 전체 물량의 30% 이내(3자물류 70% 이상)로 물류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 구체화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경과

공정위 개별건의(20.8)

건의결과

반영

초기 투자부담 완화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사전인증제 도입

건의요지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월부터 시행'(20.3월 개정)
-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물류창고를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 가능(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1조의7에 근거)
- 하지만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위해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립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건의사항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위한 본격 구축사업 개시 전에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전인증을 받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센터 사전 인증제를 도입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계 제언(20.9)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0.12)

건의결과

반영(20.12.23)

건의요지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통과('20.3.6.)되면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2 신설)
- 해당 협의회를 통해 정비요금 산정 등에 대한 사전논의가 가능하여 정비업계는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 개정 법령이 '20.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보험사는 정비요금 공표제('18년 기준) 요금으로 정비업계에 지급하고 있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갈등이 확대
- 개별 정비업체가 대형 보험사의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비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는 제한적

건의사항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조속 구성 및 운영 위한 국토부(자동차운영보험과)의 관심과 적극 이행 독려 요청
 - 협의회 구성 시 정비업 대표위원을 통한 업계 의견 전달 및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 분쟁의 예방 및 조정 등에 대해 논의 가능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2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김희재 의원실 방문건의 (20.11)

건의결과

반영(21.1)

건의요지

- 국내 중소수퍼는 합산 시장규모가 40조원에 이르지만, 유통·물류 환경의 온라인 중심으로의 급속한 변화*, 대기업 유통 혁신, 중규모 마트 확산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판매 비중: ('01) 1.5% → ('15) 10.6% → ('20.1월) 23.2%
- 현재 각 수퍼조합 물류센터 및 개별 수퍼의 포스시스템 노후화 등 물류센터 간, 물류센터와 중소수퍼 간 상품 수·발주 등이 전산화되지 못한 상태로,
 - 중소수퍼의 스마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상품의 구매·유통·물류 단계에서의 수·발주 등 통합전산망 구축과 같은 데이터 연결이 시급

건의사항

- 각 수퍼조합 물류센터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한 상품 수·발주 현황 공유, 소상·공동구매 등 물류체계의 스마트화 추진
- 개별 수퍼에 스마트포스, 모바일 앱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등 개별 점포의 스마트화 추진
- 스마트 물류·점포 구현을 위한 IT시스템 통합 구축 이후 시스템 안정화 및 스마트 점포 시범 보급 추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스마트점포 도입 건의
(20.3)

지원예산 별도확보 요청
(20.9)

건의결과

일부반영(20.9.17)

건의요지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책이 금융·세제 등을 통한 간접지원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으로 부실 채무와 기초체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 매출 하락으로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중 인건비 지원만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 * '20.2.1.~3.13.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 일자리 안정자금: '20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을 지원
-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제도는 임대인에 대한 간접지원(세액공제) 형태이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 여력이 안 되는 임대인의 사업장을 임차한 중소상인은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한 과감한 직접지원 대책 마련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임대료 한시 직접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20.3)

코로나19 위기극복

기자간담(20.3)

건의결과

일부반영(20.11.2)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시장 발달에 따라 수퍼조합이 회원사들의 폐업과 편의점 전환 등 조합원의 지속적 감소로 물류센터 운영에 애로를 호소
- 일부 물류센터는 이를 타개하고자 불가피하게 판매대상을 음식점 등 일반 사업자까지 확대했으나, 최근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장 운영기관의 혼란이 가중
- 중소유통물류센터 설립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제공받은 부지 대다수가 공단이나 녹지 등에 위치하며, 영업신고를 하고자 해도 주차시설과 소방시설 등 관련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부지 이전과 증·개축이 불가피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판매대상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통한 부지 이전과 증·개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지역 내 공급자 간 마찰을 예방하고 판매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식품 판매대상과 비율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대상 식품 판매 한시 허용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개정(20.5)
식약처장 간담(20.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18년 연간 온라인 거래규모는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불투명거래 및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입점사업자인 중소기업인의 부담 및 애로 증가
 -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인 중소기업인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경험은 오픈마켓 41.9%, 배달앱 39.6%, 소셜커머스 37.3%로 나타남*
 - * 출처: 「오픈마켓, 배달앱, 소셜커머스 불공정행위 실태조사」('18년, 중소기업중앙회)
- 온라인 시장 내 사업자 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법률이 없으며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 유통 전담부서도 없는 상황

건의사항

-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촉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확대 및 온라인 분야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신설(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제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통신판매업자 ▶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통신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 금지 대상 불이익 제공행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3,8,17조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김경만 의원 등 입법발의(20.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단지 형태로 조성된 유통상가는 영세 소상공인의 집적지로 전국적으로 100여 개에 이르고 수만 명의 영세상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 대다수 상가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차장 확충, 화장실 개선 등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상황
- 유통상가는 같은 영세 도·소매업 집합체이지만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지원 수단이 없는 상태이므로, 전통시장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
- 또한 영세성이나 시설 개선 필요성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를 분류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

건의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상가단지”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 유통상가 시설 개·보수 지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유통상가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기준 개선(소규모점포 집적지 제외)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김경만 의원 등

입법발의(20.7)

건의결과

검토중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진흥법 제정

건의요지

- 온라인 유통업의 급격한 성장*과 산업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후적 입법조치를 통한 오프라인 중소기업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 * '19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6조원으로, '10년 25조원 대비 5배 이상 증가
- 취약한 기술적 기반*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부족과 즉시성·편의성을 중시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부족이 노정
 - * 전자상거래 미사용 비율: (250인 이상) 26.3% ↔ (4인 이하) 78.8%
출처: 「온라인 거래의 특징 및 시사점」 ('19년, 중소기업연구원)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으로 작동 중이며, 입점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건의사항

- (가칭) “중소유통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규정 필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전통시장법, 소상공인법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제정입법안 연구용역
추진(20.6)
정태호 의원 등
입법발의(20.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임금근로자 고용사업장 인건비의 평균 10% 수준에 달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으나,
 - 동 사업은 신규·기존 근로자의 지원 수준이 차등화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기존 근로자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짐
 - * 사업내용: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의 30%(기존 근로자)~90%(신규 근로자) 지원
 - ** 사업내용: 60%(20년 신규, 1~4인), 50%(20년 신규, 5~9인), 10%(19년 신규) 감면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의 장기화가 확실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납부유예보다는 지원을 통한 부담 면제가 더욱 절실한 만큼,
 -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와는 별도로 사업자의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이 별도로 필요

건의사항

- 소상공인 고용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한시 전액 지원
 - 현행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90%, 건강보험료 최대 60% 지원에서 4대 보험료(고용·국민·건강·산재) 전액 지원으로 개선 필요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중기부장관 간담 건의
(20.3)
코로나19 위기극복
기자간담(20.3)

건의결과

검토중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요지

-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사가 급격히 성장하며 유통시장을 장악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전 규제는 미흡한 상황
-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도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고 있어, 다른 대규모점포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상황
 - 특히 하나로마트는 법상 예외대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으나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절실
- 현재 준대규모점포는 시행령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전문점은 인근 소상공인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점포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업종에 대한 기준 삭제 필요

건의사항

- 대·중소상인 공생 및 소상공인 보호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규모점포 등 출점 사전검토, 준대규모점포 확대, 의무휴업일 적용대상 점포 확대,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추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건의

(20.2.20/3.30/4.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과 폐업 후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
 - 동 사업은 컨설팅과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업자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철거 및 원상복구비는 전체 예산액의 12% 수준에 불과
 - * '15~'17년 소요예산 220억원 중 컨설턴트 및 민간 위탁교육자 지급비용은 약 112.3억원
- 한편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제도는 그 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직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재취업을 모색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생계유지 부담”(50.7%)을 꼽고 있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제도 확대 필요
 - * 출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19.5월,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사항

- 폐업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내실화
 -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권리금 미회수분 지원 등 폐업 과정의 직접 지원금 비중 확대 추진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제도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
 - 연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생계비 지원 추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건의
(20.2.20/3.20/4.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해 왔으나, 주유소의 경우 취급품목의 특성상 문제로 인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유류의 경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높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매우 낮으며*, 매출액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4.1%**에 달하는 상황(명목 수수료율은 1.6%)
 - * '16년 주유소 당기순이익률: 1.1% (전 산업 평균 당기순이익률: 5.69%)
 - ** 휘발유 50,000원 주유 시 실효판매가격 19,580원 중 수수료 부담액은 800원
- 담배나 주류와 달리 유류의 경우 최악세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필수품에 해당하는 만큼,
 - 유류판매업만 낮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인해 이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건의사항

- 카드수수료율 적용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 도출 시 세금 제외
- 석유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 마련
 - 부과되는 세금 중 국세징수에 대한 징세협력비용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 추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건의

(20.2.20/3.20/4.2)

건의결과

검토중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활성화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건의요지

- 차량 보험사는 피보험자 편의 도모를 명분으로 피보험자와 정비업·부품유통업체 간 거래에 개입하여 공임비(정비업체)와 부품비용(부품유통업체)을 직접 지급하는데,
 -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한 수리비와 지급방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방적인 차감지급과 대금지급 지연 등 영세 정비업·부품유통업체의 피해가 발생
- 대기업 중심 부품시장에서 중소부품유통업체가 안정적인 사업운명을 위해서는 완성차 대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계약관계에 애로가 있어도 대리점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우려로 표면적 건의가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손해보험사와 정비업·부품유통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 차감지급 시 구체적 사유 통보, 대금지급 지연 시 구체적 사유 통보 및 지연이자 지급 규정
- 완성차 대기업과 부품유통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 대체부품 취급과 해외 판매 등 부품 유통에 대한 대리점의 자율성 존중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건의
(20.2.20/3.20/4.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19년부터 표준가맹계약을 개정하여, 가맹본부 오너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유발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명시
- 그러나 동 계약서는 법적으로 가맹본부 임직원이 아닐 경우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으며,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가맹본부의 자료 협조 없이 영세 가맹점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애로가 존재
-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영업상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영업 방식과 관련해 본사와의 계약에 귀속되는 만큼
 -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와 유사한 對본사 협상 및 교섭 권한을 부여하여, 수익구조 개선 및 상생협력 보장 필요

건의사항

- 표준가맹계약서상 오너리스크 책임대상 명확화(등기이사 → 실질적 지배인)
 - 오너리스크 입증책임 부담 완화(영세 가맹점주 → 가맹본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오너리스크에 의한 손해 발생을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적용 대상에 포함)
 - * 현행: 허위·과장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에만 최대 3배 적용
- 가맹점주협의회의 對가맹본부 협상 및 교섭 권한 강화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전해철 의원 등

입법발의(20.6)

이동주 의원 등

입법발의(20.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민간인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15년부터 도입하였으나, 국산 완성차업체의 디자인보호권(20년 간 독점적 권리) 등록 및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의 독점적 구조 등으로 제도 시행에 애로가 존재
- 대체부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디자인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계류 중이며,
 - 그 대안으로 국토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구두합의('17.9월) 하였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중소기업체의 참여는 저조
- 또한 국산차 대체부품의 해외수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어, 좁은 내수시장만으로 대체부품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및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위한 자동차 보험약관 변경
 - 대체부품 사용 규정을 특별약관에서 표준약관으로 이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차량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할 것을 명시
- 국산차 인증대체부품의 해외수출 허용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디자인보호법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의경과

신영대 의원 등
입법발의(20.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제도*를 정부가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적극 동참을 독려 중이나, 쇼핑몰과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
 - * '20.1~6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20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 운영 유통몰의 경우 현저한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 임대료로 인해 입점업체의 적자가 가중
 - 특히 교통 요지나 주요 상권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수수료 등이 매우 높아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
- 또한 정부의 임대료 감면 조치*가 있던 면세점의 경우 매장 운영·납품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조치가 절실
 - * 공항입점기업 임대료 감면: 6개월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50%, 대기업 20%

건의사항

- 대기업 운영 쇼핑몰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지원
 - 공공기관 입주 대기업이 임대료 지원을 받을 경우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안 제출 의무화(협력업체 임대료·수수료 등 인하) 및 주요 유통 대기업에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 지자체 중심 상생 사례 발굴 및 유포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시민당

건의경과

건의(20.4.2)

건의결과

검토중

중소유통물류센터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 마련

건의요지

- 그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는 주류와 공산품 중심의 공동구매 사업을 수행했으나, 최근 중소수퍼의 신선식품 취급 비율이 높아지면서 농·수·축산물까지 취급 품목을 확대했으며 이를 위해 저온 시설을 증축
- 일반용에 비해 20% 정도 저렴한 산업용 전기*의 경우 광업 및 제조업만 사용 가능하여, 소상공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은 가장 효율이 높은 일반용 요금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음
 - * 전기 판매단가(단위: 원/kWh): 일반용(129.97), 산업용(104.46)
-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납부 유예만 실시되었을 뿐 별도의 감면안이 없던 단기적 측면과,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용 요금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장기적 측면 고려 필요

건의사항

- 일정 매출액 이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산업용 요금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특례를 신설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대안 검토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부

관련조항

-

건의처

한국전력공사

건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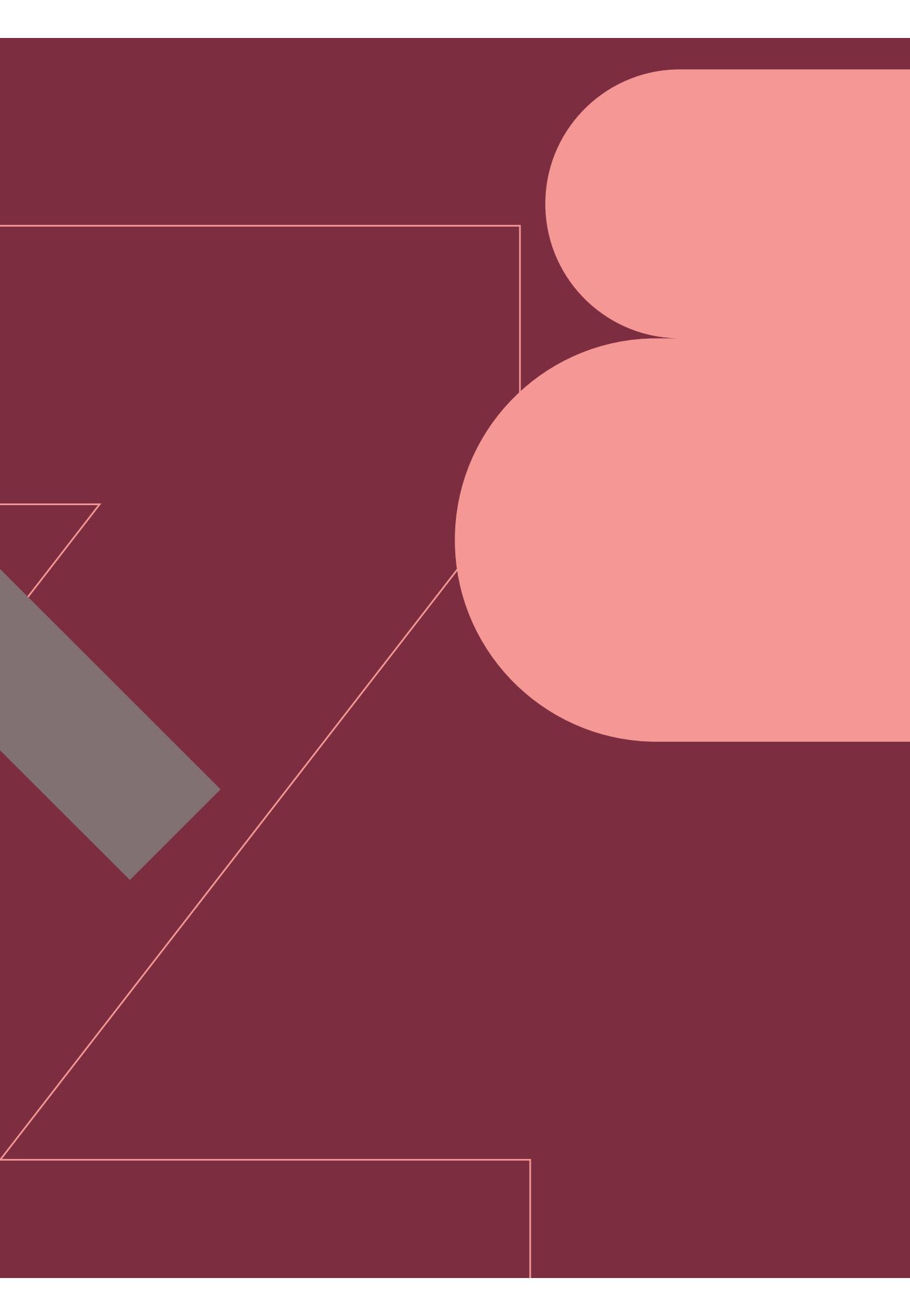
건의(20.11.20)

건의결과

검토중

07

고용·노동



건의요지

- 다행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일부 확대('20.1.31)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
* 인가 180건 중 131건은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 사업장('20.3.5 기준)
- 그러나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있으므로
-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 필요

건의사항

-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적극적 검토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20.3.5)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신조 물량이 감소되어 후방 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 '20.8월말 글로벌 발주량 9.2백만CGT로 '19.8월(17.6백만CGT)의 절반 수준
 - * '20년 상반기 국내 조선 빅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수주액 33억 800만 달러(약 4조원)로 연간 수주 목표액의 11% 수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조선업계 고용유지 효과가 큰 만큼
 - 향후 신조 물량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우수 인력을 유지하도록 현재 강력한 고용유지 지원조치 계속 유지할 필요

건의사항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1년 단위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건의처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고용노동부 건의
(20.12.9)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물류터미널운영업은 중소기업이 대다수
 - 택배회사(대기업)으로부터 도급받아 물류터미널에 집하된 택배화물 상·하차, 분류업무 등을 수행
-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력수급에 곤란 가중
 - 장시간 근로, 번두리 소재, 부정적 직업 전망으로 인력부족률이 23.6%
*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및 요건 합리화 방안연구」, 한국이민학회, 2019
- 정부정책의 형평성 논란 야기
 - 물류터미널운영업(23.6%)보다 인력부족률이 심하지 않은 2개 유통업*에는 2020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돼 정부정책의 형평성 논란 야기
* 산지농산물유통센터(15.9%), 식육운송업(15.4%)

건의사항

- 물류터미널운영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H-2) 고용 허용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추진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20.2.17) 국토부 장관
간담회 건의
(21.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건의결과

반영(21.2.10)

건의요지

- 2020.2월말 기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인 273.972명으로 이 중 80% 정도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
- 2020.4.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 우리나라 입국자 자가격리조치(2주)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입국 잠정 중단
-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대체인력이 필요하나 입국지연 발생으로 막대한 생산차질 우려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법무부, 중소기업부

건의경과

고용노동부 건의 (20.4.13)
고용노동부 입법발의 (20.12.18)

건의결과

반영(21.3.2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0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보류조치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등 생산인력 부족 해소
 - 2020.07월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 1,478개사를 대상으로 한 본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7.7%가 생산차질이 발생했으며, 80.3%가 연내 입국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59.5%),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20.8%) 등
- 2020.7월 본회의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 6월 대비 경기전망지수가 4.9%p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코로나 상황 조기극복을 위해 생산인력 공백 최소화 절실

건의사항

- 입국 전후 코로나검사 실시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신규 입국 재개로 중소기업 생산인력 공백 최소화 요청
 - 송출국 현지 사전 취업교육을 현행 출퇴근 교육에서 자가격리,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실시
-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시설 지원 요청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

건의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환경노동위,
산업자원위

건의경과

고용노동부 건의
(20.7.21)
중대본 논의(20.11.6)

건의결과

반영(20.11.6)

건의요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 하는 곳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1회 건강진단(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받는 것이 의무
 - 건강검진 시 필요서류로 내국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출
- 통상 내국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간은 5일 정도 소요되지만, 신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약 1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외국인등록증 발급에 3~5주 기간 소요)
 - ※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간: 3~5주 소요(심사 1~2주, 제작: 2~3주)
- 위의 사항으로인해 관련 중소기업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후 1개월 이상 현장 투입을 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임금부담 애로 발생

건의사항

- 신규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 외국인등록 적격 판정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에 외국인등록 신청 10일 이후 발급 가능)를 신분증으로 인정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

건의처

고용노동부, 옴부즈만, 보건복지부, 식약처, 법무부

건의경과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 간담회(20.6.9)
법무부 수용 답변 (20.9.23)

건의결과

반영(20.9.23)

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중소기업에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70.3%가 피해를 입는 상황
-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는 물론이고 고용상황도 충격이 심각한 상황으로, 실업자도 급증하며 사태 장기화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일시휴직자도 사상 최대 수준
- 이미 최근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기초체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 구조조정과 감원은 불가피할 것
 - 최근 중앙회 조사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80.8%) 또는 인하(7.3%)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최근 5년 내 최고수준으로 나타남

건의사항

- 2021년 최저임금 결정시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결정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

건의처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위원회

건의경과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20.3.5)
더불어민주당 간담회
(20.6.8)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재택, 원격 근무 등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자율성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 그러나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는 디지털화 시대를 위한 근무체계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
- 또한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억눌렸던 소비가 확대될 것이므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마련될 필요
- 따라서 다가올 디지털화 시대와 바이러스 확산 진정 후의 경제회복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시급

건의사항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 → 6개월), 사전근로계획 수립기준 완화(근로일별 수립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월별수립)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제51조, 52조, 53조

건의처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20.5.26)
민주당 일자리정책
간담회(20.6.8)

건의결과

일부반영

현행(근로기준법 제51조)	개정안(근로기준법 제51조)
②--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 1. (생략)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 시간 4. (생략)	②--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 1. (생략) 2. 단위기간(6개월 이내의--.) 3. <u>좌동(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월별 근로시간)</u> 4. (생략)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 확대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 → 3개월), 도입요건 완화(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개별 근로자 동의)

현행(근로기준법 제52조)	개정안(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u>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u> . 1. (생략)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3.~6.(생략)	-- <u>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u> . 1. (생략) 2. 정산기간(3개월 이내의--.) 3.~6.(생략)

- 월·연 단위 노사합의 기반 연장근로제도 도입(주 단위 → 월·연 단위)

현행(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안(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u>1주 간에 12시간</u>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u>1개월 간에 100시간</u>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일본사례> 월·연 단위 연장근로한도(노사합의시 월100시간/연720시간) 정해 탄력적 활용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제51조, 52조, 53조

건의처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20.5.26)
민주당 일자리정책 간담회(20.6.8)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2/3에서 3/4까지 확대
 - 그러나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사업주가 여전히 1/4 이상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 발생
 - 또한 휴업 등 하루 전 계획신고, 휴직은 1달 이상 실시 등 지원요건 까다로워 실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어려움
- 대내외 경기 악화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조치 필요

건의사항

- 지원한도 및 수준 확대
 - (현행) 75%(우선기업) → (개선) 소상공인 100%, 중기 90%, 중견 80%
 - (현행) 일 6만6천원 → (개선) 일 10만원(월 300만원)
- 지원요건 및 절차 완화
 - (현행) 근로시간 20% 초과 감축 → (개선) 10% 이상
 - (현행) 휴직은 1개월 이상 실시 → (개선) 2주 이상
- 예외적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건의처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20.3.5)
더불어민주당 간담회
(20.6.8)

건의결과

일부반영

고용유지지원금 예외적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건의요지

- 정부는 '20.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 조치 중 신규인력 채용 허용 조치함(4.27)
 -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관할 관청의 엄격한 규정 해석·적용 등으로 신규 채용 시 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언택트 근무방식 도입 관련 신규채용시에도 지원금 지급 가능토록 보다 유연한 규정 해석·적용 필요
- 또한 신규채용 규모가 사업장의 10%를 초과할 경우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운용의 어려움 가중
-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 적용기간이 9월말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기업들의 고용불안이 더욱 악화될 전망

건의사항

- 코로나 종료시까지 신규채용 허용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재택근무 등 언택트 근무방식 도입 위한 신규채용도 예외 사유로 인정
- 적용 규모·기간 확대
 - 규모: (현행) 사업주별 10% 이하 → (개선) 사업주별 20% 이하
 - 기간: (현행) 올해 9월말까지 → (개선) 금년 말까지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건의처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20.3.5)
더불어민주당 간담회
(20.6.8)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매출액·생산량이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든지 오래된 기업들이 많음
 - 내년에도 기업들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

건의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인정사유' 현실화
 - (현행) 매출액·생산량 직전연도 같은 달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개선) 매출액·생산량이 코로나19 발생 시점('20년 2월)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은 경우(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사항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건의처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간담(20.12.15)

건의결과

일부반영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유연화 및 부정수급 처벌 완화

건의요지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별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 급박한 경영상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도, 변경 신고서를 변경 계획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해 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2)에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별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의도치 않은 행정적 오류로 부정수급 발생 우려
 - 고의성이 없는 부정수급의 경우까지 최대 5배의 제제부가금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처벌 완화 필요

건의사항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계획 변경 절차 완화
 - (현행) 당초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변경 계획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 (개선) 급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시엔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를 변경 계획 실시 후 3일까지 사후 제출 허용
- 고의성이 없는 부정수급시 해당 부정수급액만 반환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건의처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간담(20.12.15)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4개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3.16)하였으나,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은 물론이고 내수경기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은 수입 없이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 인식, 지원의 근거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적극적 추가지정 검토 요청

건의사항

-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공예 등 장식용품 제조업, 급식업, 자동판매업 등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건의처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20.3.5)

건의결과

일부반영

퇴직연금 의무화 및 퇴직급여 대상자 확대 등 관련 건의

건의요지

- 최근 최저임금 급증,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유급휴일화 등 계속된 노동정책 변화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크게 높아져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지원금으로 간신히 고용과 경영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고용비용 증가는 취약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
- 만약 1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지금도 잦은 이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구인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
- 또한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시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 방법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나, 불가피하게 시행된다면 현금유동성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건의사항

-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 현행 유지
- 퇴직연금 의무화시 30인 미만 기업은 제외
- 퇴직연금 의무화시, 퇴직급여 보장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제도 미설정을 이유로 한 처벌은 삭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시 가입 대상 확대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의처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고용노동부 건의
(20.10.27)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특고는 일반 근로자 대비 낮은 경제적·신분적 제재를 부담하며, 소득 구조의 경우 수익 대부분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므로
 - 보험료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 특성이 다른 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분리하여, 특고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
- 또한 특고는 주된 이직사유가 소득에 대한 불만이며, 취업여부와 소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매우 높아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자격으로 인정 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 초래할 가능성 높음

건의사항

- 특고 사업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 특고 사업주 부담분 특고보다 낮게 설정
- 고용보험기금 내 별도의 특고 계정 신설(고용보험법 제82조 2항)
- 특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엔 실업급여 수급 제한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건의처

국회 민생경제TF,
환노위

건의경과

국회 민생경제TF
간담회(20.11.17)
환노위 국회의원실
간담회(2011.25)

건의결과

일부반영

최저임금의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요지

- 최저임금 급증 및 업종별·규모별 이익규모 등의 차이로 최저임금 지급 가능여부의 편차가 커지면서, 지불 주체의 특성, 노동생산성, 실질임금 격차 등을 고려하여 영세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
-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이 커짐에 따라 노동비용적 성격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위원회 방식임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노사공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공익위원의 구간·인상을 제시 등으로 결정됨. 그리고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 6개월 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결정(사실상 인상)해야 해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결정이 어려움

건의사항

-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마련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가
- 최저임금은 노사의견을 참고하여 정부가 결정
-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최저임금법 제4조, 제8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의경과

양당 원내대표
(20.5.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20.11.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행법은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할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마저 버거운 상황으로 개선이 요구됨
 - 주40시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월 30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간 360만원에 달해, 풀타임 최저임금근로자 월급 2개월분에 달하는 수준
- △법 제정 당시 도입된 취지가 퇴색된 점(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 △주15시간 기준으로 단시간 알바 급증에 따라 저임금근로자는 소득보전을 위해 투잡(two-job), 쓰리잡(three-job)을 해야 하는 현실, △주요 선진외국에는 없는 수당이라는 점,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
-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반영하고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정 필요

건의사항

- 임금감소와 통상임금 상승이 없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휴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현행	개정안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제55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의경과

건의(20.2.6/11.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이미 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만큼, 예방이 아닌 기업 처벌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산재사고는 복잡·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지침 미준수에 따른 과실'이라는 응답이 높음
- 또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222개에 달하는 안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수준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주요 선진국이 6개월 이하 징역 처벌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아울러 제정안은 4중처벌(대표자 형사처벌, 법인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과 인과관계 추정까지 규정하고 있어 매우 과도함
- 특히 중소기업은 99%의 오너가 대표이며 원·하청 구조에서 현장의 최접점에 있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시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 대표 징역 처벌시 오히려 사후처리와 재방방지가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우려
- 벤치마킹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13년에 걸쳐 논의된 후 제정되었고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건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중단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건의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회

건의경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의(20.11.19)
민주당 대표 간담 (20.12.23)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정부는 ILO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 위해 노조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6.30)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등임
- 우리나라 노사관계 제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직장점거 형태의 파업도 인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사용자의 대항권은 부족한 비대칭적 구조
- 이에 정부 개정안대로 노조의 단결권만 더욱 강화될 경우 사용자의 생산 활동 방어권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동 개정에 신중할 필요

건의사항

- 노조법 정부 개정안 개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규정 삭제, 기존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조항 유지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노조법 제2조, 24조, 42조, 43조, 81조/
파견법 제16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국회
한노위

건의경과

민주당 민생경제TF
간담회(20.11.17)

건의결과

미반영

현행	개정안
▶ 노조법 제2조(정의) (생략) 1.~4. 가.~다.(생략) 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조법 제2조(정의) (생략) 1.~4. 가.~다.(생략) 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 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생략) ② <현행 유지>

- 노사관계 균형 회복 위해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모든 시설) 점거 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④ (생략) ▶ 파견법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생략) ▶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④ <삭 제> ▶ 파견법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삭 제> ② (생략)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생략) ③ <신 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30조 준용) 2.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위반하는 요구를 하는 행위(제24조 준용) 3.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시(제42조 준용) ▶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 내 시설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생략)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노조법 제2조, 24조, 42조, 43조, 81조/
파견법 제16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국회
환노위

건의경과

민주당 민생경제TF
간담회(20.11.17)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레미콘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최근 레미콘 믹서트럭기사(지입차주)의 파업 및 갈등으로 큰 어려움 직면
 - 민노총에서는 최근 수년간 노조원 확대를 목적으로 레미콘 트럭 지입차주에 대한 노조 가입과 파업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한노총도 경쟁적으로 가입 유도중
 - * 부산·경남(김해, 진해, 양산) 레미콘 지입차주 1,500여명 민노총 가입('19년)한노총 소속 전국레미콘총연합회(비인가)가 운임료 15% 인상을 요구('20.5월)
- 최근 부산·경남 지역 레미콘업계는 총체적 경영난 속에서도, 최소한 공장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노조의 운임 인상 요구를 수용했으나, 레미콘 업계는 동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우려중
- 또한 제주 지역의 경우 시멘트 운임과 관련한 노사 갈등(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조 파업)으로 제3자인 레미콘업계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건설업계 전체로 피해 확산 중('20.4.13일 부터 공장 올 스톱)

건의사항

- 지역 건설경제 피해 최소화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적극적 지도 및 중재 요청
 - 경영난을 겪고 있는 레미콘업계 현실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최소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시까지 파업 및 운임요금 인상 요구 자제 필요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민주당 일자리정책 간담회(20.6.8)

건의결과

미반영

승강기 2인1조 자체점검 규제완화 및 계도기간 부여 요청

건의요지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안전법에 따라 매월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하나, 현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운영규정이 산업안전 규칙보다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규칙 제162조 취지상 해당 작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라면 작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별로도 작업지휘자를 둘 수 있고, 그렇다면 작업자는 1인 이어도 된다는 입장
- 안전의 중요성은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 심화, 유동성 부족 등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 독려 차원에서 준비 지원 필요
-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2명 이상이 동시에 작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승강기 점검의 안전성 보장’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

건의사항

- 「승강기 안전운영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제3항 준수를 위해 점검인력 확보를 위한 계도기간 1년 부여
- 승강기 자체점검시 의무사항을 산업안전보건규칙 준수로 통일하고, 추가적으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은 삭제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행정안전부 건의
(20.4.2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로봇, 바이오, 친환경차, 반도체 등 신산업의 부품과 소재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산업으로 전통제조업의 기반 산업이자 신성장동력 견인 산업으로 역할을 해옴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대기업 및 상위벤더 기업의 생산 가동 감소로 뿌리산업 중소기업도 4월 초부터 공장 가동이 거의 중단된 매우 어려운 상황
 - 원자재 대금결제, 인건비 지급, 공장 유지비 필요 경비, 대출금 상환 등 심각한 유동성 문제 발생

건의사항

- 뿌리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뿌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17. 11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기간이 최대 14년 6개월에서 9년 8개월로 제한 →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하고, 성실근로자 또는 특별한국어시험 통과자의 경우 재입국하여 추가로 4년 10개월(총 9년 8개월) 근무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장교육과 경험을 쌓은 숙련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현장 대체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하여 공백 발생
- 아울러, 부리산업은 3D업종 이미지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청년층, 고령 및 여성인력도 취업을 기피하여 외국인근로자 추가 확보가 절실함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추가 체류기간 부여(+4년 10개월)
 - 부리산업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심사와 업체 의견 조화를 통해 추가(4년 10개월) 체류기한 부여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부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숙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개선 협조요청

건의요지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존과 고용유지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
- 특히, 숙련고령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인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 인력부족이 심하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

건의사항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 (지원규모 상향) 3년간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지원조건 완화)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우선 지원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뿌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다양한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
 - 고령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인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중소제조업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보다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정책을 선호함
-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함

건의사항

- 지원기간 연장(2년 → 3년), 지원규모 확대(월 30만원 → 월 50만원), 지원요건 완화(피보험자 수, 정년제 운영 기간 등을 완화하여 지원)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청년희망일자리부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제23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제도개선안 제출
(20.5.14)

건의결과

검토중

현행	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지원기간 -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 까지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월 30만원(90만원/분기) ▶ 지원요건 - 피보험자 수 20%내, 최대2년 지원 - 정년제 1년 이상 운영 사업장 - 정년제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할 경우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지원기간 연장 -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3년 까지 지원 ▶ 지원규모 확대 - 1인당 월 50만원(150만원/분기) ▶ 지원요건 완화 -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필요시 부리업종 중소기업 업 우선지원) 중소기업 으로 지원대상 확대

건의요지

- 중소기업의 숙련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 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특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숙련된 고령인력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일몰폐지) 및 확대 필요

건의사항

- 지원기간 연장(일몰폐지), 지원규모 확대(분기 30만원 → 분기 90만원), 지원한도 완화(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을 폐지)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청년희망일자리부

관련조항

고용보험법 제23조

건의처

고용노동부

건의경과

제도개선안 제출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현행	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지원기간 연장 - 2020. 12. 31. ▶ 지원규모 - 1인당 분기 30만원(연 120만원) ▶ 지원한도 - 지원금의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지원기간 연장 - 지속추진(일몰폐지) ▶ 지원규모 확대 - 1인당 분기 90만원(연 360만원) ▶ 지원한도 완화 - 6대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을 폐지

* 2020년 건의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20.12.31부로 일몰폐지

건의요지

- 2020년 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현행 수습기간(3개월) 중 내국인에 대비하여 생산성은 64.4% 수준, 1년의 업무적응기간이 경과하여야 내국인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동일업무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현황〉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1년	1~2년	2~3년	3년 이상
64.4%	75.7%	86.3%	92.6%	95.8%	97.9%

※ 출처: 2020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20.5월)

- 더욱이 외국인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도 안되어 절반 가까운 42.3%*가 이직하여 사업장 변경시 생산성 저하, 업무교육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고임금 지급의 악순환 발생
* 첫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 42.3%(출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2020년)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및 감액률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감액률 확대(현행 3개월, 10% → 1년, 20%)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의힘

건의경과

중금 현안과제 제출
(20.5.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시 퇴직금과 함께 국민연금 중소기업 부담 분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국민연금 목적과는 다른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
 - 국내 체류 최장 기간은 9년 8개월, 나이 제한(40세)도 있어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대비'와는 무관
- 외국인근로자에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상호주의 적용 8개국*)하면서도 두루누리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
 - *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건의사항

- (1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의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에 E-9을 포함
 - * 현행 당연가입 제외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등
- (2안) 외국인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을 개정
 - * 현재는 국민연금은 지원 불가(국민만 지원대상), 고용보험은 근로자 가입 시에만 지원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건의처

기획재정부,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의힘

건의경과

中金 현안과제 제출
(20.5.6)

건의결과

검토중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현행)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변경)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생략)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생략)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숙식비(40만원)* 추가 부담 등으로 경영부담 심화
 - * 「중소제조업 외국인력(E-9) 활용관련 숙식비 부담현황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9.3월
- 사업주는 고용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서 숙식비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현재, 공제율**이 숙박비 30.8%, 식비 10.2%로 매우 저조
 -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지수 관련 업무지침」, 2017. 2월
 -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2019. 8월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숙박비 공제액이 명시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나, 입국 후 공제동의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며 사업장 변경 요구
 - ※ 숙식비 공제를 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변경 선호

건의사항

- 숙식비에 대한 사전공제 동의가 송출국가 현지에서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 프로세스 개선

<도입 프로세스 개선(안)>

현행	개선(안)
① 업체의 고용허가서 발급 - ② 외국인근로자가 현지 송출기관 방문 - ③ 표준근로계약서 수령 - ④ 서명 - ⑤ 체결 - ⑥ 업체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① 업체의 고용허가서 발급 - ② 외국인근로자가 현지 송출기관 방문 - ③ 표준근로계약서 및 공제동의서 수령 - ④ 서명 - ⑤ 체결 - ⑥ 업체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노동위

건의경과

중금 현안과제 제출
(20.5.6)

건의결과

검토중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건의요지

-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기 입국한 친척 및 동료들이 근무하는 인근지역 사업장 또는 급여조건 등의 근무환경이 좋은 사업장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피병 및 태업
 - 이러한 상황은 근무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근로자 관리 애로 가중, 생산차질 발생 등으로 사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
 - ※ 첫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 42.3%(출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2020년)
- 사업장 변경 시 해당 근로자의 생산성 하락 및 교육과정 반복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고임금 지급의 악순환 발생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금지 및 사업장변경 횟수 축소(최초 3회 → 2회, 재고용 2회 → 1회)
-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내국인 구인노력(14일) 면제하고,
 - 사업장변경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 3개월의 50% 수준으로 축소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부

관련조항

-

건의처

규제개선추진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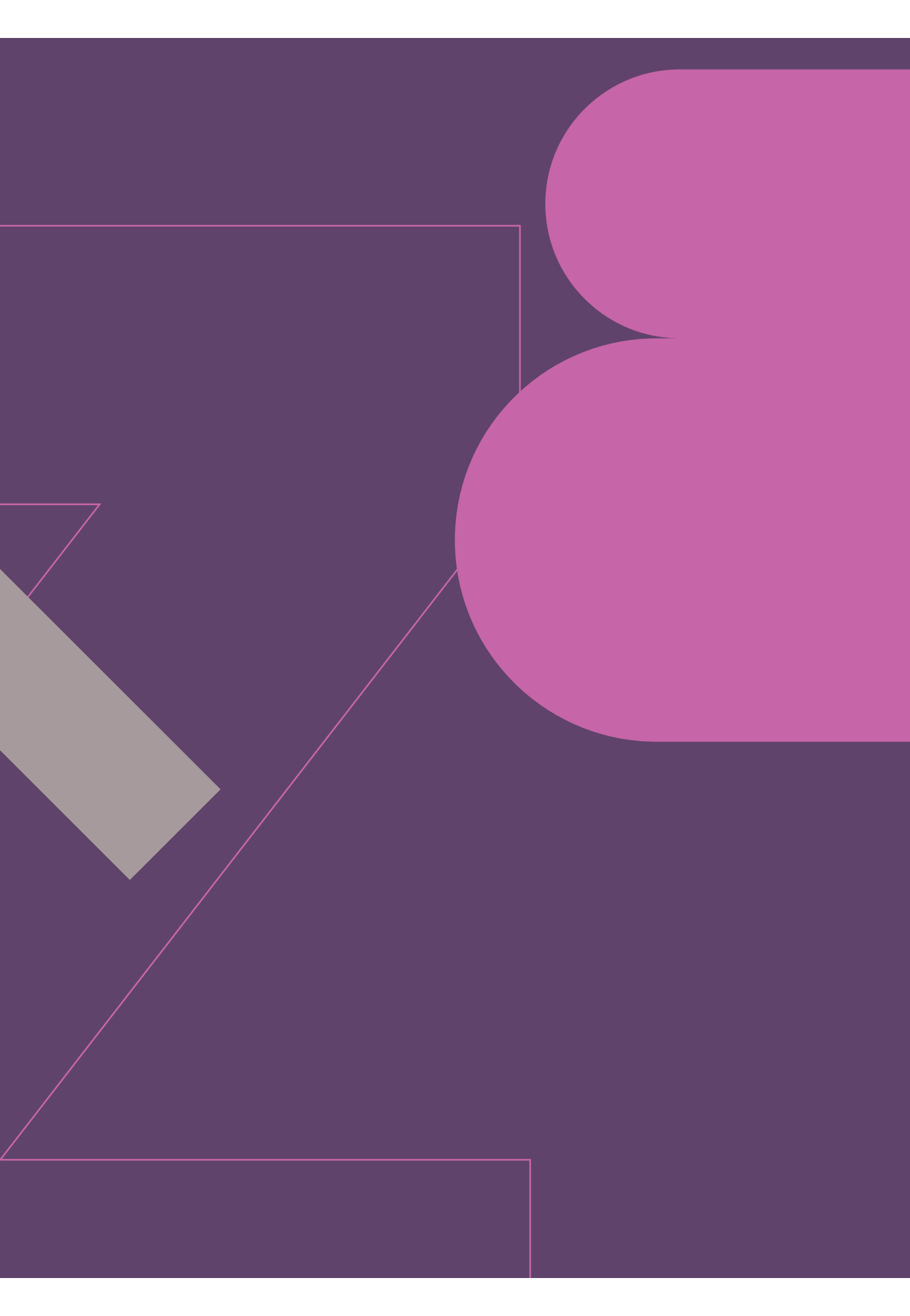
건의경과

규제개선추진단 건의
(20.5.22)

건의결과

검토중

08
정책일반



해외 전시 부스공사 상황 보고 간소화

건의요지

- 해외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부스설치 등은 단기·소규모 공사임에도 대규모 공사와 동일하게 해외공사 상황을 통보해야해 업무부담
 - 해외 전시회, 박람회는 통상 3~5일 이내로 행사 종료 후 부스를 철거하는 소규모 공사이며, 중·장기 대규모 시설 공사가 아님
- 2018년 8월 31일 보고 항목 간소화 등을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보고 항목 간소화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이 있어 2019년 4월 5일 대안반영폐기로 의결
- 2019년 5월 15일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용어변경 등을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19.9.10일 상황보고 간소화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공포되었음

건의사항

- 서비스 업종으로서 분류되어 있는 전시장치산업의 부스설치 공사는 3일~5일 이내에 설치 후 철거하는 소규모 공사이므로, 해외공사 상황 통보 항목을 계약 및 준공으로 간소화하거나 보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시행령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17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반영(20.5.19)

건의요지

- 현재 국가시범도시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구축 목적상 여러 기반시설들의 정보를 수집·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에 알맞은 보안 수준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 스마트시티는 설계상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함

건의사항

- 스마트시티가 다른 도시기반시설들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만큼 알맞은 보안 수준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사이버 보안 가이드
- 현재 관련 법안들이 산재해 있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바, 해당 법률들을 한데 묶어서 획일적인 점검 항목과 보안성 체크, 단위 보안 후 연동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지침 마련이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스마트도시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반영(20.8.24)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추경) 확보

건의요지

- 1998년부터 2023년 완료 목표로 전국 162개 시·군 지자체 상·하수도관 및 도로경계선을 측정하여 자료구축 및 전자지도 제작 중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 정보를 국토해양부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도시기반 시설물 기본정보인 상·하수도 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지하매설물 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의 핵심은 기본정보 조기구축임
 - 일부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비(지방비)를 확보하여 추가예산 요구(소요예산 100억 추정)

건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료구축 소요예산 중 국비 부담액 100억(추경예산)을 지원 건의 하였으니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반영(20.8.24)

공공·민간 협업의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건의요지

-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입체 공간정보기술 현황
 - 디지털트윈의 기반이 되는 입체공간데이터(3D)는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과 장비가 발달하면서 데이터 정밀도도 높아져 LOD4 수준(현실과 유사형태)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서비스가 가능해진 상황
- 디지털트윈을 통해 현실 세계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측분석에 사용할 데이터가 중요하며, 예측분석의 특성(광범위한 지역 분석, 특정지역 분석 등)에 따라 LOD1~LOD4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공공·민간이 협업하여 현재까지 일부지역을 구축하였으나, 향후 구축범위를 전 국토 대상으로 확대 필요

건의사항

- R&D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업에 반영하려고 할 때 연구기간동안 기술경쟁력 격차가 발생하여 현실적용이 어렵게 되므로 R&D 추진 시 선도 기술 연구방향 수립 및 시행과 동시에 현장 업무 반영을 위한 활용사업도 병행 추진 필요
- 민간에서 보유한 기술수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존 존재하는 기술을 우선 활용하되 R&D는 디지털트윈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급변하는 IT기술트렌드 대응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반영(20.8.24)

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선

건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를 제작, 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해야 함
 - 단,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해야 함
-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를 통한 자기인증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과정에서 애로 발생
 - (기술검토) 공식적인 처리기간이 14일로 되어있으나, 추가 자료 보완 시에는 처리기간 및 진행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업무 지연에 따른 불편 야기
 - (안전검사) 현재 안전검사 신청 시 검사예정일은 지정할 수 있으나 시간 예약은 불가한 상황으로, 안전검사 당일에 장시간 대기해야 함

건의사항

- (기술검토) 기술검토 시 자료 보완 또는 추가 검토 중에도 처리기간 및 진행현황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제작자의 업무 애로 해소 지원
- (안전검사)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시간대별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반영(20.8.24)

건의요지

- 전국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0% 이상이 노후화 진행 중이며, 이 중 국가산단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80% 이상
 - 노후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비중이 과다하고, 물류, 주차, 쇼핑 등 기업경쟁력과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데 관련 시설과 기능이 부족
- 한편,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동두천산단, 신평산단, 문발산단, 용현산단 등은 노후화로 기반시설이 재정비가 시급하며, 주로 섬유·피혁 등 에너지·용수 다소비 업종으로써 공해유발로 인한 주민갈등도 심각한 실정

건의사항

- 산업단지 고도화의 역량강화: 우수인력 유입 및 근로자 재교육
- 노후산업지를 도심인접성, 산업구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전환형, 환경개선형, 절충형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접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의 노후단지정비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반영(20.8.24)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한 부당금품 금지 환경 조성

건의요지

- 타워크레인은 고층 구조물 건설공사에 필요한 철근, 거푸집 등 각종 자재를 인양하는 건설기계로 종합건설업체가 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배치
 - 타워크레인조종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임금을 받음에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월레비 등 부당금품을 요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 불만족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속도저하, 하역거부 등 업무적 보복
-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연합을 통해 부당금품 지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도급자로부터 지체상금, 계약 미이행 등 압박 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자체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건의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부당금품 요구행위 금지
 - 업무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건설기계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반영(20.8.24)

건의요지

- 노후 건축물의 증가,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의 관리 부실, 해체공사 안전 관리 미흡 등의 건축물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이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19.4.30),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19.11.27)
- 동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관리자는 주요 구조부 또는 화재·피난안전 설비 등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증설하는 경우와 건축물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축물 생애이력 체계에 입력해야 함
- 소규모 상가 소유 자영업자, 소규모 공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여, 자료 구비를 위해 대부분 건축사 등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해 경영상 부담 우려

건의사항

-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 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공장건축물의 생애이력정보는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 정보 활용
- 수선·변경·증설 및 보수·보강 범위의 명확화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건축물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반영(20.4.28)

수입대두 직배가격 인상 방침 철회 요청

건의요지

- 2020년 11월, 농식품부는 수입대두 실수요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대두 직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 설명
 - 국영무역 매출이익 감소 전망, 국산콩과 수입콩 간 가격차 확대 등이 이유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영무역 이익 감소를 실수요단체와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수입 대두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국산 대두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건의사항

- 농식품부의 수입대두 직배가격 인상 방침 철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6)

건의결과

반영(20.12.24)

건의요지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서는 빵류·떡류 등에 대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HACCP은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기업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무적용이 시행됨으로써 영세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 대해 필수 조건으로 확대됨
-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영업자들이 제도를 준수하고 따라야 하지만 4단계 의무적용 대상인 영세업체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0.12월) 이전에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들의 경우 폐업도 고려중인 상황임

건의사항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해 HACCP 의무적용 시행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반영(20.12.24)

건의요지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총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식품위생법 제89조)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 현재 기금의 사업 범위가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좁게 해석·운영되고 사업도 주로 용자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식품진흥기금 사업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위생물품 구입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 사업범위 확대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중소기업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사업 확대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제89조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반영(20.9.16)

건의요지

- 식약처는 2020년부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는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작업이 발생하게 됨
 - 동 판매장에서의 소분 등 업무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수행할 수 있음
- 한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 관련 법령, 제조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됨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사람

〈조제관리사와 책임판매관리자의 비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에서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건의사항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로서 업무 수행한 경력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반영(20.9.16)

화장품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건의

건의요지

-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함
 - 한편, 최근 과징금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됨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 영업자의 사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
 - 타법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이 커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례)〉

제1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의사항

-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업계 상황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조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반영(20.9.16)

건의요지

- 가정용 의료기기 등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2007년부터 소비자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어, 광고에 앞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
- 한편,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만 사용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업계의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이 상당
 -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정보(사양 등)를 게재함에 있어서도 각 제품마다 별도 심의를 진행하여 과도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게 됨
- 사전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특정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여 실제로 업계 최초로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최초’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등 업체의 마케팅 활동이 크게 제한받고 있음

건의사항

- 의료인만 사용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
-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심의를 1건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비용 경감
- 특정 문구에 대해서 심의 방식을 변경(허용 문구 심의 → 금지 문구 심의)하여,
 - 업체 자율성 보장하고 사전심의 강화보다는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의료기기법 제25조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반영(21.4.16)

건의요지

- 올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짐
 -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와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며 책임 역시 커진 상황
- 그러나 현행 법 상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대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활용방안과 그와 관련된 규제·제재사항 등 중소기업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
 - 자금, 인력 등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역량 및 전문성이 낮아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 대응이 어려운 상황
 - * 국내 사업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률: 2.9% [과기부-정보보호실태조사, 2019]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활성화 지원책 마련
 -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법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제재 등 안내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홍보·배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 구성
 - *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지부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안내가 가능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0.10.20)

건의결과

반영(20.10.20)

건의요지

- 최근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이 개정(20.1.9)
 - *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이미 방대한 양의 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보유한 정보의 양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가명정보 데이터 등을 단순 구매·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 가명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거래·유통이 가능한 정보
-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미 대량의 가공 가능한 가명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만 유리한 반쪽자리 지원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
 - 대기업 대비 데이터 활용 지식·정보·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산업 지원정책 마련 필요
 - *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중소기업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5년 간 약 3천억원(20년 575억원) 지원 중이나, 사업에 참여한 일부 공급·수요기업 간 데이터 거래·유통에 대한 지원에 그침(붙임 참고)

건의사항

- 중소기업 데이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 강화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 과기정통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①중소기업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지원 방안 모색 ②개인정보보호법·령·규칙 개정 ③위원회 운영·정책방향 등 사항 논의
 - 중소기업의 데이터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책 마련 시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0.10.20)

건의결과

반영(20.10.20)

건의요지

-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증가 및 글로벌 기준 상향에 따라 GDPR의 정보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이나 정보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등과 같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우리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음
 - * 정보보호영향평가: 개인정보시스템 신설 또는 중요 변경 시 조직 구성원과 국민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평가하는 제도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정보 등 여력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제 준수가 어려운 상황
 -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대기업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건의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차등화 방안 마련 요청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신설·변경 시, 기업의 규모·여력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선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0.10.20)

건의결과

반영(20.10.20)

건의요지

- 최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증가 등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
 - 특히, 증권분야 이외로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발의('20.9.29)에 따라, 법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바, 관련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모두 준수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
 - * 컴플라이언스: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조치 및 법령준수 시스템

건의사항

- 개인정보 관련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종(예: 대국민 모바일 플랫폼) 중소기업에 정부차원에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하여 전문 인력을 지원
 - 특히, 해당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업종·규모별로 <표1>의 업무지원 담당인력을 배정

<표1. 업무 지원 범위>

- 1) 정보시스템 개발업무의 보안성 검토
- 2) 24시간 365일 침해사고 보안관제
- 3) 기술적 보안솔루션 구축 및 운영
- 4)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전문 법률자문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0.10.20)

건의결과

반영(20.10.20)

건의요지

-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부담이 매우 큼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비용 1억 이상, 개인정보보호 인증이 포함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비용 0.5억 등 비용 부담
 -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에 의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되어 있음

〈참고〉

- 개인정보보호 인증은 현재 법정인증인 ISMS-P(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와 민간인증인 ePrivacy 인증마크(인증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존재
 - * 다만, ISMS-P는, 인증범위, 심사항목, 인증수수료는 물론 컨설팅 등 인증 준비를 위한 비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약 1천만원 이상 수수료 소요)

건의사항

-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및 솔루션 지원 정책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한 컨설팅 인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0.10.20)

건의결과

반영(20.10.20)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건의요지

- 성능인증 받은 동일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공장심사 진행

건의사항

- 규격추가 시 공장심사 절차, 신규 인증 시 받은 공장 검수로 대체 또는 간소화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이미 성능인증 받은 제품의 규격만 추가되는 경우, 공장심사 면제(신규인증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 또는 추가 규격 내용만 확인토록 개선 필요
 - 동질제품에 해당하는 규격추가 공장심사 시 품질경영 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에 해당하는 항목 생략 검토 필요
 - 동질제품으로 판단되는 규격추가 시 공장심사 항목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타 인증(ex. KS)과 비교해 동 인증의 규격추가 시 생략 절차 및 항목이 없어 신규 인증발급과 동일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개선이 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특장차는 최초제작자 자동차의 제원이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 동일한 트럭에 기 인증된 동종의 차량일 경우에는 “기술검토” 없이 “검사신청”이 가능(동일 트럭 및 동종차량에 자동변속기와 엔진마력 증대 등을 인정)
 - 그러나 특장차 제작회사는 마력증대, 변속기 및 엑셀 일부 변경(내부기어 50개 중 2개 증대) 등을 사유로 재 인증 요구

건의사항

- 신규차량 개발 등 수준에 맞춰, 기 출시차량 보다 적재톤수가 높은 것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실행 요청

<부처 검토의견>

- 기존의 기술검토 면제 조항*에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도 추가하여 기술검토 간소화 추진
- * 동일한 형식의 변속기·타이어·림의 변경이나 모델연도 등의 변경 시 기술검토 면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 시 설계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수정이 곤란
 - 중추 PLATE, 철골 PLATE 등 강도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의 설계치수를 강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수정 요구
 - * 사례) 특정 부속의 사이즈를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판단근거를 요청했으나 미제시 → 기업의 계산식에 따르면 해당 부속의 사이즈가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를 확인코자 했으나, 공단에서는 강도가 높아진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근거는 미제시한 채 수정만을 요구함

건의사항

- 설계 수정 요청 시 해당 부분의 맞는 근거 제시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시정 조치
 - * 내부 공문, 교육 조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구조형 폴리에틸렌관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과 한국프라스틱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의 성능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각각 인증심사(사후관리심사, 정기심사 포함) 시에 인증제품을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고 있고, 공인기관성적서를 6개월마다 구비해야하는 심사항목과 함께 품질인증도 매년 받고 있음
 - 인증심사(사후관리/정기심사 포함) 시 인증별로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갖춰야 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고 있음
- * 단체표준(SPS-KPS M 2009-0830)과 KS인증(KS M 3500-1/2/4)의 대상과 시험기준이 일부 유사

건의사항

-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관련 KS와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받는 업체는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부처 검토의견〉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추진 및 KS-단체표준 중복해소 중장기 개선안 마련
- * 단체의 인증업무 규정 개정 협의 권고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위생안전기준인증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심사 세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적합인증, KC위생의 경우 세부검사 결과를 피심사자의 '내부 품질관리용'으로만 공개하고 있으며,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 받고 있음
 - 최종 고객의 경우, 세부 결과를 알고 싶어 하나 외부 미공개 조건이어서 보여줄 수 없어, 고객들(특히 감리단)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음
 - 다수 중소기업들이 고객 요청에 따라 미공개 조건 서약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미공개 조건을 지키는 업체들만 고객에게 항의를 받고 있음
- 인증 심사 위원에 대한 적격성
 - 심사 위원마다 심사 점수 기준표에 대한 해석이 다름
 - * 예) 이전 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고쳐 놓으면, 다음 심사 위원은 그것이 틀렸다 자기가 맞다고 하여 동일 문서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아야 함
 - 심사 항목 배점에 대한 설명 부족
 - * 예) 심사 완료 후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확인할 수가 없어, 해당 항목에 대해 이견 제시를 제 때에 할 수 없음
 - 심사 점수 기준표에 의한 배점이 아닌 심사 위원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배점인 경우
 - * 예) 전자 문서(이카운터)로 올린 인수 검사 보고서를 보여주었으나, 심사 위원이 종이 기록을 요구하였고, 종이 기록이 없는데 정말 인수 검사한 것이 맞냐고 의심, 전자 문서는 검사 안하고도 작성이 가능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함. 형식, 절차만을 위해 가짜로 종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니, 그런 것 까진 알 수 없다고 대답함. 종이 기록만 인정한다는 것이 규격 또는 심사 기준표에 어디 있냐고 물으니 정확하게 답하지 않음
 - 심사 위원으로 인성이 의심되는 경우
 - * 예) 기차 시간 늦다며, 과속 요구 (조수석에 앉아서 액셀 더 밟으라고 재촉)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사항

- 위생안전기준 인증성적서 공개기준 명확화
- 인증심사원의 불합리한 평가 또는 부적절한 심사태도에 대해 의견 제출하는 절차 마련

〈부처 검토의견〉

- 위생안전기준인증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 심사결과와 함께 시험성적서도 제공키로 개선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정 및 「위생안전인증 등록정보망」의 공지사항 게시
- 인증심사원에 대해 이벤트성이 아닌 상시 피드백 제도를 운영, 불합리·부적절한 심사행위를 규제할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건의요지

-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승강기·건설업계, 건축주의 혼란
 - 승강기 안전기준, 인증기준, 검사기준을 분류하여 고시하였으나, 심사원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심사하지 않고 안전기준과 인증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중복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인증기준과 설치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 항목 등이 중복되는 이중규제로 인하여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업무량 과다(서류작성, 신청, 수수료, 설치검사 입회 등)하여 효율성 하락 및 업계의 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

건의사항

- 승강기 인증 관련 행안부 주관으로 공단, 협단체, 제조업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 필요
 - 안전과 관련 없는 인증기준과 검사기준의 중복 업무 규제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 개선·완화 추진

〈부처 검토의견〉

-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공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인증 개선 TF”를 구성, 제도개선 중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건의요지

- 현재 출시되는 차량의 크기와 중량이 현재 법과 괴리감이 있어 변화가 필요함
 - 승용차·SUV 등 차량이 점차 대형화 되고, 전기차·수소차 등의 크기와 무게가 변화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은 대·중형으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선 필요
- 현행법상 대형 주차구획 안전도심사 접수 시 전 차량이 SUV로만 설계가 되어야 하나, 현재 신설되는 주차장의 규모 상 전 차량이 SUV로 설계가 될 수 없어 법과 현장에 괴리감이 발생함

건의사항

- 독일 및 중국처럼 주차구획 및 차량중량의 세분화가 필요함.
 - 대형 SUV 및 대형 SEDAN의 혼합형 주차장이 가능토록 현행 법 수정

〈부처 검토의견〉

- 차량의 대형화와 제원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종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용접철망이 기본형태인 ‘레귤러’와 변형된 ‘디자인’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선지름,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임
 - 용접철망의 나비, 용접, 철망의 길이, 세로선, 가로선, 돌출의 길이, 망눈 치수, 종류, 기호 및 적용 선지름 또는 적용지름, 기계적 성질에서 인장강도, 굽힘성, 용접점 전단강도가 모두 동일
 - 단 용접점 전단 강도의 30N/mm²의 차이만 있음

건의사항

- 용접철망 KS D7017 규격의 레귤러 용접철망과 디자인 용접철망은 동일한 KS 중복 인증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부처 검토의견〉

- 시험기준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KS개정 추진
 - * KS D 7017 개정 고시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기준에 이미 폐지된 기준(KSB6153)이 남아 있어 혼란
 - 수도용 감압 밸브와 수도용 릴리프 밸브의 적합 기준은 “[별표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은 보일러에 들어가는 소규모(15A~50A) 크기의 밸브로 구조 및 성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건의사항

- [별표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기준’ 개정 요청
- 제·개정 신청 시 전문가 지원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적합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적합표준 개정 추진
 - * 물기술인증원 내부운영규정인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성능인증의 짧은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시 기간연장의 과도한 세분화
 -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짧은데, 유효기간 연장도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증받는데 애로
 - * 중소기업은 특허 출원 및 시험결과를 내고, 접수 후 인증받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성능인증 발급 및 설계 이후 현장에 반영되기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인증 최초기간 3년은 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고군분투의 기간이며, 연장기간 동안 실제 시장 납품 및 상용화가 이루어짐. 그런데 연장기간을 6개월, 1년, 1년 6개월 등 기간을 쪼개어 인정해준다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심각히 저해하는 요소이며 불합리한 독소조건이며, 인정기간 세분화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

건의사항

- 신규 성능인증 유효기간 5년 연장, 연장신청 시 기간연장의 과도한 세분화 폐지 및 3년 연장기간 확보 요청
 -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어 설계반영 후 발주, 납품까지 지속적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며, 연장기간 역시 3년을 확보해주어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형성을 도모할 수 있게 건의

〈부처 검토의견〉

- 유사인증(ex. NEP)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 기술개발 유도 및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라는 성능인증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연장기간 세분화 역시 마찬가지로 성능인증이 새로운 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현행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유효기간 연장시 6개월 단위 → 1년 단위로 확대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 발생 등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
 - CC 인증 취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 *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제품 구매 시 CC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함(보안적합성검증제도, 국정원 소관)

건의사항

- CC 인증 소요기간 단축(2개월 내) 및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자동 연장

〈부처 검토의견〉

- 국내용 CC인증 유효기간을 2년 확대(3년 → 5년)하고, 중소기업이 손쉽게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CC인증 기본교육 추진
 - 평가기관 확인 결과, 신청 업체의 제출물 준비 미흡이 대기기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제출물 준비를 위한 사전 안내 및 교육 강화 필요
 - * '정보보호제품 국내용 평가·인증 세부수행절차'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인증기관 심사인력 부족, 업체 이해도 부족 등으로 인해 법정 처리기간 임박하여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
 - 보완기간(1회, 1개월)이 짧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못할 경우 불합격되어 재신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 * 법률을 위반한 행정처분 과태료 보다 서류 지연의 불합격 규정이 가혹함

건의사항

- 승강기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장 요청
 -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심사하는 상황 개선 위해 인증심사원 총원이 필요
 - 기한 내 현장 설치검사 이뤄지도록 서류 보완 완료 시 인증서 즉시 발급
 - 개별인증 받은 제품 재설치 시 설계심사 기간 단축

〈부처 검토의견〉

- 설계심사 보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두배 연장
 -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동 안전 관련된 TF를 마련하여 애로해소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료
 -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식물처리기 K마크 인증, 인증 및 시험성적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도 매년 유지관리비를 내야 함
 - 매출하락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유지관리비를 못 냈더니 인증이 취소
- 인증 취득시점과 현 시점의 제품은 동일한데 단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됨
 - 인증은 기기성능을 검증하여 기기 사용자들이 기기성능 불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단지 비용 지불 여부로 인증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
 - 또한, 동일제품의 유효기간도 무의미하다고 생각

건의사항

- 비용의 문제로는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부처 검토의견>

-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인증비용 애로인 경우 비용 납부를 연기(3개월)할 수 있도록 개선
 - K-마크 인증은 법정인증이 아닌 민간인증이므로 법적제도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어려움
 - 다만, 인증기관이 개선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필요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절차서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원 충원 등 필요
 - 인증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처리기간이 임박하여 심사하는 실정으로, 납기가 짧은(3개월) 관공서 현장은 인증 및 설치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또한, 심사원별 다른 기준적용으로 동일현장, 동일모델, 동일규격 사양에 대해 보완 요구 지속

건의사항

- 인증심사원 충원을 통해 설계심사 보완 요구 사항을 완료한 경우 인증서 즉시 발급
 - 인증을 위한 설계심사·안전성 시험·공장 심사에 대한 인증 및 업계실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서류작성 지침과 매뉴얼 배포, 교육 실시 필요
 - 개별인증 받은 모델을 재 설치할 경우 설계, 기능이 동일한 모델의 개별인증 설계심사는 최대한 기간 단축
- 설계심사는 안전기준과 분리하여 인증기준만으로 심사

〈부처 검토의견〉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 급증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35명으로 확대 운용 예정
- * 승강기 인증심사 인력 충원완료('20.6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반은 제품시료 채취가 주목적인데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사비용 부담
 -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는 행정사후관리와 제품사후관리로 구분되는데 제품사후 관리는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품질관리, 생산시설관리 실태를 모두 심사하는 행정사후관리와 달리 단순서류 확인 및 시료 샘플링이 전부임
 - 그러나 행정사후관리와 같이 2인1조로 심사하게 되어있어 업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1인 - 300,000원, 2인 - 600,000원)

건의사항

- 단체표준 제품사후관리 시 2인 → 1인 심사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처 검토의견〉

- 제품심사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이 하도록 개선
 - 제품심사의 경우 시료채취가 주목적이므로 1인의 심사원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조달청 조달품질원 검사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공장심사 등에서도 1인 심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Guide 2.0, 2020.7.1.)」의 관련 조항의 개정이 요구됨
 -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자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설계심사·안전성시험·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며, 관련 심사 및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최초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는 464만원이며, 이는 1대당 평균 수주금액(3,500만원)의 약 1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과다한 수준
- 또한,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464만원 납부 후 설계·기능이 동일한 모델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도 각각의 승강기에 대해 설계심사 수수료를 232만원, 116만원, 464,200원으로 차등하여 계속 납부

건의사항

-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
- 인증서류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제공

〈부처 검토의견〉

-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동 안건 관련된 TF를 마련하여 애로해소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료
 -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중소기업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 수수료 인하

건의요지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
*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29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인 유사제도와 큰 차이

건의사항

- 중소기업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인하

〈부처 검토의견〉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인하 조치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규정 개정 및 기재부 협의 추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새롭게 개발된 신용합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시험·검증 방법이 없는 경우 의뢰자의 요청시험이나 유사조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 등 부담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신용합제품 성능인증 시험·검증비용 부담 완화

〈부처 검토의견〉

-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비용 지원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 추진
* 성능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건의요지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매우 큼
 - ex) 제품당 고효율시험성적서 금액(비용), 인증서 발급 비용 따로 발생

사례

우리 회사는 KC, KS, 고효율 인증을 가지고 있는 LED 램프 제조 회사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인증 비용이 겁이 나서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개발하여 인증을 받아서 얼마나 생산을 해야만 인증 비용을 뽑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 센서 컨버터 등 제품 30개 정도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6천만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품들을 크게 나누면 3종류 밖에 안 되는데 LED 색상이 다르다, 제품 크기가 다르다, 정말 간단한 이유로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또한, KS와 고효율 인증은 유사한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 각각 인증을 받고 공장심사 까지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지만 제조업체 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인증 비용 부담을 낮춰 제품을 생산하게 도와주세요.

건의내용

인증취득에 긴 시간 인증비용의 지원 이런 문제가 여러번 나왔지만 인증기관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증기관 급여를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인증기관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부가 인증비용을 낮게 책정을 하든지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을 설득해서 인증을 간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비슷하면 인증을 같이 사용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점을 찾으려면 제조업체와 인증 기관 정부 등 상호가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제조업체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지요?

건의사항

- 중소기업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현재 예산한도 1억원)

〈부처 검토의견〉

- 중소기업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 반영 협의 추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건의요지

-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다수의 인증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
 - 조달참여를 위해 유사 임의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마다 인증마크 표시, 다수 인증 받아야 가점 붙고 납품에 유리

건의사항

- 우수조달 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부처 검토의견〉

- 신인도 가점을 항목별 동일한 점수만 반영하여 인증 과다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인도 항목 가점도 지속적으로 축소 검토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조달청(MAS) 전문기관 검사기간이 길어 납품 시 기업의 어려움 발생
 - 현재 기관에서 일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기관에 전체 검사권 부여 등)

건의사항

-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인증제품일 경우 인증면제(부품 인증서로 대체)
- 인증기관의 인증비용 및 기간을 통일하고 비용, 일정을 규격화하여 정부기관에서 공지

〈부처 검토의견〉

- 검사항목 표준화 추진과 함께, 검사기관별 검사 소요일수(14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검사일수 초과 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방안 강구
 -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혁신시제품 신청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애로

건의사항

- 혁신시제품 연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 인증취득 완료시 빠른 재신청 기회 부여 요청

〈부처 검토의견〉

- '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상반기 2회로 확대. '21년부터 연 4회로 추가 확대 예정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에 반영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조달물품 재등록 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불편 사항 초래

건의사항

- 조달물품 재등록 기간 30일로 단축 요청
- 인증비용 부담완화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재등록 경과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특수조건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조달 우수제품 가격은 국가 공인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 필요

건의사항

- 조달 우수제품 가격은 국가 공인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우수조달물품 가격은 개별 거래·구매 실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갱신은 어렵지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변경 가능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현재 목재법 관련 규격 검사와 KS가 별도 인증으로 나뉘어 있음
 - 그러나 두 인증이 모두 품질에 기반한 인증으로 결과 값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중으로 많은 시간과 인증 비용이 들고 있음
 - * 단, KS는 품질관리 프로세스, 목재법 품질규격 인증은 제품의 실제 규격과 품질에 중점
 - 이 두 인증은 한 기관(임업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음.

건의사항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와 KS인증 간 중복이 있으므로 상호 면제 등 개선 필요
 - * 예) KS인증 업체는 목재법 규격검사 면제, 목재법 품질규격 합격업체는 자동으로 KS획득 등

〈부처 검토의견〉

- KS인증 업체가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 제공 시, 규격·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16.12월~)
- 단, 동일한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인정하고 있어 면제의 범위가 한정적임
 - 그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면제확인 제도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림청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면제범위 확대 검토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전자파 적합성평가 파생기준이 불명확하여 시험기관별 판단기준이 상이
 -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제품의 파생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기관 별로 기관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판단

건의사항

- 전자파 적합성평가 파생모델에 대한 규정 명확화

〈부처 검토의견〉

- 관련 고시(제15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업계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단순 파생모델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13.7월~)
 - (단기적 대안)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에서는 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된 파생기준 등의 유권해석이 각 시험기관으로 잘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
 - (중장기 대안) 기업에서는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제도 운영하고 있는 국립전파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변경에 따른 추가 시험 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KS인증 받은 품목은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면제범위를 규정, 실제로는 제품마다 신규로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전자파 적합성 평가 인증 받은 규격 이하의 제품은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로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음
 - 따라서 규격용량 변화에 따른 컨버터의 미세한 회로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면제가 아님
- KS제품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동시에 심사를 받으며 전자파 적합등록에서 요구하는 동일 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동일 제품에 대해 산자부에서 관리 시 구간 전체를 면제해줘도 수십 년간 아무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건의사항

- KS제품은 조건 없이 인증구간 전체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 인증 받은 동일회사의 컨버터를 사용하고 동일회사의 표준모듈을 사용할 경우 인증제품 이하의 규격은 조건 없이 파생으로 등록하도록 요청

〈부처 검토의견〉

- 불합리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해 적합성평가 면제제도 운영 중
 -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4호('16.6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LED 환경표지인증 모델추가 시 최초 인증시 제출했던 자료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 가중
 - * 최초 인증시 제출했던 RoHS, MSDS 등 관련 자료 모두 추가 제출

건의사항

- 모델 추가 시 제출 서류 간소화(중복서류제출 방지)
 -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낭비 및 기간 축소

<부처 검토의견>

- 최초 인증 시 모델과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점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받아 인증기준 부합여부 심사 중
 - 판매를 위한 단순모델명 추가 등 제품의 변경이 없는 인증 변경 시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단, 부품변경 등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품질 및 환경성 확인을 위해 관련 최신자료 제출이 필요함
 -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06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환경표지인증 일시중단에 따른 조달자격 취소 애로

건의요지

- 환경표지인증 갱신 시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시간지연으로 이어져 인증해지와 함께 조달제품 자격도 같이 상실되는 애로
 - 환경표지 신규인증 및 갱신인증 등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인증이 되지 않아 나라장터에서 인증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인증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

<부처 검토의견>

- 환경표지 인증시 보완기간 중에 인증기간 만료로 인증이 해지되어 조달제품 자격이 상실되어도, 보완 완료 후 재인증되면 별도 절차 없이 조달제품 자격 부활되도록 운영 중
 -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동연계 조치('10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신기술·신제품 인증 시 표준 품질관리 규정 적용 완화

건의요지

- 신제품(NEP)인증은 신기술의 적용을 중점으로 평가해야하는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성이 아닌 품질경영체계 미흡으로 인증취득이 제한됨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품질담당부서나 전담직원이 있으므로 품질관리규정을 쉽게 통과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은 회사규모가 작아 품질관리 전담직원 등을 배치할 수가 없어, NEP 인증심사 시 품질관리 규정 점수 미달로 인증취득이 어려움
- 특히 신기술·신제품 개발 시 기존의 품질규정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기존 품질관리 규정이 NEP 인증취득심사에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은 문제

건의사항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인증의 품질보증시스템 기준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완화 또는 표준화된 품질관리 규정 마련 및 공개

<부처 검토의견>

- 품질보증시스템 확인 항목을 비롯한 현장 심사사항 既 공개하고, 1381콜센터 내 신제품 인증 헬프데스크에서 추가안내 중
 - 신제품(NEP)인증은 적용된 핵심기술의 혁신성 뿐 아니라 실용화 여부,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하여 인증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제품과 같은 품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경영체계 구축여부 평가 필요
 - 또한 관련 고시에 따라 품질보증시스템 확인 항목을 비롯한 현장 심사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각 심사 항목은 KS 공장심사 품질경영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며,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 신제품인증 헬프데스크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품질보증시스템 안내('18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합리화

건의요지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색온도별로 모두 시험을 받아야 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증 요구

건의사항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합리화

〈부처 검토의견〉

- 단순 색온도별 변경 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아닌 경우는 파생모델로 인증신청 가능하며, 시험할 경우에도 필요한 일부만 시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2-91호) 개정('12.4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LED인증 관련 성적서 상호 인정

건의요지

- LED 조명기구 공인인증 시험성적서에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 동일제품의 동일시험임에도 상호인정 불가

건의사항

- 제출처 및 용도 관계없이 동일제품 동일시험일 경우 2년 이내에 발행한 공인인증 시험성적서 보유시 시험 면제토록 요청

〈부처 검토의견〉

- LED 관련 성적서는 '제출용도'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 25조의 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14.12.30~)
- 시험성적서 상 용도(제출처) 표기는 신청인 선택 사항
 - 공인시험기관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용도대로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 성적서의 '용도'란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제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 대부분 수요기관과 시험신청인의 계약에 의한 사항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음
- 다만,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기관에서는 공인시험성적서의 '용도'란에 관계없이 인정가능 여부를 자체 판단할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제품구조 및 회로가 동일한 조명기구의 디자인 변경 시 파생등록이 불가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 제품구조 및 회로가 동일한 조명기구의 단순 디자인 변경 시 파생등록이 가능토록 요청

〈부처 검토의견〉

- 파생모델 등록은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하고, 모델구분 세부기준 적용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능
 - 단, 제품의 구조와 회로가 동일하지만 고정형, 매입형 등 설치형태가 달라지는 디자인 변경의 경우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다르므로 개별기준에 따른 모델 구분이 필요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00.7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성능인증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
 - 심사위원 중 일부는 심사대상 분야 보다 각자 분야의 이론·지식과 기술 이해를 토대로 다른 업종에 대해 평가하여 심사 신뢰성 저하

건의사항

- 분야별 전문성 있는 성능인증 심사위원 위촉 요청
 - 심사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실무 이해를 갖춘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문제점, 보완 사항에 대해 지적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분야 세분화(5개 → 8개*) 및 자격요건**을 이미 강화함
 -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토목·건축, 사무용품 등 8개
 - ** 1. 학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2. 연구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3.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 4.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피인증 기업으로부터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관련 역평가 설문 실시, 누적 3회 경고 시 심사원 자격을 배제하는 등 심사원 품질관리 중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9.1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성능인증을 취득한 제품임에도 기간연장 시에는 최초심사 절차(적합성심사 → 규격확인 → 공장심사 → 성능심사)와 동일한 절차진행으로 심사 부담

건의사항

- 우수조달제품처럼 서면으로 기술과 품질의 유효성을 소명자료 제출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간연장

<부처 검토의견>

- 기간연장 심사 시 적합성 심사의 평가항목을 간소화하고, 규격확인 절차는 생략하도록 이미 간소화가 이루어짐
 - 또한 재심사 시에는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가 구성되며, 유사 타 인증(ex. NEP)과 비교해 인증기간 연장 심사절차가 과도하지 않음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19.7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기계식주차장치는 크게 철골과 기계 두 부분으로 구분되나 인증은 하나로 받고 있어, 부분(철골/기계 中 1) 변경 시에도 전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
 - 안전도 심사서에서는 기계/철골구조물 두 가지가 하나의 쌍으로 묶여있어 기계장치/철골 둘 중 하나가 개선될 경우 이미 인증받은 다른 한 쪽에 대해서도 똑같은 인증 과정이 필요
 - 현 인증제도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골 구조물 강도 계산 방식도 기계장치의 형상 등은 미고려, 특정 무게가 특정 부위에 동적/정적 하중을 가하는 방식만으로 계산
- 이는 기업 입장에서 인증에 필요한 비용, 시간 소요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건의사항

- 안전도심사의 인증 과정을 철골과 기계 2종으로 구분
 - 기존 인증을 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현행 제도에 있긴 하나, 그 범위에 대한 법적 표현이 모호하고 매우 좁아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적용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기계장치 및 철골 구조물 개선을 유도

〈부처 검토의견〉

- 철골구조 변경은 안전도 변경인증의 범위에 이미 포함시켜 허용 중
 -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8.12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개별 담당자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현장용 구조계산서 요청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함
 - 불확실한 요청기준은 기업의 업무절차 지연 및 서류준비 등 행정 부담을 가중
 - * 인증서 철골 구조계산과 현장 철골 설치가 비슷하여 현장용 구조계산서 필요 유무 확인을 위해 해당 검사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추후 현장과 인증서의 철골 구조계산서가 다를 시 요청하겠다고 필요 유무를 확답 주지 않음

건의사항

- 높이 몇 프로 이내 인증서와 상이 시 제출해야 된다는 기준점
 - 건물내장형 기계식주차장의 현장용 구조계산서가 면제되면 안전도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현장용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시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

〈부처 검토의견〉

- 안전도심사에서 건물내장형으로 구조계산서를 제출 받아 검토·처리하고, 사용검사시 철골구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골 부재가 다를 경우 구조계산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음
 - *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8.12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벤처기업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건의요지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아 반복되는 인증취득으로 인한 시간 및 수수료 낭비 발생 및 중소기업 부담 과도

건의사항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유효기간 확대(연장)

〈부처 검토의견〉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연장(2년 → 3년) 관련 법령 개정('20.5.12)·시행 예정('21.2.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5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전기용품 KC인증기관, 3개(KTC, KTR, KTL)로 한정되어 시험지연(60일)

건의사항

- KC 민간시험기관 추가지정을 통한 시험지연 완화 필요

〈부처 검토의견〉

- 안전인증기관과 계약한 민간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제품시험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현재 3개 인증기관 이외에 민간시험기관에서도 시험 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시험기관의 참여가 저조함
 - *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 계약체결 지침 고시 제정('19.7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코로나19에 따라 공장심사·안전성 시험 등 연기되는 사례 多

건의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공장심사·안전성 시험 연기 시, 인증서류 접수 업체에 한해서는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한시 유예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코로나로 인해 공장심사를 못 받는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추후 공장심사 진행하고, 안전성시험만 거쳐서 인증서 우선 발급
* 적극행정을 통해 공장심사 유예('20.6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KS정기심사 성적서 구비요건 완화

건의요지

- 조명기기 KS 사후관리 정기심사 시 성적서를 품목별(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 대표규격 1개에서 규격 범위별로 1개씩 보유로 변경되어 부담 가중

건의사항

- 조명기기에 대한 각 품목별 KS인증 사후관리 정기심사 시 품목별 대표규격 1종류에 대해서만 제품시험 비교사항 시험성적서 보유토록 명시
 - KS Q 8001 부속서B 공장심사보고서 4.3항 비교에 '공인시험성적서', 품목별 대표규격 1종류만 보유토록 명시

〈부처 검토의견〉

- KS인증기관에 확인결과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KS정기심사 시 대표 규격범위 1개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심사 시 일부 심사원의 경우 각 규격범위별로 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업체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동일 사항이 발생 시 인증기관에 고지하도록 조치함
 - 심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규정에 따른 심사 진행으로 기업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도 불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에 관련한 세부 교육 및 홍보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해외인증 취득, 갱신 및 컨설팅, 교육 등에 연간 약 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인쇄물 해외 수출 시 G7, ISO, FSC, SMETA 등을 요구

건의사항

-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증의 취득, 갱신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
 - 전액 또는 일부비용(80%) 지원 희망

<부처 검토의견>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수출바우처 사업의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를 통해 G7, FSC, SMETA 인증 비용지원
 - ※ ISO 등 운영 시스템 인증은 필요시 검토 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서 해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 지원하고 있는 규격인증은 435종으로, 인쇄업체에서 필요한 G7 Master(국제 인쇄표준) 및 FSC(국제산림관리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지원 사업에 등록된 규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한 후 인증심의회를 통해 인증제도 평가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우수조달제품 신청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애로

건의사항

- 우수조달제품 연간 지원 횟수를 늘려 인증취득이 완료되었을 경우, 빠른 재신청 기회가 부여되기를 희망

〈부처 검토의견〉

- 우수제품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연 5회로 확대('19년 4회 → 5회) 운영 중
*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19.1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조달 우수 심사 시 실제 사용 고객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 등이 부족하여 애로가 발생

건의사항

- 조달 우수 심사 위원에는 실제 사용할 고객으로 구성하여 실제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심사위원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라도 위촉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15.6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당사는 소형, 경량화로 원가 절감은 물론 기존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이룬 수도용 나이프 제수밸브를 개발하여 물산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음
 - 국내 내수용 물산업 기자재는 주로 관급성이 강하여 형식 인증부터 판로 확보를 위한 자격인증 지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운 구조이며 심사기간 또한 장시간 소요되는 등 당사와 같은 소기업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

- 제품명: 수도용 나이프 게이트 밸브 또는 수도용 나이프 제수 밸브(Soft seat slim gate valve)
 - 종류: 유체 차단용 밸브
 - 특이사항 :
 1. 신청 제품은 국내의 처음으로 수도용 자재로 적용되는 밸브로서 국내 KS 규격은 물론 단체규격도 없는 제품으로 수도용 적합인증 규격 제정 및 적용
 2. 기존 지자체 기업 위주의 판로가 형성된 시장에서 신규 업체가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 진출부터 판로확보까지 인증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4년 이상의 시간과 20억원 정도의 비용 소요가 있었음

- I. 제품 개발 후 수도용 기자재 적용을 위한 적용 규격 제정 과정
 1. 2016년 KS 규격 제정 시도
일반화되지 않은 제품이라 KS 규격 제정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 받음
 2. 2016년 단체표준 제정 시도
공청회에서 명칭 문제로 협회 및 기존 업체와의 충돌로 1년 소요 후 단체표준 제정 신청 기각
 3. 2017년 적합인증 제정

- II . 판로 확보를 위한 인증
 1. 성능인증
제품 명칭 등의 문제로 3년 소요, 30분 이내 심사 시간으로 업체의 판로 확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부조리한 면이 없지 않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이를 위해 2017년부터 특허, 인증서, 각종 성적서 등을 준비를 위해 4년여 소요되었고 3회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금년 중 마지막 4차 신청을 위해 준비 중에 있음

심사에 있어서 교수, 변리사 등의 이론적 지식만을 갖춘 전문성이 부족한 심사위원 구성과 10분 발표와 10분 질의로 30분 이내의 심사 시간만으로 제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제품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며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렵고, 질의 내용 또한 제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고려됨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기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사항

-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전문적인 위원구성, 품질소명 시 다수의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부담, 토론회 심사로 전환, 기업에 대한 자문지원
-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제품 핵심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토론회* 등 실시
 - * 질의·발표 시간연장 및 토론회식 심사 : 제품에 대한 내용이 해당분야 전문가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짧은 시간 내에 심사위원 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 심사위원과 신청제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전환 요청
- 제품에 대한 중요(중복) 인증서 공용화 및 불필요한 시험성적서 제외
- 국내외 처음으로 적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필요
 -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인력부족으로 자료준비가 부족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설득력 있는 발표가 어려울 수 있음 →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자문지원 등) 요청

〈부처 검토의견〉

- 분야별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심사위원 위촉, 9종의 품질소명자료 중 1종이상 제출시 인정, 심사 1주전에 위원에게 자료 배포하여 당일 질의/응답 후 심사, 발표를 지원하는 교육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14.6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건의요지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을 제정,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
- 그러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시 지역 중소기업을 이용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기존에 거래했던 수도권 기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은 채용 의무비율을 법제화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정임

건의사항

- 「혁신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제도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5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검토중(20.12.1)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4)

건의요지

-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국세청, 통계청 등에서 각각의 기준으로 물류산업을 분류하고 있으나,
 - 각 부처별 분류 기준이 다르고, 누락된 산업이 있는 등의 문제로 물류산업발전 정책을 위한 정확한 통계 적용이 어려움
- 국토해양부, 자가 물류 방식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물류 활용을 유도하여, 전문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물류 산업을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자가물류업 종사자는 통계청 물류산업종사자 통계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등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려움

건의사항

- 물류정책기본법에 준하여 각 부처별 물류산업 분류체계 통일 필요
- 실효성 있는 물류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토부의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산업 분류에 ‘자가물류업’(운송, 보관, 사내물류, 유통물류)이 포함하여 관련 통계 작성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물류정책기본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4)

폐차질서 확립을 위한 폐차실명제 등 시행 건의

건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조항이 2016.2.12. 시행됨에 따라, 폐자동차 거래의 수집, 알선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으나, 해당 행위 방지 및 단속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 등의 부재로 인하여 단속처벌 건수 저조 등 실효성 미흡
 - 경찰과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협회 외에 단속실적 전무
- 폐차 브로커, 딜러, 인터넷 업체, 폐차중개 블로그 등은 폐차장 소속으로 가장하여 폐차중개, 알선행위를 지속하고 수수료를 착복할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 없이 탈세 자행
 - 폐차 브로커 등의 폐차가격 왜곡으로 폐차시장 과열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피해, 불법·탈세행위 만연

건의사항

- 폐차거래 실명제 도입
- 폐차영업사원 등록제도 시행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4)

건의요지

- 현행 정기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부재(신규교육만 의무)
- 첨단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지속 도입되고 있으나, 정기검사업무 수행 기술인력 대상 교육 및 정보보급 수단 부족
- 보수교육 부재로 검사서비스품질 저하 및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 지자체 및 주무부처 상시·특별점검시 부실검사 의심 지속 발생 등 자동차검사 신뢰성 저하, 제도 무용론 대두
- '18.9.28 정기검사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무산

건의사항

- 자동차정기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의무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4)

교통안전공단-민간검사정비업체간 상생 여건 조성

건의요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출장 검사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지정검사소에서 진행
- 공단 출장검사소는 공단에서만 검사를 시행하던 시기에 섬지역 등 원거리 차주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였으나 지정검사소 확대로 실효성 상실
 - 현재 다수의 출장검사소가 수도권(서울·경기 등)에 집중되어 있고, 출장검사소 인근에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지정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어 민간 지정검사소는 공단 지원을 받는 출장검사소에 일감을 빼앗기는 상황
 -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 검사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검사정비업체 피해 발생

건의사항

- 공단-민간 검사정비업체간 상생 가능한 여건 조성
 - 지정검사소 확대로 실효성을 상실한 공단 출장검사소 폐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 수수료 협의 등을 위한 공단-민간 검사정비업체간 협의기구 마련 등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일부반영(21.4.19.)

건의요지

- '12.2.18.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자동차 전자장치진단기 구축 의무화 이후 여러 제작사의 진단기 구축 사용 중
 -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정보 미제공 및 진단기 제조사별 제작능력 차이로 진단기 제조사별 차량정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단기에 해당 차량정보가 없는 경우 정비 불가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사 시 진단기에 해당 차량정보가 없는 경우 검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기검사 목적과 배치
 - 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자동차검사용 범용진단(KADIS) 개발하였으나, 동 공단에서 해당 진단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비용 요구

건의사항

- 공단 범용진단기 무상 또는 최소비용 공급 요청
- 자동차제작사 차량정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제공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4)

건의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동 법률 제35조의2에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용도별 품질 기준에 맞는 순환 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수의 중소 콘크리트제품 생산 기업들은 천연골재 부족 대응 및 동 법 취지에 따라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임의인증임에 따라 미인증 골재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증을 받더라도 품질저하 및 용도가 불명확 함
 - 또한, 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도 수급 불균형과 콘크리트제품용도의 생산기피로 안정적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순환골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 관련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건의사항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의무 취득토록 하여 순환골재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생산업체의 정보(업체현황, 용도별 인증업체 현황, 생산 및 재고 현황 등)의 최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정보부족 또는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용 못하는 사례 방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4)

건의요지

- 4대강 사업으로 2008년부터 강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레미콘 업체의 골재 수급에 큰 차질 발생하였으며,
 - 동남권 지역은 대안으로 남해EEZ 모래를 100%로 의존하여 사용(연간 600만³ 모래)하였으나, '17년 1월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기존 단가에서 2배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강원, 경북, 전남권 등에서 원거리 운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천연골재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임
- 국토부와 해수부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19. 7월부터 '20. 8월까지 남해EEZ 모래 243만³를 채취 허가 하였으나, 공공사업용으로 한정하여 허가됨에 따라 반출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6³당 10장 이상의 입증자료 제출해야 해 가격이 '20. 2월 현재 16,000원/³임에도 사실상 활용 불가능
- 남해EEZ 모래 용도제한 등으로 인한 육상골재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일부 골재업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량골재를 섞어서 유통하는 등 양질의 육상(천연)골재 수급이 어려움

건의사항

- 남해EEZ 모래 사용용도 제한 해제 건의
- 서해 바다모래(웅진군) 공급 추가연장
- 골재업체 횡포 방지 및 관리감독 요청 및 하천골재채취 재개를 통한 골재수급안정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골재채취법,
해양환경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4)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현실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건의요지

- 입·출국장면세점 임대료는 예상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 입국장인도장 설치, 국제적인 질병 등 예상치 않은 외부요인에 따른 매출 감소 시 면세점 사업자에게 큰 부담
 - 그러나, 관리주체인 공항공사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임대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3월 17일까지	3월 예상매출	임대료	임대료 비중
에스엠면세점	438	678	1,485	219%
시티면세점	406	667	1,380	207%
그랜드면세점	170	292	1,202	412%
엔타스면세점	117	190	534	281%

* 3월 인천공항 면세점 예상 매출액 및 임대료,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

건의사항

- 면세점 사업자가 외부적인 요인에 대응하고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공항-면세점 사업자 간의 조정·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일부반영(20.8.25)

전시디자인설치 사업자 건설업 경영상태 실태조사 유예

건의요지

- 전시디자인설치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해 전시디자인설치 사업자로 분류
 - 실내건축공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 자본금 및 기술능력 등의 기준을 갖춰야하며,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의해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수시조사
- 전시디자인설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취소·연기 등으로 자본잠식 및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 충족이 불가능하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

건의사항

- 전시디자인설치 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업체 경영상태 실태조사 3년 이상 유예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5)

건의결과

일부반영(20.11.25)

도시락류 제조업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 제외

건의요지

- 도시락을 판매하기 위해 업체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이하 '도시락류 제조업')으로 구분
- 도시락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 12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처분(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대상이 됨
 - 반면, 일반음식점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락류 제조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유인이 큼
- 그러나 일반음식점업과 도시락류 제조업은 영업 범위에 차이가 있어 사실상 다른 업종이며,
 - 실제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또는 장소를 이동해서 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도시락류 제조업이 일반음식점보다 더 엄격한 식품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일부 도시락류 제조업체들이 단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업종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업으로 전환하려 함

건의사항

- 도시락류 제조업(이동급식 포함)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철회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피해를 감안하여 최소 3년간 유예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제48조, 75조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16)

건의요지

- 대두의 관세율은 487%로 매우 높아 민간이 두부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는 대두로 두부 제조
- 반면, 대두분(콩가루)의 관세율은 3%로 낮아 대두에 비해 민간 수입이 용이하고, 2000년도부터 대두분으로 두부제조가 허용되면서 이를 원료로 제조한 두부가 시중에 유통 중
 - 다만 대두분은 대두에 비해 산패 속도가 빨라 적정한 관리(진공포장 등)가 요구됨에도 사실상 철저한 단속 없이 방치
- 또한, 대두분을 원료로 한 두부는 대두로 제조된 두부에 비해 맛과 탄력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 등 품질이 떨어짐에 따라 두부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조장할 우려
 - 이에, 업계는 지속적으로 수입 대두분의 두부제조용 사용을 반대해왔으나 여전히 수입 대두분으로 제조된 저품질 두부가 시장을 교란 중

건의사항

-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 원료를 사용하는 비위생적 두부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적절한 조치(영업 정지 등) 병행
 - 특히,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대두분 수입 통관 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절 물품에 대한 통관 금지하는 등의 조치 강구(필요시 관세청과 협업)
- 수입 대두분을 두부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식약처 공고
제2000-80호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16)

건의요지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과 CD, USB 모두 제출하고 있어 부담
 - 안전도심사 접수 시 인증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며, CD와 별도로 USB 파일도 준비하여야 함
 - 사용검사 준비서류를 팩스로 보내기 때문에 오류나 분실이 잦으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 * 심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2,300 페이지에 달함

건의사항

- 전자우편 혹은 웹하드를 활용하여 상호 신속 대응 가능토록 개선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저장매체 제출은 USB 등 1종으로 간소화 추진
- * 업무행태 개선 및 교육조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9)

건의요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준비 및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5~6개월)되어 애로 발생
 - 상품 판매 조건을 준비 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

건의사항

-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인증제품일 경우 인증면제(부품 인증서로 대체)
- 인증기관의 인증비용 및 기간을 통일하고 비용, 일정을 규격화하여 정부기관에서 공지

〈부처 검토의견〉

- 조달사업법에 따라 우수제품 신청 시부터 90일 이내 지정하고 있음
 - 다만 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규격 확정 등에 1~2달 소요되는 경우 발생. 우수제품 3자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규격 확정기간 단축 방안 마련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9)

KS인증심사 시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 업체 관리

건의요지

- KS인증 계측기 검교정주기는 교정법에 의거하여 1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 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교정주기를 규정하여 관리가 가능
- 그러나 자체 교정주기 관리 시, 심사원들이 무리한 관리기준과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 실상은 제도 활용이 어려워 매년 교정을 받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계측기기 구입가격보다 교정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

건의사항

- 시험·검사설비 교정주기를 업체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KS인증 심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의 관리기준 인정
-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 요청

〈부처 검토의견〉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권고한 교정주기가 아닌 자체 교정주기를 설정하여 운영 가능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1.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98.1월~)
 - 심사원 교육 강화(계측기 교정지침 재교육) 등을 통해 통일되고 정확한 관리기준 및 데이터를 요구하여 심사 시 민원 불식 노력하겠음
- 또한, 현행 검·교정 기준수수료는 '13년도 이후 동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9)

건의요지

- 당사에서 생산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KS C 4310에 의한 KS인증 대상품이면서, 전파법 제58조의 2항에 의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KC) 제품임
- KS인증 획득시 제품검사 항목으로 전자파 시험은 고가설비인 관계로 외부 검사기관에서 종류별(삼상 6종, 단상 5종)로 1대당 시험료 비용 약 500만원
 - 설비를 보유할 수 없어 사전시험을 실시해야하므로 KS C 4310의 인증심사 시 사전검사와 제품심사가 중복되어, 약 1억원의 시험료가 전자파 시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가 어렵고
 - 판매수량과 상관없이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로 전자파시험을 실시해야만 인증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KC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은 강제인증으로 KS의 전자파 시험을 불인정, 동일한 시험을 시험성적서 용도(KC용)만 변경해서 중복 실시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인 중복시험료 부담으로 기업의 존폐여부까지 거론되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함

건의사항

- KS 인증 시 전자파시험 실시한 경우, 전파법(제58조의 2항)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KC) 시 생략 요청
 - KS 사전시험과 본 심사 제품시험의 중복 시험 배제
 - 전자파시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
 - 사후관리를 위한 1년 정기 전자파시험 항목 삭제, 단, 인증제품의 중요 부품 변경 시에만 시험을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
 - 소상공인 인증 시 전자파시험료 우선지원(80% 이상)

〈부처 검토의견〉

- KS 인증 과정에서 전파법에 준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
- * 전파법 시행령 개정('16.6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9)

건의요지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가 국내 통신3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LTE대역별 적합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
 - KC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받기 위한 휴대용 단말에 필요한 LTE Band는 국내의 경우 통신3사를 모두 지원해야하므로 LTE B1, 3, 5, 7, 8이 모두 시험해야 하며 각 band당 RF, SAR, EMC 등의 비용이 큼

건의사항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축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용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

〈부처 검토의견〉

-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사업 운영 중
 - * '20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20.1.20)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9)

건의요지

- 레미콘 환경성적표지인증 시 모델별 컨설팅 및 인증신청 수수료 부담

건의사항

- 규격별 인증에서 종류별 인증(3가지)으로 개선(축소) 및 정부 지원 요청

〈부처 검토의견〉

-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파생제품 수수료 경감(12년), 연매출 1천억 이하 중소기업 제경비 면제(16년) 및 컨설팅·교육 등 지원 정책 지속 추진 중
 -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 고시)」(‘09년~)
 - *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 사업 추진(12년~, 매년)
 - * 전과정평가(LCA) 및 환경성적표지 이론과 실무 교육 운영(‘09년~, 매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9)

GS(Good software) 인증 민간 인증기관 확대

건의요지

- GS 인증 취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건의사항

- GS 인증 소요기간 단축(2개월 내) 및 자동연장(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GS 인증 인증기관 민간 확대 요청

<부처 검토의견>

- 민간도 GS인증기관 신청가능하며, 지정요건 충족시 지정가능
 -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민간)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3조의4) 반영('17.7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일부반영(20.9.9)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판매가격 개입 중단

건의요지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운영서비스 평가지표’를 토대로 주유소 및 휴게소 위탁운영 계약 해지 및 재계약 중단 등 계약에 활용
 - 주유소 평가항목에는 유류 판매가격 및 매입가격 인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평가항목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 따라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 초래
- 특히 유류판매가격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인근 주유소 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위탁운영계약 유지를 위해 주유소 영업 수익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 한국도로공사의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서 유가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 주유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개입 중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적격심사제는 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나 용역·서비스업체 등 선정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 받은 후 부실공사나 부실운영 등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사전 심사하는 낙찰방법임
- 그러나 적격심사제를 아파트 재활용품을 최고가로 매수·수거하는 단순 노동의 업체 선정 입찰에도 적용함으로써 대다수 재활용품수거업체들이 입찰에 참여·경쟁하지 못하는 문제 지속
- 또한 재활용품 판매 낙찰 규정이 적격심사제(최고낙찰제)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아파트마다 낙찰방법이 다르고, 사적관계에 따른 낙찰 사례 다수

건의사항

- 재활용품 판매 낙찰방법 개선: 적격심사제(최고낙찰제) → 최고낙찰제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국토교통부 '18년 기준 국가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구매 액수가 가장 높고 여성기업 구매 액수도 국방부 다음으로 높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 여성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확대 요망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2004년부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추천 및 선정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 2016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1,550만명 중,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435만명에 달하지만, 2017년 추천실적은 2,266호로 5년 이상 근속자의 0.05% 수준임
 - 또한, 2017년 주택 우선공급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는 전체의 0.01% 수준에 불과

건의사항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공급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개선
 - 특별공급이 아닌,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에 '중소기업 재직기간' 항목을 추가 가점으로 포함
 - * 현행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항목으로 구성
 - 14년 이상 재직 시 15점 추가 가점 부여(재직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적용)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에서 을(乙)의 입장이기 때문에 운송약관은 대체적으로 화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됨
 -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표준 약관이 없는 상황임
- 운송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나, 차량 화물 운송에 대한 표준 기준이 없어, 화주에게 유리한 운송약관을 기준으로 배상범위 등이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
 - 화물 운임은 화물 종량(무게, 부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사고 시에는 화물 가격에 대해 배상해야하는 것은 부당
 - 항공운송, 해상운송 등은 업체별, 보험사별 운송약관에 배상책임 면책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차량 화물 운송의 경우 적재물 책임보험 면책범위 미정

건의사항

- 정부차원에서 운임기준, 손해배상 및 면책범위(차량당 2천만원 이내) 등이 포함된 '운송표준약관' 마련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미반영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물류자회사 물량 제한

건의요지

-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안정적인 물량을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력으로 중소 제3자 물류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화주에게까지 저가운임 조건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중소 물류업체의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주식 30% (비상장사의 경우 20%)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율을 규제 비율 이하로 조정하여 법 적용 회피

건의사항

-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사업범위를 자사 물량으로 제한
- 대기업 물류자회사 물량의 50% 이상 제3자 물류전문업체에 하도급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주사무소 기준 관할관청에서 렌터카 영업소, 예약소 설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무등록 영업소 설치, 대규모 사업자의 무분별한 지방 시장 침투 및 편법영업 근절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자료 요청 시 영업비밀 사유로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정확한 렌터카업계 통계자료 구축 불가능
 -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있어 렌터카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정부정책 반영 및 시행을 위해 대기업의 데이터 분석, 현황조사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상당함

건의사항

- 사고예방 철저 및 행정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렌터카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관청이 아닌 영업소·예약소 소재지의 관청에서 직접 관리
- 자동차 공유경제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등 업계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영업소를 설치한 대규모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면적 기준 및 차고 감면 상한선 규정 등 차고보유 부담 가중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활성화 저해
 -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제61조에서 차고 면적기준(대당)을 자동차의 회전 반경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차에 필요한 면적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 과도한 차고보유 기준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 면적기준을 대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박차면적 적용
 - 또한 장기대여 자동차는 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고감면 상한선 규정에 의해 일정부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

건의사항

- 렌터카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 자동차의 회전반경을 고려한 차고지 면적에서 박차면적 기준으로 변경
 - 장기대여 차량은 사업자가 점유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 차고지 감면 비율 확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제61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종을 승용차 및 승합차(15인승 이하)로 제한
 - 일시적으로 물품 운반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화물 적재 공간이 있는 밴(van)형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차종제한으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
 - 화물자동차 및 밴형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자는 렌터카 차종제한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대차를 이용할 수 없어 영업 손실 등의 피해 발생

건의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종류에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포함

현행	개정안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대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대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2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소형 화물자동차(1톤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5. 밴형 화물자동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자동차 차종별, 차령을 기준으로 검사유효기간을 정하여 종합검사 실시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령 2년 이하는 1년, 차령 2년 초과는 6월마다 종합검사를 실시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화물자동차는 조업 필수장비이므로 빈번한 종합검사로 인한 차량 공백은 생업에 직접적 타격

건의사항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 2년 초과인 경우 6월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검사유효기간: 1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6월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폐차사업자를 위한 자동차 통합 압류조회·해지 서비스 요청

건의요지

-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체납세액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등록원부 상에서 압류 등록된 일부 사항만 전산 조회할 수 있어 압류금액 조회와 해지를 위해 각 지자체, 경찰서 등에 많게는 수십 번의 통화나 방문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에 등록된 여러 건의 압류를 조회하고 한 번에 납부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압류조회·해지서비스를 「자동차종합정보제공포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제3자로 간주하여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통합 압류조회·해지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향상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체납세액 납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압류금액의 조회 및 통합 해지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제공포털」을 통해 제공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사용권한 부여)
 - 「자동차종합정보제공포털」과 「협회 폐차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정비사업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함
 - 기계·기구정밀도검사는 정기검사의 경우 매 1년, 최초 및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
- 기계·기구정밀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이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 등도 임의로 결정
 - 2016~2017년 전국 정비사업자가 기기검사 위탁시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 비용은 약 42억원으로, 영세한 정비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큰 비용
- ‘환경측정기기 정밀도검사’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수행기관 신청이 가능하나, ‘기계·기구정밀도검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7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건의사항

-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수행기관을 사업자 단체인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연합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 공단 외 연합회가 참여함으로써 자동차 검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검사비용 합리화 등 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미반영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민간 검사소 확대

건의요지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부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반면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는 자체 부담으로 수수료 감면 시행
 - 영세중소업체인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 감면대상자의 감면 미시행 지정업체에 대한 민원 발생
- 공단과 민간검사소 간 서비스 제공 형평성 문제 제기
- 적극관리를 요구하는 장애인 소유차량 검사 미필 발생

건의사항

-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사회적 약자 검사수수료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 요청
- 수수료 감면 혜택 적용 세부기준 및 방법 마련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르면 검사장비는 전산망간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 자동입력이 가능해야하나 장비사별로 통신방식이 상이하여 호환이 불가함에 따라 장비사별 독점 운영 불가피
- 장비공급사별 유상회원제 운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 A/S와 관계없이 업체당 회비 약 월 30만원 요구, 연간 63억원*
 - * 1,756개 업체(지정정비사업자수) × 30만원 × 12개월
 - 유상회원제면서도 A/S비용 별도청구, 비회원인 경우 A/S 불가
- 검사기준·방법 변경 또는 신설 시 검사업체 비용부담 과다 발생

건의사항

- 국토교통부 표준 통신 방식 개발 및 민간검사소 보급 요청
- 검사장비 통신방식 통일(표준화) 의무화 관계법령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개정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범위에 친환경 언더코팅 포함

건의요지

- 국토부는 법적근거는 불분명하나 언더코팅*을 도장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해당 작업불가
 - 또한, 도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쇄된 공간인 부스 내에서 작업해야 함
- * 언더코팅: 소음·진동 억제 및 하부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하부에 실리콘을 도포하는 작업
- 언더코팅은 휘발성 유기용재를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의 차량용 실리콘을 하부에 도포하는 것으로 일반 도장과는 다르며,
 - 종합정비업체도 언더코팅은 부스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정비업체의 작업범위에서 제한하여 위반 시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
- 실제 매년 30만대가 언더코팅 작업을 하고 있으며, 종합정비업체는 판금·도장 위주로 하고, 대부분 언더코팅은 전문정비업체에서 하고 있음

건의사항

- 대부분 전문정비업체에서 하고 있는 언더코팅은 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에서 제외
- 언더코팅 작업을 위한 대기 배출 시설 설치 규정 제외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미반영

자동차종합검사 검사원 자격기준 개선

건의요지

-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은 기능사+3년의 경력을 갖추면 검사원 직무 가능
- 반면,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을 검사원으로 인정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요구는 중소정비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준으로 고용창출에 역행

건의사항

- '기능사+검사원 경력 3년'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검사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미반영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일터 접근성 확보 지원

건의요지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전국에 1,207개 조성되어있으며, 산업단지는 환경, 소음 등의 민원문제로 교통접근성 취약지역에 밀집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기업 종사자들은 자가 승용차외 별다른 통근 대책이 없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가장 보편적 방법으로 전세버스 운영을 검토
- 산업단지가 통근 전세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 지자체로부터 산업단지 내 통근용 전세버스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로 승인(고시)받아야 하지만 승인신청을 위한 행정서류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입주기업이나 산업단지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는 창출되기 어렵고 특히 접근성을 건강한 일터의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는 산업단지 취업기피의 결과를 가져옴

건의사항

- 산업단지 내 통근용 전세버스운행 허용 승인(고시)을 신고제로 변경
 - 산업단지 일터로의 안정적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산업단지 일터에 대한 인식개선과 구인, 구직자들의 채용과 취업기회균등 제공
- 수요응답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차원으로 통근용 전세버스 상시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일정규모의 대지 면적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상한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산업단지에 비해 건폐율이 낮음
 - 해당 규제는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을 제한한 것으로 기존 공장시설에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건폐율 제한을 적용 받음
- 기업의 업종이나 확장하는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는 획일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부지에서 확장하는 규모,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현행)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50%까지 완화된 건폐율 적용
 - (개정)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 삭제 → “기존공장시설 부지를 증축하는 경우 60% 건폐율”로 상향 조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혜손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물류창고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 물류창고 건축기준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10m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동 규정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감안하면 2층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으나,
 -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의 경우 층고 높이가 8m 이상을 기준으로 pick&pack이 되도록 설계·운영되고 있고, 3단형 지게차의 경우 적재 가용높이만 8m에 이르고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물류창고를 1층 규모로 밖에 건축할 수 없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 2층으로 건축할 경우, 5m 층고 높이를 충족하는 새로운 pick&pack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등 타 지역 대규모 물류창고와 경쟁 불가

건의사항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중소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물류창고 높이 제한을 현행 10m 이하에서 16m 이하 완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왔음
 - 하지만, 주유소업종의 경우 용도변경 허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타 업종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더 이상 주유소 영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가하고, 용도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주유소를 폐업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방치된 주유소는 가짜석유 부정유통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염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자연녹지 보존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됨

건의사항

-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허용범위에 주유소업종 포함 건의
 - 한계 주유소에 대한 원활한 전·폐업 유도 가능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소득 증대에 도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시 대체부지 확보 지원

건의요지

- 도시의 확장 등으로 과거 외곽에 위치했던 유기질비료 공장이 주거지역과 가까워짐에 따라 주민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 이에 지자체는 갈등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구역 내 공장의 외부 이전 추진(토지 수용권 등 발령)
-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유기질비료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곤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 지역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우선 분양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기질비료 공장은 주민 반대 등으로 산업단지 내 이전 어려움

건의사항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이전 가능토록 제도개선(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전 세계 타일 산업은 중국산 공급과잉에 따라 적정가격이 무너지고, 세계 각국의 반덤핑제소가 지속되어 중국산 타일에 대한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조사 중임
 - 우리나라도 중국산 타일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중국산 타일 덤핑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건설업의 특성상 건축마감재가 턴키로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건축마감재에 대한 원산지는 입주자(소비자)에게 고시할 의무가 없음
 - 또한 건본주택에 마감재로 사용된 자재와 실제 시공단계에서 사용된 자재가 상이하여 입주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필요

건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건본주택 건축기준 등)에 건축 마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신설

현행	개정안
▶ 제22조(건본주택 건축기준 등) - ①~⑤ (생략) - ⑥ (신설)	▶ 제22조(건본주택 건축기준 등) - ①~⑤ (현행과 같음) - ⑥ 건본주택에 사용된 건축 마감재의 원산지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시 수수료 예납제도 도입

건의요지

-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있어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음
 - 즉, 최초 분양전환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자는 임차인, 감정평가 의뢰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수료 부담 주체와 의뢰인 상이
- 이로 인하여 감정평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납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6조(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⑤ (생략)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자가 부담한다. ⑦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6조(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⑤ (생략)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자가 부담하며, 이의 신청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하여야한다. ⑦ 생략

토지·물건조서 작성업무의 외부 용역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건의요지

-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함
- 그러나,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이 공부상 기록에만 근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와 불일치(이용 상황, 면적 등)하는 사례가 많아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 시 재확인 후 토지·물건조서를 수정하는 과정이 빈번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 발생
- 아울러, 일부 사업시행자의 경우 감정평가의뢰를 조건으로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 토지보상법 위반 소지도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
- 일부 사업시행자의 경우 입찰 등의 방식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 7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등),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시설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대부지는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임대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중소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 부설주차장 확보 관련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임대한 부지 등 실질적 주차 공간 확보 여부 확인하여 부설 주차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현행	개정안
(신설)	<p>다만, 임대부지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으로 확보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1. 임대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임대계약서</p> <p>나.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등 임대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p> <p>2. 담당자는 1년에 한번씩 임대 내용 및 임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p>

중소기업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건의요지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소상공인은 같은 법 제68조 5호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10% 혜택을 받고 있으나, 소상공인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 조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한편, 부산시 강서구는 법68조 2호 규정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준용하여 농경지 진·출입로 요율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
 - 중소기업 진·출입로 역시 농경지와 마찬가지로 계속도로 점용 없이는 생산·판매·구매 등을 할 수 없는 필수조건이므로 요율 인하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도로법 제69조제2항 별표3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사항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별표3] 개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비고 제2호: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진·출입로: 산업단지 진·출입로 신설,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비고 제2호: 토지가격은 도로점용한 그 토지(도로부지를 말한다)

건의요지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감정평가업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특히, 보상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이외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에서 과태료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체계 관련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미등록이 아닌 지연등록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단순히 등록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의무와 과태료 부과 간에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음

건의사항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추천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감정평가법」 제52조제1항제6호 후단의 내용은 감정평가사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추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재 농민이 농업에 활용하는 드론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의 빠른 보급 측면에서도 장애가 되고 있음
- 국내 안전성인증검사를 사용자(농민)가 직접하려면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농민들이 제조·유통사에 대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업종특성상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농민은 인천까지 드론을 운송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현재 안전성인증검사 제도는 구형 또는 조립 기체를 중심으로 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적절치 않음
- 뿐만 아니라, 농업용드론은 판매·유통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합검정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검사는 중복된 검사임

건의사항

- 드론 중 농업용 제품의 안전인증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으로 일원화 또는 기준 완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항공안전법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7)

건의결과

미반영

농업용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 의무화 예외 적용

건의요지

- 현재 농민이 직접 경영하는 논에 농약살포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으나, 2021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농민이 직접 일구는 논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
※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1항 4호 (2021.3.1.부터 적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농업용 드론 사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이 차이가 있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이점이 없음
- 특히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은 제조·유통사가 실시해 왔으며, 공공자격증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제조·유통사를 통해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농민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함
 - 특히 농업용드론은 농약 등을 운반하므로 대부분 중량이 7kg 이상으로, 비행시간 10시간~12시간 이상 및 필기·실기 시험에 응시해야 자격 취득 가능

건의사항

- 농민이 직접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 조종자증명 취득 예외적용
 -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드론 제조사 또는 유통사에서 적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농업용 드론 관련 민간 조종자격 인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7)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기업 단체표준 제품의 모델인증 면제 제도 신설

건의요지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설계심사·안전성 시험·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안전성 시험·공장심사 등의 시험·심사 자료와 시험타워 건축비·시험장비·시료제작 등의 소요 경비를 일시에 준비하지 못해 모델 인증 신청이 어려움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모델별 승강기 생산 대수가 적어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 상당

건의사항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특정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설계심사와 안전성시험을 받은 후, 조합원이 해당 모델의 승강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고 적합성을 확인받은 경우 개별 제조사의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7조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2)

건의결과

미반영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건의

건의요지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설계심사·안전성시험·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며 관련 심사 및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행안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최초 승강기 개별 인증을 받을 경우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는 464만원이며, 이는 1대 평균 수주금액(3,500만원)의 약 1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설계심사비가 과다
 - 또한, 승강기 개별인증시 설계심사수수료 464만원 납부 후 승강기마다 설계기능이 동일한 모델 승강기를 또 다시 설치할 경우에도 각각의 승강기마다 설계심사 수수료를 232만원, 116만원, 464,200원으로 차등하여 계속 납부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일률적 인하(고시 금액의 10% 적용)
- 인증서류를 간편 입력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 제공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 등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건설사, 업계, 건축주의 혼란
- 승강기는 안전기준, 안전인증기준, 안전검사기준을 분류하여 고시하였으나, 심사원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심사하지 않고 안전기준과 안전인증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중복 적용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과 관련 없는 인증기준, 검사기준을 중복 규제함으로써 인증심사와 설치검사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업체부담(서류작성, 신청, 수수료, 설치검사 입회 등)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인증기준과 설치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 항목 등이 중복되는 이중규제로 인하여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무량이 과다하여 효율성이 떨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초래

건의사항

-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과 검사기준의 중복된 업무의 규제개선 차원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승강기공단, 관련 협회·단체, 승강기업체, 소비자,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추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승강기안전관리법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체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09%에서 2016년 1.5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뿌리산업 및 섬유직물산업 중소기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임
- 열처리·주조업종의 경우 타 뿌리 제조업에 비해서도 부담이 크며, 영업이익률 보다는 높은 수준

건의사항

- 주말(토, 일) 시간대별 경부하요금제 시행
- 6월, 11월 여름·가을철 → 봄·가을철 요금 적용
-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선 전년도 평균요금 기준으로 변경 요청
 - 현재 전기 기본요금이 1년 중 최대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가동율 하락시에도 높은 기본요금 적용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뿌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승강기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인 경우 그 내용 및 보완기간을 설치 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축현장 여건 및 건축공정 상 설치검사 후 30일 이내 보완이 어려워 불합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재신청에 따른 인적·물적 제반 비용낭비 및 최초 서류의 반복 제출하는 등 이중 비용부담 초래
 - 또한, 해당업체는 물품납기 지연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제재로 약 1년 동안 입찰 참여 제한 불이익 발생

건의사항

- 설치검사 보완기간을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2개월 후 1회 연장, 재검사 시 신청서류 반복 제출” 않도록 개선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2)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승강기부품, 모델승강기, 개별승강기 인증 시, 인증기관의 심사인력 부족과 개별업체 종사자들 업무 이해가 부족하여 서류작성·제출 미흡 등으로 대부분 법정 처리기간이 임박하여 업무처리
 - 인증신청, 심사기간이 약 2.5개월 소요되고 보완기간(1회, 1개월)이 짧아 기한 내 보완되지 못해 상당수 불합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그간의 신청에 따른 인적·물적 제반비용 낭비 및 재신청에 따른 이중 비용부담 초래
-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외 공장심사와 안전성시험의 무기한 연기로 승강기 업체들이 인증지연에 따른 수주 및 영업상 큰 손실 발생
 - 부품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성제품에 대한 개별인증을 신청하지 못해 설치검사도 할 수 없어 납기 지연에 따른 부정당 제재가 우려됨

건의사항

- 인증 처리기간 최대 단축
- 인증심사의 처리기간 제도 개선(보완 요구사항을 1개월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이 아닌 보완 완료 시까지 유예 등)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공장심사, 안전성 평가 시험을 연기한 경우, 인증서류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제도의 유예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22)

건의결과

미반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REC 가격 현실화

건의요지

-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현물시장 거래방식을 기존의 단방향 입찰(경매방식)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양방향(실시간)거래방식으로 변경(2017.3.28.)
- 그러나, 2020.11월 REC 평균가격은 양방향 거래 개시년도(2017년) 평균가격 대비 70%이상 폭락
 - REC 현물시장은 매수자(공급의무자)가 22명, 판매자가 65,734명(전력거래소 등록회원수)으로 판매자가 많으며, 판매자의 공급인증서는 유효기간(3년) 경과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도래 판매자의 공급인증서는 매수자의 매수 주문에 의한 가격으로 팔아야만 하는 구조
 - 계속되는 폭락장에서도 판매자인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는 공급인증서가 유효기간 만료시 폐기되기 때문에 판매할 수밖에 없음

건의사항

- 금융비용을 포함한 REC 생산원가를 계산하여 거래 하한가 설정
-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 폐지 및 유효기간 잠정 유예조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확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7)

건의결과

미반영

생동시험 비동등에 따른 회수조치 대상에서 기허가 의약품 제외

건의요지

- 식약처는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기허가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 결과가 '비동등'일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행정 안내
- 중소제약사, 자체 생동성 시험 수행 위한 '설비·자금 부족'
 - 품목별 제조·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설에 대한 부담이 적은 대형 제약사들과 달리, 중소 제약사들은 설비·자금 부족 등 사유로 '자체 생동성 시험'이 어려운 상황
 - 현재 기금의 사업 범위가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좁게 해석·운용되고 사업도 주로 용자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식품진흥기금 사업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위생물품 구입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건의사항

- 중소제약사의 자체 생동성 시험 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자체 생동성 시험 1회당 약 3~4억원 소요(제제연구, 원료구매, 제품생산, 인건비 등)
- 높은 수준의 제제변경에 따른 생동성 시험 '비동등' 결과에 대해서는 기허가 의약품 '회수'조치 대상에서 제외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 2의2, 별표 3

'원료약품 분량 및 제조방법 변경수준'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부담 완화

건의요지

- 제조 및 가공업소는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조·가공하는 제품마다(식품유형별)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연 4회(3개월마다 1회) 실시해야 함
 - 이에 따라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주로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추가 업무 및 비용 부담 가중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역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 고용유지에 따른 인건비 부담조차 힘든 실정

건의사항

- 중소 식품업계에 대한 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또는 검사비용 전액 지원
 - (현행) 3개월마다 1회 → (변경) 4개월(또는 6개월)마다 1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안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 가. 1) 과자류, ... 면류 ...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 가. 1) 과자류, ... 면류 ... 경우: 4개월(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영상감시장치(CCTV) 공공기관 납품 시 여러 인증제도(다수공급자계약,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등) 운용으로 비용 부담
 -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인증서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KC 인증 (전자법 제47조의 3 및 제58조 2의 3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 가. 소요 기간: 약 1개월 / 나. 소요 비용: 약 120만원 ~ 200만원(기본품목)
 2. KS C 6200 영상 감시 시스템의 화질성능 환경시험-온도 및 습도
 - 가. 소요 기간: 약 2개월 / 나. 소요 비용: 약 250만원(보안용카메라)
 3. 공공기관용 IP카메라/NVR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 가. 소요 기간: 약 6~12개월 (보안용카메라, 시험 대기시간 포함) / 나. 소요 비용: 약 900만원
- 위 각 인증별로 평균 2대 이상의 시료가 투입되어야 하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와 더불어 장시간의 소요기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
 - TTA 카메라 기능시험에 한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1곳을 위탁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보안기능 시험은 진행하지 않아 인증 적체가 해소되지 않음

건의사항

-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인증 비용 인하 또는 지원 검토 요청
- KCL 외 요건을 갖춘 시험기관 추가 지정하여 보안기능 시험 수행

〈부처 검토의견〉

- TTA Verified는 민간 인증으로 정부의 개선 검토가 불가능함
 - 단,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과 공공기관 보안성능품질 인증(TTA Verified)과의 유사 시험범위 상호 부합화를 통해 제도 개선
 - * 영상감시장치 MAS 표준규격, TTA Verified 인증기준 등 개정
- MAS 표준규격(MAS 2018-009)의 시험검사 항목과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성능품질 TTA Verified(TCP2012/R03:2019)의 시험항목이 상이하여 통합 및 간소화 불필요
 - KC·KS 시험 내용은 조달등록을 위한 MAS 표준규격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며, 공공기관용 IP카메라/NVR 보안성능품질 TTA Verified는 공공기관의 도입 권고 사항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인증시험기관 출장시험 시 시험수수료에서 장비사용료 제외

건의요지

- 공인시험기관 사정(시험원에 시험장비가 없거나, 수리상의 문제)에 따라 시험이 불가할 경우, 시험의뢰업체로 출장시험을 진행 중
 - 출장시험 시에는 당초 시험원에서 하는 시험비에 출장비가 추가로 청구

건의사항

- KS인증 출장시험의 경우 시험기관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초 시험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사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 필요

<부처 검토의견>

- 인증신청 업체의 설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시험하는 경우, KS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항목 시험수수료 일부 감면
 - 현장 심사 시 업체 설비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고>(’98.7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20.9.9)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파생모델 시험 간소화

건의요지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파생모델 등록 시(단순 외함 변경, 칩 변경 등)에도 기존 시험성적이 불인정되어 기본모델 인증과 유사한 비용 소요
 - 고효율인증은 파생모델 진행이 가능하나 시험비용 등 파생등록 비용이 신규 등록 비용과 비슷하여 신규로 등록과 다름없는 실정

건의사항

- 파생등록 시 서류 제출만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부처 검토의견〉

- 파생모델 신청 시 중복되는 일부 항목은 시험 면제함
 - 기존의 기본모델에서 일부변경 시 전체 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별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하여 등록하도록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2-91호) 개정('12.4월~)
- 외함의 단순 변경 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
 - 광효율 변경 등 외함변경에 따른 변경사항만 확인하고 기존 시험내용은 인정됨
 - 단순 외함변경에 따른 추가 시험은 지정시험기관에서 기본료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해관계자가 제도의 운용사항을 이해하고 제도권 안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교육 및 홍보 실시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LED 인증 받은 컨버터 사용시 전자파 시험 면제

건의요지

- LED조명기구 적합성평가 시 인증받은 컨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이 면제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 LED 조명기구 부품 중 전자파가 발생하는 AC교류를 사용하는 것은 컨버터가 유일하며 컨버터에서 나오는 전류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DC전류임
 - 전자파를 발생하는 컨버터만 인증제품을 사용하면 완성품은 인증을 면제해야 하나 국립전파연구원은 기구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인증 받은 컨버터를 사용해도 완성품은 불합격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 불허
 - * 조립PC의 경우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완성품의 시험은 면제

건의사항

- LED 인증받은 컨버터 사용시 완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 면제하여 시험비용 절감조치 필요

〈부처 검토의견〉

- LED조명기구의 경우 컨버터에서부터 LED모듈까지의 도선이 안테나 역할을 하므로 인증받은 컨버터를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필요
 - LED 핵심부품인 컨버터를 적합성평가 받은 경우, 시험비용의 대부분(2/3)을 차지하는 전자파 내성 시험 면제
 -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12.6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납품 시 단체표준과 KS인증을 모두 요구하여 애로
 - 폴리에틸렌관 인증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런데 수요기관 등의 추가·별도 시험 의뢰·요청 시에도 시험의뢰비가 추가로 발생(약 1천만원/건)하여, 중소기업에 부담

건의사항

- 폴리에틸렌관 인증유지를 위한 중복 시험의뢰비 부담 완화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일반 폴리에틸렌관의 단체표준은 이미 폐지, 현재는 KS 인증만 요구
 - * 일반폴리에틸렌관 단체표준 폐지('16.5)
- 또한, 각 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KS인증을 제외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요자 입장에서 납품되는 최종 제품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고, 내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납품계약 시 양방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GPS 무선전파방해장치 KC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제정 필요

건의요지

-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안티드론 솔루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령 제정 또는 정비 필요

건의사항

- GPS방식의 무선전파방해장치 KC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

<부처 검토의견>

-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 및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법에서도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
 - ※ 적합성평가를 거쳐 민간에 의도적 GPS 방해장치 등을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해혼신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과 국제규범상 수용 불가(* 또한 전파차단장치는 과기부 장관 인가 대상으로 전자파적합성 인증 대상 아님)
- '20년 6월 전파법 개정으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용
 - 법 개정 검토*시 혼신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민간이 아닌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방지 목적에 한하여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
 - * 송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국회 소관위 검토 보고서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공구부품 수요기업 다수인증 요구 및 사후심사 기간 개선

건의요지

- 공구부품 수요기업이 ISO9001, ISO4001,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다수인증 요구하고 있어 애로
 - 그 중 AS9110은 소수의 외국계 인증원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으로 심사원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심사받기도 애로
 - * AS9110은 항공기정비, 수리 및 분해점검 규격으로 항공기 기체, 부품 등 MRO수행 시 적용되는 규격이며 ISO9001은 품질규격 시스템임
- 최초 인증 취득 후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신규 취득과 동일 형태로 사후심사를 실시하며 비용도 신규취득과 동일

건의사항

- 최초 인증 취득 3년 후 매년 실시하는 사후 심사를 3년으로 개선
- AS9110 인증을 국내 표준으로 흡수하여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

〈부처 검토의견〉

- 국제표준은 국가간 협약으로 수용 불가
 - 동 인증제도를 개발한 IAOG가 동 인증업체에 대해 ISO17021-1 준수를 규정하고 있고,
 - 국제표준인 ISO 17021-1에서는 3년의 인증주기와 1년에 1회 이상의 사후관리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유효기간 개선(국내 별도 기준)은 불수용
- 수요기업에서 다양한 인증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수 있으나, 각 인증의 목적이 상이하여 중복인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심사비용은 공통사항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색상별 도료 중복 인증시험 비용 부담 완화 요청

건의요지

- 도료가 색상별로(흰색, 노란색) 시험성적을 받고 있어 비용이 2배로 발생
 - 등급별(P3, P4, P6, P7) 색상별(흰색, 노란색) 시험에 따른 비용 과다
 - 투입원료는 거의 비슷한데 색상별로 시험성적서를 받고 있음
 - KSM 6080의 경우 시험분석료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 큰 금액임
 - P7의 경우 시험료가 10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 한 가지 색상(흰색)만 시험에 통과하면 거의 유사한 도료인 노란색은 면제
- 인증(시험)비용 부담 완화

〈부처 검토의견〉

- 흰색도료와 노란색 도료의 투입원료가 비슷하다고 해도 두 도료의 재귀반사율이 다르고,
 - 차선도색에 이용되는 도료의 특성상 색상별 재귀반사율은 안전과 연관되므로 시험을 면제하고 인증할 수는 없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소포장 수입 문구류의 경우, ‘갑’, ‘다스’ 단위의 소포장재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낱개 상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유통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 12자루 들이 연필의 경우 ‘다스’ 단위의 소포장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갑’ 단위 제품은 ‘갑’에만 표시, 낱개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 않도록 개선

〈부처 검토의견〉

- 낱개 판매가 가능한 문구류까지 획일적으로 ‘갑’, ‘다스’ 등 포장단위로 표시 예외인정은 불가
 - 특히,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과 같은 문구류는 국가명만 표시하여도 국제관행상 적정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낱개 제품에 ‘국가명’ 조차 표시하지 않은 문구류에 대해 ‘갑’, ‘다스’ 등 포장단위 표시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소매업자에 부담 전가가 우려
- 소비자가 연필이나 볼펜 등을 구매할 때 표시된 원산지는 유용한 판단 지표가 되고 있으나, 이를 개별 제품에서 생략할 경우 제품 선택을 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문구 외 타 제품은 최종 소매단위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품 간 형평성에 어긋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승강기 조합 단체인증으로 제조사 안전인증 중복시험 면제

건의요지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설계 심사·안전성 시험·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인증비용이 부담되어 인증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또한 인증을 받더라도 생산 대수가 많지 않아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건의사항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안전인증의 설계심사와 안전성시험을 받은 특정 모델 승강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을 경우 개별 제조사의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단체인증 신설

〈부처 검토의견〉

- 승강기 개별모델에 대한 단체인증은 안전관련 사항으로 허용 불가
 -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의 중요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개별모델의 단체인증은 적합하지 않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어린이특별법에 의한 KC인증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기업의 인증 검사비용 과다발생
 - 특히 동일모델에 의한 모델추가를 최근에 받았다 하더라도 최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나게 되면 최근에 인증받은 제품들도 다시 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
 - 특히 완구제조 및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검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여 기존 제품 재인증비용 부담으로 단종이 되기도 함
 - ※ 인증심사 시 약 4주, 품목별로 70~300만원 정도 필요

건의사항

-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 영구인증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절 제22조

<부처 검토의견>

- 어린이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고, 어린이 불법제품 유통 및 사고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효기간 폐지 및 연장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현행 기준 하에서도 어린이제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안 없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 및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은 조치로 판단
 - * 동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확인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해외인증 취득한 방폭분야 제품 국내인증 부담 완화

건의요지

-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국제인증/유럽인증 등 해외 인증을 이미 취득한 방폭 제품을 수입할 때, 단순히 국내인증으로 전환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요구 서류 및 비용이 과다하여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예시) KTL: 1부당 전환비용 약 100만원
 - 방폭분야 제품의 경우, 해외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나, 해외제조사는 기업기밀 유출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 등을 꺼려 국내인증을 불가
 - Test report에 명기된 모든 참조 서류까지 필수로 제출을 요구(생산자의 대외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수입상이 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서류는 1회성으로 한 번에 전환할 수 있는 수량도 매우 적음
 - 현재 1회당 수입 수량은 수입면장에 명시된 10개 이하의 제품만 가능
 - 국내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관계로 수입면장에 명시된 10개 이하 소량에 대해서 제품심사 받아 1회성으로 수입

건의사항

- 생산자가 부담 없이 제출할 수 있는 범위의 서류로 전환
- 1회당 수입 수량을 확대
- 전환 비용 감면

<부처 검토의견>

- 안전인증은 기본적으로 “제조자”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외 제조자가 국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입할 수 없으며, 이는 유럽, 미국 등 ATEX(국제방폭전기 기술위원회)에 가입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함
 - 다만, 우리나라는 “제조자”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량(10개이하)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국내인증 없는 제품을 제품시험만으로 대량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이므로 수용곤란
 - * 또한, 방폭인증 수수료는 미국, 유럽이 1천만원 이상인데, 국내는 1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레미콘 환경성적 표지인증기준 변경으로 심사수수료 부담 완화

건의요지

- 제품규격별 인증취득기준, 규격별 인증 수 증가에 따라 인증심사 수수료 비용 부담 증가
 - 현재 KS F 4009 기준에 의거 제품인증수는 251개 규격(보통콘크리트 88개, 경량콘크리트 70개, 포장콘크리트 12개, 고강도콘크리트 81개)
- 또한, 중소기업 자체인력으로 인증취득 불가능하여 컨설팅 대행비용 증가

건의사항

- 레미콘 환경성적 표지인증시 251개의 제품규격별 인증을 22종의 호칭강도 기준으로 인증하도록 변경
 - 규격별 인증 취득기준(골재최대치수,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을 현장에서 필요한 호칭강도 기준 변경하여 제품인증 하도록 개선, 심사수수료가 감소되도록 개선 건의
 - * 보통 콘크리트 88개 > 14개 / 고강도 콘크리트 81개 > 8개
- 사업장별 전체 출하비율을 고려, 70% 이상 출하된 호칭강도 규격을 선정하여 인증기준으로 적용, 전체규격 취득으로 인정

〈부처 검토의견〉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성적을 공개하는 제도임
 -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항목별 인증을 통한 정확한 환경영향 산정 및 정보 제공이 필요
 - 규격별 인증은 3개 항목(골재최대치수,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을 모두 표시한 제품 각각에 대한 환경영향을 산정한 결과이며, 종류별(호칭강도) 인증은 특정 항목이 같은 제품을 묶어서 환경영향을 산정한 결과이므로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할 수 없음
 - * 레미콘은 골재최대치수, 호칭강도,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3개 항목에 따라 제품을 구분(표시) 하여 납품
- 또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저탄소제품)은 녹색제품으로서 공공 기관 구매의무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성적 산정이 필요하므로 규격을 통합 할 수 없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LM80 성적서 보유 고효율조명기구 광속유지율시험 면제

건의요지

- 고효율조명기구 인증 시 미국 에너지스타에서 발행한 LM80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칩을 사용 하는 조명기구는 시간과 고비용이 발생하는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KS인증 시 면제 안돼 시험을 중복해서 해야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
 - 제품당 고효율시험성적서 비용 따로, 인증서 발급 비용 따로 발생

건의사항

- LM80 시험성적서 보유칩 사용 시 KS인증 광속유지율시험 면제 요청

〈부처 검토의견〉

- KS인증 제품심사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인 경우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항목 품질시험 생략 가능
 - 다만, LM80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해당 시험항목 생략이 어려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S-색온도별 광효율기준 차등적용

건의요지

- KS기준은 색온도별로 차등하여 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에서는 색온도별 광효율 기준이 없으므로 효율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기준 개정 필요
 - 낮은 색온도의 효율을 높은 색온도 효율과 차등 적용하지 않아 낮은 색온도의 경우 고가의 외국산 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 따라서 색온도 4,000k를 기준으로 광효율 기준을 개정

〈부처 검토의견〉

- 고효율인증은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색온도별 기준이 아닌 소비전력(W)당 효율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색온도별 광효율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 KS는 최소한의 성능기준이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고효율을 인증하는 것으로 각각의 정책적 목적이 다르므로 비교 불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성능인증 검사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축소 및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

건의요지

- 성능인증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최초발급 후 3년인데, 성적서 발급 전 공인기관 시험 등 성능인증 취득 준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 이에,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3년)에 연장신청 진행시, 기제출했던 성적서(최초 인증 3개월 전 준비) 유효기간이 3년을 경과하여 공인기관 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시험비용 또한 배전반의 경우 약 1억5천만원 정도(물품제작비, 시험비)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유지와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

건의사항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변경하고, 연장신청시 기존 제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도록 개선

〈부처 검토의견〉

- 성능인증은 최초 3년 인증이고, 시험성적서 유효기간도 3년임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성능인증 기간 연장시 최초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것은 성능인증 취득기업의 현재 생산환경, 설비, 재료 등의 변경으로 성능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수용불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KS인증 갱신주기 변경, 사후관리심사 축소 및 자금지원

건의요지

- 현재 대부분의 인증은 최초인증 후 3년 주기로 갱신
 - 3년 마다 인증정기심사, 2년 차엔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해 거의 매년 인증심사를 진행함
 -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복잡한 서류, 절차, 검사비용, 기간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 인증 갱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사후관리심사를 매년에서 1회로 변경
- 중소기업 인증 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정책 마련

〈부처 검토의견〉

- 정기심사 기간연장 등 완화 시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및 KS 인증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음
 - 정기심사는 품목별 품질관리 필요성에 따라 1년 또는 3년마다 실시
- 단, 해당 안전들에 대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인증을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녹색제품에 콘크리트 순환골재(재활용)가 포함되어 있으나, 순환골재의 품질, 공급 등에 문제가 있어 녹색(환경표지, GR)인증의 개선 필요
 - 순환골재 50% 이상 사용토록 하는 현행 환경인증 조건, 배합설계 및 내구성을 도외시한 제도로 특히 수요자가 요구하는 압축·힘 강도, 흡수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
 - 일부 업체들은 이를 입찰 가점 등 낙찰을 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 내구성 조건에 부적합한 천연골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등 업체들간 분쟁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 콘크리트 순환골재 녹색제품 인증 개선(전면 재검토)
- 콘크리트 제품 조달구매의 조건에서 녹색제품(GR, 환경표지) 삭제
 - 또는 사용량을 현재 50% 이상에서 10%-20% 이상으로 조정
- 순환골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부처 검토의견>

- 조달에서 녹색제품의 범위에 콘크리트 제품만 배제하는 것은 환경보존 등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콘크리트 제품만 제외할 수도 없는 문제
 - * 환경표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중 콘크리트 제품은 순환골재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표지인증
- 33콘크리트 제품군의 '19년 인증심사 결과, 총 74건 중 72건이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순환골재를 이용한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
 - * GR: 순환골재는 품질인증제도 및 KS표준이 마련되어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된 순환골재를 활용할 수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목재산지 목재인증 동일 시 원공급자 변경심사 면제

건의요지

- 목재 특성상 공급상황 변동에 따라 원자재 공급업체 변동의 소지가 많음
 - 목재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환경표지인증 심사기관에서는 합법적 별목 증명을 위해 많은 서류(수입신고필증, B/L, 패키징리스트, 인보이스, 제3자 목재인증서 등)들을 요구하고 있음
- 동일국가·동일수종 목재, 중간 거래처를 변경하여 수입된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원자재 공급처 변경심사를 진행(변경심사 절차·기간 등이 신규 취득과 비슷한 수준)
 - 이에 가격 및 품질이 좋은 조건의 판매처가 있어도 환경표지 공급자 변경신청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 등 부담으로 기존 공급자와 거래하게 됨
- 이러한 상황으로 한 공급자와의 거래가 반강제 되어 원자재(목재) 수급 시 가격 협상력 및 대응력 등이 떨어짐

건의사항

- 목재의 경우 목재산지와 목재인증이 동일하면 원공급자가 변경되어도 변경심사 면제(신고로 간소화)

〈부처 검토의견〉

-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련 환경기준(VOC,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에 적합해야 하므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중간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국제산림관리협회의(FSC)의 COC 인증(생산·유통) 여부와 '원자재 제조사-중간공급처-인증기업'의 실제 거래 여부만 서류로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레미콘원자재 품질시험성적서 단순용도변경 재발급 허용

건의요지

- 레미콘원자재 품질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건설사에 제출
 - 건설사는 시험성적서 용도란에 해당 건설사를 명시해서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시험기관은 단순 재발급인데도 용도를 변경해서 발급 해주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 레미콘원자재 품질시험성적서 단순용도변경 재발급 허용
 - 동일 원자재에 대해서 수요처마다 품질검사 성적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부처 검토의견>

- 대량의 원자재 중 의뢰자가 일부 시료만 검사하면서 제출용도(해당 건설사 또는 현장)를 지정했는데 재발급 시 제출처를 변경하는 것은 시험시료에 대한 신뢰성이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이는 민간기업에서 품질에 대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써 중복시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서는 개선이 어려움
 - 품질검사 성적서 등에는 제출기관명을 기입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에서 해당 부분에 기업명을 기입하여 제출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 다만, 수요기업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6개월, 1년, 2년 등) 내의 성적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수용해주는 방안 등의 의결을 통해 해소가 가능할 수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국내 생산조달품목에 과다적용된 정부인증 단일화 요청

건의요지

- KS, ISO,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업), 전파인증 등 국내 생산 및 조달품목에 여러 인증의 과다적용
 - 동일 품목에 대해 규격별로 각각 인증·시험이 필요하여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함

건의사항

- 정부 인증의 단일화 적용 필요(예: KS인증)
 - 동일 품목 인증 시 대표 모델만 평가·인증, 시험 및 심사 간소화

〈부처 검토의견〉

-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은 고유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인증자체를 단일화 또는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
- 특히 국제조약으로 운영되는 ISO 등 해외 인증과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 KS, 전파인증 등 국내인증과의 통합도 불가
- 다만, 국내인증의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시험검사 성적 상호인증 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LED 시험검사 간소화(대표품목 1개만 검사, 나머지는 면제)

건의요지

- 인증의 사업화로 인해 중복인증,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이 많아져 다수의 인증을 보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보호와 생산을 위해 중복·다수 인증 및 비용 부담 완화 필요

건의사항

- LED 제품에서 품목별 대표품목 1개를 지정하여 시험 인증하고, 나머지 제품 시험검사를 면제하도록 간소화
- 기본 인증을 토대로 각 협회 또는 각 인증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항목을 넣어서 년 1회에 끝낼 수 있도록 대표시료 1개로 진행

〈부처 검토의견〉

- 현재의 인증제도는 각각의 정책적 목적과 성격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은 무리
 - LED 제품에서 부품이나 출력의 변경, 회로 변경 등은 전자파 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대표품목 1개의 인증으로 다른품목의 인증까지 면제할 수는 없음
 - 다만, 단순 디자인 변경 등으로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분류하여 시험을 하지 않고 있음
-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서식통합 및 발급비용 할인지원

건의요지

- 민간, 공공기관 제출용의 구분으로 인한 이중비용 발생 비용부담이 큼

건의사항

- 신용평가서를 동일한 서식으로 통합하고, 발급비용 할인 또는 지원 건의

〈부처 검토의견〉

- 공공기관용 신용평가서와 민간기업용 신용평가서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신용평가서를 징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포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호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공공기관용 신용평가서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기업신용평가기관 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조달·공공사업 등 입찰심사용 신용등급만 제공
 - * 기업의 신용등급 및 요약된 재무현황을 적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열람 및 노출에도 문제없는 수준의 정보 제공
 - 반면, 민간기업용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 내부기준에 따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신용등급 외에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석·가공정보를 제공
 - * 기업의 신용등급 및 세부 재무현황 및 사업현황, 현금 흐름 및 지적재산권 취득 현황 등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계있는 항목 포함, 투자유치 등 기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활용
- 기업들의 신용평가서 획득을 위한 지출은 연간 약 57만원 수준으로 1회 발급 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큰 기업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밸브류 위생안전인증/적합성인증 중복부담 완화

건의요지

- 밸브류는 KS인증(적합성인증), 단체표준인증 등 각각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하고 있으나 각 인증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비슷하여 통합 필요
 -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위생안전인증과 적합성인증을 별도 인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심사기간은 동일한 2년 주기인데 심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건의사항

- 인증 통합을 통한 시간 절약, 비용 절감, 중복 완화

〈부처 검토의견〉

- KS인증과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는 각각 제품의 성능과 유해물질 검출결과가 기준 이내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각각 정책적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하나의 제도로 단일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시험검사 유사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을 통해 중복규제에 따른 폐해를 차단 중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조달 우수제품 대행검사 비용 조달청이 부담 요청

건의요지

- 조달 우수제품 대행 검사,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전체 제품 중 임의의 제품을 선택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비용은 기업이 부담
 - 수량이 많은 건에 해당될 경우 검사 비용 부담이 더욱 증가

건의사항

- 조달 우수대행 검사비용, 조달청이 부담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조달사업법에 품질관리업무에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업체부담 명시, 또한 조달우수만 면제 곤란(조달의 공정성 논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조달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청 판매기간 연장 요청

건의요지

- 조달 우수제품 유지기간이 짧아, 제품 안정성을 검증할 즈음에는 기간이 끝나 다른 제품으로 등록 신청해야 함

건의사항

- 조달 우수제품의 연간 판매 건수, 판매 실적 등 실적과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이상 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판매 기간 연장 요청

〈부처 검토의견〉

- 우수조달제품은 국가계약법 제26조1항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동 조항은 각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3+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3+3년간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특성상 우수조달제품 지정기간 또한 3+3년이면 충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미반영

공인된 기관에서 샘플링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만 상호 인정

건의요지

- 산업부,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KS-단체표준 중복해소 중장기 개선안 마련

건의사항

- 시료채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
 - * ex) KS인증 시험성적서, KS 시판품 시험성적서,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성적서 등
 - 생산기업이 양품으로만 선별적으로 샘플링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확보되어 전체 공정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음
- 공인된 기관(KS인증기관, 조달청 등)에서 샘플링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

<기관 검토의견>

- 건의사항,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 요청
 - 시험성적서, 품질 관리용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인증 심사원이 하는 두 가지로 나뉘져 있는 만큼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것을 바꿔야하는지 보완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과기부, 전자파 중복시험 면제
 - 적합성 면제 제도가 운영중이나 KS인증은 구간인증이고 전자파적합성평가는 개별인증으로 KS인증 시 구간 내 가장 높은 규격을 인증받고 이하 규격의 회로가 변경이 없어야 구간 내 전체규격을 면제
 - 유사제도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개별인증임에도 KS인증 시 구간 내 전체규격을 면제해주고 있음

건의사항

- 전자파적합성평가도 구간 내 규격 1개만 인증을 받아도 구간 전체 규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기관 검토의견〉

- 건의사항,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 요청
 - 법은 이렇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렇다 등 현황, 문제점 자세히 작성 요청
 - 해당 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산업부, KS정기(공장)심사 시 성적서 구비요건 완화 답변
 - 기업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제품심사를 폐지하였으나 인증심사원은 1년 주기 공장심사 시 인증구간별 1종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1백만원이 넘는 EMC시험까지 포함한 전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여 1개업체당 8~900만원에 이르는 시험료가 매년 지출되고 있음

건의사항

- 전자파시험은 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서로 대체하고 공인시험성적서는 자체설비가 없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정

<기관 검토의견>

- 건의사항,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 요청
 - 법은 이렇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렇다 등 현황, 문제점 자세히 작성 요청
 - 해당 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완구 유효기간 폐지(혹은 연장) 및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변경

건의요지

- 대부분이 영세한 완구업체들은 코로나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자금난이 극심히 악화된 상태로 사전 강제검사에 따른 비용, 시간, 인건비 부담으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신고번호 변경에 따라 새로 부여받은 번호로 포장 변경 또는 스티커를 인쇄·부착해야 하고 동일제품을 신고번호에 따라 이중 관리해야 하는 등 규제로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재검사비용 부담으로 5년 이후 제품 제조·수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파생모델은 최초 검사모델(기본모델)의 신고 번호에 묶여 5년이 되지 않은 제품도 같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 * 파생모델을 기본모델과 동시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개별모델로 분리되어 검사비용 추가 발생
-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증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2017년부터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정부에서도 사후관리 강화에 치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의 재검사는 업체에 비용, 시간, 관리 부담만 가중
 - 선진국*은 강제검사 규제가 아닌 시장감시 등을 통한 사후관리 체제
 - * EU는 업체 스스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하고 정부는 이를 잘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 중이며, 미국은 일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만 제3자 시험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음
- 동 애로에 대한 수차례 건의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용역기간이 1년(2021년 6월까지)으로 너무 길며 관련법이 개정된다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하므로 당장 눈앞에 닥친 존폐 위기의 영세완구업체에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완구 유효기간 폐지(혹은 연장) 및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변경

건의사항

- 유효기간 5년 조속 폐지 또는 10년으로 연장
-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로 안전검사 관리제도 조속 변경
 -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인터넷 발달로 리콜 등 부정적 이슈로 언론에 공표된 제품은 단순 판매금지 뿐 아니라 환불, 보상 등 사회적 책임에 따라 업체 존망이 달려있어 업체 스스로 제품을 잘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임

<기관 검토의견>

- 어린이법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회적 목소리가 큰 상황
 - 생산 현장부터 꾸준히 잘 관리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유통만하고 관리하는 업체들도 많음
- 어린이법 자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보조책 필요
 - 금액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준다거나 등의 방법들 검토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성능검사 인정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

건의요지

- 최초로 공인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고 성능인증 준비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약 3~6개월 소요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 연장신청 때 최초의 시험성적서 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 특히 중전기기제품(예, 배전반, 개폐기, 차단기 등)의 공인기관 시험료가 3,000만원~1억원 정도로 성능인증 연장신청을 위하여 거액이 투자되고 있어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건의사항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성능검사 인정 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으면 함

<기관 검토의견>

- 일괄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단, 중전기 등 비용 부담이 높은 부분에 한정하여 건의하면 수용 확률이 높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확대 → 납품검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 인하 유도 계획 보도(20.9.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9개인 전문검사기관을 최대한 확대하고, 청에서 실시하는 전문검사기관 평가항목에 검사 소요기간 신설

건의사항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규정”의 ‘[별표 1]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선행 개정 필요
 - ‘1.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삭제

〈기관 검토의견〉

- 조항 삭제 보다는 ‘주된’을 빼거나 하는 등 일부 조정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시험성적서 대체 허용 확대 반대

건의요지

- 조달청, KS, 단체표준을 시험성적서로 대체 허용 확대 보도(20.9.9.)
 - MAS 공고에서 요구하는 KS, 단체표준 인증을 시험성적서로 대체 제출토록 선택권 부여(32개 세부품명 단계별 확대 검토)
- KS, 단체표준의 제품 기준으로 정해진 재료의 시험성적서만으로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동등한 기준을 부여한다는 것은 KS, 단체표준 인증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건의사항

- 해당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기관 검토의견>

- 시범 시행 등 부분적으로 접근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의경과

국표원 서면건의

(20.10.30)

인증제도 개선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20.11.18)

건의결과

미반영

코로나19로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용역업체의 용역비 보전

건의요지

-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각 학교에서는 급식·청소·기숙사 운영 등 서비스 제공 용역업체에게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각 학교에서는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 관련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함
 - 코로나로 인한 개학연기와 그에 따른 용역 제공 중단은 국가의 결정과 학교의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피해를 모두 부담하고 있음
-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업체는, 현금유동성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개학연기도 2주 단위로 실시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
- 더욱이 용역업체는 향후 학교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되어 개별적으로 학교에 용역비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
-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재난에 해당하며, 개학연기 등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용역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건의사항

- 개학연기에 따른 용역업체 손실을 학교에서 부담
 - 기존 예산 전용을 허용하고 부족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력정책실

관련조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의처

행정안전부

건의경과

행정안전부 건의
(20.4.10)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특별공급) 현행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대상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므로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역시 본 제도의 정책대상임. 이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주택공급 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22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2,000가구에 불과함. 이에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을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물량 확대가 필요함

건의사항

- (특별공급) 국민·민영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물량 확대

현행	개정안
▶ 기관추천 특별공급내 일부 배정	▶ 특별공급 15% 배정

- (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현행	개정안
▶ 공공임대주택 2,000가구 ('22년 기준)	▶ 공공임대주택 점진적 확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KBIZ중소기업연구소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협의

(20.9.16)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경기도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5년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로 성동IC(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 ※ 물류센터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매입계약 77% 완료)
 -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해외 진출기업**의 부족한 경기북부 물류거점을 보완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
-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9사단 군보심의에서 2회 부동의(不同意) 판정을 받음
 -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통과('18), 파주시장 선거 공약('18), 경기도-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간 업무협약('19) 체결 등을 진행
 - 지역사단의 제1차 군보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도로망 정비 등)을 준비하였으나, 2차 심의에서도 부동의 판정
- 군 당국의 의견을 적극 청취·수용하여 물류센터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협조 필요

건의사항

- 물류센터 추진 협조
 - 국방부, 지역 군단·사단 관계자와 물류센터 추진 중소기업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물류센터 조성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국방부

건의경과

국방부 건의 제출
(20.7.3)

건의결과

검토중

개성공단기업 대상 지방투자기업의 업종 및 고용 유지의무 개선

건의요지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대체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
 - 5년간 동일 업종 영위·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유지 등의 의무가 있음
- 글로벌 경쟁 심화에 개성공단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허용 및 절차 개선 필요
 - 개성공단의 경우 개도국 대비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합리적 인건비 등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업종의 기업이 다수
 - * 봉제업, 의류·직물, 기타 제품 제조 및 임가공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
 - 업종변경과 신규 투자, 공장 증축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지자체에서 산업부에 승인 요청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로 규정, 행정절차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 대응이 어려움
-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심화로 근로자수 유지 기준을 충족하기 매우 어려우며, 수도권인 경기북부 지역 또한 인력난이 극심함

건의사항

-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업종변경 허용
- 업종변경 절차 개선(3개월 → 1개월로 단축, 지자체장·이중 승인 절차 완화)
- 상시고용인원을 '사업장 지방 신·증설 투자 시 기준'으로 완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국제통상부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산업통상자원부 건의
제출 (20.7.13)

건의결과

검토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기계정비 교육훈련원 설립 지원

건의요지

- 국내 2,264개* 건설기계정비업체는 정비기술자의 고령화 및 원활한 신규인력 공급의 부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최근 건설기계 첨단화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전문지식을 가르칠 강사가 부족하고, 구형 모델의 교육교재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
- 현재 건설기계정비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출되는 정비사를 고용해도, 교육과정과 현장의 미스매치로 인해 업체에서 최소 1~2년간 임금을 지급하며 추가교육을 시켜야 현장 투입 가능
 - 또한, 건설기계정비 업종은 특수성이 있어 보편적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으로는 균형적 인력 양성이 어려움

건의사항

- 건설기계정비 기술인력 배출을 위한 건설기계정비 교육훈련원 설립 시 정부 보조금 지원 필요
 - 국내 건설기계정비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연간 약 1만명) 배출을 통해 정부 일자리 창출 및 산업안전정책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8.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차선도색공사 발주 시 자재와 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턴키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차선도색공사 설계 시 자재(노면표지용페인트) 가격을 조달가 근거로 설계하면, 낙찰 시공업체는 낙찰하한율(87.745%)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조업체는 자재단가를 조달가 이하로 공급할 수 없으므로(조달 우대가격 준수 의무) 자재비 부분에서 최소 12.255%의 손실 발생
- 각 지자체 등 수요기관의 차선도색공사 준공 시에 휘도율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최초 설계 시에도 고단가의 유리알(고휘도 유리알)제품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실은 KS규격제품(저단가 제품)으로 설계되므로 현실성이 결여됨

건의사항

- 차선도색공사 발주 시 자재와 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설계단가 책정 시 자재의 최소 조달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물가정보 및 제조사 가격정보 참조하여 설계를 진행
- 준공 시 휘도율이 중요한 검사 항목인 만큼, 최초 설계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고단가의 유리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 공동사용 건의

건의요지

- 도시미관 및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에 대한 규격, 소재, 색상, 디자인 및 설치방법을 표준화하여 기능과 성능을 규격화
 -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기능과 성능은 생산업체별로 국가공인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을 검증받고 있음
- 공공디자인처럼 제품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제품을 업체별로 각각 시험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 필요
- ‘차량 방호울타리’의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시험한 공동시험성적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국가예산 절약

건의사항

-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규격 소재, 디자인, 색상, 설치방법이 동일’하고 ‘그 기능과 성능이 동일’하므로, 차량 방호울타리와 같이 공동시험성적서 적용을 위한 지침 마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3.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하천법 시행령에 하상변동조사 방법, 실시주기 및 시기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2016.7.19.에 신설되었으며,
 -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아직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 최근 국내 다수기업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고가의 지형정보구축장비(ALB)를 구매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세부규정 미비로 활용 실적이 미비한 상태임

건의사항

-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기술 및 장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8-1076호) 개정 등을 통하여 세부작업 규정 마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8-1076호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불합리한 작업범위 개선

건의요지

-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종류별 등록기준 및 작업범위 상이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전문정비업에 비해 시설기준과 등록기준이 더 까다로운 편이나 정비범위는 더 협소
 - 400㎡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중형이상의 승합 및 화물차에 대해 점검조차 불가능
- 또한, 동일차종의 경우에도 좌석유무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건의사항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작업범위에 총중량 6톤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개정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제1항에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법정 금액이 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하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직접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법 제29조제1항에는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2개 이상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경우 등만 예외로 하고 있음
-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통해 직접시공을 아니하고 주요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에만 적법함에도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일괄하도급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건의사항

- 발주자가 특정한 사유(공사의 품질 또는 신기술 특허공법 등)로 인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제1항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교육 독점 개선

건의요지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취급자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독점 시행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확대추진에 따른 종합검사지역 확대로 종합검사 기술인력 수요 대폭 증가(약 1천명 이상)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이수 희망자 급증 예상
 - 교육일정 부족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희망자 교육이수 불가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 발생
- 전기자동차 검사 시 고전원전기장치취급자 교육이수 의무이며, 향후 정비 분야 기술 인력도 해당교육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
 - 교육일정 부족에 따른 집단교육 발생으로 교육품질 저하 등 문제점 확대 예상

건의사항

- 종합검사 및 고전원전기장치 교육기관 독점운영 개선을 위해 전국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연합회도 해당 교육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개정)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별표26)에서는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계작업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자동차의 형식과 부품의 모듈화 등 발전으로 기존 작업제한범위에서는 공간 확보 등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게 됨
- 전문정비업 작업범위의 실린더 교환 작업은 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의 브레이크챔버 탈부착작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곤란

건의사항

- 종합정비업계와 업역 간 이해관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부품의 모듈화 변화에 따른 연계작업은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개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6]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외 기준 개선

건의요지

- 보상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이외에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동 지침에서 과태료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러나 「감정평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유는 감정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시·도지사의 추천업무에서 배제되는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됨

건의사항

-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제2호의 삭제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제2호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확대 건의

건의요지

-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재산권의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임
- 그러나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제7조에 의하면 “토지보상금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 및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소규모 보상사업 지구내 피수용자에 대한 차별조항임

건의사항

- 정당보상 제한 소지가 있는 표준지침 제7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감정평가업자 추천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보상금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	제7조(감정평가업자 추천생략) ----- ----- ----- <삭 제>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제7조제1호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및 보상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지방공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무는 법령 및 행정기관이 한 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임
- 따라서 보상전문기관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로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 오히려 보상전문기관을 민간기관에게도 개방하여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고,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예정지 면적 1,000,000㎡ 미만인 공익사업에만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상전문기관과의 업무 범위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요구(전문성 보완)도 만족시키는 상생방안이 될 수 있음

건의사항

- 우선, 공익사업예정지 면적 1,000,000㎡ 미만인 경우 민간보상전문기관(중소기업)에게도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시행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면적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4.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세계 각국의 소형선박 시장은 주로 공익적 가치의 선박시장임

선종	척수	비고
레저선박	28,000	매년 10% 이상 증가/중고선박 수입의존도 높음
어선(동력선)	65,089	12m이내 55,470척/24m이내 8,283척/이상 1,336척
관공선	1,004	해수부 143척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추진
내항화물선	2,013	780개 선사/연안화물 82% 담당/선령 20년 이상 68%
연안여객선	166	58개 선사/1,500만명 운송/선령 20년 이상 22%

- 그러나, 공익적 가치의 선박을 제조하는 소형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참고] 세계 신조시장 규모
 - (중·대형) 국제운항 가능한 선박 52,183척(2017.1월 기준)
 - (소형) 200톤 이하 선박만 1,700만척(해럴드경제 2020.7.29.)

건의사항

- 조선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한 소형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위산업, 기후변화, 인력감소 등 차별화 선박시장 요구대응.
- 소형, 중형, 대형선박 생태계 완성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 고용창출 및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타 산업보다 높음.
- 수리·개조시장의 고부가가치와 재정적 회전을 용이, 후방산업 육성

- 소형선박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내 중고선 수입시장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입법과 강화된 검사로 무분별한 수입을 제한하는 입법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5)

건의결과

검토중

조선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정책) 현실적 지원

건의요지

- 대기업은 노사관계에서 고용숫자, 강성노조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을 의식하여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 글로벌 경제여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용, 매출의 피해 큰데도 대책은 도외시 하고 있음
 - 소·부·장 중요성을 강조하고 R&D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술을 만든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육성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
- 또한, 기업들의 파산으로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을 해외로부터 구매하고, 세계일류상품 제조기업이 법정회생 절차 중이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2012년 세계일류상품 업체로 지정한 선우씨에스, 법정관리 신청>

2007년에 설립된 선우씨에스는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전제적 대응 부재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 이와 같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던 강소기업의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 기업육성 시 우수기업선정과 R&D제품 개발보다 기업에 대한 관심과 R&D제품에 대한 무한책임 정책이 더 중요함
 - 소부장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유지위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
- 조선소 제조원가의 60%이상을 점하고 있는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수주경쟁력 없음을 인지하고 대응혁신이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5)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글로벌 조선시장은 조선소 → 기자재산업으로 핵심 경쟁력이 이동
 - 기술의 고도화로 선진국일수록 하드웨어 위주 대기업보다 소프트웨어인 중심의 기자재중소기업이 조선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특히, 60년대 말부터 '15년까지는 조선소 건조공법이 주도하는 시대로 조선소 수주가 곧 기자재기업수주가 되었으나,
 - '15년 세계기후변화 도코의정서'와 18 IMO의 황산화 규제 등에 따른 에너지변화는 기자재중심의 기술변화로 급변
- 유럽을 선두로 일본, 중국의 추격에 한국의 대응
 - 앞선 조선강국이었던 유럽은 기자재기술의 선도와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조선산업을 지배하고 있음
 - 현재 조선시장은 조선소보다 조선기자재산업이 산업을 지배하고, 제조원가 중 기자재 원가율을 높여 롱런가치를 극대화

건의사항

- 소부장 육성 구호가 현실화 되는 정책 수립 급선무
 - 기자재산업육성을 통해 한국 조선산업 롱런을 위한 혁신에 모든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미래 선도기술 지원센터 구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5)

건의결과

검토중

조선기자재 스마트공동납품운송시스템 구축지원

건의요지

- 對중국 가격경쟁력 유지는 우리 조선산업과 기자재업계의 당면 과제이나 중후장대한 기자재의 특성과 납기 수시변경 및 JIT 강화로 물류 비용이 높아 (원가의 2~5%) 큰 부담
-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운송을 계획 중에 있으나 조선소 납기 및 기자재업체의 운송요청 정보 부재, 혼적 방법·운송경로 설정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없어 공동(혼적) 운송 불가능
- 효율적인 공동운송 및 획기적인 납품물류비 절감으로 국내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스마트공동납품운송 시스템(공동운송 플랫폼)' 구축 시급

건의사항

- '21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승인 및 '22년 예산 배정으로 정보시스템 개발·착수 될 수 있도록 지원

<연도별 추진 계획>

구분	'21년	'22년	'23년~
사업 내용	사업승인	스마트공동운송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운영개시 시스템 보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1.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해제 건의

건의요지

-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따라 독점적 기득권이 확보되어 '12년에 단체(전국레미콘 운송총연합회)를 조직하여, 매년 큰 폭의 운반 시 인상요구
- 운반사업자들이 '15년부터 8.5(08시-17시) 시행으로 차량부족과 더불어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납기 지연 및 납품 불이행 등으로 수급불균형 심화
 - 2021년 3월부터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5일(월-금)제 시행 준비 중으로 시행 시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에서 제외
 - 그동안 건설기계수급조절 목표의 명확성 부재 및 중소레미콘 산업계의 어려움 호소에도 불구하고, 12년간 지정하는 당위성 부족
 - 한시적 해제를 통한 효과분석을 위해서라도 제외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토교통부

건의경과

서면건의(20.12.10)

건의결과

검토중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소기업 DMCE타워 내 설치

건의요지

- '20. 1월 산업부 장관 간담회 시, '뿌리산업 현장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건의 조치하였으며
 - 당시 산업부는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관련 연구용역 진행하여 '21년 예산확보 등 추진 예정이라 답변한 바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그러나, 교육기관 신규 건립은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시설 이용 방안 검토 필요

건의사항

- 뿌리산업 교육센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DMCE타워 내 설치 검토 요청
- 뿌리산업 교육센터 건립 등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산업부 뿌리산업 주무부서 별도 구성(팀 → 과)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뿌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뿌리산업 전용 저리 정책자금 및 긴급유동성자금 지원

건의요지

- 금형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및 수요기업 해외이전 등 주력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불확실성 증가하는 상황
- 또한, 산업부에서 ①금형분야 기술개발자금(운영자금), ②산업기반자금(시설자금) 등 지원했으나,
 - '09년도에 중진공으로 정책자금이 통합되어, 수주·개발 기간이 일정치 않은 소규모 금형기업의 특성상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신청·활용이 어려움

건의사항

- 뿌리산업 전용 저리의 정책자금 및 긴급유동성자금 지원
 - '뿌리산업 전용 지원 자금'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경영 안정 도모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 유도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뿌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의요지

-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이상 증가했으나 납품대금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실제 조사결과,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중소기업이 60%에 달함
- 그러나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우려와 협상력 차이로 인해 대기업에게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

건의사항

- 산업부, 대·중기간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우수조정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을 당부
 - * 정부 R&D 과제 참여,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산업부 정책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부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뿌리산업 대다수 업체는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21년 7월부터 적용하여, 현재 40대 이상 근로자가 61.2%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신규인력은 취업 기피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 어려움
 - 또한, 뿌리산업은 대기업 주문을 받아 적기 납품과 기술 인력의 현장노하우가 중요한 산업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시행될 경우, 납기 경쟁력 약화, 국내외 수요기업에 대한 신뢰 약화 및 수주 축소 우려됨
- 아울러, 정부는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6대 뿌리산업을 위한 특화단지, 전문기업, 자동화·첨단화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단위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독립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기원으로부터 독립하고, 중소기업 대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뿌리산업 발전협약식
(20.5.2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부리산업은 대기업 주문을 받아 적기 납품해야하며, 기술 인력의 현장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 청년인력 유입이 적고, 근로자 중 40대 이상이 전체 종사자의 약 60%로 고령화
 - 또한,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함
- 아울러, 산업부 예산을 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조직으로 운영되는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가 연구기관의 역할만 수행하여, 인력양성 등 기업 현장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부리산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지원
 - 현장 맞춤형 인력배출 및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 부리산업 전문 교육센터 설립 필요
- 국내 마이스터고 및 공업고등학교에 6대 부리학과 개설 요망
-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의 청년인력 교육 지원 기능 강화
 -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를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진흥원으로 승격, 중소기업 대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20.6.8)

건의결과

검토중

풍력발전부품사업단지에 물류 업종 입주허용 제도개선

건의요지

- 부산시 강서구 풍력발전부품사업단지는 전국유일 협동화단지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미음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함
 - 미음 산단은 물류업이 허용되지 않아 산단 내 대형 풍력발전부품의 수출을 위한 항만 수송이 원활치 못하여 운송비 가중 등 가격경쟁력 애로를 겪고 있음
- 또한, 8.13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업체 등이 일정지역에 한해 특례지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매년 3월 한 번만 신청하게 되어있어 연말에 신청하려고 해도,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행정·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자료를 첨부해야함에 따라, 입주업체가 스스로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 미음 풍력발전부품사업단지를 특례지구로 지정, 물류업종 입주 허용
- 특례지구 신청 횟수 확대
 - (현행) 매년 3월 접수 → (개정) 수시 또는 분기별 접수
- 특례지구 신청 시 신청서류 간소화
 -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의2 제6항 개정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비대면 전시산업 확산을 위한 K-전시 구축 지원

건의요지

- 전시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133개의 전시회가 취소되고, 단 15개 전시회만 개최되면서 대다수 사업자가 약 6개월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지난 5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는 전시회 준비부터 종료까지 단 한명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K-방역을 기반으로 전시산업의 위상을 높인 선례로 남음
 - 이에 따라, 전시산업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바이어 화상 상담, 온라인 전시회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참여가 필요함

건의사항

- “K-Multi Exhibition(K-전시)” 구축 사업 보조금 지원
 - 3개년 사업(년도 당 20~30억원 소요)으로 사업비 80억 소요 예상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속에 자금난과 줄어든 일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와 중장년 실업자가 많은 상황
 - 그 중에서도, 청년 및 중장년 재취업자 대상으로 '출장스팀세차 1인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제안코자 함
- 동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년 실업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 1인 출장스팀세차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증대

건의요지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
 - 지하저수조에 세대당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 용량 기준은 '91년 세대당 3.0톤에서, '94년 1.5톤 → '12년 1.0톤 → '14년 0.5톤으로 지속 감소
- 재난 발생 시 비상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수조 용량 기준이 상향 조정 되어야 하나 저수조 공간 확보를 위한 건설비용 증가, 저수조 수질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건설업계가 저수조용량 확대를 반대

건의사항

- 지하저수조 설치 용량 기준 상향 조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개정 필요)
 - 세대당 0.5톤 → 1.5톤(세대당 2일분의 용수 사용량)으로 변경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그린뉴딜 T/F 회의

(20.9.4)

건의결과

검토중

연말마다 반복되는 수입대두 물량 부족 문제 해소

건의요지

- 2017년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배 대두를 줄여 공급함에 따라 연말마다 업계의 수입대두 부족현상이 되풀이
 - 원재료 부족으로 인한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린 두부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다음 해 수입대두 배정물량 중 일부를 조기 배정 중
- 업계 물량 부족의 근본적 원인은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 대두 공급을 줄인 것이므로 해결 필요

건의사항

- 대표적 서민 식품인 두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WTO TRQ 대두의 부족물량 추가 조기배정
- 산업계 대두 확보에 차질 없도록 업계와 정기 소통을 통해 WTO TRQ 물량 탄력적 운용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건의경과

서면건의(20.12.16)

건의결과

검토중

중소 간장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한 식약처 규제 개선

건의요지

- 식약처는 현재 혼합간장 제품의 뒷면에 표시 중인 혼합비율(양조간장·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을 앞면의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규제하는 고시안 행정예고
- 대기업은 양조간장을 주로 생산하지만, 중소기업은 혼합간장을 주력으로 생산함에 따라 위 규제 적용 시,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혼합간장 소비 감소 등 간장산업 위축 및 중소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됨
- 혼합간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물질인 '3-MCPD (클로로프로판올류의 화학물질)' 기준 역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식약처 보고서에서도 간장의 3-MCPD 검출량은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른 식품 역시 해당 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회자되었다는 이유로 혼합간장에만 한하여 주표시면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지나친 규제

건의사항

- 혼합간장 혼합비율 주표시면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 철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의 [안 III. 1. 카. 2) 거) (1)] 부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검토중

김치류 식품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건의요지

- 식약처에서 김치류 영양성분표시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등의 성분을 표시해야 함
- 김치는 주원료인 배추 등에 함유된 성분의 함량이 계절별, 산지에 따라 다르고, 절임 과정에서 부위(배추 속과 겉, 두껍고 얇은 부위)에 따라 염도의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제조되어 제품의 성분 함량을 균일화하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출하 시 표시한 함량과 유통 중인 제품의 성분함량에 차이가 생길 시, 법상 허용오차범위(±20%)를 초과할 수밖에 없어 행정처분(과태료) 불가피
- 또한, 발효 과정에서 성분함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표시된 함량과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점의 함량이 달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

건의사항

- 김치류의 원재료, 제조법 등 특성을 고려, 영양성분표시 대상에서 김치류 제외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4 6조 1항 관련, [1.의 하.] 김치류 삭제
- 부처 차원에서 김치의 영양성분 실태조사(원재료, 제조·유통단계)를 통한 성분표시의 합리적 기준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균일화할 수 있는 제조공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4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연 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입실적을 식약처 지정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라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보고할 때에 제조업자는 기업의 기밀인 제조원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 정보 누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 특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내 제조업체의 기밀이 해당 단체 회원사에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에 생산 원가를 알리게 되는 상황이며, 미보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됨

〈참고: 단체 성격 비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구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민법	설립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식품의약품안전처('99.7.8)	설립인가	보건복지부('79.10.18)
수입업체(529개), 제조업체(396개) 등	회원구성	제조업체(647개)

- 반면, 의약품·의약품외품, 화장품의 경우 생산 실적 보고 체계가 상이
 - 의약품, 의약품외품 및 화장품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기관과 수입실적 보고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생산업체의 기밀 유출 우려가 적음

건의사항

-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및 수출실적 보고기관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 2017-110호) 제2조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식약처장 간담회 (20.9.1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부품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설치검사, 자체점검,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기술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28시간 받아야 하고, 직무교육을 받고 다음 주기의 직무교육은 14시간 받도록 규정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유지관리,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승강기의 설치공사,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은 다음 주기에도 28시간 받도록 규정

건의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직무교육과 감리 기술자 기술교육이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인 기술자 자격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술교육도 직무교육처럼 다음 주기의 기술교육 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

<부처 검토의견>

- 기술교육 대상자와 직무교육 대상자의 업무범위 및 교육목적 상이
 - 교육 내용 또한 관련 법규 등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실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
 - 또한, 교육 내용 차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건은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 직무교육은 유지·보수 종사자 대상, 기술교육은 승강기 및 부품 제조·수입 종사자 대상
- 승강기 기술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조혁신실

관련조항

-

건의처

국무조정실

건의경과

국무조정실 서면건의
(20.7.16)

건의결과

검토중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한 검사·형식승인 등 면제

건의요지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은 KC 인증 취득에 필요한 검사·형식승인 등을 면제받고 있으나, 우수단체표준제품은 중복 시험 항목이라도 면제 불가
- 한편 ‘우수단체표준제품’은 민간표준이지만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정·관리받고 있으며, 인증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KS보다 더 철저한 심사를 받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KS제품과 동급 또는 상등으로 평가받는 중

- (단체표준) 최초 인증 취득 시 심사(공장심사+제품심사) 이후 매 2년마다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매 3년마다 공장심사를 실시
- (KS) 최초 인증 취득 시 심사(공장심사+제품심사) 이후 매 3년마다 공장심사만 실시(소수 품목에 한해 1년주기 공장심사 실시)

-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25조는 ‘우수단체표준제품’을 KS 인증제품과 함께 조달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검사·형식승인 등 면제와 관련해서도 KS 인증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

건의사항

-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한 검사·형식승인 등 면제로 기업 인증 부담 완화

현행	개정안
<p>▶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18.(생략)</p>	<p>▶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 및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18.(현행과 같음)</p>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단체표준부

관련조항

산업표준화법 제26조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건의(20.11.17)

김경만의원

입법발의(20.12)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인증단체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단체표준 인증환경 조성 및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에 기여 중
*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인증 민간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수탁(15. 11월)
- 그러나 현행 단체표준 제도는 인증단체에 대한 사무국의 자료 요청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단체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인증단체 관리·감독에 애로
- 인증단체의 불합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합리적인 단체표준·인증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인증단체의 업무 보고가 필요

건의사항

- 「산업표준화법」 상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업무 보고 의무 신설

현행	개정안
<p>▶ 산업표준화법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 산업표준화법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 및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단체표준인증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인증기관, 단체표준인증단체 및 인증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단체표준부

관련조항

산업표준화법 제38조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건의(20.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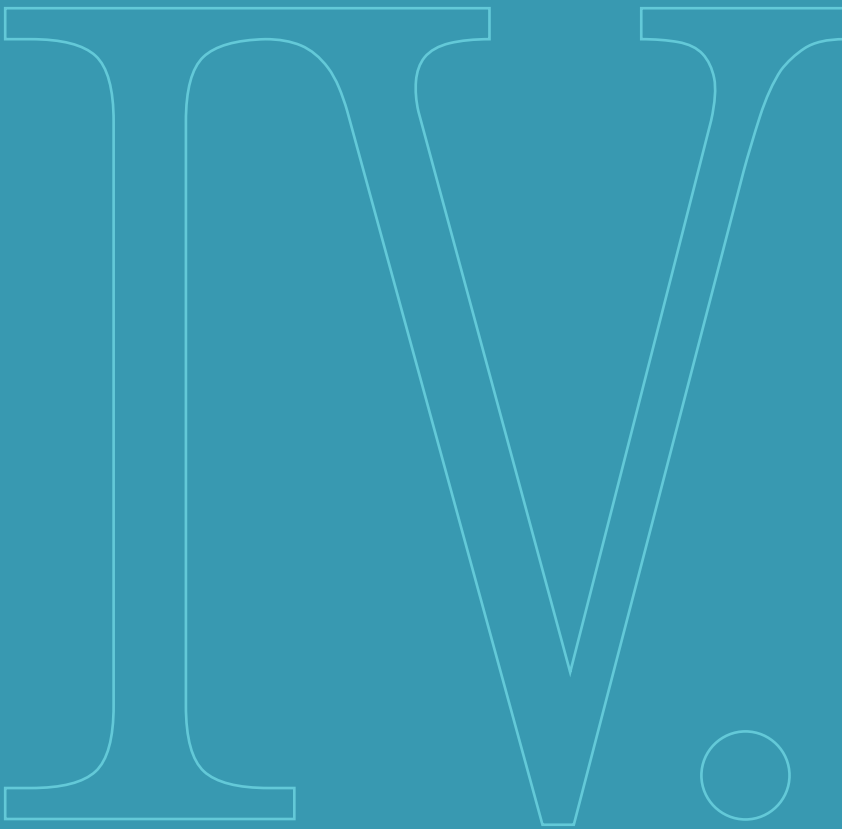
김경만의원

입법발의(20.12)

건의결과

검토중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01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선금 지급비율 확대 건의

건의요지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난과 폐업위험 상황에 빠져있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 지원 필요

건의사항

-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의 선금 지급비율을 수해복구 공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여 현행 상한선 50%에서 70%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건의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건의경과

조달청 건의(20.2.26)
방위사업청 건의 (20.2.27)

건의결과

반영(20.2.28)

건의요지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을 대출하는 제도임
 - 본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피해 확산에 따라 공제기금 대출 中企의 부금납부 및 만기대출 원금상환 유예 실시 中(20.3.1일부)
- 서울시는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現 연2억원의 예산은 시행 후 한 달 이내 소진되며, 지원율은 11.8%에 그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건의사항

-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부담 완화 등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예산액 증액 요청
 - 지원예산: (현행) 2억원 ⇒ (변경) 5억원으로 확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긴급간담회시

건의(20.3.2)

서울시 추경예산 지원

건의(20.5.21)

건의결과

반영(20.7.9)

서울시 PL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건의요지

-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中企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PL보험 필요성 증대
 - 중소기업은 PL보험료 부담으로 PL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PL 사고 발생시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선진국(미국, 유럽 등)의 경우, 수출시 PL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은 더욱 높은 편임
- 서울시는 지난해 PL보험료 지원사업(예산 1억원)을 통해 PL보험료의 최대 20%(업체당 1백만원 한도)를 지원(362개 업체)하고 있으나, 서울시 가입업체수(830개 업체)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건의사항

- 서울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PL보험료 지원예산 확대 요청
 - (현행) 1억원 → (변경) 2억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긴급간담회시
건의(20.3.2)
서울시 추경예산 지원
건의(20.5.21)

건의결과

반영(20.7.9)

건의요지

- 서울특별시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중
 -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재기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는 비대면·온라인 추세에 부합하게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서울시도 노란우산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배너광고로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홍보 요망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반영(20.10.29)

건의요지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조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되었으나, 2017년도부터 5천만원이하 물품구매 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토록 조달청 업무처리규정 개정
-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입찰공고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져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한 조합 추천 등 절차가 필요한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 상실
 -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토록 한 이후 각 업종별 실적 급감
- 2020.2.1일부터 인쇄물과 광고물품에 한하여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 대행하고, 향후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건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물품 범위 확대
 - 광고물, 인쇄물에 이어 기계류 및 과학기기 품목 추가요청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달청 차원의 수요기관 대상 제도활용 독려(홍보)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반영(21.5.1)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활력회복 대책 건의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상황
 - 기업규모가 작고, 생활밀착 서비스업 일수록 심각한 경기악화를 체감하는 등 시민경제와 밀접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극심
- 소비심리 위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과도할 정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
 - 소비심리 회복과 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사기진작 등의 활력회복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유지 등 서울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

건의사항

- (소비 촉진) 1개월(20.3월)동안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결제 시 일부 비용 페이백(예 30%) 지원
- (사업안전망 지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희망장려금 추가 지급
 - (현행) 매출액 2억원 이하 신규가입자 → (개선) 매출액 3억원 이하 5만원
-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진자 방문과 휴업조치에 따른 휴업보상금 지급
- (고용유지 유도)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 건의(20.2.14)
서울시장 긴급간담회시
건의(20.3.2)

건의결과

일부반영(20.3.2)

「Global 마케팅 수출 지원센터」 설치 지원

건의요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진출 기회 축소,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 박탈
 - 코로나 장기화 및 일상화(New Normal)에 대비, 대면접촉을 줄이는 언택트 (Untact·非대면)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및 교육체계 구축 불가피
- 글로벌 원격 온라인 수출상담 시스템 구축, 전세계 바이어 접속가능한 「우수 서울중소기업제품 소개」 앱 개발, 글로벌 新마케팅 기업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 등 언택트 Global 마케팅 수출지원 필요

건의사항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글로벌 원격 온라인 수출상담 시스템 구축 등 언택트 Global 마케팅 지원센터 설치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일부반영(20.10.29)

건의요지

- 범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 정신 확산에 노력 중
 -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대구중소기업전시판매장 입점업체의 임대수수료를 50% 인하하였으며(2.28),
 - 향후 회원사와 관련 중소기업단체, 본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계획

건의사항

- 서울시 소재 참여 임대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울시 주관 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긴급간담회시

건의(20.3.2)

건의결과

일부반영(21.2.15)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활성화

건의요지

- 조달청에서는 금년 2월부터 5천만원이하의 인쇄물 및 광고물에 대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절차 대행중
 - 한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20. 4. 8)에서도 공공부문 계약 관련 규제 완화 발표
- 그러나 서울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조합추천 수의계약방식의 발주계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 서울조달청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요망
- 아울러, 향후 1년간 1억원으로 상향된 수의계약 한도를 1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2억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일부반영(20.12.28)

상암DMC지역 지정용도 의무사용비율 및 기간규제 완화

건의요지

- 「중소기업DMC타워」는 2012년 6월 준공 이후 서울시 택지공급 지침에 따라 연면적의 80% 이상(의무기간 10년)을 IT, 미디어, 연구소, 연수 및 교육시설 등 DMC 유치업종 중소기업과 지원시설을 발굴·유치함으로써 DMC지구 활성화에 기여중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퇴실 급증과 적합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정비율(80%) 준수 불가능
 - 서울시는 건립초기와 불황기에 불가피하게 공실이 증가함에도 의무사용비율 80% 미달을 사유로 준공 후 5년(12.6월~17.5월)에 대해 의무사용기간 불인정함

건의사항

- 「중소기업DMC타워」가 공실 없이 운영됨으로써 DMC지구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용도 의무비율과 사용기간 완화
 - 지정용도 의무사용비율: 30%P 완화(80% → 50%)
 - 지정용도 의무사용기간: 5년 완화(10년 → 5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서울시 택지공급 지침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일부반영(20.10.12)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건의요지

-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활용 확대 위해 '16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17개 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서 가입자당 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중
 -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금 납입여력이 많지 않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내수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 지원대상: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 (확대) 연매출 3억원 이하
 - 지원금액: (현행) 월 2만원(24만원) → (확대) 월 3만원(36만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미반영

「협동조합 추천제도」 등 활용, 소기업 제품 구매확대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3~5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통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가 가능함에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수요기관의 활용률 저조
 - 소액임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와 장기적 수의계약 사례 빈번
- 특히, 조합추천 제한경쟁 제도는 '20.2월부터 인쇄 및 광고물 구매 시 5천만원 이하 건에 대해 조달청이 구매절차 까지 대행하고 있어, 구매 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 및 계약편의성 제고 가능
 - 업체별 추천 및 수주한도 설정으로 특정업체 편중 현상도 방지

건의사항

-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매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들의 “협동조합 추천 제한경쟁 제도” 등 적극 활용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LPG가스 사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관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서민층에는 무료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
-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기한('12년)이 끝난 '16년에 서울시는 810개 영세 소상공인에 금속배관 설치지원(3억원)하였으나, LPG호스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500개가 여전히 존재
 -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자발적인 금속배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의사항

- 영세 자영업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안전장치 설치 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개별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 구매, 구매력 부족(자금·신용·담보) 등으로 원·부자재 구매시 높은 단가 부담
- '18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한 원재료비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건의사항

- 원부자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보증재원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경영수지가 악화 → 더욱 나빠질 전망
-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보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보험요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은 가중
- 이에 정부에서는 '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중

건의사항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필요
 -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전액 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긴급간담회시

건의(20.3.2)

건의결과

검토중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개선

건의요지

-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등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제조 납품 가능
- 2017년부터는 여성, 장애인 및 유공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0.45%에서 1%로 상향되고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의무 구매비율 1%를 대부분 인쇄물로 채우고 있어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음

건의사항

-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 1%를 인쇄물 위주가 아닌 다른 품목에도 적절히 배분해 인쇄물만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여성, 장애인 및 보훈단체 등을 통한 일정 비율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직접 생산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쇄업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판매실적 급감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며 생존의 갈림길에 처해있는 상태로 이대로 몇 달이 지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연쇄 도산 불가피
- 비상경제상황인 만큼 코로나로 침체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 등과 더불어 기업인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해제 등 특단의 경제활성화 여건 마련 시급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6개월 이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면 기업자체의 존속이 위협해지는 상황

건의사항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행정제재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의 조속 감면 또는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민간수요 위축시기에 중소기업 재도약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수의계약 제한

건의요지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0조(계약상대자 선정)에 따라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중기간경쟁제품이 아닌 일반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구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동 제도 이해부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주는 사례 빈번

건의사항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제도 및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등이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혼선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 등 규정에 따른 운영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0조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다수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수요기관의 활용 미비로 인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
 -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하거나,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

건의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 등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건전한 협동조합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수요기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요망
 - 공공기관(수요기관) 설명회 또는 공문시행을 통해 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안내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제7조의2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단체표준은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중
- 또한 정부에서는 단체표준 발굴·제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공동사업 기반 구축 및 기능 활성화 도모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
 - 아직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우수단체표준 제품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 저조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산업표준화법 제25조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 적극 지원 요청
 - 관할 시·군·구 및 소관 공공기관에 안내 및 활용 독려
 - 계약 담당 부서에 활용 안내 및 공공기관 대상 공문 시행 등
-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우수 단체표준제품 구매 목표비율제 도입, 단체표준 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등

건의요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입찰 가산점 제도 편법 활용 사례 만연
- 최근 내수용 콘크리트제품 입찰에 G-PASS라는 수출기업 우대라는 가점제도까지 반영되는 일까지 발생
 - 또한 표준화 규격화된 콘크리트 제품이 신기술, 신제품으로 조달우수제품이란 평가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

건의사항

- 공공구매 가산점 제도가 소수의 기회주의 업체들에게 악용되는 불합리한 점 개선 요망
 - 묵묵히 기업을 운영하며 국가발전에 공이 큰 장수기업, 대를 이어 경영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 신설 필요
- 단체수의계약 이후 물량배분의 불공정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만든 MAS제도와 관련해서도 업체들에게 공정하게 조달납품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입찰에 낙찰된 업체들의 입찰참여 횟수 제한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MAS 품목별 조달단가 현실화

건의요지

- 매년 재료비, 인건비(제조노임단가,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함에도 조달청은 입찰원가에 대한 반영 없이 MAS 조달단가를 결정
 - 재료비, 인건비 대폭(25~30%) 상승 불구, MAS 가격인상에 매우 소극적
-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전 방위사업청 원가팀에서 납품실적이 있는 참가 업체로부터 품목별 제조 원가를 요청받아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품목별 단가를 산정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적정 납품단가 보장과 우수제품 납품 유도

건의사항

- 원가상승 요인 또는 거래실례가격이 MAS 조달단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담당자 재량으로 협상가격을 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달청 차원 세부품목별 가이드라인(상·하한선 등) 마련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레미콘, 아스콘 MAS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

건의요지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판매중지) 2호에 따라 매월말기준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중지 조치 중
-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적용금액을 납품실적(매출액)이 아닌 납품 요구액으로 산정하여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실제 점유율과도 차이 발생
 - 개별업체(조합원사)가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물량과 수요기관에서 납품업체(조합원사)를 지정한 물량도 조합점유율로 산정
- 2020. 2월부터 시행된 레미콘 MAS계약제도가 초기 정착단계이고 코로나19로 중소기업 경영악화 등 어려운 상태에서 매월 판매중지가 반복될 경우 제도정착 및 수요기관 발주지원 혼란 초래 불가피

건의사항

- 레미콘, 아스콘 판매중지 여부를 일반품목과 동일하게 매분기말 기준으로 완화하고 시장점유율도 현행 45%에서 일반품목과 동일하게 45~50%로 탄력적으로 운영 요망
 - 실제 시장점유율 산정기준에 부합되게 납품실적(매출액) 적용하고, 조합의 배정권한이 없는 2단계 경쟁물량 및 수요기관 납품업체 지정물량은 조합 시장점유율 산정 물량에서 제외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수요기관에서는 수의계약(특허,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진행 시 수의계약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검증된 업체와 계약토록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요청 중
 - 이 경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대상 물품에 대해 사전규격을 공개할 경우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가 불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계약추진이 지연되거나 업무 중복 등 조달 효율성 저해 사례 다수 발생

건의사항

- 수요기관이 사유서(특허,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한 경우, 사전규격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계약 진행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학교졸업앨범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체결된 물품으로 최근 업계의 경영상황은 학생수 감소,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비용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업계는 수차례 구매가격 인상을 건의했으나, '20. 4월 졸업앨범 공공조달 구매가격이 동결됨

건의사항

- 차기 학교졸업앨범 공공조달 구매가격 결정시 합리적인 구매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단가 중심 조달정책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서울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20.5.2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서울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밀집된 주택가의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체의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나,
 - 영세 중소기업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유지관리(활성탄 및 필터 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최소 분기당 유지비용 발생)
- 경기도 김포, 시흥, 용인 등의 지역은 시설 개선사업과 더불어 유지관리 비용 지원 중
 - 유지비용의 80%, 총금액 1,000만원 지원

건의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방지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지원요망
 - 시설유지 관리비용의 80% 지원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서울시의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은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도 엄연히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국가자격증”임에도 서울시의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위한 적정인력 불인정
 - 자동차 일반정비 및 사고차 복원수리 정비를 하는 자동차 종합·소형 자동차정비업 (정비공장)은 사업 특성상 차체정비(판금)와 자동차도장 작업이 전체 사업의 약8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경기도”는 자동차정비업 인력자격증 기준을 개선하여 정비요원 3명 중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가 아닌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1명은 자격증 정비요원으로 인정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건의사항

- 자동차 종합정비업이 확보해야 하는 정비요원 3명 중 1명을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도장 자격증 소지자도 정비인력 자격으로 인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5조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검토중

스마트앵커 설치시 인쇄업계 참여확대 및 박물관 건립

건의요지

- 서울시는 '17년 6월부터 중구 일대를 서울시 인쇄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인쇄 「스마트 앵커」를 구축 예정이나, 신규 주거공간 확보가 중시되는 등 인쇄산업 활성화라는 사업의 본질이 외면 받고 있는 실정
- 국내 인쇄산업의 중심지인 서울시 중구에는 세계 최고(最高) 금속활자인 '직지'를 만든 인쇄종주국의 자긍심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쇄기술과 유구한 인쇄역사를 해외관광객과 세계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미흡

건의사항

- 서울시 인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인 인쇄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인쇄조합 참여를 확대한 스마트 앵커시설 구축
- 인쇄체험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 글로벌 콘텐츠로 구성된 「인쇄특화 박물관」 건립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건의경과

서울시장 간담회시 건의
(20.7.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조합 등기이사는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조합과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기이사들은 운영기관 임직원(특수관계자)으로 분류되어 인쇄소공인센터 사업에 신청해도 서류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등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

건의사항

- 조합 등기이사의 소공인센터 사업 참여 배제 등 불공평한 기준 삭제
- 수혜업체 선정위원회 개최 시 공단 등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는 방법,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선정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방법을 개발하여 사업 수혜자 선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서울중기청장 간담회
(20.9.1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 2월부터 조달청에서 공공구매에 대해서 인쇄와 홍보물에 한해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인쇄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상표 사업은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양질의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건의사항

- 서울중소기업청 및 서울지방노동청 예하 기관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통한 인쇄물품 발주 요청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및 공동상표 홍보 및 이용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서울중기청장 간담회
(20.9.11)

건의결과

검토중

조달물품 의무구매 비율 충족 시 인쇄물품 편중 해소

건의요지

-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등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제조,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7년 여성, 장애인 및 유공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을 0.45%에서 1%로 상향하고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의무 구매비율 1%를 대부분 인쇄물로 채우고 있어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건의사항

- 공공기관의 조달물품 의무 구매비율 1%를 인쇄물 위주가 아닌 다른 품목에도 적절히 배분해 인쇄소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
- 본 건에 대한 산하기관 구매담당 공무원 대상 홍보와 교육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건의처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서울중기청장 간담회
(20.9.1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구매력 강화 및 대금지급 안정성 보장 대책 마련 필요

건의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기금 조성
 - 지원대상: 서울소재 소기업(원부자재 구매자금)
 - 지원내용: 무이자 또는 2% 이하 저리 대출(만기 6개월)
 - 기금규모: 200억원
 - 운영기관
 - 서울시(출연), 중기중앙회/협동조합(소기업 추천 및 심사)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서 발급)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시의회 의장

건의경과

서울시의회 의장 간담회
(20.10.1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서울시 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 육성·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실행방안 마련 필요
- 협동조합 육성의지 표명 위해 기존 지원사업 내역 등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 마련 요망

건의사항

-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의장

건의경과

서울특별시(20.10.6)

서울시의회 의장 간담회

(20.10.16)

건의결과

검토중

02

인천지역본부



건의요지

- 공공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 가능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사회적 약자 지원의 일환으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인쇄물 및 광고물 업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5천만원 미만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건도 구매대행 실시('20.2.1부터 한시적)하고 있으나,
 - 인쇄물 및 광고물 구매단가의 영세성과 조달청 구매대행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구매대행 실적 저조(5/11 기준 구매대행 1건, 16백만원)
 - *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초기 홍보(코로나 전)로 인하여 전체 추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 → 인쇄물·광고물도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 된다면 실적향상 기대

건의사항

- 제도 활성화 위한 조달청 차원의 수요기관 대상 제도활용 독려(홍보) 요청
 - 조달청 등록 공공기관 전체 대상 활용독려 공문 시행, 사전설명회 개최
 - 나라장터 공지사항에 안내게시물 등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인천지방조달청장
간담회 건의(20.6.4)
인천공공기관에
공문시행(20.9.9)

건의결과

반영(20.9.9)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요청

건의요지

-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공동사업(①단체표준, ②특허권, ③공동상표, ④협업사업, ⑤기술혁신 촉진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경우,
 - 수요기관은 동 제품 구매시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하거나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 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1호, 제22조 제12호

건의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정책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경영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수요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수요기관(공공기관) 계약 담당관 교육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극 홍보 및 제도안내를 공문으로 협조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인천지방조달청장
간담회 건의(20.6.4)
인천공공기관에
공문시행(20.9.9)

건의결과

반영(20.9.9)

건의요지

-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제도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은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제도

※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 계약요청시 조달청에서는 다시 수요기관에 구매업무협의를 재요청 하고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건에 대해 재차 의견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우수조달물품 구매를 기피하는 실정

건의사항

- 원활한 우수조달물품 계약업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재협의 및 의견서 제출업무를 생략하여 수요기관 구매요청 의견에 따라 계약업무가 진행될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인천지방조달청장
간담회 건의(20.6.4)
인천공공기관에
공문시행(20.9.9)

건의결과

반영(20.9.9)

소액수의계약 구매대행 확대 시행

건의요지

-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2020년 2월 1일부터 시범 실시
 -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
 -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광고물제작 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
- 조달청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시행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난 2월 13일로 예정되었던 ‘물품구매 계약제도 권역별 순회 설명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 되어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4월말까지 추진실적 없음

건의사항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는 그 취지가 판로확대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므로 ‘물품구매 계약제도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재개하여 공공기관의 참여 독려를 해줄 것을 건의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인천지방조달청장
간담회 건의(20.6.4)
인천공공기관에
공문시행(20.9.9)

건의결과

반영(20.9.9)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 위임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성립된 플랫폼으로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체이나 그에 비해 실질적 지원사업은 부족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지원
- '20.6.24.기준 모든 광역지자체 17곳 중 16곳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제정됨. 인천시는 '19.12.30.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함
 - 인천시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설립인가, 감독권한 등)권한이 시장에게 국한되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상황

건의사항

- 인천광역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사무위임
 - 기초자치단체(구청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성·지원책 개발 및 추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건의경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20.10.19)
기초지자체에 공문시행
(20.12.10)

건의결과

반영(20.12.10)

건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 가능
- 2007년 제도 도입 후 조달청의 적극적 지원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었으나, 조달청은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2017년도부터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시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조달청 조치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입찰공고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나, 공공구매 정보망을 통한 조합 추천 등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 상실
- 특히, 기계장비는 공사와 함께 발주됨으로 5천만원 이하 물품은 대부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공사로 발주하거나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 하고 있음

건의사항

- 동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과 같이 조달청의 구매대행 재시행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인천지방조달청장
간담회 건의(20.6.4)

건의결과

미반영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품목 선정기준 완화

건의요지

- 최근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국토관리청 산하 기관 등에서는 도로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아스콘 품질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아스콘 제조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및 인증을 취득한 아스콘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아스콘 제품의 경우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발주처에서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
 -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아스콘 제품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가능하나, 기술개발 아스콘 제품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불가하여 총액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며, 총액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복잡하여 발주처에서 꺼리는 실정

※ 관련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건의사항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양질의 아스콘 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시 기술개발 아스콘 제품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품목에 포함되도록 단가계약 대상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를 바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인천지방조달청장
간담회 건의(20.6.4)

건의결과

미반영

공정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단가 중심 조달정책 전환

건의요지

-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분야 납품단가 현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공공조달: 공정조달 실현을 위해 소액물품 최저가낙찰제 폐지('18.11월)
 - 민간거래: 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추진(하도급법·상생법)
- 한편, 현재 국가계약법상 조달가격 결정은 ①거래실례가를 우선하고,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②원가계산가격, ③견적가격의 순으로 적용
- 공공조달시장의 납품단가 현실화는 민간부문 大·中企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만큼, '거래실례가 중심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와 정상이윤을 고려한 적정단가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건의사항

- ①물품계약 예정가격 결정 시 공사와 마찬가지로 표준시장단가* 도입 추진
 - ②저가입찰 유도하는 거래실례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격검증 전문기관지정(설립)
 - 가격검증 시 중소기업계(관련 조합) 참여(또는, 중앙회 표준원가센터 지정)
- * 조달청, 『조달가격 사전검증체계 확립 방안 연구('17.8월)』 통해 필요성 검토한 바 있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지방조달청장

건의경과

인천지방조달청장
간담회 건의(20.6.4)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업체,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서울시·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거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및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지역 산업단지, 상가, 전통시장 등에 결성되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
 -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산업경제위원장 간담회
건의(20.1.16)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2019.7.1)에 이어, 일본정부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타격할 의도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 시행(8.28)
-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수입처 다변화, 기술 국산화 방향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고 있음
-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소재·부품 관련 기업 숫자가 가장 많지만 개별 업체들 규모가 영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건의사항

- 인천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등 인천기반 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 남동산업단지의 소재·부품·장비 전략기지화
 - 남동산업단지에는 기계 3,604개사, 전기·전자 1,153개사, 석유화학 768개사 등 6,906개 기업이 가동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 전체의 80%에 이룸
- 소재·부품·장비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산업경제위원장 간담회
건의(20.1.16)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정부의 R&D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수혜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음
- 인천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의 확대를 통한 정부지원 수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인천지역 내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는 중소기업의 생산·유통 등의 공정 자동화·디지털화를 유도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

건의사항

- 인천지역 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
 - 특히 자동생산, 머신·딥러닝, 공장자동화, 생산관리, 데이터 분석·처리 등의 5대 핵심분야에 있어서 스마트공장 운영 인력 양성 및 업종별 공급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함
- 인천지역 내 산학연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 중소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인하대·인천대 등 지역대학들의 사업화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 정부·인천시의 연구비용·장비 지원 확대 및 산학협력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이 요구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산업경제위원장 간담회
건의(20.1.16)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건전화 생태계 조성

건의요지

-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매출부진과 영업이익률 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진출증가로 경영난 가중
 - 최근 장기간 내수부진과 업체당 과당경쟁 심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은 지속 악화, 이에 폐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총 사업체 154,737개 중 82.8%인 128,153개)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폐업증가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많은 문제점 야기 예상

건의사항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수퍼마켓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센터 부지확보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특화상품 개발
 - 주차시설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주차시설 설치, 마련, 시장주변 도로 평일 이용 지원방안 마련 등
 - 전통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하여 전통시장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홍보
 - * 서울통인시장 “도시락카페 通”, 인천신포시장의 “닭강정” 등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산업경제위원장 간담회
건의(20.1.16)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으로서 첨단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군으로 각광받고 있음
- 항공드론산업 역시 미래 유망분야로 농작물 관리, 교통관리, 축산관리 등 그 활용범위가 방대하고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큼

건의사항

- 에너지신산업 및 드론 등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인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천시는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인천시를 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만들어 가는 에너지신산업 선도도시, 지속가능한 클린에너지도시로 조성해야 함
- 인천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 인천이 규제자유특구에서 배제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여전히 유지되지만, 인천에 비교우위가 있는 에너지, 항공드론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산업경제위원장 간담회
건의(20.1.16)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인프라 확충

건의요지

- 국내 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필요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시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
- 인천 소재 중소기업들은 공항과 항만이라는 물류인프라를 활용하며 최근 6년간 (2013~2018)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증가세를 기록
- 그러나 최근의 FTA 및 지역경제통합의 확대, 미중 무역전쟁 및 한일 통상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중소기업들의 무역 및 해외 마케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

건의사항

- 중소기업을 위한 중국마케팅 전담 지원
 - 2016년 설립된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신 중국정보 제공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수출상담회, 바이어 발굴, 특정품목의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등 지속적으로 시장진출 기회 제공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산업경제위원장 간담회
건의(20.1.16)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인천은 서해에 인접해 있어 수산자원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적시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를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에도 유리한 도시
- 그러나 인천의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인천종합어시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도매유통을 담당하는 도매 업체들은 단지조성조차 안된 상태로 최근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 하남, 평택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에 인천종합어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은 종합 어시장의 이전을 통한 단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수산물유통업 협동조합은 수산물도매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단지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음

건의사항

- 소매 및 도매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지원
 -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추진하는 수산물 복합시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이 인천수산물 도매유통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시 여객선이용 컨테이너를 야적하던 배후부지에 수산물도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산업경제위원장 간담회
건의(20.1.16)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영세성으로 대기업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동종 업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 구성을 통한 공동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가고 있음
-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조직화 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조직화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앙정부 및 47개 각 도도부현 차원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협동조합보육센터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육센터 설치를 통해 조직화 컨설팅 비용 지원, 일정기간 소규모 조합 사무공간 지원,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지원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공동정보망 구축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조합 당 1억 원 한도)을 장기 저리로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인천은 서해에 인접해 있어 수산자원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적시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를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에도 유리한 도시
 ※ 출처: 2019년 인천광역시 공장등록 및 산업단지 현황(인천광역시청)
- 최근 5년 새 인천지역 산업단지를 떠나는 업체는 증가세를, 입주하는 업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지역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신진대사 기능제고와 제조업체의 공장용지 확보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 민간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

건의사항

- 협동조합 등 민간주도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
 - (입주대상) 인천지역 모든 제조 및 비제조업 분야 업체
 - (지원방안)
 - 단지조성 컨설팅 전문가 위촉 지원 등 행정처리 지원
 - 인천시에서 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정보 제공
 - 부지매입, 폐수종말처리장 등 공동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건의경과

선거 정책과제집 전달시

건의(20.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연결의 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간 연결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의 중요성 부각
- 이에 정부는 업종 간 협력사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 3년마다 중기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인천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19.12.30)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근거가 마련됨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및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건의경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20.10.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
- 중소기업 경영여건상 중장기적으로 예측 불가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현실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며, 사고률이 높은 제품의 경우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한 상황
 - 서울, 경남, 제주 등 7개 지자체에서는 해당 소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80%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음

건의사항

-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이 PL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 인식 제고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선제적 정책 지원 효과
 - 중소기업의 심·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 도모
 -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수출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신시장 개척 등 시장 다변화 도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건의경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20.10.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활용가능한 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조달청의 구매대행업무가 종료되면서 제도 활용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중소기업의 판로난이 가중됨
 - 최근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인쇄물 및 광고물 업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1억원 미만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건에 대해 구매대행을 실시(‘20.2.1.부터 한시적)하고 있으나,
 - 인쇄물 및 광고물 구매단가의 영세성과 조달청 구매대행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구매대행 실적 저조

건의사항

- 인천지역 공공기관에서 ‘조합추천소액 수의계약제도’ 적극 시행토록 독려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대책도 발표된 만큼 적극적인 제도 활용 필요
 -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건의경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20.10.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은 민간 주도로 '17년에 인천표면처리센터를 준공했고, 인천지역 부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년 대상 도금교육 및 취업연계 사업을 추진
- 공동실험실 공간과 집기류를 회원사에 제공하여 업체별로 제각각이던 도금농도 표준화 사업 실시 중
 - 데이터가 축적되어 도금농도 표준화가 활성화되면 제조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부지원 사업 수행 및 도금농도 표준화 사업진행 시 보고자료 작성, 표준화 데이터 관리·보관 등 행정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아울러, 인천표면처리센터 내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등)이 부족하여 복리후생 확대 차원에서 편의시설 확보 필요

건의사항

- 인천표면처리센터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비 지원
 - 업무환경 개선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사업 활성화 기대
- 인천지역 부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운영인력 지원
 - 행정담당(정부사업 및 자체사업) 인력 채용지원(24백만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건의경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20.10.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는 지역 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성된 단지로 국내 최초 100% 민간 주도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화단지 조성으로 각 조합원의 작업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부재
 -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 적합한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면 각 조합원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뿐 아니라 단지 차원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각 조합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조합 차원의 사무실, 홍보관, 편의시설 등이 부족

건의사항

- 공동사업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공동사업 개발 지원
 - 맞춤형 공동사업 발굴, 추진으로 특화단지 차원에서의 수익 창출
- 단지 내 공동시설 설치 지원
 - 조합 사무실, 홍보관, 편의시설 등 설치를 통한 인천지역 우수 산업시설로의 가치 제고 및 친환경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인천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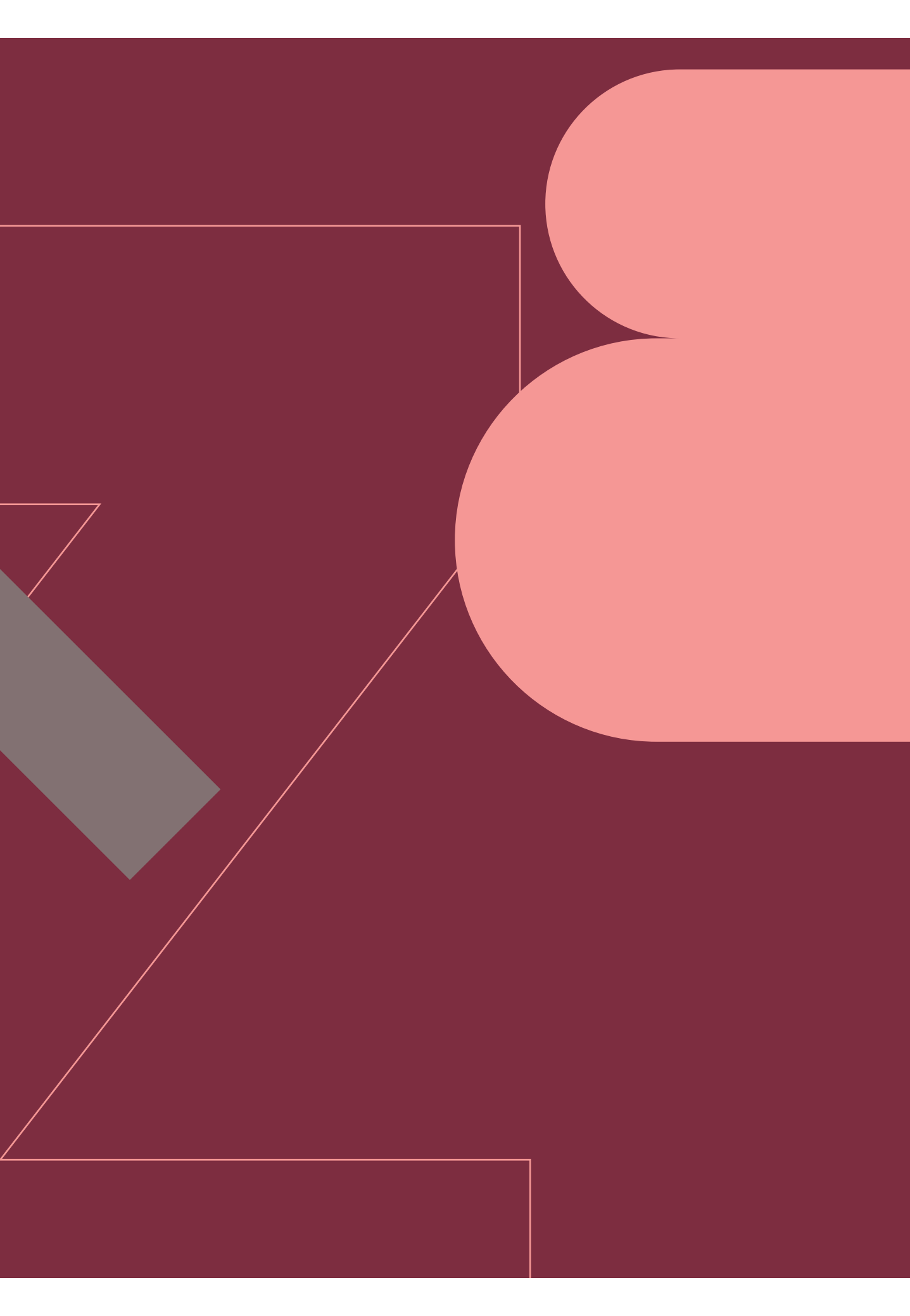
건의경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20.10.19)

건의결과

검토중

03
경기지역본부



건의요지

- 경기도는 인구, 사업체수 등 전국 최고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조달행정 서비스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에서 분리 관리
 - * 인구: 1,291만명(전국의 24.9%), 사업체수: 78만개(전국 1위)
 - 조달청 등록기관수(전국 2위, 87,151개), 물품·용역 계약실적(전국 1위)
 - 서울청 관할: 경기동북부 17개 시·군
 - 인천청 관할: 서남부 14개시
- 경기지방조달청 부재는 기업의 불편과 지역 밀착 조달행정 곤란 초래
 -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달행정으로 기업의 인력채용·물류환경·원자재 수급조건 등이 조달단계에 미반영
 - 조달기업 등록, 기술평가·계약 협의 등의 목적으로 서울·인천조달청 방문시 추가시간, 비용 발생으로 기업활동 애로(포천·파주·안성·평택)
 - 지방조달청 제도 설명회,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청취 및 조달제도 개선에 경기도 기업 소외
 - 양 조달청간 조달업무지침이 다른 경우가 발생, 경기도 내 기업들의 업무처리 혼선
- 국회 기획재정위, 경기중소기업이 제출한 국회청원 건(2018.7.17)에 대해 조달기업 불편사항 해결 권고

건의사항

- 경기도 지역 조달행정 수요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경기조달청 신설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조달청,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조달청(20.3.13)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반영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19년, 본회는 지자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를 마련하였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곳이 조례 제정 완료
 -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4.1월)」의 지원대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협동조합이 포함('15.10월)되어 있음을 이유로 미제정
 - ※ 세종은 관내 협동조합 수(1개)가 적어 조례 미제정
 - 하지만 대전과 전북의 경우 시행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육성) 조례」상 사회적경제 조직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시행 중
-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협동조합이 100개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 지방조합, 사업조합 기준(전국조합, 연합회 제외)으로 경기(100개), 서울(93개), 부산(73개) 順
 - 또한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협동조합 모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며, 전통제조(기계, 섬유, 가구, 인쇄), 뿌리산업(도금, 표면처리, 금형) 관련 협동조합이 다수 있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

건의사항

-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의회

건의경과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20.5.13)

건의결과

반영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법정 단체(법인)
 - ※ 법적근거: 헌법(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구·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20.7.15) 하였고, ’17년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중
 - 그러나, 중소기업지원 현장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의 지원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실정이며 지원근거인 조례도 미 제정인 상황

건의사항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및 제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안산시 의회

건의경과

조례 제정 건의

(20.9.16)

자체입법 발의(20.10)

건의결과

반영(20.12.18)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법정 단체(법인)
 - ※ 법적근거: 헌법(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구·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20.7.15) 하였고, ’17년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중
 - 그러나, 중소기업지원 현장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의 지원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실정이며 지원근거인 조례도 미 제정인 상황

건의사항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및 제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시흥시 의회

건의경과

조례 제정 건의

(20.10.27)

이상섭의원 등 입법발의

(20.11)

건의결과

반영(20.11.25)

건의요지

-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해 급변하는 시대상황 반영 제한적
 -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4차 산업혁명시대 협력 플랫폼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기업 간 융·복합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 동 조례는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 대상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생산 재화 서비스 의무 구매(10조4항) 규정
- 그러나, 조례상 육성지원 대상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법에 근거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우선구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타법을 근거로 한 장애인기업 등에 역차별

건의사항

-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 3년 마다 수립
-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우선구매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추가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공동사업의 수익이 중소기업에게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기업 간 협업 플랫폼
 - 또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정부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
- 최근 협동조합은 신규 공동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어려움 겪고 있음
 - 협동조합 대부분이 공공구매(41.9%)와 공동판매(28.7%)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운영 중
 -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조합이 40%, ERP를 도입한 조합이 7% 수준에 불과해 협업 및 지식·데이터 기반의 공동사업 추진 여건 열악
-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협동조합을 활용하고 자금을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19.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공포 '19.12월)했으며, 또한 이 법은 지자체가 협동조합이 지자체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건의사항

-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공유오피스) 설치 및 입주지원
- 센터 內 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배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의회

건의경과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20.5.13)

건의결과

미반영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임가공(사) 애로사항 건의

건의요지

-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임가공사업협동조합은 광명시흥지역을 업무구역으로 경기도로부터 설립인가(16.6.28) 후 85개 조합원사가 있음
-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수년간 동 사업을 위해 협력해 온점을 감안하여 조합의 애로사항 해결 희망

건의사항

- 단지 일부 조성원가·수익계약 우선분양 업무협약
- 토지이용계획 변경(산업+복합용지)
- 산업단지 지역내 임시 이주단지 조성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내광명시흥사업본부

건의경과

경기도,
내광명시흥사업본부
(20.5.22)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20.6.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가구산업은 다른 전통제조업과 달리 2013년 이래 연평균 5%의 높은 생산증가와 12,000여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산업으로 부가가치는 낮으나 고용기여도가 높은 업종임
- 경기도는 전국 가구제조업 고용의 66.1%(2017년 기준)를 점유하는 전국 최대의 가구집적지역임
 - 가구산업의 경우 제작과 유통을 겸업하는 업체 비중이 높아 협업사업 수요가 많고 추진 가능성도 높음
- 대·중소기업 협업여건이 성숙되어 대기업은 유통 및 디자인, 중소기업은 생산 등의 분업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대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대·중소기업 공급자 박람회 등의 직접적인 상생협력사업 외에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 가구산업 관련 협회, 단체,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하지만 협력활동 및 상호연계가 미흡한 바, 협업네트워크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 가구산업 발전의 주요 주체들 간의 상호교류 확대로 공동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 가구산업발전 협력플랫폼(거버넌스) 구축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전국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6%가 노후화 진행, 국가산단이 노후산단 총 면적의 84.8% 차지
 - 노후산업단지는 유형별로 국가산업단지는 27개소로 일반산단(39개)보다 적지만 조성면적은 전체 노후산단의 84.8% 차지
- 경기도의 경우 117개 산업단지 중 1980년 이전 착공한 노후산단(8개)의 조성면적은 40.7km²로 전체 산단 조성면적의 45.8%에 해당하며, 노후산단 가운데 국가산단 면적이 89.5%로 절대적 비중 차지
 - 경기도내 노후산업단지의 업체수는 18,9487개, 종사자수는 316,555명으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업체수의 87.4%, 종사자수의 73.1% 차지
- 노후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비중이 과다하여 지원기능 부족의 문제점을 낳고 있음
 - 전국 국가산단의 경우 1960년대 조성된 산단의 산업시설 비중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
 - 경기도 일반산단의 경우 1970년대에 조성된 산단의 산업시설 비중이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
 - 이런 경향은 노후산단 일수록 물류, 주차, 쇼핑, 녹지 등 기업경쟁력과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데 관련된 시설과 기능이 부족함을 의미

건의사항

- 교통인프라 시설 확충, 편의시설 확대 등 산업단지 고도화 및 환경개선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반월염색전문단지 197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최초 80여개 염색가공업체가 집단화 입주 이후 지난 40여년간 국내 최고의 기술축적과 노하우 보유 및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 동안 OEM 생산구조로만 사업을 영위
 - 섬유산업은 4차산업의 발달과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첨단 소재산업으로 변모하면서 세계 섬유·의류시장규모는 2013년 7,660억달러로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생산제품의 약 80%를 수출하는 세계 4위의 섬유수출 강국이었으나, 인건비 상승 등 가격경쟁력 저하로 2000년 섬유수출 188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 특히, 반월염색단지는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원천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의 제약이 많아 기술이나 규모면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 섬유패션기업의 16.3%, 근로자 기준 19.3%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큰 섬유염색단지인 반월염색단지 인근에는 지원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며, 최근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들의 발전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로 바이어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조속히 발굴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직면

건의사항

- 안산섬유패션 클러스터센터 건립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선

건의요지

- 배출시설 제한지침으로 기업체들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규설치가 제한되어 경제적 효과가 높아도 포기해야 하는 실정
 - 반월시화산업단지 제한지침은 1,033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제정·시행되고 있어 특정유해물질 사용·발생하는 시설의 배출시설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 사업 확장이 어려움
- 제한지침으로 인해 업종 간 차별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입주 형평성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산단 내 제한대상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
 - 동 지침에 의한 엄격한 입주제한규정이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경기도는 2010년 105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이주가능토록 완화하였으나 다른 업종은 입주를 시도조차 못함
- 한편,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 중 제조업과 병행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 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43개사 모두 지침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현행 제한지침의 문제점을 지적(경기개발연구원, 2014)

건의사항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경우 배출시설 신설 허용 및 자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허용
- 폐기물재활용·폐수재이용업에 대한 증설 허용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16년말 공동통근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64개소이며, 경기도내 산업단지는 10개소이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3개 시·군의 4개 산업단지에서 공동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음
 -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시화MTV, 사회산업단지, 안산스마트허브
- 산업단지에는 대중교통이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해 교통 부분의 악순환발생
 - 대중교통 공급부족, 승용차 이용률 증가, 주차공간 부족, 도로변의 불법주차 증가, 도로소통 악화, 화물차량 및 비상차량의 진출입 애로
- 또한 대부분의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고용환경에 있으며, 이런 열악한 고용환경에는 구직자의 출퇴근 불편이 큰 비중으로 포함됨
 - 중앙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산업단지 고용문제 해결책으로 공동통근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있음

건의사항

- 공동통근버스 정보제공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 공동통근버스 브랜드화
- 주거지 출발형 노선 적극 도입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1,372개(경기도 230개)이며 20만개 점포, 상인 33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
- 2013년 기준 시설설치는 아케이드 64%, 고객 주차장 68%, 고객지원센터 25%, 고객쉼터 13% 수준
-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며,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 특색이 부족한 시설이 대다수
 -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사항: 주차장 25.4%, 편의시설 24.6%
-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년상인 유입은 미흡
 - * 전통시장 상인 평균연령 추이: (2008) 53.1세 → (2010) 53.7세 → (2013) 55.2세
- 정부지원 후 사업 지속을 위한 추진주체가 취약, 서비스 수준도 낮은 실정
 - 상인회에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시장은 전체시장의 48% 불과, 서비스 수준 (가격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교환·반품 등)은 60% 미만

건의사항

-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지속 확충
- 획일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역특색과 개성이 드러나도록 개선
 -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거쳐 특색 있는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 종류는 일반발행(최대 6% 할인), 정책발행(복지수당)으로
 - 2019년 누적발행 액수 2,066억원(9월 기준), 연간발행목표액 1,379억원(향후 4년간 발행목표 1조 5,905억원)
- 지역화폐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사행성 업소를 사용제한 업종으로 지정(경기도 운용계획, 기초지자체 조례)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일괄 지정
- 소상공인 집적지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확대조치가 필요

건의사항

-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제도개선
 - 대규모 점포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이 아닌 실제 운영주체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의 집적지인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허용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산업폐수 슬러지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2015년까지 해양배출을 일부 허용
- 이에 따라 폐수슬러지의 퇴비화, 지렁이 퇴비화 등 다양한 재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재활용처리단가는 증가하는 추세
 - 경기도의 폐수슬러지 발생량은 3,838.3톤/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07,148원으로 2015년 대비 증가하여 폐수처리 공정개선 및 처리방식의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의 마련이 필요
- 경기도의 경우 오폐수 처리업체는 매립시설 2개소, 소각시설 24개소, 중간 재활용시설 8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매립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장거리 지역으로 이송 처리되어 수거운반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폐수슬러지의 적정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건의사항

- 폐수슬러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및 산업폐기물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며, 권역별 단지별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운영 추진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는 2017년 현재 총 12,675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으며, 이 중에서 폐기물종류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업체(중복 포함)는 10,524개(83.0%)이며, 폐기물처리형태(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중 재활용업체(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가 5,502개(43.4%)임
 - 재활용 제품 판매량은 2017년 3,211만톤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재활용업체 종업원수 규모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5인 이하가 56.7%, 10인 이하가 75.2%이며,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는 60.4%로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
-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폐지, 고철, PET 등 주요 재활용 품목들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영세한 고물상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폐기물 수집·처리와 관련 문제가 심화됨

건의사항

- 생활폐기물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집하장 건립을 민관 매칭으로 추진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주당 경기도당

건의경과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코로나19 관련 전기요금 일부 감면 및 납부유예

건의요지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 확대로 여행, 숙박업계의 경우 기존 예약 대부분이 취소된 상황
- 현재 경기 악화에 무급휴가, 경영진의 급여 반납 등 인건비 최소화와 각종 거래처 비용도 업체와 협의하여 경감 및 지급유예 조치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직원들의 대규모 실직을 막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한국전력공사는 규정에만 급급하여 단전 통보를 단행하였고, 별도 수입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지급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일부 업체의 경우 단전 통보에 따른 도산 우려 호소

건의사항

- 전기요금 일부 감면 및 6개월 납부유예 요청
 - 정부 및 경기도 또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단전 조치 대신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등으로 자구노력중인 동종업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한국전력공사

건의경과

한국전력공사
(20.4.14)

건의결과

검토중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 확대

건의요지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은퇴·사망 시 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을 함
 - *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1분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해 정부의 정책자금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 노란우산은 노령으로 인한 은퇴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논의되는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20.4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이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위해 희망장려금으로 1인당 월 2만원 이상(강원 월 5만원) 최대 12개월 간 지원 중
 - 특히 부산·경남, 지난 3~4월 코로나 추경 통해 희망장려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신규 가입 적극 유도
 - 경기도의 경우 올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대('19년 20억원 → '20년 38억원)했지만 1인당 월 지원액(1만원)은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1인당 지원액 확대를 통해 신규 가입 유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건의사항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월 지원액 1만원 → 2만원 확대(12개월 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의회

건의경과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20.5.13)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이 3천㎡ 초과시 무조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배제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인프라 지원 등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유통상가 지원근거를 신설하거나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아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유일
 - 법 개정에 과도한 시간 소요 등 한계 → 전통시장 지정이 효율적
- 단지 형태로 조성된 유통상가는 전국 100개로 파악되며, 이 중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산업용재 업종 취급 상가는 56개며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등 15개 유통상가가 전통시장으로 이미 지정

건의사항

- 소상공인들의 집적체인 유통상가 전통시장 인정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의회, 시흥시, 시흥시의회

건의경과

경기도 의회(20.5.14)
시흥시
(20.5.22/6.22/7.17)
시흥시 의회 (20.9.23)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함
- 최근 PL관련 사고는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있음
- 중소기업 경영여건상 중장기적으로 예측 불가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현실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며, 사고률이 높은 제품의 경우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한 상황
 - 서울, 경남, 제주 등 7개 지자체에서는 해당 소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80%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건의사항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PL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 안성시, 수원시, 성남시

건의경과

경기도(20.7.24)

안성시

(20.9.04/11.06)

수원시(20.10.29)

성남시(20.11.1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상표개발, 마케팅, 컨설팅, 협업거래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음
 - 지난 2017년부터 공동R&D,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등 5개분야에 대한 사업분야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음
 - 동 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활성화의 촉진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건의사항

-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수립 등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적극 검토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건의경과

경기도 건의(20.8.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운영해오고 있음
 - 지난 '20.8.25 판로지원법 시행령* 공포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미포함)으로 상향 시행 중
 -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 시행사항이 '20년말까지 한시적용(기재부·행안부 고시기간)되는 만큼, 동 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건의사항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성화 및 소속 산하기관(부서)에 전파하여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

건의경과

경기도 건의(20.08.3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자체의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유인·촉진하여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정부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여 저예산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 실패 및 재기지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확충함으로써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
-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협약을 통해, 2019년부터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 대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여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희망장려금 1만원씩 추가 적립(최대: 12만원 적립)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소재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경우, 월 2만원 이상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 강원도(5만원 지원)

건의사항

-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가입 시 희망장려금 추가 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안성시, 수원시, 성남시

건의경과

안성시
(20.09.04/11.06)
수원시(20.10.29)
성남시(20.11.11)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제조업 부흥 및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구축비용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정부에서는, 제조기업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확산사업 추진 중
 - 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진행
 - * 정부·대기업이 사업비의 60% 지원, 중소기업 자부담 40%
 -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시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사(중소기업중앙회, '19.5월)
· 건의사항: ①지원절차 간소화(48.4%) ②자기부담금 하향(39.5%)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판로 등 지원프로그램 필요한 것으로 조사
-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18.12월)
· 보완 필요사항: 공급기업 역량강화(19.4%), 판로 등 지원프로그램 확충(14.3%)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축비용 예산 지원 필요
 - 기초 지자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 프로그램 부족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지자체 예산 지원 요청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경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안성시, 수원시, 성남시

건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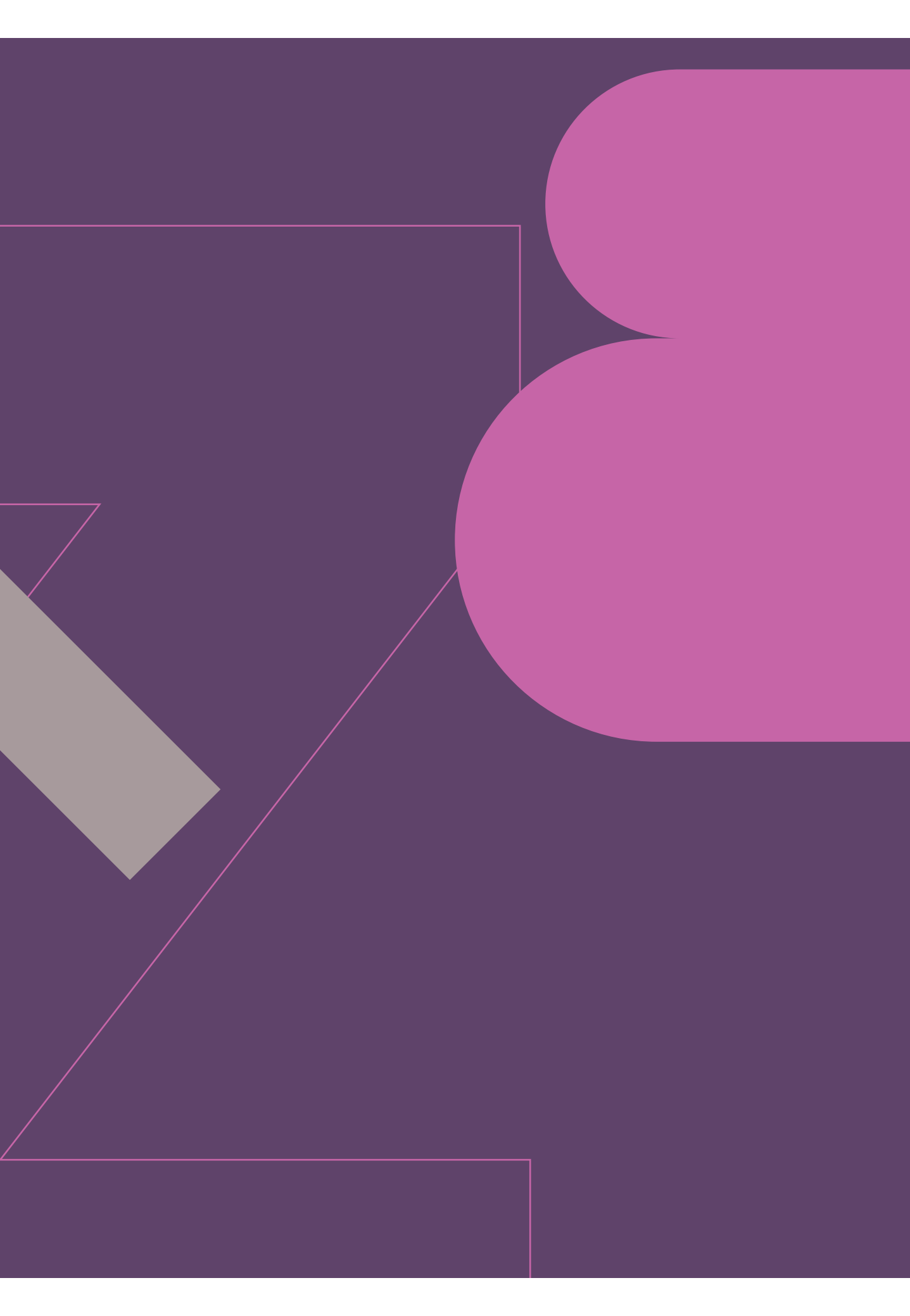
안성시
(20.9.04/11.06)
수원시(20.10.29)
성남시(20.11.11)

건의결과

검토중

04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건의요지

- 고양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운전자금 지원 필요
 - 특히,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건의사항

- 본회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활동 안정 도모를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용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 요청
 - 고양시에 소재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운전자금을 융자받아 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1~2% 이자를 고양시에서 지원
 - 지원업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도소매, 유통 제외)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고양시장

건의경과

이차보전 지원 요청

(20.2.6)

협약체결 및 지원개시

(20.3.4)

건의결과

반영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완화

건의요지

-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요 폭증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실시하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
- 이에, 국외 마스크 수출 불가에 따라 기 계약업체와의 거래단절 등에 따른 비계량적·간접적 손해 발생

건의사항

- 국내 확진자 수 감소 및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을 감안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완화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경과

코로나19 애로 수렴
(20.3.23)
업계애로 건의
(20.4.16)

건의결과

반영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5월 기준 99개의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관리·감독 중
-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 그 동안의 중기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경제와 밀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건의사항

-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제정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의회(의장,
도의원)

건의경과

조례(안) 마련(20.4)
업계애로 건의
(20.5.13)

건의결과

반영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독자적 생존이 어려워 협업과 공동사업 필요성 증가
 - 이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권익보호와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및 기능의 중요성 증대
- 또한,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광역자치단체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및 조례 제정 등 중장기 육성정책 마련 중
- 지난 '20.7월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와 함께 조합이 다수 소재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내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건의사항

- 기초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도·시의회

건의경과

더민주 경기도당위원회
(20.3.26)

경기도의회 의장
(20.5.13)

파주시 기업지원과
(20.6.16)

경기도의회(20.7.28)

포천시의회(20.9.17)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포천시에 소재한 가구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건립하여 경기포천 가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홀앤가구전시판매장'은 도로표지가 부족하고 진입로 등 교통여건이 용이하지 않아 접근성이 낮은 실정

건의사항

- 가구전시판매장 인근 교차로 및 노면에 도로 표지를 설치하고 반대 차로에서도 가구전시판매장으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도로정비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포천시장

건의경과

포천시장 간담회
(20.11.17)

건의결과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적극 활용

건의요지

- 포천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5억원 미만의 계약 및 물품구매에 대해 지역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활용도가 낮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한계
 - 특히, 경기도에는 타 행정구역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 포천시 및 산하기관의 포천시 지역제한 적극 활용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건의처

포천시장

건의경과

포천시장 간담회
(20.11.17)

건의결과

반영

포천양문공단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 지원

건의요지

- 포천양문공단에 입주한 염색업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단을 관리 중이며, 포천양문공단은 경기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재정비 및 체력단력실 등 공단 근로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 추진 중
- 이와 관련, 포천양문공단 내 조합이 소유한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는 근로자 커뮤니티 시설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포천시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그러나, 조합은 포천시의 부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음에 따라 포천시의 영구임대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

건의사항

- 양문공단 내 포천시 소유 부지의 영구임대 또는 소유권 이전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포천시장

건의경과

포천시장 간담회
(20.11.17)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경우 각 정당이 직접 발주하지 않고 행사기획사를 통해 턴키계약 형태로 인쇄물을 구입
 - 이 경우, 행사기획사가 공모 등 절차 없이 계약자를 선정하고 선거법에 따라 단기에 대량 제작하는 발주특성상 야간근로 등 제조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영세 인쇄물 제작업체는 적정 납품단가 보장이 어려움

건의사항

- 총선 등 주요선거 선거공보 제작 시, 행사기획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고 정당의 중앙 또는 광역단체별 조직에서 공고를 통해 직접 구매 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직접 구매를 의무화한 것과 같이 정당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앞장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국민의힘

건의경과

업계 애로수렴(20.1)
건의문 제출(20.2.13)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 수는 2017년 기준 223천개사로 2010년 대비 약 31% 증가하여 전국 17개 지자체 중 5위권으로 중소기업 관련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 인구수 역시 2019년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인구 341만명을 초과하여 343만명을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남부 지역 다음으로 전국 3위권의 인구가 집적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인구 규모가 적은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 경기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별도 지방청 없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북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밀착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신설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과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협업 플랫폼
- 그러나, 최근 협동조합은 신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자금 부족에 따라 기능 활성화에 어려움을 토로 중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유재산, 부지,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고, 운영경비 등을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강원도 등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유오피스 방식의 협업촉진센터 운영을 지원 중

건의사항

- 경기도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건의처

경기도의회(의장, 도의원)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4)

업계애로 건의

(20.5.13)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2020.4월 이후 신규입국 지연 중
 - 2020년 제조업 분야 신규도입 계획인원은 30,130명이나, 8월말 현재 2,234명만이 입국
-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출국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생산현장의 인력공백 발생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현장에 긴급히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조사해 추석 이후 입국재개 추진하고 있는데,
 -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재개시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시설이 필요하지만 자가격리 시설이 확보된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긴급입국재개 추진을 위해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시설 지원 요청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포천시

건의경과

포천시 건의(20.9.24)
포천시장 간담회
(20.11.17)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두부용 수입 콩’ 제품은 실수요자단체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와 농수산물 유통공사(at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공급 중
 - 이는 '96년 두부 제조업 허가제 폐지에 따라 두부용 콩 수요가 폭증하여 두부용 수입 콩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07.11~12월, 2개월간)하였기 때문에 이후 현재까지 수입 콩 공급은 안정적
- 그러나, 실수요자단체와 at공사의 이원화된 공급체계는 실수요자단체에 대한 조직력 약화로 연결되어 영세 소상공인 권익대변 기능 약화로 귀결
 - 반면, ‘두부용 수입 콩’ 외 5대 곡물(콩, 콩나물콩, 팥, 논두, 메밀), 5대 채소(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및 참깨, 생강, 감자, 녹차, 낙화생, 고구마 등 17개 품목은 여전히 실수요자단체에서 단일체계로 공급 중

건의사항

-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두부용 수입 콩’ 공급자를 실수요자단체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로 일원화
 -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기여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3.12)
업계애로 건의
(20.3.23)

건의결과

검토중

경기북부 산업단지 입주 中企의 일터 접근성 확보 지원

건의요지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50개 산업단지에는 1,721개 기업이 47,240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
 - 대부분 산업단지는 환경·소음 및 지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소재하여 자가용 차량 외 통근 등 접근성 열악한 실정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또는 경기도 승인을 통해 산업단지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나,
 -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중소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통계정보 등의 사항을 제출토록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산업단지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운영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거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경기북부의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등은 글로벌 패션도시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18.9)
- 그러나, 섬유업종의 대부분(81%)이 10인 미만의 임가공 중심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벤더에 의한 거래 관행에 의존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벤더의 해외 이탈로 경영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단위 공정에 특화된 지역 섬유산업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 특히, 지역 섬유업계는 단위 공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원단 완제품을 생산·판매 할 수 있도록 재료업과 완제품 도소매상을 연결하는 전문인력(컨버터) 및 협업 공간 지원이 필요

건의사항

- 「경기북부 섬유패션 Trade센터」를 건립하여 섬유 완제품 제조 공정에 필요한 제조, 디자인, 연구소, 상사, 벤더 및 컨버터 등이 입주하여 자유롭게 협업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과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최근 산업 가치사슬 구조에서 물류 및 유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이 각각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
 - 이에, 대·중소기업간 물류경쟁력 격차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어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
- 경기북부 지역에는 중소기업 공동물류단지가 없어 약 1만 5천여 개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물류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
 - 특히, 파주시, 고양시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물류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아울러, 2016년 기준 경기도내 운영 및 조성 중인 10개의 물류단지는 모두 경기남부에 소재하여 도내 불균형 개발 우려

건의사항

-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물류 및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과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술개발(R&D)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피혁·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기업은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실정
- 또한 경기도 등 정부의 R&D 등 지원방식이 대부분 수월성 위주의 경쟁 공모 방식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재무기준 등 사업수행 역량지표가 미흡하여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 경기북부 소재 섬유·피혁·가구 제조업 등의 디지털, 스마트 혁신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경기북부 특화산업 맞춤형 R&D 지원방안 마련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과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경기북부에는 섬유·피혁·가구 제조업 등 특화산업과 관련하여 한국섬유재연구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가구창작센터, 3D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소재하여 창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
- 이에, 수도권 및 경기북부지역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기북부 제조 창업인프라를 결합하여 경기북부 산업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건의사항

-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디자인·IT·스마트 등을 연계하여 청년 혁신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거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경기북부 지역은 섬유·가구 제조업체가 지역 제조업체 78천여개가 집적하여 경기도에서도 해당업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중
- 섬유 및 가구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안정성 확보가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나, 경기북부의 대다수 중소기업은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활용 중
- 그러나, 경기북부에 소재한 많은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시 업종 및 업체별로 정해진 고용한도 및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예외(상향)업종에서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피혁 업종 등이 제외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불법 채용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중

건의사항

-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 피혁, 가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을 20% 상향하는 예외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방안 강구 필요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거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장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에 따라 근로자 교육시설 설치 가능하나, 생산제품을 체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이 불가한 실정
 - 이에, 사업장과 이격된 체험 및 교육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체험 및 제품사용교육 등을 위한 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 중

건의사항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을 통한 산업단지 부대시설 범위에 ‘체험장 (공장의 생산제품 체험 및 교육시설로 한정)’을 추가

현행	개정안
<p>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7. (생략)</p> <p>8. 다음 각 목의 시설</p> <p>가. 제품전시장(이하 생략)</p> <p>나. 제품판매장(이하 생략)</p> <p>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현행과 같음)</p> <p>1.~7. (현행과 같음)</p> <p>8. 다음 각 목의 시설</p> <p>가~다. (현행과 같음)</p> <p>라. 제품 체험장(생산제품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p>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과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건의요지

- 경기지역은 2014년도 기준 전체면적의 약 11.6%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의왕시, 하남시, 시흥시, 구리시 등은 면적의 과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적인 실정
- 이와 관련, 정부는 과도한 사유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년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으나
 -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여전히 필요하며, 해제 후에도 공공주택, 산업·물류·유통단지 등으로 사업이 제한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는 여전히 상황
- 특히, 그린벨트에 지정 당시 기존 사업장의 증축 가능면적이 제한되어 작업공간 등의 추가적인 확보가 어려워 기업 운영에 애로 발생
 - 이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생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사업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 등 필요

건의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경기북부
선대위)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3)

21대 총선과제 전달식

(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소기업 사업주 및 소상공인의 폐업·은퇴·사망 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이와 관련,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다수 광역지자체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 중
 - 특히,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공제료 지원 규모를 확대(월 1만원 → 월 2만원)한 바 있음

건의사항

- 현행 공제료에 대한 1인당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지원 요청: (현) 월 1만원 → (안) 월 2만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의회(의장, 도의원)

건의경과

업계 애로사항 수렴
(20.1~4)
업계애로 건의
(20.5.13)

건의결과

검토중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 수립

건의요지

-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20.7월)에 따라 동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공동사업(R&D, 컨설팅, 공동상표, 공동구매 등) 소요비용 매칭 지원
 -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조합 경쟁력 제고 촉진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등

건의사항

- 경기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조속 수립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기도

건의경과

경기도 건의(20.8.2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포천양문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염색업 중소기업들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여 1일 14천톤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입주사가 공동폐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폐수가 고온이고 유입량이 불규칙하여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 발생
- 또한, 공동폐수처리장이 다년간 퇴적된 폐기물로 인해 처리가능 용량이 5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
- 이에, 공동폐수처리장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영세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 공동폐수처리장 이용 업체의 개별 폐수 방류 관련 유입량 조정시설(유량조정조) 및 1차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포천시장

건의경과

포천시장 간담회
(20.11.1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포천시 신평집단화 단지에 입주한 염색업 중소기업들은 포천시 허가를 받아 개별 업체별로 주변의 하천수를 인용하여 염색공정에 사용 중이나
 - 20개 업체가 50개 관로를 설치하여 비경제적이고 계절적 영향에 따른 용수공급에 차질 및 축사 부유물 등에 따른 오염수 문제 발생 중
- 이에, 염색업 중소기업들은 단지내 하천수를 공동으로 인용하여 취수장을 설치하고, 동 취수장에 일정시간 하천수를 저장함으로써 불순물을 침강시켜 적합한 수질을 확보하는 한편, 난립한 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나 영세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 단지 공용 하천수취수장 설치 및 관로 정비를 위한 비용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포천시장

건의경과

포천시장 간담회
(20.11.1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지난 '04년 WTO 협정에 따라 수입 가구 완제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MDF합판 등 가구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8%의 관세 부과 중
 - 또한, 국산 MDF합판 등은 수입 MDF합판 등 대비 10%~20% 가격이 높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37%에 불과하여 중소가구 제조업체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
- 이에, 대다수 중소가구 제조업체는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수입 완제품 가구 유통업체와 원가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열위에 있는 상황
 - 특히 '12년~'17년 중 가구제품 수출 증가율은 1.7%에 불과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9.3%에 달하여 국내 시장의 수입가구 점유율 지속 확대 우려

건의사항

- 주요 가구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기획재정부

건의경과

건의(20.11.25)

건의결과

검토중

05
강원지역본부



건의요지

- 이모빌리티연구조합, 한국전기상용차융합협동조합 산하 16개 기업이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사업과 이를 위한 공장건설 및 기업연구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9.3.18)
- 또한 자동차 1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4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황성과 인접한 원주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음
- 강원도는 초소형 화물전기차 및 승용차, 전기차 튜닝, 관광과 연계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핵심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으며, 향후 기반서비스로 관광지와 연계한 MaaS(Mobility as a Service)와 강원도 낙후지역과 연계한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마을버스)에 특화할 계획
 - 강원도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중심의 이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황성 우천일반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전용단지로 조성하고 초소형전기차 임대형공장, 주행시험로 등을 조성 중

건의사항

- 이모빌리티 실용화·산업지원센터 구축
- 이모빌리티 R&D 지원·인증 인프라 구축
- R&D개발-인증기준 연계 및 시험방법 개발 지원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건의경과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달식(20.3.26)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업체,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거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개별기업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 전체에 지원하는 효과 거양

건의사항

- 2019.12월 제정한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및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건의경과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달식(20.3.26)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분리 발주 및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7월 25일 국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관련 업계와 환경부 장관과의 회의에서도 공법 및 신기술 시공에 있어서 특수자재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를 약속했음
- 최근 공법 회사와 용역 회사가 담합하여 발주처(수요기관)를 설득,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산업체가 하청업체로 전락해 적정한 이윤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 발생

건의사항

-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발주기관에는 설계 단계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법 회사, 시공 회사 및 발주처가 담합하여 계약 요청을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분리 발주가 되도록 조치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반영

강원도 세부시장범위(공급권역) 단일화

건의요지

- 강원도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고, 열악한 교통환경에 따라 원자재 수급에 지역별 편차가 크며 아스콘 운반비용도 차이가 많이 발생해 영서남부, 영서북부, 영동 등 세 개 권역으로 분류를 나누어 계약을 관리하였으나,
- 현재는 도로망 확충 등으로 원자재 수급가격 및 납품시 운반단가에 큰 차이가 없고, 3개 권역으로 계약을 관리하게 되면 부득이 권역별 단가를 서로 다르게 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분류에 따른 계약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권역별 관급단가 현황

규격	권역		
	영서남부	영서북부	영동
WC-1	72,560 원	73,180 원	73,020 원
WC-2	72,710 원	73,340 원	73,160 원
WC-3	70,760 원	72,200 원	71,460 원
WC-4	72,630 원	72,630 원	71,870 원
WC-5	71,300 원	71,300 원	70,580 원
WC-6	72,720 원	72,720 원	72,580 원
BB-2	61,700 원	61,700 원	61,440 원
BB-3	62,750 원	62,750 원	62,470 원
BB-4	63,180 원	63,180 원	62,920 원
MC-1	69,550 원	69,550 원	68,840 원

건의사항

- 원도 지역의 도로망 확충 등으로 원자재의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각 권역별 아스콘 운반단가가 평준화됨에 따라 원활한 계약관리를 위해 현행 3개 계약권역에서 강원도 단일권역으로 통합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5천만원 이하 물품 및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
- 동 제도 활용시,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수요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여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며 감사에 대한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
- 조달청에서는 금년 2월 1일~내년 말까지(23개월 간) 광고물조합 및 인쇄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 중이며 동 기간 동안의 제도 활용실적 및 투명한 운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타 조합까지 확대여부 결정 예정
- 이에 따라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조달 요청건을 처리

건의사항

- 동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다수의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강원지방조달청에서 시·군에 적극적인 제도 활용 독려 및 홍보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반영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선

건의요지

- 조달청 검사기준은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4호]에 의하여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최초 1억원 초과시 실시하며 차기검사는 최초검사 이후 납품요구 금액을 누적하여 60일이 경과하고 누적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실시하도록 규정 (단가계약 적용기준 - 공고상 제4조)
- 현재 건설자재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물품 가액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구매할 때 소량 구매하는 경우가 적어, 1회성 구매 금액도 계약금액이 높은 편이므로 조달청검사 시기가 일찍 도래
- 또한 조달청 검사기간이 약 1달 이상 소요되므로 현장사정 및 납품기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 최초검사 시 납품요구 누적금액 최초 1억 원에서 증액 요청
- 차기검사 시 60일에서 100일 이상 기간 연장 및 누적금액(3억 → 5억) 증액 요청
- 조달청 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경과기간 180일 연장 적용에서 조달청 검사 3회 연속 합격시 조달청 검사 면제 및 각종 인증서(KS,단체표준, 환경표지 등) 대체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4호

건의처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건의경과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간담회 (20.8.19)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콘크리트 제품은 모든 토·건축의 기초 자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안전과 밀접
- 도내 콘크리트 기업들은 영세하거나 정보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개별 제품홍보 및 시장대응이 늦거나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하여 공동으로 전시(홍보)·연구·시험실 운영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수요기관 담당자의 콘크리트제품 이해(제품특징, 시공 중요성, 시공방법 이해 등) 증진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품구매와 홍보 등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눈에 보는 콘크리트제품’ 전시 공간 마련 필요
- 조합 및 조합원의 자체 노력으로 공동전시장 등을 위한 부지 매입시 경제적 부담 또는 마땅한 부지선정이 어려운 상황
 - 용도, 접근성, 대상(면적) 등 세부적인 정책 지원 필요

건의사항

- 도내 콘크리트제품 전시·홍보·시험·연구 등이 가능한 「공동제품전시장*」 건립 지원
 - 사업 목적 및 효과, 공원조성 등을 감안하여 전시장 부지는 무상제공, 장기임대 또는 건립비 일부 지원 요청
 - * 춘천시 일원(외곽) 지역 2,600㎡이상 규모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건의경과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달식(20.3.26)

건의결과

미반영

대기업 조달물품 납품가격의 조달 우대가격 보장 요청

건의요지

- 대기업인 건설 시공사는 통상 덤핑가격으로 중소기업자간 최저가 경쟁 유도
- 시공사 요구에 맞출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의2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를 위반하게 되어 동 규정 제32조의2 제4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적용사례: 춘천시 OO지구 도시개발(부지조성) 사업시 시공사에서 조달청 우대가격보다 낮은 약 71% 수준의 가격으로 PE삼중벽관 납품을 요구하였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재 끝에 조달청에서 정한 우대가격 97%에 납품 계약 체결

건의사항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수탁·위탁거래시 제조물품 납품가격을 조달청 등록제품(정부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한해서는 조달청 우대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대가격의 100분의 97이하로 구매할 수 없도록 상생협력법에 명시적 근거 마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의2

건의처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건의경과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간담회
(20.8.19)

건의결과

미반영

공인인증 시험기관 출장시험 비용절감 요청

건의요지

- 공인인증 시험기관은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사정으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업체 요청으로 출장시험 진행
- 출장시험시 당초 시험원에서 하는 시험검사비에 추가로 연구원 출장비 추가 발생하며 또한 시험의뢰업체의 시험기기에 대한 교정 및 검증을 마친 후 출장시험 진행
- 이 경우에 시험기관의 내부기기는 일절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험비용에 대한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 시험기관의 출장시험시 시험비용 일부 절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건의경과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간담회
(20.8.1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우수제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납품시 조달청 전문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검사시 계약 수량 전체를 생산 후 받아야 함
- 계약수량이 많을 경우 생산 기간이나 야적장소의 문제, 검사소요기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함
- 또한 검사가 끝날 때까지(검사만 약 1달 이상 소요) 물품은 봉인스티커를 붙여 제품을 보관해 놓아야 함 (창고 및 야적장 등)

건의사항

- 우수제품은 이미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전문검사시 전량 생산이 아닌 대표 규격으로 1회만 비치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9조 제2항

건의처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건의경과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간담회
(20.8.1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일부 수요기관의 경우 가스공급자 선정 시 LPG용기판매와 벌크판매를 통합발주 (참가자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LPG용기판매(벌크판매 허가 없음)만 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 입찰에 참여해도 공급불가
 - LPG연료 소매업(50kg이하 LPG용기판매)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은 통합발주 낙찰에도 불구하고 LPG용기판매가 불가능
 - LPG용기판매는 벌크판매와 달리 판매지역 제한이 있어 분리발주 타당
 - 3톤 이상의 저장탱크와 함께 LPG용기가 통합발주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입찰에 전혀 참여할 수 없어 불합리('20.3월 이전)

건의사항

- 가스공급자 선정 시 LPG용기판매와 벌크판매를 분리 발주토록 지도·감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 법제화('20.3월)로 10톤 이하 저장탱크 가스공급자 입찰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입찰제한 지도·감독
 - 최근 법령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도 10톤 이하 저장탱크에는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할 수 있음
 - 10톤 이하 저장탱크에 가스공급자 선정 입찰공고는 입찰참가자격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으로 적용했는지 여부 확인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미반영

MAS 2단계 경쟁 예외 한시적 시행

건의요지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강원지역 중소 제조업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선결재·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20.4.8 비상경제 회의) 이행의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MAS 2단계 경쟁 예외조치 시행(시행시기: '20.4.23~'20.12.31)

건의사항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MAS 2단계 경쟁 예외 조치 한시적 시행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미반영

광고물(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부여

건의요지

-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등 배려기업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있어 경영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되지 못한 일반 기업들은 경영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음
 - 2020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 여성기업제품(9.4%), 사회적 기업제품(3.6%), 장애인기업제품(2.3%)

건의사항

- 광고물 제작 일반기업도 판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물(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부여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미반영

강원도내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탄력 적용

건의요지

- 공해배출이 없는 ICT기업 및 환경 활용 제조, 서비스 스타트업기업 및 벤처 기업들은 강원도내 중심가 대학BI 등에 창업공간 부족과 열악한 창업자금으로 외곽지역(읍·면·리)에 이동 또는 정착
-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에 의거하여 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 이하로 정해져 있어 투자금(대지구입) 대비 활용공간(건물) 영역이 작아 비수도권 지역 정착을 포기하고 여전히 수도권에 밀집
- 한편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농촌 고령화 시대로 인한 경제자립도 악화와 국방개혁에 따른 병사들의 철수로 외곽지역은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위기지역으로 변화

건의사항

- 공해가 없고 자연환경에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 ICT기업 및 환경 활용 제조, 서비스 스타트업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이동 또는 정착할 경우 외곽지역 활성화 및 수도권 밀집 완화 등을 위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건폐율(70% 이하)과 동등하게 외곽지역 등에 소재하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건폐율 상향 조정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민익힘 강원도당

건의경과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달식(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강원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중
- 그러나 정책자금은 원금 손실 부담 및 일반행정기관의 전문 심사제도 운영이 불가능하여 사전 은행대출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수적 심사관행에 의해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며, 그 결과 초기자본이 부족하고, 실제 자금지원이 절실한 창업 및 벤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담보대출을 보완하는 것이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대출인데, 이 또한 매출액 등 재무요건이 주 기준이 되어,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적은 성장초기 기업은 이 또한 제외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담보나 매출실적 등이 부족한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이 활성화 되어야 정책자금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음

건의사항

-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기존)0.2/1,000 → (변경)0.8/1,000으로 상향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보증재원 증액이 가능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건의경과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달식(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 도(道)이자 자연자원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아 지역개발이 매우 지체되고 있는 상황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곳의 접경지역 중 2개 이상의 중복규제를 받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44.4%를 차지
- 특히,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로 도내 접경지역이 감수해야 하는 생산손실액이 연간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대변화 등에 따라 무용지물이 된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초래와 함께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기감 병존
- 2011년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국토계획법」 및 「군사기지법」 등 상위법에 묶여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
 - 따라서, 접경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 절실

건의사항

- 평화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확대, 접경지역 산업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복규제 과감하게 해제
- 민군통합공조 사회 모델 창출,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위해 「접경지역법」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건의경과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달식(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강원도 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 육성 시스템 부재
 -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자본집약적 제조업(석유화학, 전기전자·정밀기기 등) 비중이 낮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사업도 미미한 것이 원인
- 강원도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약 2%에 불과

건의사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기술혁신형 일자리 창출 유도 및 지원
 - 기술혁신형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기술 개발,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및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중점적 지원 필요
- 중소기업과 대학 간 기술협력 지원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과제 지원
 - 기업부설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인력 및 연구 공간 등을 공유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민의힘 강원도당

건의경과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달식(20.3.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경기부진 지속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화로 비상경제 상황
 - 특히, 위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심각하며, 경기심리도 크게 위축
- 한편, 정부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이행 등에 불성실한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시장 참여가 막혀 심각한 사업 차질 발생
 -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공공입찰까지 제한되어 이중고(二重苦), 일반기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 현장에서는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참가한 기업의 경우, 1회 참가기업과 20회 참가 기업이 동일하게 6개월 제재를 받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의견
- 코로나19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사기 진작 필요

건의사항

- 국가차원의 포용조치 일환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비상경제상황 극복 및 사회공헌 기회 부여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규정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 적격심사 항목으로 ①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②입찰가격 ③신인도 ④결격사유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세 번째 항목인 ‘신인도’(별표 1, III.신인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으로 마. 정책지원(심사항목), 부처별 정책지원(평가요소) 분야에서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는 최근 2년 이내 수상업체만 인정

※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R. '생략'	'생략'	

건의사항

- 중소기업에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관급자재에 대한 선급금은 수요기관의 조기집행 기간, 기관집행실적 평가로 인하여 반강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업체는 선급금으로 인하여 선급 보증료 부담이 발생 (SGI서울보증 등)
- 선급금 수령 후 공사중지 등으로 회계연도 이월시 업체는 선급금을 모두 소진할 경우 반납요청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음
 - 또한, 선급금계약 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되는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 보증료 추가부담이 발생

건의사항

- 업체가 수요기관으로 대금 청구시 조달청에서 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수요기관에 후청구 하는 것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대금을 선지급 후 업체가 정상적으로 관급자재 납품 후 대금청구시 조달청에서 대지급 하는 것으로 개선
 - 업체는 선급 보증료 부담이 없고, 선지급 청구, 선급보증 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줄일 수 있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현행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차기계약 배제 등)에는 품목을 기준으로 차기계약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콘크리트 2차제품의 경우 계약품목 수는 많지만(16개~20개) 수요기관의 수요가 특정품목(6~8개)에 80% 이상 편중되어 있어서 나머지 20% 품목에 대하여 영세한 다수의 계약업체가 치열한 납품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나
 - 나머지 20% 품목에 대한 계약이 배제될 경우, 영세한 업체는 영업환경 악화, 생산제품 판로차단에 따른 자금부담 심화 및 계약 품목수 감소의 악순환에 처하게 됨

건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차기계약 배제 등)에 명시된 ‘품목 기준’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규정을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시켜 주시기 바람
- 향후에 ‘차기계약 배제 규정’ 변경 시행시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단체표준 또는 KS표준의 품목수를 정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기관의 구매 빈도수가 높은 품목 외에는 조합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학교졸업앨범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체결되는 품목임
- 최근 학생 수 감소,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비용 증가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진업계의 경영상황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해 있음

건의사항

- 공공조달 구매가격 계약시 합리적 금액 반영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당초 납품 요구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으로 납품요구 되었다가 설계 변경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어 기 납품분에 대해서도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환수조치 될 경우 현장여건이나 납품여건과는 무관하게 할인율이 적용되어 납품업체에 손실발생 우려 있음

건의사항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할인율 발생시 추가 금액분에 대하여는 신규로 조달요구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계약단가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결과를 계약체결 이후에 규격별 총괄표만 공개하여 계약단가 조정 여부에 대한 산출이 어려움

* 관련규정: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1항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계산 자료 전체 공개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다량납품 및 2단계 경쟁 예외적용에 따른 할인을 적용

건의요지

- 아스콘 다수공급자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납품 요구되는 다량납품의 경우 0.5%~1.0%의 할인이율 적용되며, 5억 이상 납품 요구건에 대해 조합공통품목선택에 따른 2단계경쟁 예외적용으로 할인율 2% 추가 적용
 - 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되는 납품요구건 중 소량씩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되는 상하수도 사업소, 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로교체에 따른 다량 납품건은 납품업체에서는 소량생산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 생산비용의 증가로 손실이 발생
 - 또한, 연차공사의 경우 최초 납품요구금액은 다량납품할인율에 적용되지만 실제 납품은 2~3년에 걸쳐 납품됨에 따라 실제 연간 납품실적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 관련규정
 - 다량납품할인관련 규정: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1항
 - 2단계경쟁 예외적용 추가할인율 적용: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 5항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다량납품 할인을 적용을 납품요구가 아닌 실제 납품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연차공사에 따라 당해년도에 소진되지 않고 남은 잔량분은 취소 후 재지시 하여 할인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대금청구시 할인을 적용이 어려운 경우 관로공사 등 실제 납품이 소량씩 여러 번에 나뉘어 납품되는 건은 다량납품할인에서 예외 적용

건의요지

-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임
 -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 광고물을 제작하는 조합원들은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위해 R&D 투자 등을 통해 제품개발을 하고 있으나 우수조달물품 등록시 심사절차 등 요건이 까다로워 애로를 겪고 있음

건의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제품, 신기술제품 등 우수조달물품 등록 요건 완화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강원지역본부

관련조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건의처

강원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강원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26)

건의결과

검토중

06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
 -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 이에, 2019년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으로 조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

건의사항

-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시행 건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천안시

건의경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
(20.6.10)

건의결과

반영(20.12.21)

건의요지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속화, 美·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으로 인하여 활용을 기피
 - 최근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20.04.09.)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 상향(5천 → 1억)
 - * 대전조달청(20.02.17)·대전충남중기청(20.02.25) 관련 공문 시행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기업 간 제한경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활성화 필요

건의사항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협조요청 및 조합추천 수의계약 5천만원~1억구매에 대한 대행 협조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8조

건의처

대전 조달청

건의경과

대전조달청장과의

간담회(20.8.6)

건의결과

반영(20.8.6)

건의요지

- 정부 및 지방공기업은 213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113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품목을 구매할 때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 사항 등)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는 별도의 道 재정 투입 없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지원, 경영환경개선 등 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지역중소기업의 매출확대로 인한 세수증가로 재정건실화, 고용창출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
- 그러나 충청남도 일부 공공기관의 구매부서에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물품공급을 타지역 업체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충청남도 예산의 외부유출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충남 업체에 대한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5억원 이내) 분리발주 협조
- 지방 자치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물품계약 공고 시 지역제한 시행과 사후관리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24조

건의처

대전 조달청

건의경과

대전조달청장과의
간담회(20.8.6)

건의결과

반영(20.8.6)

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건의요지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속화, 美·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으로 인하여 활용을 기피
 - 최근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20.04.09.)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 상향(5천 → 1억)
 - '20.8.25일 판로지원법 시행령 공포로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5천만 → 1억으로 상향 시행(‘20년말까지 한시적용)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기업 간 제한경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활성화 필요
 -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기대

건의사항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협조요청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건의처

병무청, 대전도시공사 등 12개 지역공공기관

건의경과

중기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간담회 (20.6.5~11.13)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은 물품구매시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 추정가격 일정금액 미만 물품·용역 구매
 - 정부 및 국가기관: 2억원 미만
 - *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
 -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3.1억원 미만
 - * 지방계약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국제입찰에 의한 행안부 고시

- 지역제한 구매제도는 별도의 대전시 재정 투입 없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 경영환경개선 등 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지역중소기업의 매출확대로 인한 세수증가로 재정건실화, 고용창출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
-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최소한의 해당지역 우선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전소재 일부 국가기관은 대전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대상으로 입찰을 함으로써 대전지역 중소기업제품이 납품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 지역제한 구매 확대요청(물품·용역 금액: 2억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따라 물품계약 공고 시 지역제한 시행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사후관리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5조

건의처

병무청, 대전도시공사 등 12개 지역공공기관

건의경과

중기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간담회 (20.6.5~11.13)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하여 물품을 조달
- 위와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 113개(가구, 기계 등)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 원 이상인 공사
 -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확재정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 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건의사항

- 공사용자재 발주 시 분리발주 요망
 - 공공기관은 공사용자재 지정품목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해야 하나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제12조

건의처

병무청, 대전도시공사 등 12개 지역공공기관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반영

「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을 통해 공동구매·보관·물류·R&D·수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
 -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 선순환의 모델임
- 우리지역의 경우 2,943개 중소기업이 결성한 57개 업종별 협동조합 운영 중
 -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조합수 57개, 조합원수 2,943개사('20.9월 기준)
-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 동 조례에 따라 도는 조합 활성화를 위한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공동사업(구매·판매·생산·R&D·해외시장개척·판로확대·교육 등) 및 조합간 협업사업 지원 등 지역 中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요청 및 2021년도 예산 반영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반영(20.10.27)

충남지역 전문제조 중소기업의 레미콘제품 사용 요청

건의요지

- 공사(1):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건설(국토부 시행)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실시 「사업자 포스코건설(주) 등 18개사」
 - 자재 및 장비 등에 대한 업체 선정은 시공사가 선정
 - * 이동식 레미콘 생산시설(현장B/P)을 설치 또는 대기업 관계회사에서 납품
 - 충청남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 포스코건설 협약 체결('20.7.22.)
 - * 도내 건설업체 참여 증대, 지역 자재, 장비사용, 인력고용 등
- 공사(2): 당진 제5LNG 생산기지 조성공사
 - 1단계 공사 저장탱크 4기 건설(~2025년까지), 2022.1월 착공

건의사항

-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협약은 체결 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전문제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레미콘 적극사용 요청
 - * 충남도내 중소레미콘업체 60개사 제품생산
- 지역 전문제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레미콘이 사용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에 근거 단가계약된 규격의 레미콘은 분리발주 요청
 - 분리발주가 되지 않을 시 “상생협력법”에 근거 충남도청에 사업조정 신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반영(20.10.27)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구매지원

건의요지

- 각 시·도 및 지방공기업은 213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113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품목을 구매할 때 지방자치계약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 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는 별도의 도 재정 투입 없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 경영환경개선 등 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지역중소기업의 매출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로 재정건실화, 고용창출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
- 그러나 충남도청 및 공공기관의 구매부서에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물품공급을 타 지역 업체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충남도청 예산의 외부유출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 충청남도에서 행정지도(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를 통해 지방 자치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물품계약 공고 시 지역제한 시행과 사후관리 요망
- 또한,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능력의 정량적 평가에 지역 배점 부여 건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4.제안서의 평가, 다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반영(20.10.27)

인쇄물 발주시 공공기관 폰트 라이선스 구입 지원

건의요지

- 인쇄업계에서는 폰트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서체를 활용해야 하는데 업종 특성상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 발생
- 대다수의 인쇄 업체들은 폰트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추세지만 발주시관인 일부 공공기관은 폰트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납품받은 인쇄물을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 노출시킴으로써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저작권 문제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더라도 인쇄물 납품업체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인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인쇄물을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폰트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인쇄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 있음

건의사항

- 인쇄물 발주시 공공기관에서 폰트 라이선스 구입 지원
 - 인쇄물을 사용해야하는 공공기관이 폰트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비치함으로써 예상되는 폰트 저작권 문제에 적극 대응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반영(20.10.27)

건의요지

- 대덕특구는 공공연구기관들에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풍부한 기술공급 POOL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으로 운용되다 보니 공급되는 기술이 수요자인 지역중소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중소기업 간의 연구개발기술의 공급과 수요와 불일치하는 경향으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적 기술이전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
- 대전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고경력과학기술인이 2018년 기준 17개 분야 1,100명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25개)에서 매년 200~300명 증가로 2022년 약 2,300명 예상됨에 따라, 이를 중소기업기술이전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 창출 기대
 - IT·전기·전자(24%), 바이오·화학·환경(28%), 기계·재료(17%), 기술경영(1%), 에너지·원자력(8%), AI·IoT·로봇(4%), 지질(2%), 항공(2%), 기타(4%)
-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술교류 연계강화로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를 해소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을 통한 강소기업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고경력과학기술자 등이 집단면담 및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건의사항

- 대덕특구 중소기업기술이전센터 설립 추진
 -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의 발굴·선별 및 수요기업 매칭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유도
 - 지역중소기업의 맞춤형 기술수요 파악을 통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술 공급자간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지원
 - 시장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 및 유형별 기술이전·출자
 - 기술이전 및 교류사업 추진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 및 혁신기술 촉진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지역중소기업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결하거나 기술 혁신 활동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수행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건의경과

박범계의원 간담회시 건의(20.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자동차정비업계는 3D업종으로 점점 사양화로 접어 들고 있으며, 2016년 6월말 기준 정비요원의 평균 연령이 44.3세로, 10년 전보다 3.6세 더 고령화 되고 자동차정비원, 자동차 검사원 등 기술 인력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자동차대학과 정비전문학교 입학생도 2000년대 초까지 1만 명이 넘었지만, 2009년 이후 7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정비업에 뛰어드는 청년층은 계속해서 감소중
 - 특히 검사원의 경우 고령화 현상이 심각, 실제로 75살의 검사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 안전문제 심각
- 또한, 자동차정비업은 여러 기술이 혼재된 융합 고기술 요구 직종으로 바뀌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와 친환경차(전기차)가 상용화 되면서 새로운 영역의 정비 수요가 증가
 -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하이브리드차·친환경차의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가 매우 시급
 - * 연도별 하이브리드차 보급실적(대): ('15) 39,383 → ('16) 60,201 → ('17) 83,755 「환경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현황」

건의사항

- 자동차정비 전문 기술인력 양성 지원 확대
 - 관련 자격(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에 대한 수당지원
 - 직업전문학교 등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인프라 확대
-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자동차정비 기술 보급 확대
 - 직업전문학교 등의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하이브리드·친환경차(전기차)에 대한 기술 보급·지도시 지원금 제공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건의경과

박범계의원 간담회시 건의(20.2.6)

건의결과

검토중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적용

건의요지

-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7.5% 수준에 불과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E-9) 고용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20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
 - 더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가 내국인 대비 97.3%에 달하고 있어 영세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노무관리에도 애로
-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약 40만원)* 부담까지 떠안은 경우가 대부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외국인력(E-9) 활용관련 숙식비 부담현황 조사」, 2019. 3월
-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외국인근로자 동등 대우는 내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의 문제 발생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적용
 - 입국 후 일정기간 최저임금 구분 적용
 - (입국 후~1년) 최저임금 70% 지급, (입국 후 2년차) 80% 지급, (입국 후 3년차) 최저임금 100%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감액 현실화(3개월, 10% → 1년, 20%)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건의경과

박범계의원 간담회시 건의(20.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유럽연합의 REACH 제도를 원용해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라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은 기업에 부과
 -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2019.1.1. 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는 제도에서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을 신고·등록하도록 확대
 - 그러나 일본, 중국, EU*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이 최소 1톤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심지어 미국은 연간 10톤 이상으로,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과도함
- 또한, 현행 규정은 상용화 전단계인 ‘0.1~1ton 시제품 판매수준’에서 등록 (샘플수입시에도 해당)토록 하고 있어 신규연구개발을 위축시킴. (시험샘플 자료구입에 과다소요: 21년도까지 약 1조원)
- 환경부에서는 R&D 단계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기업 간 샘플판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기업들은 예외적용이 안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 신규화학물질, 국제기준으로 등록대상 완화(0.1톤 → 1톤)

현행	개정(안)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 1톤 ----- ----- ----- ----- ----- ----- ---. ②~⑧ (현행과 같음)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건의처

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건의경과

박범계의원 간담회시 건의(20.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 위축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대부분 작년보다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으며, 향후 더욱 나빠질 전망
 - 소상공인의 80% 작년대비 경영수지 악화, 59.6%는 향후 경영상황 악화 전망
-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보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보험요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은 더욱 가중
-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관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부와 별도로 시행

건의사항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인 영세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사업주 실 부담액 전액 지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 (변경)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확대 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건의경과

박범계의원 간담회시 건의(20.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대전지역 총 사업체수 약 10만개 중에 도소매, 음식, 운수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약 8만 8천명으로 87.2%에 달하고 있음

〈소상공인 현황(2016)〉

구분	사업체수	소상공인	비중
대전	100,915개	88,001개	87.2%

- 그러나 금융, 교육, 경영정보 등 경영자원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진입으로 대전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영사정은 매년 악화
-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경기침체, 내부수진의 장기화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 촉진 필요

건의사항

- 대전 소상공인 조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 공유 및 이업종간 교류 활성화,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영위 발판 제공
 - * 세무, 마케팅 전략, 법률, 인사노무 등 역량강화 교육과 소상공인현장 목소리 청취 병행 추진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박범계 의원)

건의경과

박범계의원 간담회시 건의(20.2.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동사업 개발 및 지원 등이 필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공동 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화하여, 해당사업을 추진
-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거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 지원
 - 개별기업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조합원사 전체에 지원하는 효과 거양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및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요청
- 또한, 지역사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을 도모를 위한 ‘기초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

건의경과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

(20.3.9~3.24)

대전 서구, 동구, 유성구

조례제정 진행중

건의결과

검토중

대전 소상공인포럼 운영 및 우수 소상공인 인증 지원

건의요지

- 대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 시책 발굴 필요
 - 시의적절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단체들 간의 정기적 소통창구 필요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건의사항

- 소상공인 포럼 운영 예산 지원
 - 분기별 4회(5개구) 실시/현장위주 시책 발굴, 대안 제시
- 우수 소상공인 인증 지원: 연간 5업체/경영지원금, 인증현판 등 지원
 - 동일 업종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우수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역량 평가 (서류/현장평가)를 통하여 선정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

건의경과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

(20.3.9~3.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세종지역은 중앙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기능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신기술·신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ICT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인재 공급 필요 새로운 산업과 직업의 등장과 변화에 따라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 필요
- 지역 ICT인력양성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우수 ICT인력 발굴 및 육성하여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인재 양성·공급 및 기존 인재의 역량 강화 및 활용 확대 도모
 - 지역수요 맞춤형 양질의 ICT 전문인력 배출로 고용창출 및 4차산업 혁명대비 세종지역 SW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의사항

- 세종지역 ICT인력양성센터 설립 추진
 - ICT인력양성 전문기관 네트워킹 구축 및 기관별 교육과정 개발
 - 대전 및 세종의 주요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세종 ICT인력양성 협의회 (가칭)」 운영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직업전환, 재직자 재교육, 신규인력 양성 등 코스별 과정 전문화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

건의경과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
(20.3.9~3.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대전 인쇄특화거리에는 750여 인쇄업체와 15개 인쇄관련 협업 업체가 현재 영업중에 있으나, 구도심의 한계로 기계설비 확충 등의 신규 투자가 제한되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추진으로 생존권 위협
- 인쇄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영세한 인쇄·출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쇄·출판 기술(S/W) 지원과 작업공정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 기계 및 장비의 공동구입 등을 유도, 고가 장기구입에 대한 보조지원 등을 검토 필요
- 지식기반 문화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인쇄·출판 관련산업 중장기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필요

건의사항

- 대전 인쇄·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진흥지구 조성
 - 대전 인쇄·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간적, 기능적 집적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기능 강화, 인쇄산업 신공간 창출과 네트워킹 강화 추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

건의경과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

(20.3.9~3.24)

건의결과

검토중

공예문화·예술·관광 복합공간으로서의 공예마을 조성

건의요지

- 대전은 우수한 공예문화 자원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공예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
- 특히, 타 지역이 체류형 관광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예술촌, 공예촌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는 공예 관련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
 - 대전역 지하상가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체험학습장 운영에는 부적합하고 공예품 홍보 및 전시판매 장소에 협소하고 노후
- 공예마을은 공예관련 디자인, 제작, 전시, 홍보, 판매, 견학, 체험, 학습, 공연, 축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신진 공예가 발굴과 성장 지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건의사항

- 보문산관광개발계획에 공예마을 포함하여 조성
 - 대전광역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에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예마을 조성 계획 포함
 - 공예 작업공간 개방을 통한 견학 등 학습공간 조성 및 관광객 유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

건의경과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

(20.3.9~3.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1997년 자동차정비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자동차정비업의 공급과잉으로 정비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으로 노동관서에 고발되어 처벌받고 폐업, 휴업이 속출하는 등 종사자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
 - 자동차관련 업종 중 택시, 전세버스 등은 총량제를 시행 중이나 정비업은 미시행

〈연도별 임금체불 및 신규업체, 폐업 등 현황〉

구분	정비업체 수	노동부 임금 체불		신규업체	양도양수	폐업	휴업
		사업장수	접수건수				
2016	6,029	548	797	444	324	168	35
2017	6,244	478	723	393	352	161	45

- 정비업체는 공급과잉으로 매출액이 감소되어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정부의 진흥정책과 EU등 자동차 선진국의 내연기관 판매금지 선언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정비업은 그 규모를 축소 해야 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
 - 제주도의 전기차 도입관련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결과 종합정비업은 92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77.2% 감축), 전문정비업 388개소 전체 존립불가 의견

건의사항

-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를 도입하고 사업폐지, 사업전환, 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

건의경과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
(20.3.9~3.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장애인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받는 경우 검사수수료의 30~50%를 할인하는 혜택 부여
-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시간, 비용을 들여 먼 거리에 있는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하는 불편 초래
- 한편, 민간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체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수년간 검사수수료 할인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부분 영세 사업자로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

건의사항

-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지원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 ----- ----- ----- 조세감면 및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 등 ----- ②~④ (생략)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

건의경과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

(20.3.9~3.24)

건의결과

검토중

2021년도 세종시 중기업동조합 활성화 신규 예산 지원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업체,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건의사항

- 2021년도 세종시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예산 5천만원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건의처

세종시

건의경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
(20.8.19)

건의결과

검토중

충남지역 콘크리트 산업 발전을 위한 협동화시설 건립 지원

건의요지

- 대전세종충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1967년에 설립되어 콘크리트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제품은 모든 건축과 토목의 기초 자재로서, 지역환경 및 시민안전과 밀접한 영역
- 그러나 수요기관(지자체 등)에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업체의 영업력에 의존되어 도내 제품이 아닌 외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도내 중소기업 경영 타격 및 3,600여개 일자리가 위축되는 상황
- 이에 도내 기업의 콘크리트 제품·기술 일괄전시를 통해 수요기관 이해 증진,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력 보완 및 홍보지원 강화 및 고성능·친환경 등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新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공동연구실과 제품성능 시험실 및 업무지원실을 통해 공동사업 지원 필요
- 최근 대전세종충남콘크리트(조)에서 충남지역 콘크리트 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내에 협동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대지 (2,891㎡/876평) 매입하였으나 영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지원 필요

건의사항

- 충남지역 콘크리트 산업 발전을 위한 협동화시설 건립 지원
 - 협동화시설은 공동 전시 및 판매시설, 연구시설, 실험시설, 업무지원실(공동사업 지원업무), 교육장, 마케팅 룸 등으로 활용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요청

건의요지

- 2013년부터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전국 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공급가격이 있다 하여도 소비자 가격이 도매가격(MP(정유사가격)+40~100원/kg)으로 낙찰되어 소매업자인 LPG판매사업자는 LPG구매단가(MP+250원/kg)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입찰에 참여 할 수 없는 현실
- LPG배관망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LPG판매 소매사업자의 판매량은 감소되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LPG배관망 공급사업

- 사업내용: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마을(30~70세대)에 LPG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시설 구축지원(600만원~900여만원/1세대) [사업계획: 10개 마을/1년]
- 사업계획 및 실적: 정부추진 3개마을 + 충청남도 추진 7개마을/1년
- 지원조건: 전체사업비의 50% 중앙정부, 40%는 지자체, 10% 사용자 부담 또는 충청남도 50%와 시(군)40%지원

건의사항

- 영세소상공인 LP가스판매사업자의 생계업 유지를 위한, 충청남도 추진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중단하고, 에너지바우처 복지제도 등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배관망사업을 대체
- 정부 및 지자체는 LP가스판매사업자가 영업활동 하는 지역에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추진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판매량 감소분에 따른 해당지역 LP가스판매사업자의 영업보상 등 생계업유지를 위한 피해대책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해 '20.4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잠정 중단되어 '20.6월말 기준 입국 대상자 19,118명(10,691개사) 중 2,003명(1,343개사)만 입국
- 충남의 경우 1,041개사의 외국인근로자 1,958명 중 9.0%인 177명 입국
- 올해 6월 본회가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에 대한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1,062개사 중 52.3%인 556개사가 이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 생산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요구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에 따른 애로발생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응답업체	애로를 느낌	1~2개월 내 생산차질 우려	3~4개월 내 생산차질 우려	기타
전국	1,062 (100.0)	556 (52.3)	241 (22.7)	141 (13.3)	124 (11.7)
대전·세종·충남	190 (100.0)	89 (46.9)	47 (24.7)	28 (14.7)	26 (13.7)

※ 출처: 외국인력 숙식비 부담 및 입국지연 관련 애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6월)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의 71.4%*가 자가격리 시설 미비로 국가, 지자체의 격리시설 이용을 희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애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5
-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제조업 생산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충청남도의 격리시설 실비 이용 지원요청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형 중소기업 특화단지」 조성

건의요지

- 내포신도시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발전효과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그동안 혁신도시와 공공기관(도청 등) 이전에 따른 혁신성장 거점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물리적 기반 조성은 마무리됐으나,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주체들이 협력하는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은 아직 기틀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
- 내포신도시의 첨단산업단지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 및 혁신형 산업거점 조성을 통하여 성장하는 신생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내포신도시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우수인재 육성 및 일자리창출 중심지로 육성 발전 기대

건의사항

-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내포신도시내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혁신형 중소기업 특화단지」 조성 추진
 - 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 전략적 입주 추진
 -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구축
 - 입주기업간 활발한 지식과 기술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높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창출 예상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 확대

건의요지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퇴직금제도이자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 특히,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소득공제혜택(최대 연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금 납입여력이 많지 않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어려운 상황
 - * ('19.8월말 현재 재적가입자중) 월부금 25만원이하 가입자 75.0%, 26~50만원 가입자 20.7%
-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 16개 지자체에서 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입자당 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중
 -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건의사항

- 내수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전시 장려금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요청
 - 지원기간: (현행) 1년 → (개선) 2년
 - 지원규모: (현행) 월 1만원 → (개선) 월 2만원
 - ※ 충남 당진시 월 2만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납부하는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난 및 자금이 필요한 때 공제금을 지원하여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여력 부족,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
- IMF 경제위기('97~'98년), 글로벌 금융위기('07~'08년) 기간에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며 지원이 미비한 반면, 공제기금은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
-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제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이차보전 예산이 조기 소진(2월)됨에 따라 추가적 이차 지원이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의 지속성 및 업체간 형평성,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예산 확대 지원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정부는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라 KS 인증제품 및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중
 - * (단체표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하여 민간 단체들이 제정하는 표준
 - ** (우수 단체표준제품)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국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
-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 12월)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9. 6월)을 통해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지명경쟁 근거를 신설하여 구매를 촉진
-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우수단체표준 제품 및 상기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 저조

건의사항

-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 적극 지원
 -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 제한경쟁·지명경쟁 적극 활용
 -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안내 및 활용 독려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제조물책임(PL)법 개정('18.4)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임
- 최근 PL관련 사고는 업종·지역에 관계없이 발생,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위험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임
 - 농업용 필름 제조사의 경우,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 필름의 보온기능 하자를 문제 삼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법무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PL보험에 가입하면 배상처리 및 변호사 선임 등 효율적으로 위험관리 가능
- 특히, 플라스틱 식품포장재 생산업체 등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수요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의무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PL보험 가입필요성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일괄단체계약을 체결하여, 개별기업의 일반 PL보험 가입 대비 20~28% 보험료 저렴

건의사항

- 2021년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 요청
 - * (지원예산) 30백만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탄산 등 산업용 고압가스는 뿌리산업·반도체·화학·철강·조선·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레이저가공, 냉각제, 비료, 용접, 열처리, 식품충전제, 소화기, 의료 등에 사용
- 최근 탄산가스 부족현상(30~40%)으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심각한 생산차질과 함께 가격급등(40~50%)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 이러한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언론보도와 함께 산업부에 대책마련 요청 및 협의를 실시(9/17)
 - 롯데케미칼의 조속한 정상가동, 원료탄산공급사 정기보수일정 분산, 드라이 아이스제조 소요탄산의 중소기업 전환 등을 요청

건의사항

- 산업부의 협조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산가스 부족현상은 호전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우선 원료탄산의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책이 시급
 - 사고여파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던 롯데케미칼(대산공장)이 10월에 보수가 완료되고, 약 2~3개월의 안전진단 및 시험가동기간을 거친 후에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남도

건의경과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07

충북지역본부



충북 「노란우산 복지지원센터」 설치 추진

건의요지

- 2019. 12월 본회 지역회장단 회의 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지원 및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中 지역별(2개) 「노란우산 복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공지

건의사항

- 충청북도 內 「노란우산 복지지원센터」 유치시 지자체의 건립부지 확보 및 저가 공급 지원 요청

※ 노란우산 복지지원센터 개요

-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 규모: 부지 6,600㎡/연면적 8,250㎡(지상10층)
- 주요기능: 종합상담장, 교육장, 회의실, 문화·힐링센터, 인큐베이팅 등
- 사업비: 약 330억원(부지 80억원, 건축 250억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1.28),

청주시(3.16)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1.28)

청주시 건의(20.3.16)

건의결과

반영(20.3.25)

정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유통단지 방역 지원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 가동률 저하 및 내수침체에 따른 산업용품 수요감소로 인해 유통단지 내 대부분 사업장 매출이 급감(50~70%)
- 매출감소에 따른 단지내 방역비용의 부담이 증가하여 약품 구매 및 자체 방역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건의사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법인세, 부가세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 요청
- 유통단지내 방역지원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긴급운영자금 대출 지원 및 기존대출 만기 연장 등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과 업계 가동률 저하로 매출 감소(30% 이상)
- 환율상승으로 수입원자재 구매비용 증가

건의사항

- 정부 차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지원
-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대출이율 인하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마스크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사업장 방역 지원 등

건의요지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방역 작업을 위한 업체 섭외가 어려운 상황
- 여권, 비자 사진촬영 중단 및 각종 행사 취소로 사진업계 매출 급감(95% 이상)

건의사항

- 마스크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역 지원
- 대출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 요청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사업장 방역지원 요청

건의요지

- 작물보호제판매업의 경우 연말연초에 판매물량의 70%를 매입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30% 이상)로 재고물량 처리부담 및 자금난 가중

건의사항

- 정책자금 확대 지원
- 사업장·물류창고 방역지원 및 마스크 공급 확대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 및 행사 취소와 4월 총선 특수 실종으로 인쇄업계의 매출 급감(70% 이상)

건의사항

- 정부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대출기한 연장
- 신속한 보증심사 및 발급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소상공인 긴급 운영자금 신속 지원

건의요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체 가동률 저하 및 식당영업 부진으로 LP가스 사용량이 감소하여 업계 경영상황 악화

건의사항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영자금 신속 지원 등 자금지원 확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라면, 세정제 등 공급확대 및 운영자금 신속 지원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및 생활안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라면, 세정제 등 생활필수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
- 읍·면 단위 이하 슈퍼마켓 업계의 매출하락(30% 이상)

건의사항

- 라면, 세정제 등 생활 필수품 공급 확대 요청
- 긴급 운영자금 신속 지원 등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마스크 등 생필품 안정적 공급 및 정책자금 확대 요청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소독제, 생필품 등의 수요가 사재기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나 수급이 원활치 않아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

건의사항

- 소독제 및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요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의 한국인 입국제한 및 국내 코로나19 문제로 해외전시회 참가 불가와 국내 전시회 개최 취소로 경영난 가중
- 중국의 공장가동 통제 및 수출통관 지연, 한국인 입출국 제한 등으로 원부자재 수입 및 현지공장 가공 중단 등 경영애로 발생

건의사항

- '20년도 관급물량 조기 발주 및 계약 완료 요청
- 신속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 해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총청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24)

건의결과

반영(20.3.24)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이미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시행
- 반면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조례는 동 법 제정 후 58년만인 2019년 8월에 들어서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충북에서 제정·시행
 - 현,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시행
-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기초지자체에는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광역지자체의 예산부족, 중점추진사업 등으로 광역지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노출
 - 기초지자체 내의 산업단지, 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활성화에도 장애를 초래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청주시의회, 청주시

건의경과

청주시의회 건의

(20.5.11)

청주시 건의(20.6.17)

건의결과

반영(20.12.14)

충북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구매지도 강화

건의요지

- 충북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 계약시, 충청북도로 지역제한하여 계약하여 줄 것을 지역 소재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수년간 요청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지역제한 입찰에 부정적이며 특히 일부 교육청 및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도권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선호함
 - 가구, 인쇄물품 등에 있어 전국입찰 또는 수도권 업체와 수의계약 선호

건의사항

- 관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입찰 공고시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공고 안내 및 구매지도 강화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충북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반영(20.5.14)

건의요지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하거나,
-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토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수요기관의 제도활용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건의사항

- 관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네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안내 강화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충북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반영(20.5.14)

건의요지

- 조달청은 5천만원 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조달에 있어 판로지원법 제8조에 의거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의 활용도가 높았으나, 2017년도부터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토록 함에 따라 수요기관 구매담당자의 감사부담 등으로 동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미진함
- '20. 4. 8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확대(5천만원 → 1억원) 시행하였음
※ 지방계약법 및 판로지원법 개정 추진중

건의사항

- 향후 관련법령 개정 시 수요기관에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충북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반영(20.5.14)

건의요지

- 경기부진 지속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화로 비상경제 상황
 - 특히, 위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타격 심각*, 심리도 크게 위축**
 - * 중소기업 4월 평균가동률 66.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 중소기업 5월 경기전망지수 60.0, '14.2월 쏠산업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 정부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운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이행 등에 불성실한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심각한 사업 차질 발생
 -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공공입찰까지 제한되어 이중고(二重苦), 일반기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 현장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되어 다소 과도하게 기업활동이 제한된다는 애로 호소

건의사항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적극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부정당제재 최대한 감경* 조치
 - 소관 '지방공기업'에 제재 감경조치가 확산되도록 적극 협조요청
 - * 지방계약법령상 입찰제한(1개월~2년)은 최대 6개월까지, 과징금은 1/2 감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의2)

분야

규제·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건의경과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간담회(20.7.16)

건의결과

반영(20.7.16)

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건의요지

- 코로나19, 美·中 무역마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음
 -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판로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정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17.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3조)에 제도 활용근거를 명시('18.3)하고 있으며,

*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조합추천 수의계약) 中企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하여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6)을 통해 한시적(20년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어 제도 활용 폭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으로 인하여 활용을 꺼리는 상황

건의사항

-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협조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충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7.16)
충북지방조달청 건의
(20.9.2)

건의결과

반영(20.7.16/9.2)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이미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시행
- 반면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조례는 동 법 제정 후 58년만인 2019년 8월에 들어서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충북에서 제정·시행
 - 현,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시행
-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기초지자체에는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광역지자체의 예산부족, 중점추진사업 등으로 광역지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노출
 - 기초지자체 내의 산업단지, 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활성화에도 장애를 초래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주시의회

건의경과

충주시의회 건의
(20.8.18)

건의결과

반영(20.10.18)

건의요지

- 충북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전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총 46개 중소기업이 TV홈쇼핑 입점하여 판로확대의 기회를 얻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최근 3년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인상(118%, 332억원 → 725억원)등으로 ‘홈&쇼핑’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원업체당 평균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대비 낮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홈&쇼핑’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 평균매출: (‘13) 78.1백만원 → (‘16) 38.5백만원 → (‘19) 29.5백만원

건의사항

- 송출수수료 인상 및 유사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감안하여 업체당 입점 지원금 증액 요청
 - (현행) 5개기업, 65백만원 → (변경) 5개기업, 75백만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8.28)

건의결과

반영(20.8.28)

건의요지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납부하는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난 및 자금이 필요한 때 공제금을 지원하여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 현재 충청북도에서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기금은 담보여력 부족,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함
-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급감 등 경영난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제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이차보전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 이차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현황 비교〉

(단위: 억원)

구분	'19년(2.1~6.30)	'20년(2.1~6.30)	증가율(%)
대출금액	1,838	2,038	11%

건의사항

- 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추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채무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 요망
- (현행) 130백만원 → (변경) 200백만원으로 확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8.2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퇴직금 제도이자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임
 - 노란우산의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소득공제(최대 연500만원)와 연복리 이자혜택을 제공함에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금납입 여력이 많지 않아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충청북도내 11개 시·군에서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中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월1만원(최대 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건의사항

-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예산 확대 요청
 - (현행) 월1만원 → (변경) 월2만원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8.2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을 통해 공동구매·보관·물류·R&D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
 -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 선순환의 모델임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19.8.2)

건의사항

-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도모를 위한 예산 지원
 - (현행) 50,000천원 → (변경) 100,000천원으로 확대

<202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협동조합 마케팅·판로 지원	27,200	10,400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16,800	50,600	
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6,000	9,000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	20,000	신규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	-	7,500	신규
협동조합 네트워크 거래 지원	-	2,500	신규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8.28)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2018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대두

※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보험: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최근 PL관련 사고는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 금액 또한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있음

건의사항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일부 지원 요청
 - PL보험 가입 지원 예산 50백만원 지원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8.28)

건의결과

미반영

조달청,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물품 확대 요청

건의요지

- 판로지원법 제8조에 의거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동 제도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음
- 조달청은 '20. 2. 1부터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쇄물 및 광고물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이 구매대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하지만 충북지역 수요기관의 인지도 부족 및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의 구매대행 물품이 한정적이어서 동 제도의 활용 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물품의 전향적 확대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충북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학교졸업앨범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 체결된 물품임
- 최근 업계의 경영상황은 학생수 감소,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비용 증가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지난 '19년 간담회시 구매가격 인상을 건의했으나 '20년 4월 졸업앨범의 공공조달 구매가격이 동결됨

건의사항

- 차기 공공조달 구매가격 재계약시 합리적인 구매가격 반영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충북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수요기관에서는 수의계약(농공단지, 특허,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진행시 계약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검증된 업체와 계약토록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수의계약대상 물품에 대해 사전규격을 공개할 경우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가 불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추진이 지연되거나 업무 중복 등 수요기관의 불편을 초래함

건의사항

-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사유서(특허, 농공단지, 우수조달 등)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한 경우, 사전규격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계약 진행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충북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검토중

202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참가 지원

건의요지

- 도내 가구관련 중소기업체는 매년 국내외 가구/인테리어 업계의 동향 파악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에 참가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내 가구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건의사항

- 도내 가구업체의 해외판로 확보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도내 가구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청
 - (현행) 47백만원 → (변경) 60백만원으로 확대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충청북도

건의경과

충청북도 건의
(20.8.28)

건의결과

검토중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이미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시행
- 반면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조례는 동 법 제정 후 58년만인 2019년 8월에 들어서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충북에서 제정·시행
 - 현,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시행
-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기초지자체에는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광역지자체의 예산부족, 중점추진사업 등으로 광역지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노출
 - 기초지자체 내의 산업단지, 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활성화에도 장애를 초래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충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천시의회

건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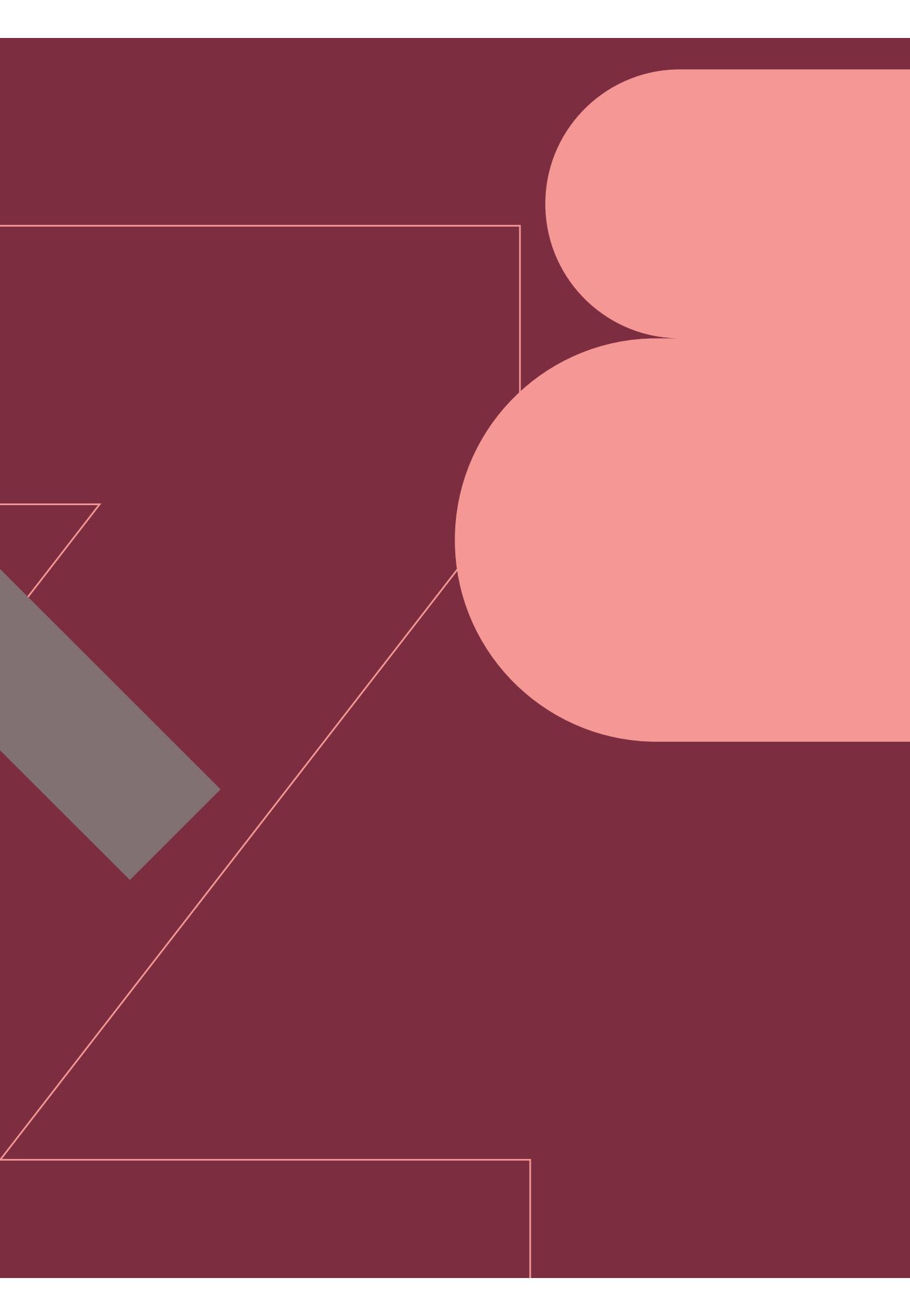
제천시의회 건의
(20.10.6)

건의결과

검토중

08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의요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시급하나, 열악한 연구환경, 고급인력 확충 어려움으로 R&D 역량 제고에 한계
-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확충 애로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파견 근거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조직화와 협업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어 업종별로 소속된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건의사항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R&D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인력 파견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건의결과

반영(20.10.20)

부산·울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건의요지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업체,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개별기업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 전체에 지원하는 효과 거양
 - 부산시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19.9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가 마련됨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및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지역 산업단지, 상가, 전통시장 등에 결성되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
 -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건의결과

반영(20.12.16)

부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신청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건의요지

-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을 위해 3대 핵심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3. 9)
- 경감 대책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시·공공기관 임대료 지원대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음
 - 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다고 법을 해석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에서 제외함
-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재난상황이며, 민간 차원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피해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 해석이 필요

건의사항

- 상기 조합은 소속 조합원 100%가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고, 감경 신청 대상에 포함 건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기업움부즈만

건의경과

중소기업움부즈만 건의
(20.4.23)

부산시 건의(20.5.12)

건의결과

반영(20.5.19)

건의요지

- 경기부진 지속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화로 장갑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
- 현재까지 조달청을 통한 납품실적은 없으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달청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활용을 통해 납품 고려
- 조합원이 아닌 일부 규모가 큰 장갑 업체들은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영세소기업들로만 구성된 조합원들은 조달청 납품 방법 등을 몰라 이용에 애로가 큼

건의사항

- 조달청 납품 방안 강구 건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조달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반영(20.5.14)

건의요지

-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저조한 규제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판로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2월 1일부터는 동 제도를 활용하여 인쇄물 및 광고물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이 구매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나 부산지역 인쇄물의 활용 실적은 전무함
- 이번 조달청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시범실시는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 실적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

건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내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 및 조달청 구매대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에 독려(홍보) 협조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조달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반영(20.5.14)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부산지역 예선대회 주관기관 선정

건의요지

-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1971년 정부주도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온 가장 오래된 전시행사
 - 제50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은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에서 주관
 - 지역별 예선은 제50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요강에 따라 대부분 해당 지역 공예협동조합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부산공예협동조합은 2000년 이전부터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부산지역 예선대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였으며, 부산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 2017년, 2018년 2년 연속 대통령상, 2017년 단체부문 최우수상, 2018년 문화재청상 수상 등 성과 창출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5.19)

건의결과

반영(20.5.19)

건의사항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재정지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유일한 부산지역 공예인으로 100% 구성된 부산공예협동조합이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부산지역 예선대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건의

부산 공예품 전시판로 개척 지원사업 예산 승인 요청

건의요지

- 부산공예협동조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부산지역 공예인을 육성하고,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부산시 보조금 예산을 통해 매년 'K-핸드메이드페어'에 부스 참가 지원을 하였으나, 부산시의회 2020년도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 조치됨
- 이에, 부산공예협동조합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방문을 통해 조합에 소속된 공예인들의 절실한 사업임을 설득하고 기존 예산(24백만원)의 50%(12백만원)를 통과시켰음
- 그러나, 동 전시회 참가를 위해 부산시로 보조금신청(5.11)을 하였으나 부산공예협동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예정'으로 답변 받음

<K-핸드메이드페어 부산>

- 기간: 2020. 7. 10(금)~12(목), 3일간
- 장소: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홀
- ※ 참가자 모집기간: 5월 中

건의사항

- 부산 공예품 전시판로 개척 지원사업 예산 조속히 승인 건의
- 전시회 참가자 모집기간(5월)이 촉박하므로 조속한 승인 및 추진 필요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5.19)

건의결과

반영(20.5.19)

건의요지

-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퇴직금제도이자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금 납입여력이 많지 않아 노란우산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현황)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년 6월 현재, 부산시를 포함한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와 4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난 3월, 부산시는 코로나19 극복 긴급 추경을 통해 부산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함
- (문제점)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조기소진 되어 2020년 5월 29일 이후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예산 확대요청
 - (현행) 10억원 → (변경) 15억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건의(20.6.30)

건의결과

반영(20.6.30)

「조합 추천 수의계약」 활용 요청

건의요지

- 공공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 가능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조합추천 수의계약)
- 사회적 약자 지원의 일환으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인쇄물 및 광고물 업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5천만원 미만의 조합 추천 수의계약 건은 구매대행 실시('20.2.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자체 감사에 따른 우려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활용을 꺼려 인쇄물 및 광고물에 대한 동 제도 활용실적이 전무한 상황
- 정부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 지원을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20.5.25)한 만큼 부산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의계약 유도를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지원 필요
* 소액 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5천만원 → 1억원, (종합공사)2억원 → 4억원, (전문공사)1억원 → 2억원 등

건의사항

- 부산시, 시 산하기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적극 활용 협조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건의(20.6.30)

건의결과

반영(20.6.30)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
 - * 법적근거: 헌법(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 이에,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19.9.25)하고,
 -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제1차(2020년~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20.5.1)

건의사항

-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른 '21년 신규사업 예산 지원 건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의회

건의경과

부산시의회 의장 건의
(20.7.20)

건의결과

반영(20.12.16)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생산현장의 기존 숙련인력도 고령화되어 은퇴 대기자는 증가하는 반면 노하우를 전수받을 젊은 대체인력 채용은 어려운 상황
-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빈 일자리를 채울 양질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매우 치명적
 - 납기 미준수, 수주 축소, 신뢰훼손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뿌리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은 생산시설이 멈출 경우 재가동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
- 연장근로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보전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도 소득감소로 큰 타격

건의사항

- 월·연 단위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도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단위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사전 근로계획 수립 기준 완화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 정산기간 확대(1개월 → 3개월)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의경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건의(20.8.6)

건의결과

반영(20.8.6)

건의요지

- 최근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특례기간을 올해 4월~6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7.8)
- 그러나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져, 고용 충격이 악화될 우려
- 또한, 지원한도가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월198만원), 기간은 연 180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
- 향후 대내외 경기 악화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조치 필요

건의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
 - (현행) 4~9월 (6개월 간) → (개선) 코로나 종료 시까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 日상한액: (현행) 6만6천원(月198만원) → (개선) 7만5천원(月225만원)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의경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건의(20.8.6)

건의결과

반영(20.8.6)

건의요지

- 2011년 12월 조성된 서부산유통지구는 기계공구, 철강, 의약품,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소재산업 등 2,400여개 중소기업체가 밀집한 지역
-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해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서부산유통지구 화재 발생 현황(20년 6월말 기준)〉

(단위: 건, 명,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화재발생	3	2	2	5	12
인명피해				1	1
재산피해	6,697	1,241	444	180,392	188,744

* 자료: 부산 강서소방서

- 서부산유통지구는 인근 김해공항의 항공기 유류저장고 등 보안시설과 인접하고 있어 대형화재로 발전할 경우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관할 강서소방서는 16.7km(27분 소요), 대저119안전센터는 7.5km(14분 소요) 거리로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5분 이내 출동이 불가능하므로 소방관서 신설 절실

건의사항

-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련부처 협의 통해 서부산유통지구 내 소방관서 신설 건의
- 대상지 주소: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3150-7번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목: 대지(공공청사), 면적: 1,923.4㎡, 현황: 주택전시관 가설 건축(~2022.8.31.)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10.16)

건의결과

반영(20.10.26)

건의요지

-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2004년 4월부터 중소기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및 물류기능의 공동화를 위해 공동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1,000여명의 동네 슈퍼, 마트 업주가 이용 중임
- 그러나 현행 물류센터의 소재지(부산시 동래구 명장동)가 안락제1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부산시로부터 78억원 예산을 지원 받아 공사 진행 중에 있음
 - 공사 발주 지연에 따라 새로운 물류센터의 완공시점은 2021년 3월초로 예정하고 있으나
 - 이는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하는 이전 시점인 2020년 11월말을 초과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물류센터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이 될 상황임
- 동부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체는 판매할 상품을 수급하지 못해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지역 동네 슈퍼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생존권을 크게 위협 받게 됨

건의사항

-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중순까지 동부중소유통물류센터 완공 건의
 - 2020년 12월 중순까지 불가능할 경우 기한 내 물류창고부분 우선 건립 건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10.16)

건의결과

반영(20.10.26)

건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만 50% 이상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에 비해 영업망이나 홍보 등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제품들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
 - 부산지역 가구 업체는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생산 위주로 기업을 운영함에 따라 대리점을 운영하는 수도권 업체들에게 피해를 보는 입장
 - 최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산지역에 동일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 후 변경 불가능하다는 입장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나,
 -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들은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시 관행적으로 기존에 거래했던 수도권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 법제화
 -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50% → (개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50% 중 지역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30% 이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제품 우선구매 독려 및 협조 공문 시행 요청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10.16)

건의결과

반영(20.10.26)

『조선산업 생태계 상생 특례보증 지원제도』 기금 출연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속한 보증 시행 건의

건의요지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조선산업 수주 급감으로 조선해양 기자재산업 업체들의 유동성 악화 지속
- 조선기자재업계 '21년부터 1년~1.5년 단기 일감부족 직면, 향후 시황회복기까지 조선-기자재산업 생태계 유지 절실
- 금융한도 소진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정부·지자체·조선소 금융지원 제도의 수혜 효율성 저하
- 기존한도와 무관하게 추가한도 생성 및 낮은 신용등급 업체에도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함

건의사항

-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이 겪고 있는 유동성 애로해소를 위한 『조선산업 생태계 상생 특례보증』제도 마련에 부산시가 기금출연(10억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
-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보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지원 건의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10.16)

건의결과

반영(20.10.26)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해 전통공예문화 부문이 매우 침체된 상황으로 공제산업을 육성하고 판로확대 지원이 요구됨
 - 부산 공예인들은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판로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짐
- 부산시에서 공예문화 부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판매가 더욱 위축된 공예문화부문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이 절실함
 - 소비자들이 공예품 판매장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공예품 판매가 실질적으로 어려움
 -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공예문화 부문 지원에 나서고, 판로가 민간에서도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공예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작품 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건의사항

- 부산지역 공공기관에서 기념품, 답례품 및 사은품 등으로 부산 공예인의 작품을 적극 구매 요망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건의
(20.11.4)

건의결과

반영(20.11.4)

부산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 그러나, 현재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무

건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건의경과

시의회 조례 제정 건의
(20.4.3)
강서구청 조례 제정
건의(20.7.23)

건의결과

미반영

제22회 영·호남 8개 시·도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 참가 지원

건의요지

- 부산시에서는 민간부문 동서교류를 통한 영호남 전통공예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예품 판로 지원을 위해 ‘영·호남 8개 시·도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 참가 지원을 해왔음(예산: 400만원)
- 또한, 부산시와 부산공예협동조합 주관으로 ‘제21회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 판매전’을 성대히 개최한 바 있음(‘19. 11월)

건의사항

-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제22회 영·호남 8개 시·도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 참가 지원 건의
 - 올해 전액 삭감된 보조금 사업이나 영호남 8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참여하는 교류 전시회이므로 부산광역시 공예인들이 교류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시 조치요망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5.1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재 부산시에서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2%를 지원(3호 대출)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기금은 담보여력 부족,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가입업체의 96.6%, 대출실적의 98.6%로 대다수 차지
 - IMF 경제위기('97~'98년), 글로벌 금융위기('07~'08년) 기간에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며 지원이 미비한 반면, 공제기금은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함
-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제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이차보전 보전비율 2%로 제한되어 추가적 이차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현황 비교(부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19년(2.1~4.30)	'20년(2.1~4.30)	증가율(%)
대출금액	2,815	4,500	59.9%

건의사항

- 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추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채무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요망
 - (현행) 지원을 2% → (변경) 2.5%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건의(20.6.30)

건의결과

미반영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업용수 사용료 감면 요청

건의요지

- 녹산국가산업단지 內 염색단지의 25개 염색 업체와 신평장림산업단지 內 염색단지의 50개 염색 업체는 집단화 입주하여 부산지역 섬유염색업계를 이끌어 왔음
- 그러나, 현재 염색단지 입주업체들은 섬유염색경기의 장기적 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도산과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는 상황
-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섬유산업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수요 급감
- 자가격리, 외부활동 금지에 따라 섬유제품(의류, 신발 등)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섬유업계의 글로벌 기업(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주문 전무
- 한편, 대구시는 지난 5.2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기업들의 공업용수비용 전액을 3개월치 감면해 주기로 결정

건의사항

- 최근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비용 지원을 통한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더 큰 만큼, 중소섬유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구시 지원사례처럼 공업용수 사용료 감면 건의
- 최소 3개월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물 사용 부담이 많은 염색업계의 공업용수(월 평균 65만톤) 사용료 감면 건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건의(20.6.30)

건의결과

미반영

지방투자촉진보조금(개성공단기업) 환수기준 면제

건의요지

- 개성공단 폐쇄 직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개성공단입주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환수기준 중 상시고용인원 유지조항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임
-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개성공단입주기업은 기업의 내부사정이 아닌 외부영향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고 고용수준을 변경 승인 하였으나 기업의 요구에는 부족한 실정
- 개성공단 기업은 '16년 정부결정에 따른 폐쇄 이후 中 사드 보복, 日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복합적이고 지속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 관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기준 중 상시고용인원 유지에 대한 사항은 면제해 주실 것을 건의함
- 개성공단 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발생시 환수기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추가 또는 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10.16)

건의결과

미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생략) 1.~5. (생략) 6. 사업이행기간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7.~11. (생략) ②~④ (생략)	제34조(보조금 환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사업이행기간중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환경 발생을 제외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7.~11.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건의요지

- 정부에서는 지난 9월이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업종 규제를 도입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시행 2019.9.24.)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
2.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설치 면적 확대(제36조의4제4항)
3. 산업단지구조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제58조의5제1항 단서 신설)

- 이를 통해 산업단지 용지활용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
- 미음산업단지 풍력발전부품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대형제품이라 운송에 애로사항 많음
 - 현재 미음산업단지에 물류가 허용되지 않아 물류가 허용되는 녹산산단까지 운반하여 신항만으로 수출 운송하고 있음

※ 미음산업단지 현황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
- 면적: 3,600천㎡
- 입주업종: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서비스

건의사항

- 미음산업단지에 물류업 입주 허용
 - 미음산업단지(풍력단지)에 허용되면 바로 신항만으로 운송되어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흐름 개선 될 것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국민의힘 부산시당 건의
(20.3.25)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부산지역 뿌리산업 중 표면처리 업체 수는 531개, 종사자 수 10,490명, 매출액 1.7조원으로 전국 대비 8~10%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표면처리업체 현황〉

(단위: 개, 명, 조원, %)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비고
전국	6,319	103,662	21.8	업체수 기준 전국 시·도 중 4위
부산시(비율)	531(8.4%)	10,490(10.1%)	1.7(7.8%)	

- 집적화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전체 531개 중 125개사로 24%에 불과
 - 폐수처리 위탁비용은 집적화단지 공동폐수처리 비용의 3배로 발주처 단가 적용에 애로사항 발생과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

〈부산지역 표면처리단지 현황〉

(단위: m², 개)

단지명	규모	입주업체수	조성년도	위치
장림표면처리단지	140,000	64	1990	장림동
녹산표면처리단지	54,000	49	2001	녹산공단
부산청정표면처리센터	16,284	12	2011	녹산공단

건의사항

- 자동차·조선기자재·기계 산업 등이 밀집되어 있고 연계산업으로서 활용 가능한 강서지역에 전국 최고의 최첨단 표면처리집적화단지 조성

※ 최첨단 뿌리산업(표면처리) 집적화(협동화) 단지 조성사업 개요

- 면적: 495,000m²(약 15만평, 도로,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 입주예정: 150여개 표면처리업(녹산, 사상, 사하 내 표면처리업체)
- 기대효과: (생산유발) 6,772억원, (부가가치) 3,982억원, (고용) 7,368명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부산지역 중소가구 제조업체는 자체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정책지원 부족으로 가구산업이 낙후

※ 타 지자체 가구산업 지원 현황

- 경기도: 가구를 특화산업으로 지정, 산업단지 조성 및 정책자금 지원, 전시홍보비 지원, 포천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 경기도, 충북, 전북: 한국국제가구 및 목공기계전시회 전시비용 지원
- 최근 부산지역에 진출한 대형 가구업체(이케아, 한샘)의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부산지역 중소 가구업체는 고사 위기에 직면
 -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 부산시와 가구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2018)하였으나 예산문제로 중단
- 또한 국내 가구시험 공인기관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인천)과 경기가구인증센터(포천) 2곳에 불과, 타 지역의 업체들은 품질시험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 부산가구디자인센터 건립 지속 추진(부산가구시험인증센터 포함)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적격심사제는 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나 용역·서비스업체 등 선정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 받은 후 부실공사나 부실운영 등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사전 심사하는 낙찰방법임
- 그러나 적격심사제를 아파트 재활용품을 최고가로 매수·수거하는 단순 노동의 업체선정 입찰에도 적용함으로써 대다수 재활용품수거업체들이 입찰에 참여·경쟁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 지속
 - 최고가 입찰참여 업체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참여한 업체보다 적격심사 종합점수가 낮아 입찰받지 못하고, 적격심사표준평가표의 각 배점규정을 잘 갖춘 대형업체만 낙찰을 석권하는 상황 발생
 - 이를테면 배점항목 중 70점을 차지하는 관리능력은 재활용품 수거업무와 사실상 무관한데 이를 엄격히 적용, 신생업체나 군소업체의 입찰참여가 원천 봉쇄되는 상황
- 또한 재활용품 판매낙찰 규정이 적격심사제(최고낙찰제)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아파트마다 낙찰방법이 다르고, 사적 관계에 따른 낙찰사례 다수

건의사항

- 재활용품 판매 낙찰방법 개선*: 적격심사제(최고낙찰제) → 최고낙찰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7 개정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건의결과

검토중

친환경 자동차 모듈부품 제조혁신 플랫폼 허브센터 건립

건의요지

- 부산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은 동남권의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활용
- 최근 전기차 시장의 가격경쟁 심화로 완성차업체에서는 협력업체로 단위부품별 모듈화를 통해 원가절감 및 품질경쟁력 확보 요구 강화
- 이와 관련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중소·중견 전기차(트위치)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모듈단위 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 구축 필요
 - 협력업체 및 연구기관의 고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로 융복합 모듈부품의 소재, 생산기술 관련 개발 촉진
 - 기술협력 공동활용 시설 구축을 통해 선진·융합 기술의 공동개발 및 보급

건의사항

- 친환경 자동차 모듈부품 제조혁신 플랫폼 허브센터 구축 및 정부 지원

분야

디지털·혁신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태풍·홍수·강풍·대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도 증가, 복구지원이 절실한 실정
 - 특히, 2019.9월 이후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한반도에 큰 피해 발생*
 - * 제18호태풍(미탁) 피해: 부산 강서구 40여개기업 50억원, 사하구 5곳 70여억원 추정
- 그러나,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200만원 지원

※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내용中, ‘Ⅲ 재해구호기금 용도 해설 11호’(시행령 제8조 제1항제9호)

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 (생략) ...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 지원기준: 상가 당 200만원 지급

-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지원은 전무할 뿐 아니라 재해 폐기물도 직접 처리해야하는 상황

건의사항

- 재난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가능토록 재해구호기금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포함
- 재난 발생 시 매출액·공장규모 등 감안, 소상공인대비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복구에 현실적 도움이 되는 지원금액 기준 마련 및 폐기물 처리비용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경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건의(20.3.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조합에서는 500~700명 정도의 식수가 나오는 공동식당을 운영
-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테이블간 칸막이를 설치 준비 중에 있으나 비용 부담이 큼
- 또한, 기업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건의사항

- 공동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지원
- 코로나19 방역 교육 실시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경과

코로나19

부산·울산·경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20.3.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경기부진 지속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화로 비상경제 상황
 - 특히, 위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타격 심각*, 심리도 크게 위축**
 - * 중소기업 2월 평균가동률 69.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 중소기업 4월 경기전망지수 60.6, '14.2월 소산업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 매출 급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한계상황에 직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70.1%)은 '향후 6개월 못 버틴다'고 응답
- 한편, 정부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이행 등에 불성실한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시장 참여가 막혀 심각한 사업 차질 발생
 -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공공입찰까지 제한되어 이중고 (二重苦), 일반기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 코로나19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사기 진작 필요

건의사항

- 국가차원의 포용조치 일환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비상경제상황 극복 및 사회공헌 기회 부여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조달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검토중

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항목 PIN-UP상 부활

건의요지

- 「PIN-UP상」은 한국산업디자인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신인도 가점 2점을 인정받아 왔음
- 활용 실적 미흡과 기술·품질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조달청 자체 판단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9호) 개정시 PIN-UP상을 신인도 가점 항목에서 삭제함(19.7.1)
- 조달우수제품 선정을 위해 특허와 기술개발을 준비해온 영세기업들에게는 신인도 가점(2점)은 조달우수제품 선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우수제품 선정여부는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가구는 디자인이 제품개발의 기초 근거가 되며, 기술의 원천이기도 하므로 ‘디자인’은 품질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산업경쟁력임

건의사항

- 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 부여 확대 및 가점항목 PIN-UP상 부활 건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조달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조달청장 건의
(20.5.1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신발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직·간접 고용창출과 섬유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높음
 - * 취업유발계수 10.9명(14개 제조업 평균 7.8명)
 - 출처: 학생운동화 무상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한국신발산업협회
 - 최근 자동화 한계로 아디다스의 독일(안스바흐)과 미국(아틀란타) 스마트공장 폐쇄 결정에서 보듯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생산구조와 특성으로 고용친화적 산업으로 꼽히며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 아울러, IoT·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결합한 기능성 신발 등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고 있어,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있음
 - * 한국 신발 소비규모(억원): (2012) 45,970 → (2013) 44,490 → (2014) 43,860 → (2015) 42,900
 - 통계청 가계소비통계, “신발 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이지연, 어미경, 박명자)에서 재인용

건의사항

- 전국 중·고 대상 “학생운동화 무상지원” 시범 실시
 - 무상교육(교육비, 급식, 교복)에 이어 운동화 무상 지급으로 확대
 - 물량 증가 및 해외 이전공장의 리쇼어링 환경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건의(20.6.30)

건의결과

검토중

최저임금의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요지

-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만 규정해, ‘노동비용’으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ILO협약에도 경제적 요인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도 경제상황 및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참고하여 결정기준 개선 필요
- 또한 투명성 제고 등 시대변화로 영세기업의 소득파악이 객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도 포함되었던 「사업의 통상적인 지불능력」이 명시되어야 함

건의사항

-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가
- 최저임금위원회 구분적용 심의과정 개선
 -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 의무화
-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1년 → 2년)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의경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건의(20.8.6)

건의결과

검토중

서부산유통지구 규제행위 완화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관 일원화

건의요지

- 서부산유통지구는 2,400여개 중소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로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됨
-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이 강화되어 있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무처리의 특례를 규정하여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환경 영향평가 사무, 공장설립과 등록 사무, 도시가스 시설공사 승인 등 수 많은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과 이원화 되어 불편이 많음

건의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서부산 유통지구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단지는 중소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종 규제행위 완화 요망
- 사무처리의 특례 중 기업체 및 주민의 생활민원 업무와 관련된 처리는 시·군·구청장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 진행 건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10.16)

건의결과

검토중

‘스마트공동납품운송시스템(공동운송플랫폼)’ 구축 지원

건의요지

- 대중국 가격경쟁력 유지가 우리 조선산업과 기자재업계의 당면과제이나 중후장대한 기자재의 특성으로 물류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 기자재업체의 물류비 비중: 원가 대비 2~5%
-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운송을 계획 중에 있으나 조선소 납기 및 기자재업체의 운송요청 정보 부재, 혼적 방법·운송경로 설정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없어 공동(혼적) 운송이 불가능
- 효율적인 공동운송이 가능하게 하고 납품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국내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스마트공동납품운송시스템(공동운송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
- 제2공동물류센터(부산신항 남컨배후부지내) 건립을 포함하는 통합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조성시기의 문제로 ‘스마트공동운송플랫폼’ 분리 추진
 - 대상부지 지반 안정화기간 추가되어 조성 시기 지연(’22년 → ’23년말)
 - 통합 추진 계획은 ’20년 부산시 구상사업’에 기 반영

건의사항

- 조선해양기자재업계 원가절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납품운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21년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광역시

건의경과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
(20.10.16)

건의결과

검토중

조선·기자재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비상 금융평가 기준 및 지침 마련

건의요지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조선산업 수주급감 → 기자재업계 물량감소 → 유동성 악화
 - 시중 금융권을 통한 자발적 유동성 확보 불가: 대출/보증 한도 소진, 신용등급 하락(매출급감, 채산성 악화 등)
- 향후 시황회복기(LNG운반선 건조 시점 도래시)까지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 필요
 - 호황기를 대비한 체력 비축이 절실한 시점, 1~2년간 조선산업 생태계 중심축인 기자재산업 유동성지원 필요
- 기존 금융한도 소진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정부/지자체/조선소 금융지원(제작 금융 및 특례보증)의 수혜 효율성 저하
- 현 금융평가 시스템으로는 유동성지원 한계 발생, 추가한도 생성 및 신용등급 무관 등 특단의 비상조치 절실

건의사항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동성 지원제도의 원활한 집행과 기자재업체 수혜도 향상을 위하여 실행기관(기보, 신보)에 기존 보증실행 외에 추가한도 발생과 평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비상 금융평가 기준 및 지침 마련 건의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건의
(20.11.4)

건의결과

검토중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건의요지

- 중소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에 따라, 그간 비용을 투자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취급시설 개선 등 화관법 준수에 적극 노력해왔음
 - 그러나 화관법은 취급시설 고시만 해도 7개가 넘고, 고시마다 상이한 세부 기준이 총 413개로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또한, 화관법 시행 이전('14. 12. 31일) 설치된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여건(이격거리, 부지 등)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됨
-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87% 대다수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대비 평균 35.8% 감소, 공장가동률(63.4%)도 전년대비 평균 26.8% 감소함에 따라, 올해 화관법 대응을 위한 여력이 없으며, 설비 투자 또한 어려운 상황
 - 이에, 정부는 9.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당시 정기검사 3개월 추가연장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1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건의사항

- 취급시설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화관법 관련 시설 개선 시 보조금 지원

분야

그린·환경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건의
(20.11.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 4월 이후 신규입국 지연 중
- 2020년 제조업 분야 신규도입 계획인원은 30,130명이나, 8월말 기준 2,234명만이 입국
-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출국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생산현장의 인력공백 발생
- 정부(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현장에 긴급히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조사해 추석 이후 입국재개 추진* 중에 있음
*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등 순차적 입국
- 그러나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수이나 개별 기업은 자가격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시설 지원 필요함
- 부산시에서는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확대될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

건의사항

-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시설」 지원 요청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건의
(20.11.4)

건의결과

검토중

수출컨소시엄사업(중소기업중앙회 수행) 주관단체 모집에 지방조합 참여 기회 확대 및 전시회 등 참가기업 추가 지원

건의요지

- 해운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영향과 신규선박 발주량 급감으로 2021년부터 기자재 업계 매출 감소 및 향후 1~1.5년 단기 일감공백 예상
 - 글로벌 누적 수주량: 1,003만CGT (9월기준/전년동기대비 50% 감소)
 - 한국 조선소 수주량: 276만CGT (9월기준/전년동기대비 53% 감소)
 - * 주요 기자재업체 105개사 중 58개사가 2021년 최소 10%~최대 40%매출감소 전망
- 코로나19로 주요 수출국 입국제한 및 입출국시 2주간 격리조치로 인한 해외 출장 제한으로 해외시장 개척 애로
 - 주요 해외 전시회 개최 취소 및 연기, 무역사절단 파견 불가로 대면 마케팅 추진 불가
- 2021년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해외 마케팅 활동 재개를 대비, 수출컨소시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필요

건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수행,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에 전국조합 위주로 선정되고 있는바, 지방조합의 참여기회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지방조합 대상 사업 홍보강화 및 주관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등 조치 검토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개별 참가기업에 한시적인 지원 확대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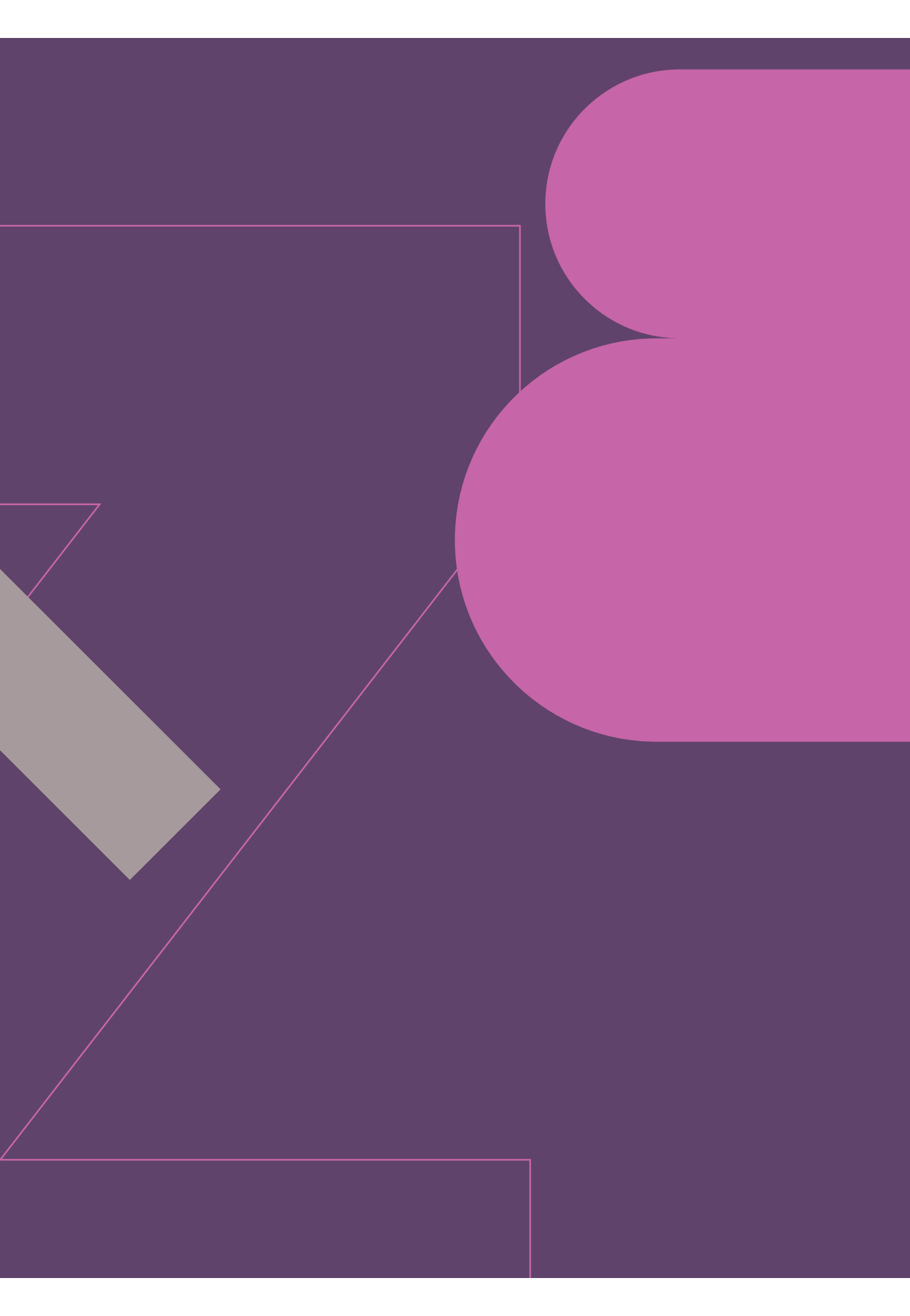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건의
(20.11.4)

건의결과

검토중

09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동구매 전용보증」 이차보전 지원

건의요지

- '18년부터 시행 중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금흐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할 수 있는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한 원가절감, 가격경쟁력 제고,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
- '20.10월까지 796개 중소기업에 총 2,272억원의 보증서가 발급되어 3,784억원의 공동구매 지원. 최근 월 평균 260억원까지 구매금액 대폭 확대
- 다만, 중소기업은 정책금리(2.15%) 대비 「공동구매 전용보증」 대출금리(평균 2.52%)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도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필요

건의사항

-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이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이차보전율 2%, 기간 5년) 요청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부자재 구매 자금유동성 확보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능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대구부시장 간담회
(20.12.16)

건의결과

반영(20.12.16)

건의요지

- 연식품(두부류) 업체는 위생적 식품제조·가공시설을 기반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
- 현재, 학교급식시장은 '대기업 제품'이 대부분으로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낙찰제 방식의 납품업체 선정되어 품질저하의 원인이 됨
 - 또한 HACCP 지정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대기업 제품도 결국 OEM 주문 제품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납품
 - 두부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에서 제외되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비용의 과부담으로 HACCP 적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다수이나 대다수 업체들이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타지역 중 일부지역은 지역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생산업체 제품을 약70% 정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건의사항

- 지역학교 급식 제품에 지역 두부생산업체 납품참여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대구부시장 간담회
(20.12.16)

건의결과

반영(20.12.16)

건의요지

- 대구 성내1동에 주얼리 제조공장(130여개) 및 도소매 판매매장(300여개) 집중 운영중
 - 2000년 이후 주얼리시장 침체로 관련업체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으나, 2005년 대구광역시의 주얼리특구 지정으로 대구시와 업계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중
 - 특히, 금년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내 23억원 규모의 장비구축사업 지원,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
- 주얼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온라인 판매로 변모하고 있어 지역사회 판매만으로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판매할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국내 판매 및 해외 유명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다면 지역 주얼리 제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 중소기업 공동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지원 요청
 - (구축비 2억 및 운영비 1억 지원 요청)
- 장비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운영비(1억5천)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대구부시장 간담회
(20.12.16)

건의결과

반영(20.12.16)

대구 「中企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을 통해 공동 구매·보관·물류·R&D·수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
 -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 선순환의 모델
- 이에, 대구시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19.12.99)
 - * 조례제정 현황: 광역지자체 16개(세종 제외)

건의사항

- 동 조례 제4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활성화계획’ 조속 수립 및 예산지원 요청
 - 부산시(5.1, 지자체 중 최초 수립)에 이어 제주도(5.8)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개별건의(20.7.6)

건의결과

반영(20.12.31)

건의요지

- 2018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함
-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있음
- 참고로,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는 해당 소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80%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음

<2020년 지자체별 PL보험 지원 현황>

구분	예산	지원 내용	업체당 지원한도
서울특별시	100백만원	보험료 20%	100만원
전라남도	10백만원	보험료 20%	100만원
전라북도	10백만원	보험료 20%	100만원
부산광역시	30백만원	보험료 20%	100만원
경상남도	50백만원	보험료 30%	200만원
제주도	24백만원	보험료 80%	100만원

* '20.5월말 기준

건의사항

- 대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일부 지원 요망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개별건의(20.7.6)

건의결과

반영(20.12.16)

건의요지

- 지역 유통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총 40억: 국비10억, 시비20억, 자비10억)를 건립
 -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구시 기부체납
 - * 무상사용기간(08.9.1~19.6.19) 만료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2028.8.31., 9년)
- 현재는 물류센터 건립시 자체자금 10%만 부담하면 물류센터 건립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8년 당시에는 자부담 금액이 총공사비의 30% 부담토록 함
 - 당시 조합에서 영세상인들이 십시일반하여 10억원의 큰 비용 마련
- 기부체납으로 인한 금융권의 자가 담보 제공 능력 상실로 물건구입 비용 등 운영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명목상 대구시 소유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는 조합에서 자비를 들여 진행
- 참고로, 순천시와 목포시, 제주시, 대전시 등의 경우 물류센터 소유권을 10년 후에 조합으로 이전
 - * 소유권 이전완료 물류센터(14개): 전주, 순천, 영주, 천안, 문경, 광주, 부산동래·사하·북구, 거제, 제주, 목포, 남원, 익산
 - ** 위 물류센터는 조합 정관에 물류센터에 대한 담보설정 및 대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함

건의사항

- 공동물류센터 소유권을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 이전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대구부시장 간담회
(20.12.16)

건의결과

미반영

대구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가스제조업 입주허용 요청

건의요지

- 산업용고압가스 충전 제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임
- 2014년 강화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존 허가된 부지에서는 제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이 되지 않아 신규 부지가 필요한 상황
 - * 토지 경계선에서 안전거리 이격(불연성 최소8m, 가연성 및 독성 17m)
 - 기존 조성된 공단지역에 입주허용이 되더라도 기존건물 사용불가로 철거 후 신축 등 과도한 투자비용 발생으로 입주 어려움
- 산업용가스는 모든 산업전반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전기, 물과 같은 기초자재로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업 등 수출 주력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광범위하게 활용됨
-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여 산업단지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제한 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등 기업의 애로해결에 적극 노력중

〈산업단지 관련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파주시)〉

- 파주시는 기업편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내 12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중
 -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여건분석을 기반으로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 후 승인신청 계획

건의사항

-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 재분양시 산업용가스충전업 입주를 위한 적극행정 요청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대구부시장 간담회
(20.12.16)

건의결과

미반영

「대구광역시 LP가스 유통구조개선 민관협력체계 구축」 정책건의

건의요지

- LPG판매업(LPG연료 소매업)은 영세성 및 보호·육성이 필요성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2019.1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업계 발전과 가스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
 -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공·안전·배송·판매 기능전문화(안전관리대행, 배송센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 LP가스 전문가 양성 노력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 가스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벌크로리 순회점검, 사회공헌활동 등 자율관리로 가스사고 예방
 - 가스시설 시공·안전관리·긴급복구, 자재(기구) 공동구매, 사고예방 계도·홍보, 판매시설 자율검사, LPG 거래상황기록보고, 정부사업 등 위탁수행당시 조합에서 영세상인들이 십시일반하여 10억원의 큰 비용 마련
- 가스안전 사각지대로 최근 5년간 LP가스사고 다수 발생, 주민복지차원에서 LPG유통구조 개선과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등 지원 필요
 - 주택, 음식점 등 생활주변(140건, 22.4%)과 사용자 취급부주의(174건) 등 발생, '정부-지자체-가스안전공사 주도' 가스안전관리 체계 재검토가 필요함

건의사항

- 대구광역시-대구가스판매조합-지역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민관협력 LPG유통구조개선 연구, 가스사고 사각해소 및 자구노력 지원 건의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대구부시장 간담회
(20.12.16)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직·간접적 피해, 소비심리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등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저임금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임금을 보전 중이나, 인건비의 평균 10% 수준에 달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
-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으나,
 - 동 사업은 신규/기존근로자의 지원수준이 차등화되어 있어 지금과 같이 기존근로자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 어려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인 납부유예보다는 지원을 통한 부담 면제가 더욱 절실함
- 한편, 일부 지자체는 관내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분기별 신고 후 환급방식으로 사업주 부담 완화

건의사항

- 소상공인 고용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한시 전액 지원
 - (현행)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90%, 건강보험료 최대 60% 지원 → (개선) 4대 보험료(고용/국민/건강/산재) 전액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개별건의(20.7.6)

건의결과

검토중

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건의요지

- 코로나, 美·中 무역마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저조한 규제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판로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조합추천 수의계약) 中企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하여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6)하여 한시적(20년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어 제도 활용 폭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으로 인하여 활용을 꺼리는 상황

건의사항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협조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대구광역시

건의경과

개별건의(20.7.6)

건의결과

검토중

기존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특례보증 실시

건의요지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등 해외공장 셧다운, 해외 바이어 결제연기·오더보류로 납품 중소기업의 매출절벽 발생 및 고정비(인건비, 전기·가스료) 부담 급증중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A사 사례〉

- 사우디 등 서남아시아 바이어의 오더취소 및 수출국가 현지 은행에서의 은행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기업내 유동성 고갈
 - 현장 직원 월급 밀려 있으며, 전기·가스료 등 고정비 부담이 높음
 - 은행에서는 만기연장 외 신규자금 공급 기대 어려워, 추가보증 절실
- 매출절벽 상황에서 필수 고정비 지급 위한 최소한의 자금 마련도 어렵고, 업력 오래된 기업의 경우 기존 보증한도에 묶이는 경우 다수

미국의 경우* 직원 수 유지하고, 급여·임대료에 사용 시 대출금을 100% 탕감하는 과감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

*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427조원 규모, 업체당 100억원 이내, 무담보

건의사항

- 코로나19로 특히 타격이 큰 대구경북지역, 기존 보증한도 관계없이 특례보증 공급되도록 조치하고, 미국과 같이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추가방안 마련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추경호 국회의원

건의경과

추경호 의원 간담회
(20.5.18)

건의결과

검토중

소진공 대리대출(보증서대출) 자금, 은행에 신속공급

건의요지

- 지난 2~3월 공급된 소진공의 대리대출(보증서대출)* 자금예산이 소진되며 4.16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실행 중단
 - * 소진공(피해확인서 발급) → 지역신보(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 소진공, 3.27일 이후 업체당 1,000만원 한도의 직접대출만 신규공급중
 - 한달 넘게 걸려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도 자금 못 받는 상황

〈대구소재 소상공인 B사 사례〉

- 시중은행 창구: “신청 마감” → 대출 불가 통보
- 대구신보 관계자: “소진공에서 은행으로 자금 안 내려와, 시일 좀 걸리는 상황임”
- 기업은행 관계자: “대리대출 예산 소진으로 4.16일 이후 집행 안 되는 상황”

건의사항

- 소진공 대리대출 자금 자원 확충 및 은행에서 신속하게 공급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추경호 국회의원

건의경과

추경호 의원 간담회
(20.5.18)

건의결과

검토중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한시 전액 지원

건의요지

-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비심리 및 경제활동 위축,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
 -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 유지를 위해 저임금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임금을 보조할 계획이나, 인건비의 평균 10% 수준에 달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책도 필요
 - * '20년 사업주부담 평균 사회보험료율: 10.7%(건강/장기요양 3.68%, 고용 1.05%, 국민 4.5%, 산재 1.56%)
-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으나,
 - 동 사업은 신규근로자와 기존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차등화되어 있어 지금과 같이 기존근로자의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 어려움

건의사항

- 소상공인 고용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한시 전액 지원
 - *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대구·경북 하위 50%) 가입자는 3개월간 50% 감면 예정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추경호 국회의원

건의경과

추경호 의원 간담회
(20.5.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최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9/10까지 확대('20. 3. 25)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지불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1/10의 부담마저 매우 버거운 상황
- 지원요건 또한 까다로워, 휴업은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직은 1달 이상 실시해야 하는 등 실제로 필요한 기업들의 제도 활용이 어려움

건의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필요
 - 지원수준 확대: (현행) 우선기업 90%, 그 외 67% → (개선) 소상공인 100%, 우선기업 외 중견기업 80%
 - 지원한도 확대: (현행) 일 6.6만원(월 198만원) → (개선) 일 7.5만원(월 225만원*)
 - * 산출근거: 중소기업 5~20년 근속 근로자의 월급여 수준인 약 360만원 (통계청 '18년 일자리행정통계)의 정부지원한도가 227만원인 점 감안
 - 지원요건 완화: ① 근로시간 단축분: (현행) 20% → (개선) 10%
 - ② 휴직기간: (현행) 1개월 이상 → (개선) 2주 이상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추경호 국회의원

건의경과

추경호 의원 간담회
(20.5.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현재 중국산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에 따른 피해와 170여 국가의 한국발 입국자 금지·제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
※ 『본회,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관련 수출기업 영향조사』(3.9~3.10), 312개 업체 피해가 예상됨(70.8%), 6개월 이상 지속시 악영향(80%)
- 또한, 부품수급 불안정, 선적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약금 및 계약 취소 등 피해가 우려됨

건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분쟁 소송(중재) 및 상사분쟁 비용 50%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추경호 국회의원

건의경과

추경호 의원 간담회
(20.5.1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내수 및 수출 물량 급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실적 개선 예상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5.12)
- 내수부진, 각국 경제성장 둔화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음

건의사항

- 현재 창업제조업에 대해 적용중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요금의 3.7%)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추경호 국회의원

건의경과

추경호 의원 간담회
(20.5.18)

건의결과

검토중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건의요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대구기업명품관)은 대구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이 입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임관리비 총당도 어려운 한계매장 속출

<판매장 운영 현황>

- 층별 입점 현황
 - 1층 23개 업체: 쉬메릭 제품(14개 브랜드), 귀금속, 여성의류, 잡화
 - 2층 12개 업체: 여성의류, 목공예, 골프의류
 - 3층 5개 업체: 사무실, 식당
- 입점업체 특성: 연매출 10억 미만 영세 소상공인으로 지역브랜드는 74.4% 차지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일정부분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 미지정으로 판매장에서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여 매장 활성화 및 매출증대에 어려움이 많음
- 또한,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의하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정 요청 의견이 62.4%로 높은 수준이며, 판매장 입점업체 대부분 가맹점 지정을 원하고 있음

건의사항

- 상품권 고객 유치를 통한 지역제품 홍보 및 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기업 명품관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필요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달서구청

건의경과

개별건의(20.5.8)

건의결과

검토중

‘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
 - * 법적근거: 헌법(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대구광역시 '19.12.19., 경상북도 '19.9.2. 제정

건의사항

- 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지역혁신 및 일자리 창출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달서구청

건의경과

개별건의의(20.5.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중앙회·삼성전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주)가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민간주도 사업으로 5년 간 총 1,000억원을 지원 중
 - 총 5년간 1,000억원 지원 中(매년 삼성전자 100억원, 정부 100억원)
 - * 정부·삼성전자 60%: 기업부담 40%(소기업대상 C형 기업부담 無)
- 광주, 경남, 충남, 충북 등 소재 기업은 지자체에서 총 사업비의 10%(최고 1000만원/1개업체)를 지원, 기업 부담을 30%로 줄여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유도
 - * 전남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를 지원 → 기업부담은 20%

건의사항

- 지원대상: 구미지역 상생형 스마트공장 선정업체 A형, B형
- 지원방식: 구미시와 협의 후 세부사항 결정 필요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지역업체 지원 요청
 - 개별 기업당(유형 A, B)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비의 10%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구미시장

건의경과

구미시장 면담
(20.3.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
-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가입 요구 중 →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은 더욱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업체 평균보험료는 2019년 기준 약 2,921천원
- 서울, 경남, 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는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80%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 지원 없음

건의사항

- 사업비: 10백만원(예상)
※ (3년 평균 보험료) 25백만원 × 40%
- 지원대상: 구미 소재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지원규모: 보험료의 40%이내(업체당 50만원 한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구미시장

건의경과

구미시장 면담
(20.3.27)

건의결과

검토중

구미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요청

건의요지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견적 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 가능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주요내용〉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업체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 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
 - (추천요청)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제품선택: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
 - 조합선택: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선택
 - 추천업체: 5개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은 2개 이상)

건의사항

- 물품 등 구매시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적극 활용 요청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구미시장

건의경과

구미시장 면담
(20.3.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가 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예) 공제기금 가입업체의 대출이자율이 7%이고 지자체에서 2%의 이차보전 시, 가입업체는 5%의 이자를 부담함

<주요내용>

- 사업지역: 21개 지자체
 - * 특별시·광역시도(17), 기초지자체(4)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 원주, 춘천, 천안, 고양
- 지원대상: 지자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
- 지원제외: 대출원리금 연체, 휴폐업 및 부도, 역외 이전
- 보전이율: 어음·수표대출(1.0%), 단기운영자금대출(1.0~3.0%)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구미시장

건의경과

구미시장 면담
(20.3.27)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구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요청

건의요지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생계위협 직면 시 생활안전과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 '07.9월 제도 시행 후 누적가입자 140만명, 자산 12조원 운영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임
- 동 제도의 취지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서는 영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중임

건의사항

- 구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요청
 - *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 160만명 확대
-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구미시 소상공인의 폐업,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빈곤층 추락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됨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구미시장

건의경과

구미시장 면담
(20.3.27)

건의결과

검토중

10
경남지역본부



건의요지

- 코로나19로 인해 전통공예문화 부문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어서 육성 및 판로확대 지원 필요
 - 경남 공예인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판로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짐
- 경상남도에서 공예문화 부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판매가 더욱 위축된 공예문화부문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이 절실함
 - 소비자들이 공예품 판매장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판매가 실질적으로 어려움
 - 공공기관이 출선해서 공예문화 부문 지원에 나서고, 판로가 민간에서도 확대되면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건의사항

- 경상남도 등 공공기관에서 기념품과 답례품 및 사은품으로 도내 공예인의 작품을 적극 구매 요망
-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대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필요
 - 공공기관 로비에 공예품 전시홍보를 위한 상시부스 설치 추진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을 통해 공동 구매·보관·물류·R&D·수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
 -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 선순환의 모델
 -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해 지원효과의 확산, 전파, 공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19.12.26)
 - * 조례제정 현황: 광역지자체 16곳(세종 제외)

건의사항

-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활성화계획(기본계획)’ 조속 수립 및 예산지원 요청
- 경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역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협동조합 교육 및 인력 양성, 협동조합 현대화 및 스마트화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반영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요지

- 현재 경상남도에서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공제기금은 담보여력 부족,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 수행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가입업체의 96.6%, 대출실적의 98.6%로 대다수 차지
 - IMF 경제위기('97~'98년), 글로벌 금융위기('07~'08년) 기간에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며 지원이 미비한 반면, 공제기금은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
-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제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이차보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 이차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현황 비교〉

(단위: 억원)

구분	'19년(2.1~4.30)	'20년(2.1~4.30)	증가율(%)
대출금액	1,236	1,417	15%

건의사항

- 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추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채무부담 완화 및 도산방지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예산 확대 요망
 - (현행) 100백만원 → (변경) 200백만원으로 확대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中企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해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따라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음
- 그러나, 경상남도 및 산하 관련기관에서는 동 제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며 나라장터 일반입찰 계약 건보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건에 대한 감사가 더 강화되고 있음

건의사항

- 경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경상남도 및 산하기관, 도내 각 시·군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 * 현재 경상도청에서는 1천만원 이상 인쇄물에 대해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용 중
-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는 정부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 조합 추천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최종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하고 있어 가장 투명하고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도청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
- 인쇄물 계약시 인쇄원가계산에 의해 계약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현재 공사, 용역 및 제조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사·용역과는 달리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 공동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기계분야의 경우, 제품 특성상 제조와 설치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액이 10억원 이상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특허 및 공법회사가 거의 서울·경기 소재 회사여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제조 물품에 대한 공동계약이 납품업체간 품질차이 등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공동계약 발주를 꺼림

건의사항

-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기계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제조 물품 발주시 공동계약 적극 활용바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반영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확대

건의요지

- 정부는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라 KS 인증제품 및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 중
-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 12월)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9. 6월)을 통해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지명경쟁 근거를 신설하여 구매를 촉진
-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우수단체표준 제품 및 상기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 저조

건의사항

-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 적극 지원
 -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 제한경쟁·지명경쟁 적극 활용
 -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에 안내 및 활용 독려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반영

조합추천수의계약 구매대행 적극 시행 협조요청

건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수의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5천만원 이하 물품 및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
- 동 제도 활용시,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수요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여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며 감사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 있음
- 조달청에서는 금년 2월 1일~내년 말까지 광고물조합 및 인쇄조합 추천수의계약에 대한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 중이며 동 기간 동안의 제도 활용실적 및 운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타 조합까지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조달요청건을 처리하고 있음

건의사항

- 동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소기업·소상공인의 활로개척을 위해 경남지방 조달청에서 시·군에 적극적인 제도 활용 독려 및 홍보바람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반영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안내

건의요지

-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경우, 수요기관은 동 제품 구매시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하거나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 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8의2호
- 한국광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의 지방조합들은 소기업공동사업제품인 간판 등 13개 품목을 공동상표로 등록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활용하지 않아서 조합에서는 추천이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지원으로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조합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수요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 요망
- 조달청에서 계약 담당관 교육시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소개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반영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요청

건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분리 발주 및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7월 25일 국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관련 업계와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회의에서도 조명래 장관은 공법 및 신기술 시공에 있어서 특수자재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를 약속했음
- 최근 공법 회사와 용역 회사가 담합하여 발주처(수요기관)를 설득,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산업체가 하청업체로 전락해 적정한 이윤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 발생

건의사항

-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발주기관에는 설계 단계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와 같이 공법 회사, 시공 회사 및 발주처가 담합하여 계약 요청을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분리 발주가 되도록 조치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은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임
 - * 전체 소상공인의 35.1% 가입: 재적건수 1,233,588건('20년 1월말 현재)
 -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소득공제혜택(연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2020년 3월 현재, 경상남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 및 4개 기초지자체(전남광양·곡성,충남당진,인천부평)에서 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입자당 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중이고 특히, 강원도는 소상공인의 적극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영지원 차원에서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 경상남도: '18.7월부터 월 1만원 지원 중('20년 예산 778백만원)
 - * 경남양산: '19.4월부터 월 1만원(예산 30백만원) 지원. '20년부터 미지원

건의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급락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을 현행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 지원

〈경상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안〉

- 지원대상: 경상남도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내용: (현행) 1년간 월 1만원 적립 → (증액) 1년간 월 2만원 적립
- 소요예산: (현행) 연 778백만원 → (증액) 연 1,500백만원
 - * 타 지자체 지원현황: 월 2만원(서울, 대구, 세종, 전남, 경북, 제주), 월 5만원(강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반영

건의요지

-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으나,
 - 동 사업은 신규/기존근로자의 지원수준이 차등화되어 있어 지금과 같이 기존근로자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 어려움
- 추가로,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산재·고용보험 납부유예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와는 별도로 사업장의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이 별도로 필요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인 납부유예보다는 지원을 통한 부담 면제가 더욱 절실함
- 한편, 일부 지자체는 관내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분기별 신고 후 환급방식으로 사업주 부담 완화
 - * (강원도, 충남도) 정부 지원액 제외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자체가 지원

건의사항

- 소상공인 고용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한시 전액 지원
 - (현행) 고용보험료 최대 40%, 산재보험료 최대 60% 지원 → (개선) 4대 보험료 (고용/국민/건강/산재) 전액 지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광역시·도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작물보호제 입찰 품목의 기초가격이 농협의 계통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중판매 단가와 큰 차이가 있어서 작물보호제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농협의 계통단가는 제조사에서 농협에 납품하는 단가로서 소상공인의 표시단가보다 10~20% 낮음
 - 농협중앙회에서는 각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입찰 또는 단가계약) 함으로써 농자재 값을 낮추는 계통구매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이밖에 낙찰자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48호, 2018.11.8.)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적용되어 단가가 더욱 인하됨
 - * 낙찰율: 5천만원 이하 - 87.99%, 5천만원초과~2억원미만 - 84.245%, 2억원 이상 - 80.495%
- 경남 작물보호제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한 기준단가 조정이 필요함

건의사항

- 지역 작물보호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에서 작물보호제 구매를 위한 조달입찰 시행시, 구매기초단가를 소상공인 표시단가 수준으로 상향조정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일부반영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운반 관련 규정준수 요청

건의요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운송과 관련된 계약특이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시공업체 또는 공사감독관의 무리한 요구가 빈발하여 콘크리트 납품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계약체결) ③계약담당 공무원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 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옵션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계약특이사항 내용:** 구매입찰공고서에 의하여 차상도(18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까지 운송) 운송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음

- 공사용 원자재를 18톤 트럭이 진입 할 수 없는 공사 현장까지 도착 및 하차(크레인 사용)를 요구
- 공사현장까지 18트럭이 아닌 1톤 또는 5톤 트럭으로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여러 번에 나눠서 운송함으로 운송비 과다 발생) 등
-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①생산제품 운송비의 대폭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②수요기관의 저렴한 제품, 시공사·감독관의 불리한 운송조건 요구로 인한 영세한 생산업체간 지나친 경쟁 유발(품질저하의 우려), ③이러한 상황의 반복적인 발생과 현재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업계는 고사 직전임

건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3항의 계약특이사항을 공사 감독관이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 수요기관의 공사설계시 공사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예산책정 요망
- 시공업체 입찰시 운반조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입찰공고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정부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운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이행 등에 불성실한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심각한 사업 차질 발생
 -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공공입찰까지 제한되어 이중고(二重苦), 일반기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 현장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되어 다소 과도하게 기업활동이 제한된다는 애로 호소
- 코로나19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사기 진작 필요

건의사항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입찰제한 및 과징금 등 부정당제재 감면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유지에 기여 가능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일부반영

건의요지

-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99개의 중소기업 회원사와 4,000여명의 종사자로 구성된 업계로서 레미콘의 원자재인 골재 및 모래 사용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모래는 영남권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08년부터 강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기존 단가에서 2배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강릉, 김천, 영천, 구미, 남원에서 육상 골재를 구입·사용 중에 있음
 - 산림 골재 채취·가공에 따른 환경문제, 장거리 운반에 따른 미세먼지발생 및 유류·물류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대안으로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를 100% 의존해 사용(연간 600만㎥) 했으나 이마저도 2017년 1월 채취가 일시 중단됐다가 2019년 이후 관수용에만 한정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건의사항

- 현재 관수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남해EEZ 바다 모래를 민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 해제 요망
- 동남권 지역의 골재원 다변화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낙동강 유역과 지류 둔치 등에서의 모래 채취 허용에 대해 적극 검토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영업신고 관련 시·군 행정지도

건의요지

- 정부(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각 지역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는 골목상권 보호·육성 및 유통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편의점, 식자재마트 등 유통 대기업으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면서 물류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의 한 축인 식당사업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품목을 공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게 공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음
-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제시 및 진주시에서 물류센터를 영업신고 대상으로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했으나, 물류센터는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과는 달리 비영리사업자이며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도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

건의사항

- 경상남도에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판매구조, 대상과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기초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각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가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건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나 확장성에 애로 있음
- 대부분 중소기업체는 경영여건 상 물류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조달청에 직거래를 못하고 있음. 대신에 중간 유통사가 조달청에 입찰하고 중소기업체는 중간 유통사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거의 없음
-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품평회 등 조달청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기회가 현재까지는 없었음

건의사항

- 조달청에서 각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소기업 제품을 집하하는 지역별 중간 물류기지로 지정·활용하면 중간 유통사를 배제한 중소기업체의 조달청 직거래 납품이 가능해짐
- 중소기업유통센터(전국 22개소)를 활용한 조달청 납품시 중간 유통사의 중간 유통 마진이 없어져 중소기업 영업이익 개선 효과 발생
- 각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조달청 주관 중소기업 제품 품평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미반영

분할변경요청서 상 납기변경 시 조합 동의절차 없이 통보 요청

건의요지

- 이미 계약이 체결된 납품 물량의 수량이나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전자서류로 수량 또는 납기변경요청서를 조합으로 보내오면 조합은 이를 승인해서 조달청에 제출함. 그러면 조달청은 최종 변경 내역을 담은 통지서를 전자서류로 조합에 보내옴
- 하지만 수량 변경의 경우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납기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는 이의가 없이 당연히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변경요청서에 대한 조합의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건의사항

- 업무 간소화를 위해 납기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조달청에서 자동적으로 납기변경 통지서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현재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지역 공동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물품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의 기준이 없음
- 기계분야의 경우 주요 제품이 하수처리장치, 공조, 무대장치 등인데 제품 특성상 제조와 설치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도금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면 공법회사가 거의 서울 소재 회사여서 지방 기계업체의 도급 참여가 어려움

건의사항

- 물품 제조에 대해서도 공동도급의 기준을 마련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기계업체들도 공동으로 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나 훈령 등 근거 마련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경남직물진주실크조합에서는 조합원사의 정경 및 연사 준비공정을 조합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사에 공급해오고 있음
 - 조합에서 원사를 공동구매하여 고품질 원사를 조합원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경과 연사 공정부분을 공동 생산하여 조합원사에 공급함으로써 원가절감 효과 및 협동화사업 기능 최대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조합원사 간 가격변동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용이한 생산계획 수립, 개발비용 절감 및 샘플 생산공정 지원 등이 가능함
- 이러한 조합의 공동화사업을 통해 생산원가 5% 절감, 조합원사의 품질개발비용 절감 등에 따른 고품질 실크원단 생산 유도 및 조합원사 공동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건의사항

- 경남직물진주실크조합에서는 실크원단 제직 준비공정 공동화사업을 위해 연간사업비 34억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8% (2.7억원)에 해당되는 품질개발 및 샘플생산 비용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19년말 현재 경남지역의 LPG 판매업소는 670개소에 달함
-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가스 확대·보급 정책과 LPG 군단위 및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LPG 판매업소의 경영 악화와 영세성이 갈수록 심화
-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LPG 판매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

건의사항

- 생계형적합업종인 LPG 판매업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손실, 전업 및 폐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영업손실 지원금/희망폐업 보상제도(전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금)
- LPG 용기 공영제 도입 필요
 - 정부가 LPG 용기를 구매하여 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사업자는 사용가구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관리비 약 15% 절감) 가능
 - LPG 용기 검사비 전액 지원 및 보조 필요
- LPG 집단화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의 외곽 지역에 LPG 집단화단지 조성 추진 지원 및 사업비 보조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검토중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선정업체 자금 지원

건의요지

-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지정은 경남도정의 중요한 성과로서 국내 주물관련 소재산업에 새로운 방향 제시 및 활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했고 지역경제에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의 단초가 되었음

※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 하남일반산업단지 투자 프로젝트 →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 2025년까지 3400억원 이상 직접투자 및 500여명 직접고용 신규창출 기대
 -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 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 중 일부 소규모업체의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정부의 지원 자격조건 강화에 따라 국가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설비자금 지원이 절실

건의사항

-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선정업체의 기존 거래은행 대출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중장기 지원대책으로서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 설비자금 지원 프로그램 또는 친환경 사업자를 위한 환경설비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 검토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검토중

(구)수협부지 내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건의요지

- 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내 소재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 부지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필요

〈사업개요〉

-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92 일원
- 내용: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 총사업비: **약 80억원**(부지매입비 45억원, 건축비 35억원)
- 사업기간: 2021년 이후

- 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마산만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마산어시장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건의사항

-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대출 지원
 - 저렴한 수협 부지 매입을 위한 경상남도의 행정 지원(공시가격)
 - 건물 신축시 자금 지원: 수협을 통한 대출 지원
- 마산어시장을 건어물과 청과물 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검토중

레미콘업계 노조 부당행위에 엄격한 법집행 요청

건의요지

- 최근 레미콘사들의 납품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특정노총에 가입한 자만을 고용토록 강요하여 건설현장마다 문제점 야기
- 또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와 미수용시 파업 실행으로 인해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노조에서 건설현장의 레미콘 발주 및 물량 배정에 개입하여 업체의 경영권 및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발전기금, 명절수당 및 운반비(10~2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장에 특정노총 가입자 및 장비 미사용시 레미콘 타설을 방해하여 적기공급에 차질을 발생시켜 납기지연 및 현장과 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유발되고 있으며, 결국 최종소비자인 도민에게 피해가 전가됨

건의사항

- 정부 차원에서 노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개입하여 어려운 레미콘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검토중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를 위한 지자체 시설 지원

건의요지

- '20. 3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267,594명이며, 체류기간(4년10개월) 만료로 올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7,279명임
- 코로나19로 인해 '20.4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잠정 중단되어 '20.6월말 기준 입국 대상자 19,118명(10,691개사) 중 2,003명(1,343개사)만 입국
 - 경남의 경우 1,041개사의 외국인근로자 1,958명 중 9.0%인 177명 입국
- '20년 6월 본회가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에 대한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1,062개사 중 52.3%인 556개사가 이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
 -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요구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의 71.4%*가 자가격리 시설 미비로 국가, 지자체의 격리시설 이용을 희망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애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5월
-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제조업 생산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의 격리시설 실비 지원요청
 - ※ 본회는 지역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입국 전·후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협의 중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상남도

건의경과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20.7.2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현행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차기계약 배제 등)에는 품목을 기준으로 차기계약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시행 '20.4.1.] [조달청공고 제'19-254호, '19.12.31. 일부개정]

제21조(차기계약 배제 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해당 품목. 다만,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위 조항에 따라 품목을 기준으로 차기계약을 배제할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품목별로 계약업체에 안분배분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콘크리트 2차제품의 경우 계약품목 수는 많지만(16개~20개) 수요기관의 수요가 특정품목(6~8개)에 80% 이상 편중되어 있어서 나머지 20% 품목에 대해 영세한 다수의 계약업체가 치열한 납품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발생
-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20% 품목에 대한 계약이 배제될 경우, 영세한 계약업체는 자금부담 심화 및 계약품목수 점차적 감소의 악순환에 처하게 될 것임

건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차기계약 배제 등)에 명시된 '품목 기준'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규정을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 바람
- 향후에 '차기계약 배제 규정' 변경 시행시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단체표준 또는 KS표준의 품목수를 정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기관의 구매 빈도수가 높은 품목 외에는 조합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요망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검토중

관수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가격산정 및 생산원가 상승분 반영

건의요지

- 제품 가격에는 제조원가와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실성 있는 가격이 형성돼야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특히 건설공사에서 주요 원자재는 부실공사 여부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임
- 레미콘 가격은 시멘트, 모래, 자갈 비용과 기타경비로 이루어지며 제조원가가 투명한 제품으로서, 생산되는 규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기술력보다는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지님
-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은 매년 대폭 인상되고 있는 반면, 레미콘 가격은 건설 수요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건설사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레미콘 제조원가에 약 3~5%의 상승요인이 발생했고 시멘트 가격도 7~11% 인상됐으나 레미콘 판매가격이 원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건의사항

-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관수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방식 적용 및 원가상승분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가격 책정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검토중

총액계약 비중이 큰 KS제품을 단가계약품목에 포함 요청

건의요지

- 현재 MAS계약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동일한 비KS 규격 제품이 여러 건 발주됨
 - * MAS 공고문 상에 계약규격으로 KS규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레미콘 제품의 경우, 19-40-150, 19-45-150, 25-16-80 등의 비KS제품이 MAS가 아닌 별도의 입찰로 과다하게 구매되고 있어서 하루 정도에 처리될 일인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등 수요기관과 조달청, 조합 모두에게 불편과 추가 업무를 유발해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 계약한 조달 규격은 KS기준으로 계약이 되고 있으나, 비KS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MAS로 조달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규정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 적격심사 항목으로 ①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②입찰가격 ③신인도 ④결격사유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세 번째 항목인 ‘신인도’(별표 1, Ⅲ.신인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으로 마.정책지원(심사항목), 부처별 정책지원(평가요소) 분야에서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는 최근 2년 이내 수상업체만 인정

※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R. '생략'	'생략'	

건의사항

- 중소기업에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시기 바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검토중

‘벤처나라’ 사용방법 간편화 필요

건의요지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 사이트는 수요기관 담당자들조차도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나라장터, 혁신시제품, 벤처나라, MAS 등 여러 종류의 플랫폼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사용에 있어 혼동되는 부분이 있음

건의사항

- 플랫폼 상에서의 홍보 및 계약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검토중

나라장터 내 MAS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

건의요지

- 나라장터 내 MAS 전산시스템은 별도의 용역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음
- MAS 시스템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다운도 잘 되며 운영회사도 불친절해서 이용 학교에서 불만을 제기함
- 학교에서는 MAS 대신 학교장터에서 계약하려고 하며 소액수의계약을 꺼림

건의사항

- 주 이용자인 학교의 입찰 담당자들의 접근 및 사용이 쉽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공동사업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법정 협동조합
 - 경남지역에는 현재 4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며, 회원사는 2,600여개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2019.12.13일 제정
 -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뿐만 아니라 조합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건의사항

-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정책 및 예산지원 확대
-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지역 산업단지, 상가, 전통시장 등에 결성되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
 -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경남지방조달청

건의경과

경남지방조달청장
간담회(20.5.14)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인해 경남지역 조선업에서 약 4.2만개의 일자리 감소*
 - * 경남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만명): ('15)9.3 → ('18)5.1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
 -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는데, 조선업체의 37.2%, 전체 종사자의 41.2%에 해당, 경남의 조선업 고용충격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경남의 조선산업 퇴직인력 지원사업은 이직이 불가피한 조선산업 핵심인력 중 설계·도장·용접·생산관리직 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퇴직 핵심인력 40명을 도내 대학 및 고교 교원으로 채용하여 차세대 조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현재 경남 지역별로 인력부족 수준이 달라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황기의 저가수주로 인해 기성금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여력이 부족한 상황

건의사항

- 경남지역 실·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중소 조선업체 지원
 - 실·퇴직자 보유 전문기술을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보급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술 실·퇴직자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 경남지역 조선산업 실·퇴직인력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실·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퇴직인력 및 수요기업 DB 구축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건의경과

정책과제 전달식

(20.3.19)

건의결과

검토중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레벨별 관리 지원체계 구축

건의요지

- 경남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수준은 '기초' 및 '기초 이하'가 81.8%으로 대부분
-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나, 구축수준은 일부 공정 자동화 수준에만 집중
 - 이는 초기 데이터 구축에 대한 애로와 높은 유지비용에서 발생, 이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
 - 스마트팩토리 구현 성공사례나 모델에 대한 정보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

건의사항

- 스마트공장 비용 지원을 위한 투·융자 프로그램 확대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 기존 제조방식에 IC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확대
 - 초기 데이터 구축에 대한 수준별 차별화된 자금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구성원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등 내부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스마트공장의 개발과 활용 인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 레벨별 관리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시 제출서류 등 수행 프로세스 등의 간소화 필수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건의경과

정책과제 전달식

(20.3.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중소기업 대상 사업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R&D 연계형 수출지원 사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프로그램이 유일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사업의 경우 혁신형기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했으나, 그 외의 사업은 혁신기업에 대한 혜택 없음

건의사항

- 경남지역 항공, 해양플랜트, 자동차부품 등 수출 유망 중소기업 우선 지원과 함께 해외마케팅활동의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관련 R&D 지원체계 구축
 - 참여기업의 해외 현지활동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계약 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경남형 중소기업 수출 관련 R&D 지원체계 선도모델 개발 및 관련 산업의 구조구도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신흥시장 중심 해외 활동 지원 강화
 -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남아, 인도 및 남미시장의 FTA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 지원 강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건의경과

정책과제 전달식

(20.3.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디자인산업의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 디자인산업 또한 이러한 경제흐름에 발맞추어 진화해야하며, 국내 디자인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디자인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한 변화가 필요
- 경남에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없음

건의사항

- 현재 경남 소재 중소기업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 예산 제약으로 지원 한계
 - 경남디자인진흥원 신설을 통해 충분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단순히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리서치, 홍보, 마케팅, 기획 부분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
 - 디자인 정책 또한 디자인을 문제해결 관점으로서의 혁신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며 그에 따른 프로세스 관점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정책을 연구
 -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자금 부족 등으로 자체 상표나 상품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자인 사업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건의경과

정책과제 전달식

(20.3.1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대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영향은 중소기업과의 연계성 약화와 함께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공생해 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생력을 잃게 되는 문제 발생 가능
- 경상남도 시군별 지재권 출원 현황에서,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 12,274건 중 창원시 34.2%, 김해시 19.9%, 거제시 9.6%, 진주시 9.2%, 양산시 9.1% 순으로 5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1.99%를 차지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매우 심한 상태임

건의사항

- 경남 지역에 대한 자원의 보전과 가치 발굴
 - 상세한 지역 기술지도를 작성, 지역 기술을 정보화함으로써 전문 기술중개인의 접근과 외부 수요와의 연계
- 경남 중소기업들이 시장접근성과 인건비 부담을 뛰어넘는 핵심 고부가 소재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술력 및 자금을 지원
- 경남 시군별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확대 및 지식재산권이 특정 지역 중소기업들에 편중화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핵심 고부가 소재 개발 지원
- AI, 생산 자동화 솔루션, 응용S/W 등 경남 중소기업들의 구조 개혁을 통해 고부가 산업으로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건의경과

정책과제 전달식

(20.3.19)

건의결과

검토중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석산 공영개발 사업 추진 요청

건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보존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자갈 채취를 제한(신규채취 불허, 허가기간 연장 불가 등)하여 급격한 자갈의 수량 감소로 레미콘 제조용 자갈이 부족한 실정임
- 도내 18개 시·군중 약 10개 시·군만 쇄골재용 골재 채취장에서 자갈을 반출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골재 채취장이 없어 자갈을 인근 시·군 골재 채취장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적기에 수급이 되지 않아 늘 자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또한 모래 품귀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자갈을 부수어 만든 모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자갈부족의 심화로 레미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

건의사항

- 김해시의 경우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공영개발(봉림 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리운영)을 맡아 △지자체단체의 사업수익 증가 △관내 일자리 확대로 고용증가 △관내 건설공사 시 골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공기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경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건의경과

정책과제 전달식

(20.3.19)

건의결과

검토중

11

광주전남지역본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건의요지

-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을 제정
 -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
 - * 광주전남 지역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 이전
- 그러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시 지역 중소기업을 이용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기존에 거래했던 수도권 기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은 채용 의무비율을 법제화(혁신도시법) 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정임

〈혁신도시별 지역물품 우선구매 현황('19년 말 기준)〉

혁신도시	지역물품구매(억원, %)		혁신도시	지역물품구매액(억원)	
	구매금액	구매율		구매금액	구매율
부산	614	16.2%	충북	99	5.31%
대구	217	4.2%	전북	838	30.2%
광주·전남	6,936	16.5%	경북	108	3.12%
울산	581	7.6%	경남	1,132	19.8%
강원	1,016	16.9%	제주	23	4.9%

* 자료: 국토교통부 '20.2.19 보도자료

건의사항

- 「혁신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시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을 의무화 필요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에 지역기업 구매비율점수를 반영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근거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평가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혁신도시법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국회의원 당선자초청
간담회(20.5.11)

건의결과

반영(20.12.8)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건의요지

-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협업과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시행
 - *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조합수 28개, 조합원수 1,320개사('20.7월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 * 법적근거: 헌법(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동 조례에 따라 시는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구매·판매·생산·R&D·해외시장개척·판로확대·교육 등) 및 조합간 협업사업, 지역 中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상기 조례」 제4조(지원계획), 제9조(공동사업), 제11조(사업비의 보조) 등
-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사업의 예산확대 필요
 - * '19년 사업실적: 광주지역 소상공인 총 4,294명 대상 319백만원 지원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시 中企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민생경제 관련 사업(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확대 요청
 - * 조합 간 거래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 노란우산 장려금 확대 등 '2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광주광역시

건의경과

문화경제부시장 간담회
(20.8.11)

건의결과

반영(20.8.11)

매월 종합유통단지 도로 개설사업 조속추진 요청

건의요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일대 종합유통단지는 부지면적 15만평, 6개 시설 규모로 5,000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입주해 있음
 - 입주시설로는 자동차부품단지(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산업용재유통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자동차 중고 매매단지 등이 있음
- 유통단지 주변 도로는 화물 및 출퇴근 차량으로 하루 1.5만여대 이동차량이 발생하지만 진출입로는 한 곳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음
 - 조합은 유통단지 물류흐름 개선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북단 주변도로(중로1-218호선) 개설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기본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임
- 매월 종합유통단지는 광주송암산업단지, 효천지구, 나주혁신도시 등을 잇는 거점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 재정비 지원이 필요함

건의사항

-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로1-218호선(기계공구단지 한전변전소-송원고 방향 200m 도로)의 내년도 사업비 반영 등 조속한 도로개설 추진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광주광역시

건의경과

문화경제부시장 간담회
(20.8.11)

건의결과

반영(20.8.11)

건의요지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및 대출만기 연장 등 추진
 - 광주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의 공동물류센터가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
-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해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 또한 조합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자금(’19년 운전자금 8억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 * 이번 수해로 노후화되고 파손된 물류센터의 이전을 검토(시설자금 추가대출 필요) 하고 있음

건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재해지원 대상을 중소기업협동조합까지 확대 요청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자금」(시설자금)의 추가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건의경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간담회
건의(20.8.19)

건의결과

반영(20.8.19)

건의요지

- 중소기업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여부를 점검 및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 추진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방식은 총 구매 실적 및 중기목표비율, 기술개발제품 및 여성·장애인제품 구매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해당지역 소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이나 판로지원법상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간 협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 등의 개편을 통해 지역중기제품 활용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수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실적, 구매비율 등의 항목 추가
 - 구매방식(계약유형 등) 현황 파악
 -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합추천 계약제도, 지역입찰제한 비율 등
 - 최종 낙찰가격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납품단가 인하문제 점검
- ※ 전남도에서는 2014년부터 지역중기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시행하여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건의경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간담회 건의
(20.8.19)

건의결과

반영(20.8.19)

「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을 통해 공동구매·보관·물류·R&D·수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
 -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 선순환의 모델임
- 우리지역의 경우 1,962개 중소기업이 결성한 40개 업종별 협동조합 운영 중
 - *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조합수 40개, 조합원수 1,962개사('20.8월 기준)
- 전남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 동 조례에 따라 도는 조합 활성화를 위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공동사업(구매·판매·생산·R&D·해외시장개척·판로확대·교육 등) 및 조합간 협업사업 지원 등 지역 中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반영 요청
 - 부산, 제주의 경우 조합육성 기본계획 既수립 및 관련예산 반영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남도

건의경과

전라남도지사 간담회

건의(20.10.12)

건의결과

반영(20.10.12)

건의요지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을 제정
 -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한전 등 16개 기관 이전완료('12~'19)
- 그러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물품구매 시 지역 중소기업 보다는 관행적으로 기존에 거래했던 수도권 기업과 지속 거래
- 전남도의 「'20년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공시에 따르면, 전남도 및 관련기관의 총 중기제품 구매실적 대비 도내 제품 구매물량 실적은 83.2%로 우수한 반면, 한전 등 16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평균 12.9%에 불과한 실정임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중기제품 총 구매실적 (A)	도내 중기제품 구매실적(B)	우선 구매율 (B/A)	도내 중기제품 구매목표*
전남도 및 산하기관 (47)	전남도(1)	2,239	1,577	70.4%	78.0%
	시·군(22)	21,682	18,458	85.1%	89.3%
	공기업(2)	620	402	64.8%	83.3%
	출자·출연기관(22)	118	68	57.6%	78.1%
	합계	24,659	20,505	83.2%	87.9%
혁신도시 이전기관 (16)	한국전력공사	3,721	450	12.1%	2.0%
	한국농어촌공사	546	94	17.3%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42	0.2	0.4%	10.0%
	기타 이전기관(13)	164	31	19.1%	11.1%
	합계	4,473	575.2	12.9%	3.5%

* 2020년도 '전국 중기제품 총 구매계획' 대비 '도내 중기제품 구매계획' 비율

건의사항

-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취지인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소기업구매 목표비율을 30% 이상(현재 3.5%) 설정 필요
 -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의무비율을 법제화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18년 18%에서 '22년 30%까지 확대 명시
 - 실질적인 구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확대방안 마련 필요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남도

건의경과

전라남도지사 간담회

건의(20.10.12)

건의결과

반영(20.10.12)

건의요지

-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1%를 차지하는 최대 김 양식지역으로써, 김 양식어장에 쓰이는 김활성처리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동 조합은 우수한 제품 공급을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등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김활성처리제

- 김 양식 과정 중 발생하는 불순물(갯병, 잡태, 파래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산처리에 사용하는 친환경 처리제로써, 불법적으로 남용되어 해수오염 및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염산 등 무기산을 대체하고 있음
- 최근 우리지역 김 양식어장에서는 양식 과정 중 발생하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무분별하게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
 - 2015~2019년까지 전남지역 무기염산 사용 적발 총 193건*
 - * 손금주의원실 보도자료(2019년 국정감사)
 - 무기염산 사용은 해양생태계 오염 및 식품안전 차원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처벌)
 - * 무기염산은 물에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입이 되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특성이 있음(호흡기, 피부질환 등 각종 호르몬계 이상 부작용)
- 조합에서는 해양수산부 고시기준을 충족시켜 소금을 주 성분으로 한 저염산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현장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지만, 실제 수요량에 비해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활성화가 힘든 상황임
 - 김활성처리제 보급과 관련하여 전남도에서 지원(20억원)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
 - * 2016년 이낙연 도지사와의 간담회 시 도비지원(15%) 예산 반영

건의사항

- 지원예산 확대 등 김활성처리제 활성화 대책 수립 필요
 - 어민 자부담 비율(20% → 10%) 낮추고, 전반적인 구매예산 증액 필요
 - * (전남) 도비 15%, 시군비 65%, 자부담 20%/ (전북) 도비 18%, 시군비 72%, 자부담 10%
- 전남지역 생산업체 적극 활용(지역제한 입찰 등)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남도

건의경과

전라남도지사 간담회
건의(20.10.12)

건의결과

반영(20.10.12)

건의요지

- 전남서부수퍼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2007년 목포시와 운영협약을 맺고, 2008년부터 사업비 30억(국비 9억, 시비 12억, 자부담 9억)을 투입하여 현재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임
 - 준공 후(2009.2.11.) 목포시의 근저당 설정(21억원)
- 영세 중소기업의 유통물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센터건립 취지에 맞도록 조합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목포시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물류거래 등에 애로사항이 있음
 - * 롯데 등 대기업에서는 원활한 물류거래를 위해 담보제공 등 근저당권 설정 요구

건의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관리는 지자체장(목포시)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사용기간(10년)이 경과하였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근저당권 설정의 해제를 요청
- 타 지역 조합의 경우 의무사용기간(10년) 경과 후 근저당권 설정 해제(전주수퍼조합 2017.10.11., 전남동부수퍼조합 2018.8.1. 해제)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남도

건의경과

전라남도지사 간담회
건의(20.10.12)

건의결과

반영(20.10.12)

건의요지

- 제조분야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중 47.3%가 하도급업체이며 하도급 업체 매출액의 83.7%가 대기업에 대한 납품에서 창출(중소벤처기업부, 2016)
 - 광주전남의 경우에도 99.9%가 중소기업이며 제조업 분야도 대기업에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 * 광주전남지역 사업체수: 중소기업 99.9%(234,449개), 대기업 0.1%(193개)
- 대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을 떠나 존재하기 어려우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제공하는 판로를 외면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심화
 -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이며, 자동차 분야영업 이익률은 완성차업체 9.6% 부품업체 4.4%로 2배 이상의 배분 편차를 보임(산업연구원, 2017.5)
-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기업의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이며,
 - 현재 납품단가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80.0%가 부적정하다고 인식(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9.10)
- 불공정 관행의 시발점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 더불어 대기업이 상생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대·중소기업 상호 이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을 구축하는 등 상생문화 확산이 필요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국회의원 당선자초청
간담회 (20.5.1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사항

- 지원예산 확대 등 김활성처리제 활성화 대책 수립 필요
 - * (사례)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시행(조례4846호 15.01.14)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개발 구축 운영
 -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을 위한 지원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
 - 제조업과 유통업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 지역 특화산업* 중심 산업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
 - * 자동차, 화학, 철강, 신재생 에너지, 물류, 식품, 유통 등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운영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산업별 정보 공유 등

분야

상생협력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국회의원 당선자초청
간담회 (20.5.1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광주, 전남 쇠퇴상권 특성화골목 육성 및 지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정책방향과도 맥락을 같이 함
 - 정부는 「도시경제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
- 골목경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소상공인, 주민 등 거주자가 골목경제의 주요 주체가 되며, 거주자는 생산, 판매,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광주, 전남 쇠퇴 상권 특성화 골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골목경제는 소규모 생활경제로 마을단위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 및 마을공동체의 가치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 최적의 경제단위
 -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고용창출, 지역 내 소득 순환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 골목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건의경과

국회의원 당선자초청
간담회(20.5.1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사항

- 광주, 전남 지역별 쇠퇴상권 분석 및 특성화 골목 사업화 전략 수립
 -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비선정된 지역의 쇠퇴상권 우선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특성화 골목 사업이 가능한 외식 컨셉의 사업화
 - * 예) 특정 컨셉의 외식특화골목으로 선정-치킨골목, 포차골목, 카페골목 등
- 광주, 전남 상권활성화센터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화 추진
 - 전남의 경우 일부 도시는 지역별 상권활성화센터 설립도 고려

건의요지

- 광주식자재공급업협동조합은 2013년 설립되어, 지역 내 식자재 유통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공동구매·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공동구매·판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조합의 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조합원사의 자본금으로 조성한 現 물류창고(광산구 동곡로 185번길 51)는 시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산업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언택트 소비문화 확대 등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수와 물량이 많아졌으나, 협소한 물류창고로 인해 보관의 한계가 있음
-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진공의 협업활성화 자금(시설자금 40억원) 등을 통해 신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 * 평동3차 일반산단 내 2,600평 규모(사업비 116억) 신규설립 예정(부지매입 계약 완료)

건의사항

- 소상공인의 유통 경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 지역 식자재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요청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주요내용(제17조의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 중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물류사업, 상품의 전시,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중소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내 지원사례: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17)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광주광역시

건의경과

문화경제부시장 간담회
(20.8.11)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정부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내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 해당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역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음

〈지역 제한경쟁입찰 관련 요건〉

- 지역내 유효한 입찰참가자 2인 이상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추정가격 일정금액 미만 물품 제조·구매
 - 정부 및 국가기관: 2억원 미만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3.1억원 미만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 그러나, 지역의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
 - 지역 제한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경쟁입찰을 하거나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2개밖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발생

건의사항

-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품질, 성능 등의 면에서 부족하여 타 지역 제품을 구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 코로나 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위해, 최대한 지역 제한경쟁입찰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광주광역시

건의경과

문화경제부시장 간담회
(20.8.11)

건의결과

미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건의요지

- 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5명 이상의 발기인 및 4천만원 이상의 출자금 필요
 - 전국 또는 (광역)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경우 30~7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법 제6조, 제7조, 제80조)
- 상기 기준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결성 및 운영에 장애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 기준 완화 필요
 - 정해진 업무구역 내의 사업체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조합규모 확대 애로)

건의사항

-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최저 발기인·출자금 기준을 완화하여 스타트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 촉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
 - 업무구역 자유, 최저 발기인수 5인 이상, 최저 출자금 1천만원으로 완화

〈사업조합 설립기준 완화안〉

구분	현행	개정(안)
업무구역	전국/광역(시·도)/기초(시·군·구)	자유
최저 발기인	업무구역에 따라 5인~50인	5인
최저 출자금	4천만원	1천만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건의경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간담회 건의
(20.8.19)

건의결과

미반영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제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

건의요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내용: 공동 기술개발·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협업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 동 지원사업은 中企협동조합의 경우 참여하기 힘든 실정임
 -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에서 협업체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나, 등록 시 모든 조합원사가 협업활성화 포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 中企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법인) 조합원사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조합원수가 많아 조합원사 개별적으로 포털 회원가입이 어려움
 - * 광주전남콘크리트조합 조합원수 총 46개사

건의사항

- 협업활성화 지원제도 신청절차를 간소화
 -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의 주관단체는 협동조합이므로, 신청절차 상 조합위주로 간소화할 필요성 있음
 - * 중진공 협동화자금의 경우, 조합이 대표적으로 사업신청 및 관리운영
 - 中企협동조합의 현실에 맞도록 신청절차 및 요건 등을 개선하여 제도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용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건의경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간담회 건의
(20.8.19)

건의결과

미반영

12 전북지역본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건의요지

- 지난 2017.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군산조선소 1차 협력사를 비롯한 관계기업 약 150여개 기업의 상당수는 가동이 중단된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지난 2018.4.5일 제도도입 후 첫 번째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년)
 - 정부는 2019.4.23일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조선업 불황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연장(2021.5.28일 까지)
-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0.4월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 타 지역에 비해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군산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

건의사항

-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2022.4월 까지)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반영(20.3.20)

건의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업체,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개별기업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 전체에 지원하는 효과 거양

건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및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반영(20.11.02)

건의요지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제1차 계획(‘16~’18), 제2차 계획(‘19~’21)]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추진
 - (광역지자체) ‘19년 16개 광역 시도 제정 완료 (전북 ’19. 12. 31)
 - (기초지자체) 여수시 (5. 27), 창원시 (6. 24)
 - * 전주시, 군산시 협의 중이나 소극적 협조 진행
- 위 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간 협업(공동사업), 조직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 협의 중에 있음.
 - * 완료: 부산(5. 1), 제주(5. 8), 충남(5. 25), 전북(협의 중)
- 한편, 전라북도는 농식품가공업 및 도소매업 등 영세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임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가 미흡함.
 - *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39개)

건의사항

- 중소기업 협업·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조기 수립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각종 중소상공인 협의회 등 임의단체 중심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 협조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전라북도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의처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20.7.9)

건의결과

반영(20.11.02)

「전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신설요청

건의요지

-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대부분 작년보다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으며, 향후 더욱 나빠질 전망
-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보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보험요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 중
 - * 두루누리: 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고용보험·국민연금 40~90% 지원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임의가입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30~50% 지원
-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관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부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음

건의사항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인 영세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 사업주 실 부담액 일부 지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고용 보험료 지원 등 제도 마련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5.14)

건의결과

반영(20.6.1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확대

건의요지

- 전라북도는 2010년부터 도내 4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연간 2~5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이는 공동사업 추진조합 당 1~2백만원 정도 혜택에 불과하여 실질적 지원효과 미흡
 -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조사, 공동사업 추진시 가장 큰 애로는 예산확보(56.6%)로 응답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他 지자체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협업과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조례4733호, 2019.12.31.)
 - * 조례제정현황: 광역지자체 16곳(세종 제외), 기초지자체 3곳(여수시, 창원시, 전주시)
- 조례가 제정된 만큼 道內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 공동마케팅, R&D, 단체표준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성·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추진 필요

건의사항

-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조기 수립 요청(同 조례 제5조에서 계획수립 의무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 공동사업 촉진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대(20년 58백만원 → 21년 2억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9.17)

건의결과

반영

농약구매 보조금 사업 관련 농협과의 형평성 제고

건의요지

-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을 사용하여 농업인의 농약(작물보호제) 구매를 지원
 - 이를 통해 농작물 병해충 방지, 수급안정,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예시] 벼 방제지원, 배추 뿌리혹병 방제지원,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
-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 보조금 사업을 통한 농약 구매장소를 ‘농협’으로만 제한
 -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인 지역 소재 농약 판매상은 정부정책 대상에서 소외시킨 채 사실상 농협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매출감소로 폐업위기에 놓임
 - 또한, 농업인의 구매 선택권이 박탈되어 농약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라져 질적 서비스가 하락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

건의사항

- 정부 보조금으로 농약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농협이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농업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 정부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지역 농약 판매상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구매 서비스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도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9.17)

건의결과

반영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한 공예 클러스터 공간 조성

건의요지

- 전북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판매자 등이 협업 및 융합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북지역내 유휴공간(시·군내 유휴공간인 학교부지, 공장이전부지, 대학부지 등)에 조성
 - 지역내 공예산업 활성화 가능하며, 생산-판매-관광-교육 등을 연계함으로써 공예 클러스터 공간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건의사항

- 전북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예산업 관련 기업(생산자, 판매자, 교육장 등) 클러스터 공간을 마련
 - 단순한 생산자 중심의 클러스터가 아닌 판매장, 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공예산업 활성화 도모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 곳임

구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인 소상공인
선도형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인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지원요건상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면 요건이 충족되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쏘조합원이 제출토록하고 있어 50명 이상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사업신청 시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 조합원 전원이 회원가입토록하고 있어 조합원이 다수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애로사항이 많음

건의사항

- 조합원 50명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쏘조합원의 50%이상으로 개선 검토
 - 회원가입시 임원 또는 조합원의 50%이상 등으로 하향하여 적용 요망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협동조합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건의처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20.7.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직·간접적 피해, 내수침체 가속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심각
 - 사회적 재난 대비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절실
- 전라북도의 경우 노란우산 가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정된 지원으로 희망장려금 조기 소진되고 있음

건의사항

- 희망장려금 지원(전체 지원규모&가입자당 月 지원액) 확대
 - 現在 5억원내에서 연매출 3억원이하 가입자당 月1만원(1년간) 지원 中
 - * 他 지자체 지원현황
 - 月 5만원: 강원
 - 月 2만원: (2020부터)부산, 인천, 경남 / (2019부터)서울, 대구,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月 1만원: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5.14)

건의결과

미반영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분리 시상

건의요지

- 전라북도는 매년 전북 우수중소기업인 시상(7개부문: 고용창출, 매출성장, 경제단체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인의 위상 제고 및 경영의욕을 고취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경제단체는 설립목적, 운영사업 등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로 동일하게 간주하여 수상선정 하는 것은 불합리
 - * 여경협, 벤처기업협회 등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경제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협동사업 촉진을 위한 협동조직

건의사항

- 공동(협업)사업 등 본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선고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기업인을 위한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독립 시상되게 조례개정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5.14)

건의결과

미반영

전북권 거점형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건의요지

- 현황
 - 2007년 7월 전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사업비: 2,611백만원(국비: 723, 도비: 300, 시비: 664, 자부담: 924)
 - 현재, 전주시 및 도내 13개 시·군 1,238명이 슈퍼마켓조합에 등록 이용
- 성과
 - 2007년 물류센터 개장 후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 전국 물류센터 최초로 슈퍼마켓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공산품, 주류, 야채청과, 냉장냉동 등)에 대한 one-stop shopping 판매시스템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전국 32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평가 판정
- 문제점
 -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상품판매 및 저장 / 주차공간 등 절대부족 상태임
 - 조합원 수, 상품품목 수, 방문조합원 수의 대규모 증가로 한계에 이름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9.17)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사항

- 전주 제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요청
 - 전북권역 거점형 공동도매물류센터 구축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구매비용,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 확보
 - 안정적인 물류·유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건의요지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개원(2019.10)
 - 지역 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전북의 경우, 기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각종 사업을 분리시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추진하고, 별도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신설이 필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개발 등을 실시하고 중앙정부, 시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단체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역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
 -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정책을 추진할 종합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지역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 기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내 소상공인 분야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칭)전북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미반영

조선기자재기업 협동화공장 신성장 기반자금 지원 요청

건의요지

-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조선소 1차 협력사를 비롯한 관련회사 150여개사 중 21개사만 명맥 유지, 나머지는 가동중단
- 조선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군산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2018.4월)
- 이로 인하여 관련 회사들은 물론 군산 및 전북지역 경제의 장기 침체로 지역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 필요.
-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예산”(297억원) 중 국비 174.9억원은 반영되었고, 공장매입 지방비 100억원 중 올해 80억원은 '20년 3월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추경예산 승인됨
- 그러나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위한 협동화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 군산지역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협동화공장을 통하여 군산과 더불어 전북지역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신성장기반자금 등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20.7.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익산수퍼마켓협동조합은 익산에 있는 유통 소상공인들을 위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조합이 운영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주류와 공산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골목상권 가격경쟁력 확보 및 협동조합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공동구매품목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저온시설을 증축하였음
 - 그러나, 1차식품(농·축·수산물)을 위한 물류센터 내 저온시설 증축으로 인하여 전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
- 현재,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한국전력에서 산업용도 아니고, 가정용도 아닌 가장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비용부담이 높아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
 -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이 부담되어 적극적인 활용을 못하고, 상품만을 위한 시설만 가동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

건의사항

- 농업용에 준하는 전기요금 체계 적용 요청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20.7.9)

건의결과

미반영

건의요지

- 전라북도는 한옥마을, 경기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 각종 공예품, 목기, 한지, 음식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여행주간인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북을 찾은 방문자는 455만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8% 증가(문화관광체육부 발표)
 -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전북방문의 해', '공예명품전' 행사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전북공예박람회사업 등을 지원
- 하지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역 공예품의 개발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고 전시판매장의 설치,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이 있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북공예협동조합은 136개 공예 중소기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공예품대전(우수공예품 시상) 등 공동사업 수행
 - * 공동사업: 공예품대전, 박람회 전시회, 공예상품 개발·마케팅 등

건의사항

- 도내 전통공예인들과 전통공예계승인들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유도하여 차별화된 공예명품을 제작하고, 안전한 판로공간을 통한 작품의 산업화로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예명품 판매관」 조성 요청
 - 공예산업 발전의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와의 연결고리 역할 기대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9.17)

건의결과

미반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구매 명문화 요청

건의요지

- 인쇄업자는 대부분 영세업자. 직원 1~2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경쟁사회로 내몰려 어려움 가중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행사가 줄어들고, 결혼식 청첩장, 알림장 등 인쇄물 발주가 줄어들고 있음
 - 단체수익계약제도가 있을 당시 300여개가 넘는 조합회원사가 현재 72개사로 줄어든 상태이며, 조합의 역할이 없어서 회원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한해서 일정 규모 발주를 주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그러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없으며 공공기관에 영업을 하려 해도 코로나 등으로 담당자를 만나기도 힘든 상황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등은 공공기관과 수익계약으로 물품을 제조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건의사항

-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수익계약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수익계약가능 대상에 포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중앙회장 간담
(20.11.12)

건의결과

검토중

MAS제품(졸업앨범)에 대한 경쟁입찰 구매 금지

건의요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MAS(다수공급자계약)가 체결된 물품(초·중·고 졸업앨범)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함(MAS, 총액계약 등)
- 그러나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각 지방 교육청에서 MAS계약이 아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한 사실상 최저가 입찰 실시 등으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간 출혈경쟁 불가피

건의사항

- 수요기관에겐 계약간소화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적정단가 보장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졸업앨범은 2단계경쟁입찰보다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한 구매로 한정
 - 조달청에서 각급 교육청에 총액입찰구매 자제 안내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건의처

조달청

건의경과

중앙회장 간담 (20.11.12)

건의결과

검토중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단체보험료 지원 확대 요청

건의요지

-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물 책임(PL)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자로서 전북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보험료의 20%이내 지원, 단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생산제품 판매시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PL보험 가입이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PL보험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제품경쟁력 향상을 통한 내수·수출 활성화 도모
 - 국내·외의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
- 하지만, 지자체 지원 금액이 너무 적고 우선 가입자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지원금액이 고갈된 후에 가입한 기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 제조물 책임(PL)단체보험 지원금을 당해연도 가입기업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함
 - 지원기간: 당해연도 가입기업
 - 지원비율: 보험료의 20%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비에스메디칼(주) 건의
(20.11.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8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에 따라 협상기준가격을 결정시 거래실례가격의 가중평균 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원가계산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우리 중부골재채취업조합은 정부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하여 조달계약을 하고 있으나, 매년 재료비, 인건비(제조노임단가, 최저 임금 등) 인상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MAS 조달단가에 적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협상가격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가격조정(삭감)을 함에 따라 가격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간 저가경쟁을 유도하여 정부의 제도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있음

건의사항

- 원가상승 요인 또는 거래실례가격이 MAS 조달단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담당자 재량으로 협상가격을 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달청 차원에서 세부품명별 가이드라인(상·하한선 등) 마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건의처

전북지방조달청

건의경과

전북중부골재(조) 건의
(20.11.5)

건의결과

검토중

전북지역 입국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 확보 요청

건의요지

- '20.9월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258,078명이며, 체류기간(4년10개월) 만료로 올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7,279명임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4월부터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잠정 중단되어 '20.9월말 기준 입국대상자 19,118명(10,691개사) 중 2,003명(1,343개사)만 입국
 - 전북의 경우 2020년도 351개사 신청 외국인근로자 606명 중 4.4%인 19개사 27명만 입국
- 올해 9월 중앙회가 실시한 외국인력 입국재개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1,958개사 중 64.1%인 1,255개사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635개사 32.4%가 1~4개월 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
- 최근, 정부(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자가격리 시설이 마련될 경우 코로나19가 안정된 국가들부터 입국 추진 계획
 - 그러나, 대부분의 개별 기업은 자가격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어도 즉시 채용이 곤란한 상황
 - 일부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선원, 외국인근로자 등)를 위한 공동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 운영 중

건의사항

- 道내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유 시설 확보 요청

분야

고용·노동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자가격리 가능시설
검토요청(20.10.27)

건의결과

검토중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도내 시군별 홈페이지 홍보 요청

건의요지

- 전라북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조기구축하기 위하여 노란우산에 납부한 부금 외에 별도로 매월 일정액(10,000원)을 일정기간(1년) 희망 장려금으로 지원
- 다만, 전라북도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시군별 매칭사업으로 지원예산이 상이하고 홍보여건이 부족한 시군의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건의사항

- 노란우산 가입 및 희망장려금 지원 내용을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요청
 -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내 노란우산 관련 배너를 클릭시 본회 홈페이지에 연결돼 간편가입 가능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홍보요청 건의
(20.10.28)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익산시의 경우 기존 익산시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을 다시 익산 지역으로 옮겨올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기존 전북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전북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전북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
- 전북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을 다시 전북지역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예상
 - 아울러 전북 리턴기업을 산업단지 유희공간에 유치하는 경우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내 산업단지 유희공간에 대한 활용제고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됨

건의사항

- 기존 전북지역에 사업장(공장,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전북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
 - 일정기간 지방세 감면
 - 전북지역내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토지구입비 경감 등)
 - 전북지역 이주에 따른 행·재정적 One-Stop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전라북도의 주요산업단지에는 노후화되어 신산업 유치에 한계가 있고 융복합중심의 4차산업을 위한 청년 창업환경 열악
- 전북의 청년들은 졸업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을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어 전북 청년들의 탈전북을 막고 떠난 전북 출신 인재들의 회귀와 전국의 창조적인 청년을 모으기 위한 지원환경 조성 필요
- 이를 위해 산학협력이 용이하고 청년들이 학업과 창업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놀이터’를 대학인근에 조성할 필요
* 특히 2019년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주지방법원 부지 등 활용 검토
- 창업놀이터를 통해 검증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져 혁신적인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 필요

건의사항

- 청년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혁신 창업활성화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인근 부지에 “전북 청년 창업놀이터”를 조성하여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검토중

농축산식품산업의 판로·마케팅 종합 지원대책 마련

건의요지

- 전라북도의 기업체수는 전국 기준 3.6% 수준에 불과하여 제조 및 유통 기반이 매우 취약하나, 농·축산 가구 수는 전국 9.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하지만 전라북도 농축산물 가공식품 기업체수는 대기업인 (주)하림 외에는 영세 기업의 비중이 높아 생산액 및 부가가치와 같은 질적 요소가 취약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
- 또한, 최근 온라인 및 홈쇼핑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라북도 농축산식품분야 기업도 반드시 진입해야 할 시장이지만 유통 및 물류시스템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임

건의사항

- 도내 농축산식품분야 기업들이 유통과 물류활성화를 통하여 성장의 사다리 혜택을 받아 중·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판로·마케팅 종합 지원대책 마련
 - 농축산식품분야 온라인시장과 모바일 시장 개척, 소기업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 지원 등 온·오프라인의 신규시장 진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검토중

에너지바우처제도 지원대상에 영세소상공인 포함

건의요지

- 영세소상공인은 매년 에너지 요금 과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전기요금,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매년 부담 증가
- 지난 2016년부터 겨울철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하여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시행중임
 - 적정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 등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인 자

건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1인 영세소상공인 포함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건의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의경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20.3.10)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中企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하여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명시되어 있음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6)하여 한시적(20년 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어 제도활용 폭 확대 예정
 - 국가계약법령(5.1), 지방계약법·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진행 中
 - * 지방계약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中, 이후 국무회의(차관회의) 거쳐 공포
 - 한도 상향시, 중기간경쟁제품 소품목*(5천만원~1억)에 대해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
 - * 인쇄·광고물 세부품목 5천만원이하도 가능(20. 2. 1~)
- 그러나,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으로 인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을 기피하고 있음
 - * 2020년 전북인쇄물 소액수의계약 추천: 1건, 2,000만원

건의사항

- 전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홍보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건의처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20.7.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조합 추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금액제한 없음) 및 이외의 물품·용역(2억 미만)구매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관령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도 활용이 가능함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6.11)을 통해 제도 활용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를 명시하였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제품구매 현황이 타 지역에 비해 수요 현황이 현저히 낮으며, 수요기관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인식 부족과 수의계약에 따른 담당자의 부담감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건의사항

- 전라북도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거점 공공기관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이용하여 광고물 14개 공동사업 제품의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건의처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

건의경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20.7.9)

건의결과

검토중

도내 농·수·축산 관련 기업 콜드체인 물류시스템구축 지원 요청

건의요지

- 전라북도는 180만 인구의 소비도시이자 農道. 도내 58개 농공단지 및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 관련 제품이 도내 물류시스템 부재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신선도가 저하되고 유통물량의 감소로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음
 - 생산제품의 위생, 신선도 등에 관련한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시장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25년까지 연평균 15.1% 성장 예측)

* 콜드체인 시스템(Cold-Chain System): 온도관리가 필수적인 제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 유통과정 온도를 낮게 유지해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하는 시스템

- 신선과채류는 선진국에서 20%, 개발도상국에서 40%가 유통과정에서 손상폐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발표]되어 많은 국가에서 식품 폐기물 절감과 소득 극대화 차원에서 콜드체인망 개발 및 구축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도내 농·수·축산물 생산(제조)사업자들은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및 장비 부족으로 과도한 포장비 및 택배비용을 지불하며 운송하거나 소량의 제품을 직접 운송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음
 - 물류비 부담으로 기업들은 제한된 유통 채널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대형 유통업체에 저가로 납품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 道內 농·수·축산 생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간 콜드체인시스템 및 정규노선 구축 요청
 - 14개 시·군의 중소기업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냉동·냉장창고 확장 지원 → 냉동·냉장창고 40평 → 필요공간 100평 예상
 - 전라북도 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순환할 수 있는 정규노선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차량 운영비 지원 * 물동량 증가에 따라 추가 노선 구축 필요
 - 차량4대(구역당 1대) 운영비(인건비, 유류비, 유지보수 등), 물류 지원 직원 2명 인건비 지원
- 물류시스템 구축은 생산(제조)사업자의 자생력 강화, 소비자의 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상생의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음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전라북도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9.17)

건의결과

검토중

지역 중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건의요지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美·中 갈등, 그리고 역대급 폭우(장마), 22년만의 경제 역성장 전망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움이 많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의 밑바탕을 지탱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정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17.7),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근거를 명시('18.3)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계약 제도*”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2020.12.31.일까지) 시행(대통령령 제30966호, 2020.8.25)하여 활성화를 지원함

건의사항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북도청 및 산하기관, 도내 시·군 기초단체, 전북지역 공공기관에서 협동조합 추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를 비롯, 공동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촉진
 - (조합추천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는 물론 계약이행능력 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구매 가능하여 구매담당자에게 계약 편의성 제고 가능하고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 시 구매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전북지역본부

관련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건의처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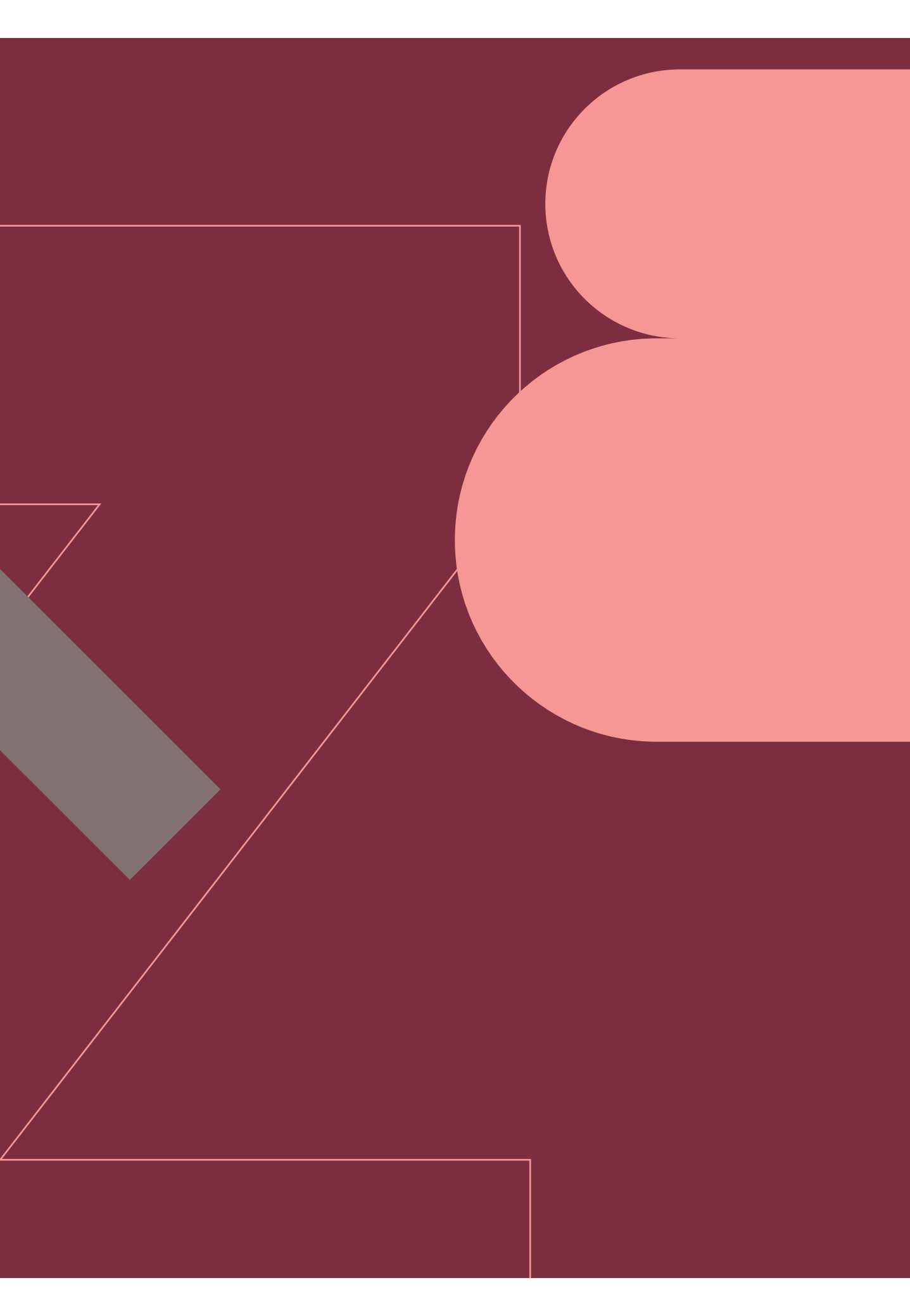
건의경과

전라북도 의견제출 (20.9.17)

건의결과

검토중

1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 건의

건의요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18.12.11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은 지자체 소유 토지·건물 재산에 대한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해짐
 -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불가능

건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4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②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횟수는 2회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안전과 위생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제주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5.1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근저당 해지

건의요지

-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를 국비와 도비의 지원(약35%)을 받아 제1센터('04.4월)와 제2센터('09.9월)에 각각 건립
 - 양 센터의 건립·운영과 관련하여 도청과 제주수퍼조합 간 체결한 운영협약('09.3월) 내용 중 센터건립 초기의 운영안정을 위해 양 센터 토지·건물에 대해 다른 담보설정을 10년간 못하도록 하고 도청 명의로 최선순위 근저당(28억원)을 설정 등기함
 - ※ 동 협약의 유효기간은 '19년 9월 만료

〈제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협약서, 2009년 9월〉

제6조(재산의 처분 제한) “을”은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물 및 시설장비 등 중요한 재산을 보조금법 및 조례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구축 완료후 10년이상 보조금의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갑”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조합원들의 수요에 맞춰 제조사(CJ, 롯데음료)로부터 물품 구매를 위해서는 담보설정이 필요하지만,
 - 도청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고액의 보증보험료(연간 2천만원)를 지불하여 구매를 하게 되어 조합 재정에 부담을 초래

건의사항

- 당초 협약 취지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해지 요청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6.26)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구매지원

건의요지

- 각 시·도 및 지방공기업은 213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113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품목을 구매할 때 지방자치계약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등)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그러나,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지방공기업)의 구매부서에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물품공급을 타지역 업체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제주도 예산의 외부유출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 제주도에서 행정지도(제주시/서귀포시/지방공기업 등을 대상)를 통해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물품계약 공고 시 지역제한 시행과 사후관리 요망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지방계약법 등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건의요지

-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금 납입여력이 많지 않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어려운 상황
 - 제주도는 전국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소기업·소상공인수 대비 재적 가입자수) 33.5% 대비 28.4%로 저조한 실정
-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16개 지자체에서 가입자당 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중이고 특히, 강원도는 소상공인의 적극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영지원 차원에서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 제주특별자치도 희망장려금 지원('19년 예산 4억원)
 - 지원대상/규모: 2억원 미만 소상공인/월2만원 연간 24만원까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업체: 3,200여개사 ('19.12월말 기준)

건의사항

- 내수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려금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요청(예산 4억원 → 6억원)
 - 지원대상: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선) 3억원
 - 지원규모: (현행) 월 2만원 → (개선) 월 3만원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건의요지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시행 (19.11.20)
 - 동 조례에 따라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구매·판매·생산·보관·가공 등) 및 조합간 협업사업, 지역 中企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19년 「제주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기능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2천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조합원사 및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제주지역 협동조합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서울시·경기도 등 타 시도 지원예산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도 中企 협동조합 및 중소·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청(2천만원 → 5천만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제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조속추진 및 도내 업체 참여 확대

건의요지

-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로 건설업체의 경영 압박,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악화
 - 도내 종합건설회사 신규 도급 공사* 전년 동기 대비 31.0% 감소('19.10월)
 - * 도내 종합건설회사 488개사 중 288개가 신규 도급한 공사는 458건(3,778억 7,700만원)
- 도내 대형 민자사업의 중단 및 투자유치사업 (오라관광단지 등) 추진 지연으로 도내 건설경기 침체 지속 우려

건의사항

- 제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공사 및 민자투자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토록 담당부서의 관심과 적극 행정 요청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등 신규 민자투자 유치사업이 법적으로 조속히 착수 할 수 있도록 조치
 - ※ ①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 사업개요: 제주 이호해수욕장 인근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조성
 - 생태계 파괴 논란 등으로 인한 주민반발로 경관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재심의 진행 후 현재 개발사업 변경 행정절차 이행 중
 - ②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 사업개요: 한림읍 금악리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조성
 - 개발사업시행 승인(3.8, 제주도)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건의요지

- 정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17.7),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근거를 명시(‘18.3)하고 있음
 -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6.11)을 통해 동 제도 활용근거(제20조 및 제22조)를 명시하였으나,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 공공기관 등의 이용률이 아직 저조한 상황
 - 中企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하여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부담으로 인하여 활용을 기피하고 있음

건의사항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협조요청
 - (조합추천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는 물론 소액수익(2천만원)보다 높은 한도(5천만원)를 통하여 구매담당자에게 계약 편의성 제고 가능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를 비롯, 공동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촉진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시 물품으로 입찰공고 건의

건의요지

- 중기간 경쟁제품(간판, 안내판)에 대해 행안부 예규 공사 적격심사 방식을 택한 입찰공고로 인해 업계 적격사업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가 있음

〈계약이행능력심사 미적용 입찰 건: 3건〉

- 조달청 공고번호 20190103615-00호 주차장 공공시설물(안내간판 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 조달청 공고번호 20190512986-00호 2019년도 시민게시판 유지보수 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866호 한라산국립공원 안내판 정비공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사로 발주하게 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제조중소기업의 하청업체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 입찰참여자격이 '중소기업'이 아닌 '공사면허 소지업체'가 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불가
 - 낙찰 받은 원청업체가 물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나 다른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도 별다른 제제사항이 없어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건의사항

-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취지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제조중소기업의 하청업체화 방지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관급레미콘 가격 사정률 인상 및 MAS 공급처 '조합' 활용 요청

건의요지

- 관급레미콘 계약은 사급레미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지방조달청에서 사정률*(약8%)을 계상한 가격을 가지고 매년 레미콘 조합이 지방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 사정률: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평균 시장가격에 할인율(지방조달청 7~8%)을 적용하여 관급레미콘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요율
 - 시장가격과 관급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도내 레미콘사들이 관급레미콘 기피 및 기업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 2020년 2월부터 관급레미콘 납품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제도에서 MAS(수요자 중심의 계약공급 제도)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 조합 및 레미콘업체가 새로이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수요기관이 직접 공급업체를 지정 할 수 있어 과당경쟁이 우려됨

분야

조합 판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반영(20.1.29)

건의사항

- 도내 건설시장 악화 및 레미콘 업계의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사정률을 합리화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요청
 -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MAS 제도하에서는 공사 발주 시 관급레미콘에 대하여는 조합을 통해 공급되도록 요청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지원

건의요지

- 소공인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소공인 조직화·협업화 유도,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 제주도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 집중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실천한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나 도시형 특화지원센터가 없음
 - * 제조업체 수 비중: 제주도 약 4%(전국평균 약 11%)
 - * 중소기업현황('16년 기준)

건의사항

-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제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검토중

LNG보급에 따른 중소LPG업계 상생발전방안 마련

건의요지

- 제주도는 현재 유일하게 LNG공급이 안되고 LPG를 쓰고 있는 지역이나, 2017년 4월 LNG공급사업을 착공, 2020년부터 약 35만톤의 LNG를 도시가스 및 발전용 연료로 공급할 계획
 - LNG 인수기지가 건설돼 본격 공급되게 되면 LPG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LPG판매소의 경영이 크게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한 LPG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LNG공급망이 없는 도시 외곽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싼 LPG를 사용하는 불균형 현상 초래 우려

건의사항

- 도내 LPG의 안정적인 공급 및 중소LPG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요청
 - LPG산업지원 발전기금 조성, LPG운송 물류비 지원
 - 읍·면지역(옛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중소LPG 컨소시엄(가칭)' 우선협상자로 선정
 - 중소LPG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 LPG사업 과당경쟁방지 및 정책적 지원

분야

조합·판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대부분 작년보다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으며, 향후 더욱 나빠질 전망이며, 사회보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가중 지속
 - *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추이(%):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6년 3개월만에 1.3%에서 1.6%로 인상('19.10월)
-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 중
 - * 두루누리: 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고용보험·국민연금 40~90% 지원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임의가입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30~50% 지원
 - 일부 지자체는 관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부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음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검토중

지원제도	지원 지자체	지원내용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 충남, 제주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부담금 전액 지원(제주는 8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원, 서울, 경남, 대전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액에 추가로 30~50% 지원 (강원은 산재보험, 국민연금도 지원)

건의사항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인 영세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 (건강, 국민, 고용, 산재) 사업주 실 부담액 전액 지원(*제주 80% → 100%)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건의요지

- 지방의 경우 인력이나 정보 등 협업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여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인프라 조성, 전문 인력·교육 지원)을 통해 中企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과 협동조합 및 협·단체의 협업 매칭 및 공동사업 기획 등 컨설팅 지원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배치 등 필요

※ [유사 사례]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지원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인프라 지원: 창업기업 대상,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시설, 장소 제공(6개월~3년)
 - 전문인력 지원: 자금, 판로 등 사업 활동 지원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배치·지원
 - 보육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센터 별 보육프로그램 지원

분야

정책일반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사항

- 제주 지역 협업 활성화센터 설립 및 운영 위한 예산 수립 및 지원 요청
 - 협업 활성화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156백만원(40평, 5개 조합 지원 기준)

제주 지역 협업 활성화센터 지원 개요

- 인프라 구축: 협동조합, 협·단체에 공동 오피스 제공, 공동사업 및 중기간 자발적 협업 추진 활성화
 - 협업 코디네이터: 협업 매칭, 공동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배치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협동조합 설립 유도·지원, 조합 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
- ※ 평가(조합 운영, 공동사업 성과) 체계 구축을 통한 계약 연장, 졸업, 퇴출 적용, 『조합 설립·인큐베이팅·졸업 및 우수사례화』 선순환 구조 형성

제주 지역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건의요지

- '18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한 원재료비 절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 단가인하사례: 가구(연) 목재 7% 인하, 경기인쇄(조) 지류 5% 인하 등
 - 그러나, 현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신보·기보 보증 발급 업체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어려움
 - 소상공인 보증 발급은 지역신보재단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지역신보재단의 업무 협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활용지원이 필요함

건의사항

- 원부자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보증재원 1억원 지역신보재단 출연 지원 요청
 - 지역은행 1억원 매칭 출연 시, 연 20억원 보증 및 지역 소상공인 공동구매 약 50억원 규모 지원 가능 (연 2~3회전 가정)

분야

소상공인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제주도지사 간담회
(20.1.29)

건의결과

검토중

건의요지

- 제주도는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6%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기금은 담보여력 부족,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가업업체의 96.6%, 대출실적의 98.6%로 대다수 차지
 - IMF 경제위기('97~'98년), 글로벌 금융위기('07~'08년) 기간에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며 지원이 미비한 반면, 공제기금은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함
-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제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이차보전 예산은 매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 이차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차보전 대상 대출 ('19년) 68건중 36건, ('18년) 58건 중 29건 지원

건의사항

- 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추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채무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및 지원률 확대 요망
 - (현행) 2천만원 *지원률: 1.6% → (변경) 4천만원으로 확대 *지원률: 2%

분야

금융·세제

담당부서

제주지역본부

관련조항

-

건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의경과

21년도 보조금 신청 시
건의(20.9.28)

건의결과

검토중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

2020년 기준

발행일 2021년 8월

발행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6-2)
Tel) 02-2124-3116 www.kbiz.or.kr

발행인 김기문

저자 추문갑, 김희중, 정상준, 이동섭

디자인 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www.maycom5.com

책자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02-2124-3116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